議政白書

第 9 代　前半期

忠 淸 北 道 議 會

發 刊 辭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던 제9대 충북도의회가 어느덧 전반기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충북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한 제9대 의회에 거는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변화와 혁신, 역동하는 의회"라는 기치(旗幟)처럼 계속 꿈틀대고,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견제역량의 강화, 소통과 참여의 활성화, 전문성 제고라는 방향에서 의회 운영을 혁신하고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비롯해 청주·청원 통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립암센터분원 문제 등 지역현안에 앞장서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지방의정 사상 최초의 옥천 현장 본회의 개최 등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굳은 의지를 견고히 지키려 했습니다.

이처럼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2년간의 발자취가 이번 의정백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본 백서가 앞으로 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서이자, 충북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도민과 의회 간의 소통을 위한 또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정백서」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충청북도의회의장 **김 형 근**

第9代 忠淸北道議會 前半期

의장단

의 장 김 형 근

부의장 최 진 섭

부의장 손 문 규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 문 희

정책복지위원장 심 기 보

행정문화위원장 최 병 윤

상임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김 봉 회**

건설소방위원장 **권 기 수**

교육위원장 **최 미 애**

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성**
2010.7.23~2011.6.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희**
2011.7.11~2012.6.30

윤리특별위원장 **박상필**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장
김 광 수

제9대 충청북도의회의원 현황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김 광 수 (1946. 5.22)	**청주시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근무(새마을 · 양정과, 감사담당관) – 청주시 경제 · 자치행정 · 기획홍보 · 기획감사 과장, 복지환경국장, 상당구청장 – 열린우리당 · 통합민주당 · 민주당충청북도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8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253-1879 〈 휴대폰 〉 010-9814-5000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95번길 96 (금천동)
 김 형 근 (1960. 1.26)	**청주시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제20대) 의장	〈 자 택 〉 (043)222-2272 〈 휴대폰 〉 010-5459-1933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63번길 33, 106동 401호 (대성동, 우성아파트)
 장 선 배 (1962. 5.21)	**청주시 제3선거구** (민주통합당)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자 택 〉 (043)293-4925 〈 휴대폰 〉 016-405-4925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50, 105동 1203호 (금천동, 장자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최 진 섭 (1951. 7.13)	**청주시 제4선거구** (민주통합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의회 사무국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한국 · 충북 · 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 · 충북시조문학회 회장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부의장	〈 자 택 〉 (043)211-2903 〈 휴대폰 〉 011- 465-2903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수곡로 100, 203동 503호 (수곡동, 한마음2차아파트)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이 광 희 (1963.10. 9)	**청주시 제5선거구** (민주통합당)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석사 과정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11.7.11.~'12.6.30.)	〈 자 택 〉 (043)900-8101 〈 휴대폰 〉 010-4386-2851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109, 106동 303호 (산남동, 유승한내들아파트)
 김 영 주 (1973.12.20)	**청주시 제6선거구** (민주통합당)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자 택 〉 (043)233-4708 〈 휴대폰 〉 010-3401-3056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대림로 493, 304동 708호 (죽림동, 가경3주공아파트)
 임 헌 경 (1966.10.20)	**청주시 제7선거구** (민주통합당)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 자 택 〉 (043)288-0971 〈 휴대폰 〉 010-5461-5669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3번길 14, 110동 1801호 (복대동,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박 종 성 (1959. 1. 4)	**청주시 제8선거구** (민주통합당)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청주시의회 제7대 예결위원장, 제8대 전반기 부의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10.7.23.~'11.6.30.)	〈 자 택 〉 (043)233-1382 〈 휴대폰 〉 017- 430-1382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4-10 (비하동)

제9대 충청북도의회의원 현황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최 미 애 (1950. 9.26)	**청주시 제9선거구** (민주통합당)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8대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휴대폰 〉 010-8445-5401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3번길 14, 101동 801호 (복대동,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김 동 환 (1951. 2.10)	**충주시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 충주고, 방송통신대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 충주시청 기획행정 · 경제건설 · 농정 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자 택 〉 (043)847-1345 〈 휴대폰 〉 010-5463-0187 〈 주 소 〉 충주시 형설로 32, 105동 601호(호암동, 세영더조은아파트)
 윤 성 옥 (1947. 7.12)	**충주시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충주고등학교 교사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 재청주, 충주 · 중원학우회 1 · 2대 회장	〈 휴대폰 〉 011- 263-7603 〈 주 소 〉 충주시 금가면 김생로 1182
 심 기 보 (1961. 6.15)	**충주시 제3선거구** (민주통합당)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851-6000 〈 휴대폰 〉 010-8207-9933 〈 주 소 〉 충주시 동촌4길 1-18 (교현동)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권 기 수 (1947. 2. 6)	**제천시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관광 · 사회복지 · 자치행정 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645-2688 〈 휴대폰 〉 010-7367-3005 〈 주 소 〉 제천시 용두천로 313, 2동 501호 (청전동, 덕일아파트)
 강 현 삼 (1958.12.15)	**제천시 제2선거구** (새누리당) – 울산과학대학 졸업 – 제천시의회의장, 의원(제5대)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동중, 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성모유치원, 남천초, 제천여고 운영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자 택 〉 (043)643-3529 〈 휴대폰 〉 010-5481-3565 〈 주 소 〉 제천시 독순로 140, 101동 304호(동현동, 동현현대아파트)
 박 문 희 (1953. 8.26)	**청원군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열린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정동영대통령후보 유세위원장(충북) – 민주당 충북도지부 조직위원장,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김대중대통령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도당상무위원 – 전국 시 · 도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264-2417 〈 휴대폰 〉 010-3461-7632 〈 주 소 〉 청원군 미원면 운암계원로 1104-46
 김 도 경 (1960.12.17)	**청원군 제2선거구** (통합진보당)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전농충북도연맹 부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 · 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자 택 〉 (043)211-8637 〈 휴대폰 〉 010-5461-8637 〈 주 소 〉 청원군 북이면 석성길 2-4

제9대 충청북도의회의원 현황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유 완 백 (1947. 3.19)	**보은군 선거구** (민주통합당)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은군 산외면 · 수한면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 · 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 · 새마을 · 총무계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회인면 부면장 – 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11.7.11.~'12.6.30.)	〈 자 택 〉 (043)544-4008 〈 휴대폰 〉 010-5505-3502 〈 주 소 〉 보은군 보은읍 정문고개길 7-6
 김 재 종 (1955. 2.21)	**옥천군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 대전 우송대학교 졸업 – 장천 새마을금고 1대 · 2대 이사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옥천군 애향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자 택 〉 (043)731-5501 〈 휴대폰 〉 010-5466-5501 〈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69
 황 규 철 (1966. 8.28)	**옥천군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 고문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청포도장학회 감사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회장	〈 자 택 〉 (043)731-9523 〈 휴대폰 〉 010-5466-8975 〈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30, 102동 1003호 (마암현대아파트)
 임 현 (1944. 1. 8)	**영동군 제1선거구** (새누리당)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영동군청 경제 · 재무 · 사회진흥 과장,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 영동읍장 – 충청북도 공무원교육 · 민방위 · 사회복지 과장 – 충청북도의회 제8대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743-3137 〈 휴대폰 〉 011-463-3135 〈 주 소 〉 영동군 영동읍 구교로 32-7, 306호 (대성맨션)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손 문 규 (1946.12.13)	**영동군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재학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부의장	〈 자 택 〉 (043)742-4514 〈 휴대폰 〉 010-9588-4514 〈 주 소 〉 영동군 황간면 황간동로 93
 김 종 필 (1963.12.19)	**진천군 제1선거구** (새누리당)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 한국JC사무총장, 충북지구JC회장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자 택 〉 (043)533-7297 〈 휴대폰 〉 011- 461-7297 〈 주 소 〉 진천군 진천읍 혜원길 7-1, 2002호 (해오름아파트)
 이 수 완 (1961. 2. 3)	**진천군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자 택 〉 (043)537-7701 〈 휴대폰 〉 011-9836-3094 〈 주 소 〉 진천군 덕산면 석장로 97-35
 정 헌 (1956. 2.19)	**괴산군 선거구** (민주통합당)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괴산 · 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 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자 택 〉 (043)833-3115 〈 휴대폰 〉 011-9827-3115 〈 주 소 〉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검승5길 182

제9대 충청북도의회의원 현황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김 봉 회 (1950. 1.25)	**증평군 선거구** (새누리당)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 증평농협 조합장, 증평 장뜰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836-4155 〈 휴대폰 〉 010-4463-4155 〈 주 소 〉 증평군 증평읍 삼일로 11길 23
 최 병 윤 (1961. 3.15)	**음성군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음성문화원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 레미콘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872-0668 〈 휴대폰 〉 010-5461-2949 〈 주 소 〉 음성군 음성읍 문화4길 13-7, 502호 (가람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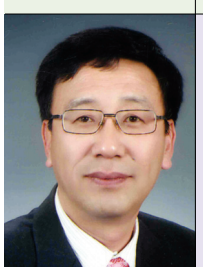 이 광 진 (1962. 6. 6)	**음성군 제2선거구** (민주통합당)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877-0118 〈 휴대폰 〉 010- 2478-1263 〈 주 소 〉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19
 김 희 수 (1950.10.14)	**단양군 선거구** (민주통합당)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북부권상생발전협의회 위원 – 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10.7.23.~' 11.6.30.)	〈 자 택 〉 (043)421-4061 〈 휴대폰 〉 010-5486-4062 〈 주 소 〉 단양군 단양읍 도전9가길 17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김 양 희 (1955. 3.15)	**비례대표** (새누리당)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청주시 초 · 중 · 고 학교어머니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자 택 〉 (043)233-7202 〈 휴대폰 〉 010-8804-9904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75번길 20, 506동 101호(가경동, 푸르지오아파트)
 정 지 숙 (1947. 1.19)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학년 재학중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동문회장, 동문회 이사 – 한국여성정치연맹 충북연맹회장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여성복지과장 – 범죄예방위원 –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 충북서예작가	〈 자 택 〉 (043)253-0601 〈 휴대폰 〉 011- 498-0195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23, 104동 903호 (금천동, 현대아파트)
 노 광 기 (1957. 7. 7)	**비례대표** (민주통합당)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청주신봉어린이집 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전국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자 택 〉 (043)266-3653 〈 휴대폰 〉 017- 416-2410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56번길 18 (봉명동)
 하 재 성 (1947. 8. 8)	**교육의원 제1선거구** (교육의원)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청주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원대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보덕중, 금천고 교감 – 한국교육대학교부설 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장학관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 청주중학교,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회장	〈 자 택 〉 (043)288-9085 〈 휴대폰 〉 010-4168-9085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317, 302동 1004호 (용담동, 부영1차e그린아파트)

제9대 충청북도의회의원 현황

성 명	주요경력 및 직업	주소 · 전화번호
 박 상 필 (1947. 1.20)	**교육의원 제2선거구** (교육의원)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충북 4 · 19혁명기념사업회 운영위원, 충청북도 자원봉사자연합회 운영위원 – 충북미래환경연합회 고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 택 〉 (043)231–2059 〈 휴대폰 〉 010–5463–2059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4번길 21, 202동 1301호 (복대동,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전 응 천 (1947. 2.25)	**교육의원 제3선거구** (교육의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 · 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 자 택 〉 (043) 644–7951 〈 휴대폰 〉 010–4161–7951 〈 주 소 〉 제천시 장락로 62, 105동 1101호 (장락동, 장락e–편한세상)
 장 병 학 (1946. 6.17)	**교육의원 제4선거구** (교육의원)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음성 삼성초교, 수봉초교 교감, 충북 · 음성교육청 장학사 – 진천 삼수초교, 백곡초교, 청주 풍광초교 교장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청천학생야영장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름다운학교운동충북본부공동대표, 충북교육박람회조직위원회상임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자 택 〉 (043)260–0084 〈 휴대폰 〉 010–5498–6800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108번길 44, 107동 1002호 (봉명동, 현대아이파크)
 박 한 규 (1956. 1.18)	**제천시 제2선거구** (민주당) – 2010.12.23. 사퇴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대원대학 재학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 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 · 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 · 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자 택 〉 (043)643–0970 〈 휴대폰 〉 010–3466–0970 〈 주 소 〉 제천시 장락동 장락주공4단지A 402–71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2010년 7월 7일)

본회의 개회

의장 • 상임위원장단 회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정책복지위원회 강화도 선진복지시설「우리마을」견학(2011년 6월 17일)

정책복지위원회 충주의료원 신축현장 현지확인(2011년 11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지원조례제정 공청회(2011년 4월 20일)

행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 현지방문(2012년 5월 10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산업경제위원회 옥천 향수한우판매타운 현지방문(2012년 4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충주 장안농장 현지방문(2012년 5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영동황간물류단지조성사업 현지확인(2012년 3월 6일)

건설소방위원회 문의대전간도로공사 현지확인(2012년 5월 17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교육위원회 충주수회초등학교 방문(2011년 3월 15일)

교육위원회 작은학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공청회(2012년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2011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2011년 5월 18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충청북도의회 공청회(2011년 3월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 반대, 의원 결의대회(2011년 4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연찬회(2011년 4월 21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300회 개회 기념(2011년 5월 11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302회 정례회 남부권 본회의 – 옥천(2011년 7월 22일)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대표단 방문(2011년 9월 24일)

중국 흑룡강성우호교류협력합의서체결10주년 비망록 조인식(2011년 11월 2일)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 촉구대회(2012년 3월 7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국 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2012년 3월 21일)

외국인 근로자 도정질문 방청(2012년 5월 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 대표단 방문(2012년 5월 17일)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의정체험(2012년 5월 29일)

목 차

제1장 의 회 개 관 ····· 9

제1절 제 도 개 괄 ····· 11

1. 시대적 배경 ····· 11

2. 제도개괄 ····· 11

제2절 의 원 선 거 ····· 13

1. 후보자 등록상황 ····· 13

2. 등록 후보자와 당선자 현황 ····· 16

3. 투표 상황 ····· 23

제3절 일 반 현 황 ····· 26

1. 의회연혁 ····· 26

2. 의회기구 ····· 27

3. 의회구성 ····· 28

제4절 의 회 사 무 처 ····· 35

1. 기구 및 정원 ····· 35

2. 부서별 기능 ····· 36

3. 청사현황 ····· 39

4. 의회사무처 간부 명단 ····· 41

제2장 의 정 활 동 ····· 43

제1절 제291회 임시회 ····· 45

1. 집회공고 및 개회 ····· 45

2. 본회의 활동 ····· 45
3. 위원회 활동 ····· 46

제2절 제292회 임시회 ····· 47

1. 집회공고 및 개회 ····· 47
2. 본회의 활동 ····· 47
3. 위원회 활동 ····· 48

제3절 제293회 임시회 ····· 56

1. 집회공고 및 개회 ····· 56
2. 본회의 활동 ····· 56
3. 위원회 활동 ····· 57

제4절 제294회 정례회 ····· 61

1. 집회공고 및 개회 ····· 61
2. 본회의 활동 ····· 61
3. 위원회 활동 ····· 63

제5절 제295회 임시회 ····· 71

1. 집회공고 및 개회 ····· 71
2. 본회의 활동 ····· 71
3. 위원회 활동 ····· 73

제6절 제296회 정례회 ····· 87

1. 집회공고 및 개회 ····· 87
2. 본회의 활동 ····· 87
3. 위원회 활동 ····· 90

제7절 제297회 임시회 ····· 128

1. 집회공고 및 개회 ····· 128

2. 본회의 활동 ····· 128
3. 위원회 활동 ····· 130

제8절 제298회 임시회 ····· 150

1. 집회공고 및 개회 ····· 150
2. 본회의 활동 ····· 150
3. 위원회 활동 ····· 152

제9절 제299회 임시회 ····· 167

1. 집회공고 및 개회 ····· 167
2. 본회의 활동 ····· 167
3. 위원회 활동 ····· 168

제10절 제300회 임시회 ····· 179

1. 집회공고 및 개회 ····· 179
2. 본회의 활동 ····· 179
3. 위원회 활동 ····· 181

제11절 제301회 임시회 ····· 191

1. 집회공고 및 개회 ····· 191
2. 본회의 활동 ····· 191
3. 위원회 활동 ····· 193

제12절 제302회 정례회 ····· 208

1. 집회공고 및 개회 ····· 208
2. 본회의 활동 ····· 208
3. 위원회 활동 ····· 210

제13절 제303회 임시회 ····· 223

1. 집회공고 및 개회 ····· 223

2. 본회의 활동 ····· 223
3. 위원회 활동 ····· 225

제14절 제304회 임시회 ····· 240
1. 집회공고 및 개회 ····· 240
2. 본회의 활동 ····· 240
3. 위원회 활동 ····· 242

제15절 제305회 정례회 ····· 251
1. 집회공고 및 개회 ····· 251
2. 본회의 활동 ····· 251
3. 위원회 활동 ····· 253

제16절 제306회 임시회 ····· 283
1. 집회공고 및 개회 ····· 283
2. 본회의 활동 ····· 283
3. 위원회 활동 ····· 284

제17절 제307회 임시회 ····· 289
1. 집회공고 및 개회 ····· 289
2. 본회의 활동 ····· 289
3. 위원회 활동 ····· 291

제18절 제308회 임시회 ····· 303
1. 집회공고 및 개회 ····· 303
2. 본회의 활동 ····· 303
3. 위원회 활동 ····· 305

제19절 제309회 임시회 ····· 320
1. 집회공고 및 개회 ····· 320

2. 본회의 활동 ····· 320
3. 위원회 활동 ····· 321

제20절 제310회 임시회 ····· 322
1. 집회공고 및 개회 ····· 322
2. 본회의 활동 ····· 322
3. 위원회 활동 ····· 323

제21절 제311회 임시회 ····· 333
1. 집회공고 및 개회 ····· 333
2. 본회의 활동 ····· 333
3. 위원회 활동 ····· 335

제3장 도 정 질 문 ····· 359

제1절 제295회 임시회(2010.10.) ····· 361
·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 ····· 361
·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 362
· 교 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 363
·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 ····· 368
·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 ····· 369

제2절 제296회 정례회(2010.12.) ····· 371
· 산업경제위원회 정 헌 의원 ····· 371
·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 372
·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 ····· 373

제3절 제297회 임시회(2011. 1.) ····· 374
·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 ····· 374

제4절 제298회 임시회(2011. 3.) ····· 375
·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 375
·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 ····· 376
제5절 제299회 임시회(2011. 4.) ····· 378
·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 ····· 378
· 교 육위원회 최미애 의원 ····· 379
·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 383
제6절 제300회 임시회(2011. 5.) ····· 386
·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 386
· 교 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 387
제7절 제301회 임시회(2011. 6.) ····· 394
·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 ····· 394
·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 ····· 397
· 산업경제위원회 정 헌 의원 ····· 399
·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 ····· 400
제8절 제303회 임시회(2011. 9.) ····· 404
·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 ····· 404
제9절 제304회 임시회(2011.10.) ····· 406
·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 ····· 406
·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 406
제10절 제305회 정례회(2011.11.) ····· 409
·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 409
제11절 제307회 임시회(2012. 3.) ····· 410
·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 410

·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 ····· 411
제12절 제308회 임시회(2012. 4.) ····· 414
·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 ····· 414
제13절 제310회 임시회(2012. 5.) ····· 417
· 교 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 417
제14절 제311회 임시회(2012. 6.) ····· 420
·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 ····· 420
·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 ····· 421
· 정책복지위원회 강현삼 의원 ····· 422
·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 424
제4장 예산·결산안처리 ····· 427
제1절 2011~2012 예산심의 ····· 430
제2절 2009~2010 예산결산 ····· 433
제5장 행정사무감사 ····· 437
제1절 행정사무감사 개요 ····· 439
제2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440
제3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481
제6장 청원 및 진정처리 ····· 537
제1절 청 원 ····· 539
제2절 진 정 ····· 540

제7장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 551

제1절 운영 개요 ····· 553

제2절 활동 내용 ····· 554

부 록 ····· 559

Ⅰ. 역대 도의원 명단 ····· 561

Ⅱ. 의회일지 ····· 570

Ⅲ. 의정통계 및 자료 ····· 623

1. 회기운영 ····· 623

2. 의안처리 현황 ····· 624

3. 대집행부질문 현황 ····· 625

4. 행정사무감사 지적현황 ····· 628

5. 연도별 방청현황 ····· 629

6.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현황 ····· 629

7.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현황 ····· 630

8. 의원 연구활동 및 의정학술 연구용역 ····· 632

9. 전체의원 연찬활동 ····· 633

10. 위원회별 연찬활동 ····· 634

11. 5분 자유발언 현황 ····· 637

12.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지원실적 ····· 641

제1장 의회개관

제 1 절 제 도 개 괄
제 2 절 의 원 선 거
제 3 절 일 반 현 황
제 4 절 의회사무처

제1절 제 도 개 괄

1. 시대적 배경

제9대 도의회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35명의 도의원으로(교육의원 포함) 출범하였다. 교육위원회가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기도 하다. 제9대 도의회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미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당초대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능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정부의 국립암센터 분원 설치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제도 개괄

지난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진 선거였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평가를 이슈로 만들고자 했으나 여당은 지방선거의 고유영역을 강조하며 지역개발 등 지역차원의 이슈에 대응하였다.

제5회 지방선거는 기존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외에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투표권이 추가되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1인 8표제를 행사하였다. 동시선거제도는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선거비용 및 정치비용의 절감과 투표율의 향상가능성,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집권주체에 대한 중간평가 기회의 결여, 후광효과와 일괄 투표로 인한 상위 공직후보에 대한 편승 현상, 선거하위 기관 선출공직자의 자율성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는 4장으로 나뉘어 사용되었다. 1차 투표 용지에는 교육감(하얀색)과 교육의원(연두색), 광역자치

단체의원(하늘색), 기초자치단체의원(계란색)을 기표하며, 2차 투표 용지에는 광역자치단체장(하얀색)과 기초자치단체장(연두색), 광역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하늘색), 기초자치단체의원 비례대표(계란색)를 기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을 선출하지 않아 지방선거에서 총 5개의 선거가 치러지므로 유권자는 1인 5표를 행사하였다.

2010년 선거의 선거구제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서로 다르다.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이며, 기초의회의 경우는 단기비이양식 중선거구제와 정당비례대표제의 병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비중이 작아서 지역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제2절 의 원 선 거

1. 후보자 등록상황

1) 등록 후보자수

2010년 선거에서는 11개 정당, 교육의원, 무소속을 합쳐 총 95명의 지역구 후보들이 등록하였으며,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등록하여 총 등록 후보자 수는 109명 이었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보자 등록 및 경쟁률 현황

선 거 명	정수	등록 후보자수			경쟁률
		등록	사퇴/사망/ 등록무효	최종	
계	35	110	1	109	3.1:1
지역구	28	83	1	82	2.9:1
비례대표	3	14	-	14	4.7:1
교육의원	4	13	-	13	3.3:1

2) 정당별 등록 현황

2010년 선거에서는 정당별 총 109명의 후보들이 등록하였으며, 한나라당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24명, 자유선진당 11명, 민주노동당 4명, 진보신당 1명, 건국당 1명, 국민참여당 3명, 국제녹색당 1명, 미래연합 4명, 무소속 16명, 교육의원 13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총 82명의 지역구 후보들이 등록을 하였으며, 14명의 비례대표 후보, 교육의원 13명 후보들이 등록하여 총 등록 후보자는 109명이었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보자 정당별 등록 현황

선거별	선거구수	정당별 후보자수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건국당	국민참여당	국제녹색당	미래연합	사회당	무소속	교육의원
계	31	109	31	24	11	4	-	1	1	3	1	4	-	16	13
지역구	28	95	28	22	9	2	-	-	-	1	-	4	-	16	13
비례대표	3	14	3	2	2	2	-	1	1	2	1	-	-	-	-

3) 학력별 등록 현황

2010년 선거에서 학력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대졸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 29명, 고졸 12명, 전문대졸 8명, 대재 8명, 대학원수료 4명, 고퇴 3명, 대학원재 3명, 전문대재 1명으로 나타났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보자 학력별 등록 현황

선거별	후보자수	학력별 후보자수								
		고퇴	고졸	전문대재	전문대졸	대재	대졸	대학원재	대학원수료	대학원졸
계	109	3	12	1	8	8	41	3	4	29
지역구	82	3	12	1	7	6	30	2	1	20
비례대표	14	-	-	-	1	2	6	1	-	4
교육의원	13	-	-	-	-	-	5	-	3	5

4) 성별·연령별 후보자 현황

성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96명이었으며, 여성이 1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50대가 44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 32명, 60대 23명, 30대 7명, 70대 3명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성비의 구성을 살펴볼 때 남자가 109명 중 96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13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역구의 경우에는 전체 82명 중 여성은 4명만이 등록하였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후보자 성별·연령별 등록 현황

선 거 별	후보자수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이상
계	109	96	13	7	32	44	23	3
지역구	82	78	4	4	26	38	12	2
비례대표	14	5	9	3	5	5	1	-
교육의원	13	13	-	-	1	1	10	1

5) 직업별 후보자 현황

직업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34명, 농·축산업 17명, 상업 9명의 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구를 살펴볼 때 정치인 31명, 기타 21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례대표는 정치인 4명, 기타 3명, 상업 2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의원은 정치인 1명, 교육자 1명, 농·축산업 1명, 기타 10명의 순이었다.

9대 충청북도의회 후보자 직업별등록 현황

선 거 별	후보자수	연 령 별							
		정치인	농 · 축산업	상업	건설업	약사 · 의사	회사원	교육자	기타
계	109	36	17	9	5	1	2	5	34
지역구	82	31	15	7	4	-	1	3	21
비례대표	14	4	1	2	1	1	1	1	3
교육의원	13	1	1	-	-	-	-	1	10

2. 등록 후보자와 당선자 현황

구체적인 등록 후보자의 신상과 당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제9대 충청북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소속정당명	순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직업	학력	경력	비고
한나라당	1	김양희	여	'55/03/15 (55)	정당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졸업(이학박사)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장	당선
	2	장순경	남	'56/01/01 (54)	기업인	충북대학교 경영법무학 석사과정 졸업	· 현)㈜영광기업 대표이사 · 현)대한설비건설협회 충북회장	
	3	이유자	여	'70/05/23 (40)	건설업	충청대학 토목과 재학	· 사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하나봉사대 총무	
민주당	1	정지숙	여	'47/01/19 (63)	정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중	· 민주당충청북도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여성복지 과장	당선
	2	노광기	남	'57/07/07 (52)	정당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 현)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사 · 현)전국어린이집회장	당선
자유선진당	1	이재숙	여	'63/03/14 (47)	보육시설장	현도사회복지대학원 졸업	· 현)민간어린이집 시설장	
	2	이현승	남	'53/10/17 (56)	사회복지사	현도사회복지대학원 졸업	· 국민화합운동연합충북부의장 · 현)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사무국장	
민주노동당	1	이소영	여	'70/03/25 (40)	회사원(노동조합 위원장)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 학습지노동조합 위원장 · 현)충북지역 지역노조위원장	
	2	황중환	남	'74/06/17 (35)	농업	한국농업전문학교 (현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졸업)	· 현)충북도연맹 옥천군농민회연사부장 · 현)민주노동당 옥천군 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1	이향숙	여	'70/04/04 (40)	간호사(보건의료)	충주대학교 간호과 졸업	· 충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지부장 · 의료연대충북지부 지부장	

소 속 정당명	순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비고
국민 참여당	1	갈바드 라크체 체그수렌	여	'73/05/07 (37)	강사	노동 공훈 붉은 기발 훈장의 사범대학 몽골어문학전문과 4년 졸업	· 현)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몽골어통역사 · 현)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강사	
미래 연합	1	천문자	여	'61/06/27 (48)	자영업	대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졸업	· 충북참사랑상담원원장	
	2	권오성	남	'54/11/11 (55)	정당인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졸업	· 청주문화방송프로듀서	
사회당	1	이윤정	여	'72/12/04 (37)	의사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졸업	· 현)서울우리의원원장	

2)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제9대 충청북도의회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선거 구명	기호	소속 정당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비고
청주시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박종규	남	'47/06/20 (62)	정당인	청주대학교 문학부 사회교육과 졸업	· 신흥고등학교 교사 · 제8대청주시의회의원	10,188 (28.69)	
	2	민주당	김광수	남	'46/05/22 (64)	충청북도 의회의원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시 상당구청장 · 현)충청북도의회의원	15,236 (42.90)	당선
	3	자유 선진당	김현문	남	'59/02/02 (51)	자원재활용 상사 전문	청주대학교 산업경영 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 청주시의회 5,6,7대 의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 협의회장	8,846 (24.91)	
	7	미래연합	허순혁	남	'39/05/07 (71)	정당인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석사 졸업	· 속리중학교 교장 ·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수석부 회장	1,244 (3.50)	
청주시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박한석	남	'72/03/01 (38)	㈜삼영가스 부사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 현)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 현)충청북도야구협회 회장	13,260 (42.83)	
	2	민주당	김형근	남	'60/01/26 (50)	자영업 (비전라이 드텍 대표)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졸업	· 노무현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자문위원 · 현)민주당충북도당 부위원장	17,701 (57.17)	당선
청주시 제3 선거구	1	한나라당	최진현	남	'71/09/07 (38)	정당인	건국대학교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2년 수료	· 청주시의회정경제위원장 · 국회의원 이혜훈 비서관	12,683 (39.86)	
	2	민주당	장선배	남	'62/05/21 (48)	정당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 대학원 사회복지학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 충청일보 정치부 기자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출입) · 김종률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제17,18대)	19,135 (60.14)	당선

선거구명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청주시 제4 선거구	1	한나라당	신규식	남	'62/06/05 (47)	한국상사 대표	청주사범대학 (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 서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12,516 (41.56)	
	2	민주당	최진섭	남	'51/07/13 (58)	정당인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 청주시의회사무국장	17,597 (58.44)	당선
청주시 제5 선거구	1	한나라당	박종룡	남	'59/10/14 (50)	정당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10,786 (40.62)	
	2	민주당	이광희	남	'63/10/09 (46)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과정 2년 재학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15,767 (59.38)	당선
청주시 제6 선거구	1	한나라당	김법기	남	'67/10/18 (42)	충청북도 의회의원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 박근혜 국회의원 특보 · 윤경식 국회의원 보좌관	7,921 (34.03)	
	2	민주당	김영주	남	'73/12/20 (36)	정당인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 전공졸업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실장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12,521 (53.79)	당선
	7	무소속	김경태	남	'61/03/03 (49)	사회기관 단체인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청주시의회의원 · 친일재산환수 시민위원장	2,836 (12.18)	
청주시 제7 선거구	1	한나라당	남동우	남	'56/06/02 (53)	정당인	청주대학교 행정도시지적학부 졸업	· 제8대 청주시의회의장 · 서원초등학교 총동문회장	8,135 (35.84)	
	2	민주당	임헌경	남	'66/10/20 (43)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민주당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청주지역세무사회장	14,563 (64.15)	당선
청주시 제8 선거구	1	한나라당	강태원	남	'68/04/18 (42)	충청북도 의회의원	충북대학교대학원 행정학박사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실장 · 한국부패학회 총무이사	9,113 (31.12)	
	2	민주당	박종성	남	'59/01/04 (50세)	정당인	세광고등학교 졸업	· 제7대 청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8대 청주시의회의장	17,011 (58.09)	당선
	7	미래연합	남기예	여	'51/11/09 (58)	대학강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충북새마을부녀회 도회장 · 한나라당 여성정책분과위원장	3,159 (10.78)	
청주시 제9 선거구	1	한나라당	정윤숙	여	'56/09/23 (53)	충청북도 의회의원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 한국 여성경제인연합회 충북지역 초대회장	7,437 (29.46)	
	2	민주당	최미애	여	'50/09/26 (59)	충청북도 의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년 재학	· 충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12,250 (48.53)	당선
	7	미래연합	장기명	남	'55/07/09 (54)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청주시의회의원(제5,6,7대)	4,097 (16.23)	
	8	무소속	김우택	남	'64/09/05 (45)	자영업	충북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 졸업	· 상업(영일컴퓨터)	1,455 (5.76)	
충주시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김영대	남	'65/04/02 (45)	충주대 외래교수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청주대학교 강사 ·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13,797 (43.60)	
	2	민주당	김동환	남	'51/02/10 (59)	농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 중원군청 기획실장	17,847 (56.39)	당선
충주시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이언구	남	'55/02/28 (55)	충청북도의회의원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청북도의회건설문화위원장 · 한나라당 상임 전국위원	12,976 (42.94)	
	2	민주당	윤성옥	남	'47/07/12 (62)	정당인	충북대학교졸업	· 충주고등학교 교사 · 기능장애인협회사업본부장	14,116 (46.72)	당선
	7	무소속	지덕기	남	'52/02/05 (58)	미기재	충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	·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 지회장 · 제5대 충주시의회의원	3,120 (10.32)	

선거구명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충주시 제3 선거구	1	한나라당	임순묵	남	'57/09/18 (52)	정당인	충주실업고등학교 (현충주농업고등학교)졸업	· 12대 국회의원 이택희 비서 · 현)한나라당 충주당협 사무국장	10,146 (34.26)	
	2	민주당	심기보	남	'61/06/15 (48)	정당인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평민신문 기자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 지구당 사무국장	12,082 (40.79)	당선
	7	무소속	심홍섭	남	'62/04/14 (48)	충청북도 의회의원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졸업	· 충청북도의회 6,7,8대 의원 · 현)충주시 생활체육회장	7,389 (24.95)	
제천시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이종호	남	'54/10/29 (55)	정당인	대원대학교 세무경영과 졸업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현)제8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16,337 (44.91)	
	2	민주당	권기수	남	'47/02/06 (63)	정당인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20,039 (55.09)	당선
제천시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강현삼	남	'58/12/15 (51)	종합상사 운영	울산공업전문대 (현 울산과학대학) 화학공업과 졸업	· 제5대 제천시의회 의장 · 현)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10,744 (42.56)	
	2	민주당	박한규	남	'56/01/18 (54)	상업	대원대학 사회복지과 재학중	· 민주당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0,852 (42.98)	당선
	7	무소속	김문천	남	'54/09/07 (55)	자영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제7대 충청북도의회의원 · 새마을운동 제천시지회장	3,651 (14.46)	
단양군 선거구	1	한나라당	엄재창	남	'58/12/10 (51)	정당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 단양군 현안사업체육계장 · 단양군 의회의장	5,965 (32.65)	
	2	민주당	김희수	남	'50/10/14 (59)	농업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단양군 대강면장	6,069 (33.20)	당선
	3	자 유 선진당	이범윤	남	'39/05/12 (71)	충청북도 의회의원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충청북도의회 부의장	2,894 (15.83)	
	7	미래연합	천동춘	남	'62/04/04 (48)	정당인	충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졸업	· 미래연합 충북도당 민생경제 특별대책위원장 · 현)청주한빛재가요양기관 이사	3,352 (18.34)	
청원군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한창동	남	'56/02/26 (54)	충청북도 의회의원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현)충청북도의회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11,437 (33.23)	
	2	민주당	박문희	남	'53/08/26 (56)	건설 서비스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현)민주당 민생경제 특별위원장 · 현)신라오능보존회 박씨종친회 청원군사무국장	15,472 (44.96)	당선
	3	자 유 선진당	송정화	남	'53/06/07 (56)	농업	청주대학교 법학부 졸업	· 오송농협 조합장 · 현)부원장	5,118 (14.87)	
	7	국 민 참여당	김학래	남	'66/03/25 (44)	농업	서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김진영 국회의원 비서관 · 현)청원,청주통합추진상임위원장	2,386 (6.93)	
청원군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윤철규	남	'56/04/10 (54)	영동대학교 전임강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 교육연구사 · 현)영동대학교 전임강사	11,172 (36.60)	
	5	민 주 노동당	김도경	남	'60/12/17 (49)	농업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 현)청원군농민회 회장 · 현)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16,934 (55.48)	당선
	7	무소속	박종갑	남	'59/03/30 (51)	농업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 (사)농업경영인연합회 청원군연합회 회장 · 현)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사퇴
	8	무소속	장윤석	남	'69/02/26 (41)	농업	서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청원 청주통합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인권위원장	2,415 (7.91)	

선거구명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영동군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임현	남	'44/01/08 (66)	정당인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장 · 현)제8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7,668 (51.17)	당선
	3	자유선진당	장인학	남	'48/12/05 (61)	농업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 농업기술센터 소장 · 현)영동문화원 부원장	7,317 (48.83)	
영동군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박우양	남	'50/09/27 (59)	농업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영동타임지 운영회장 겸 논설위원 · 현)충청대학 겸임교수	4,802 (37.79)	
	3	자유선진당	손문규	남	'46/12/13 (63)	농업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황간농협협동조합 전무 · 현)영동군무공수훈자회 자문위원	7,905 (62.21)	당선
보은군 선거구	1	한나라당	김태훈	남	'61/12/09 (48)	공인중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보은로타리클럽 회장 · 현)미래기상연구소 소장	8,919 (42.66)	
	3	자유선진당	유완백	남	'47/03/19 (63)	정당인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마로면장	9,775 (46.75)	당선
	7	무소속	황경선	여	'59/08/27 (50)	자영업 (봉황사슴농장,정일품탕제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평화통일자문위원 12, 13, 14기 위원 · 현)환경운동연합 보은군 사무국장	2,213 (10.58)	
옥천군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이규완	남	'53/01/19 (57)	충청북도 의회의원	대전실업초급대학 경영과 수료 (현 우송정보대학)	· 옥천군 기업인 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의원	6,730 (44.35)	
	3	자유선진당	김재종	남	'55/02/21 (55)	명가웨딩홀 대표	대전농업고등전문학교 축산과 졸업 (현 우송대학교)	· 현)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 · 현)명가웨딩홀 대표	8,445 (55.65)	당선
옥천군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박영웅	남	'61/10/07 (48)	정당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졸업 (도시계획학 석사)	· 도의원	4,678 (33.06)	
	3	자유선진당	황규철	남	'66/08/28 (43)	옥천군생활체육회장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졸업	· 현)옥천군생활체육회장 · 현)옥천군새마을지회이사	8,058 (56.94)	당선
	7	무소속	김진구	남	'51/07/01 (47)	옥천가정폭력상담소 대표	대전대학교 철학과 졸업	· 현)산수원애국산악회 사무장	1,416 (10.01)	
음성군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한동완	남	'58/01/05 (52	정당인	충원고등학교 3년 제적	· 현)충북지체장애인협회후원회장 · 현)한나라당 충북도당부위원장	3,639 (24.12)	
	2	민주당	최병윤	남	'61/03/15 (49)	㈜석진산업 대표이사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현)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현)음성문화원장	7,365 (48.81)	당선
	5	민주노동당	김종현	남	'79/10/09 (30)	일성농원 경영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 음성학교급식연대 집행위원	2,208 (14.63)	
	7	무소속	경명현	남	'51/02/08 (59)	농업	육군사관학교	· 바르게살기운동음성군협의회장 ·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음성지구협의회장	1,876 (12.43)	
음성군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정지태	남	'60/05/28 (50)	농업	건국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졸업	· 음성군민방위강사 · 제4, 5대 음성군의회의원	9,803 (40.90)	
	2	민주당	이광진	남	'62/06/06 (47)	정당인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금왕읍 체육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11,604 (48.41)	당선
	3	자유선진당	이정희	남	'67/10/28 (42)	농업	충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사)한국자유총연맹음성군지회 상임부지회장 ·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장	2,562 (10.69)	

선거구명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진천군 제1 선거구	1	한나라당	김종필	남	'63/12/19 (46)	브니엘환경(주) 대표이사	세광고등학교 졸업	· (사)청년회의소 사무총장 · 현)충북야구협회부회장	7,403 (47.06)	당선
	2	민주당	임영은	남	'64/03/21 (46)	정당인	주성대학 관광과 졸업	· 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농다리지킴이회장	6,575 (41.80)	
	7	무소속	안상열	남	'47/07/03 (62)	무역업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체육학과 졸업	· 충주북여중교사 · 현)진천5일재래시장상인회 개발위원장	1,752 (11.14)	
진천군 제2 선거구	1	한나라당	송은섭	남	'40/09/16 (69)	충청북도 의회의원	광혜원고등학교 1학년 중퇴	· 현)충청북도의회의원 · 진천군의회의원	4,707 (36.94)	
	2	민주당	이수완	남	'61/02/03 (49)	축산업	청주대학교사회복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현)재난구조협회진천군지회장 · 현)징검다리진천군지회장	5,532 (43.42)	당선
	7	무소속	이양섭	남	'62/08/05 (47)	건설업	충북대학교지역건설공학과 3학년 재학	· 진천군푸드뱅크회장 · 충북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2000년)	2,502 (19.64)	
괴산군 선거구	1	한나라당	임회무	남	'39/01/15 (51)	행정사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현 충주대학교)	· 충청북도의회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사무처장	7,239 (34.25)	
	2	민주당	정헌	남	'56/02/19 (54)	축산업	괴산고등학교 졸업	· 괴산·증평축협조합장 · 괴산군농업경영인회장	7,555 (35.74)	당선
	7	무소속	박빈희	남	'52/04/06 (58)	농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	· 괴산군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1,656 (7.83)	
	8	무소속	안재인	남	'44/04/29 (66)	정치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 제4대 괴산군의회의원 · 제5대 괴산군의회의원	3,177 (15.03)	
	9	무소속	김진수	남	'65/02/25 (45)	충북일보 괴산지사장	충청실업전문대학행정과 졸업(현 충청대학)	· 괴산 JC회장(간사장) · 제4회 동시지방선거도의원입후보	1,509 (7.14)	
증평군 선거구	1	한나라당	김봉회	남	'50/01/25 (60)	축산업	충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증평농협조합장 3선 · 대한적십자증평군지구협의회장	5,755 (35.45)	당선
	2	민주당	이현재	남	'57/02/19 (53)	정당인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청주문화방송 보도부장 · 청주문화방송 경영국장	5,193 (31.99)	
	7	무소속	연기복	남	'53/12/28 (56)	기성상사 대표	성균관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졸업	· 현)바르게살기운동 증평군협의회 이사 · 현)증평군청소년위원회 수석 부회장	1,591 (9.80)	
	8	무소속	한현태	남	'58/09/25 (51)	주성씨앤텍 대표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제6대 충북도의회의원 ·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3,696 (22.77)	

교육의원선거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득표율)	비고
충청북도 제1선거구	하재성	남	'47/08/08 (62)	무직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교육학석사)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85,072 (50.49)	당선
	홍성범	남	'47/03/24 (63)	무직	청주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대소중학교 교장 · 청운중학교 교장	83,420 (49.50)	
충청북도 제2선거구	강호천	남	'47/11/07 (62)	무직	청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 충주여자중학교장 · 청주여자고등학교장	59,433 (38.93)	
	박상필	남	'47/01/20 (63)	무직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강서초·남평초 교장	62,666 (41.04)	당선
	박종대	남	'55/05/20 (55)	농업	충북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교감 ·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21,836 (14.30)	
	장형원	남	'60/12/15 (49)	무직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충청북도 청원교육청 근무 · 충북도청 근무	8,730 (5.71)	
충청북도 제3선거구	전응천	남	'47/02/25 (63)	무직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교육학 석사)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세명대학교교양학부 강사	68,744 (41.35)	당선
	김문배	남	'47/01/21 (63)	무직	청주교육대학 졸업	· 충청북도 교육지원 심의위원 · 남산초등학교 교장	60,228 (36.23)	
	고동희	남	'49/02/07 (61)	무직	청주교육대학 졸업	· 충주중앙초등학교 교장 · 충주시초등교장협의회장	37,260 (22.41)	
충청북도 제4선거구	장병학	남	'46/06/17 (63)	문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삼수초등학교 교장	58,957 (35.61)	당선
	서수웅	남	'45/04/20 (65)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교장 · 현)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48,031 (29.01)	
	권혁풍	남	'39/08/20 (70)	무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지구 총재 역임	28,407 (17.15)	
	김윤기	남	'46/12/07 (63)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충청북도청원교육청 교육장 · 충청북도음성교육청 교육과장	30,152 (18.21)	

3. 투표 상황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투표율은 58.8%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보은군이 74.1%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곳은 청주시 흥덕구로 53.8%의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선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선거 투표 상황

구분		선거인수(부재자)	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합계		1,183,811(32,241)	696,393(2,8980)	487,418(3,261)	58.8
도의원	청주시 상당구	182,613(4,696)	100,216(4,257)	82,397(439)	54.9
	청주시 흥덕구	296,977(7,074)	159,875(6,393)	137,102(681)	53.8
	충주시	161,522(4,373)	94,688(3,873)	66,834(500)	58.6
	제천시	107,034(2,777)	63,341(2,481)	43,693(296)	59.2
	단양군	26,512(854)	18,918(778)	7,594(76)	71.4
	청원군	117,270(2,911)	69,613(2,627)	47,657(284)	59.4
	영동군	41,711(1,499)	28,879(1,333)	12,832(166)	69.2
	보은군	29,345(1,179)	21,759(1,096)	7,586(83)	74.1
	옥천군	44,298(1,696)	30,568(1,518)	13,730(178)	69
	음성군	70,936(2,107)	40,234(1,865)	30,702(242)	56.7
	진천군	48,180(1,177)	29,291(1,065)	18,889(112)	60.8
	괴산군	31,877(1,238)	22,357(1,086)	9,520(152)	70.1
	증평군	25,536(660)	16,654(608)	8,882(52)	65.2
합계		1,183,811(32,241)	696,454(28,965)	487,357	58.8
교육의원	청주시상당구	182,613(4,696)	100,225(4,251)	82,388	54.8
	영동군	41,711(1,499)	28,877(1,332)	12,834	69.2
	보은군	29,345(1,179)	21,758(1,097)	7,587	74.1
	옥천군	44,298(1,696)	30,574(1,517)	13,724	69.0
	청주시흥덕구	296,977(7,074)	159,885(6,390)	137,092	53.8
	충주시	161,522(4,373)	94,693(3,872)	66,829	58.6
	제천시	107,034(2,777)	63,354(2,482)	43,680	59.1
	단양군	26,512(854)	18,913(779)	7,599	71.3
	청원군	117,270(2,911)	69,628(2,625)	47,642	59.3
	음성군	70,936(2,107)	40,242(1,863)	30,694	56.7
	진천군	48,180(1,177)	29,298(1,065)	18,882	60.8
	괴산군	31,877(1,238)	22,350(1,084)	9,527	70.1
	증평군	25,536(660)	16,657(608)	8,879	65.2

주 : ( )안은 부재자신고인으로 본 수에 포함됨.

1) 비례대표도의원 선거

제9대 충청북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득표 상황

정당별 / 지역	합계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사회당
합 계	676,543	229,892 (34.0)	306,419 (45.3)	53,167 (7.9)	2,877 (4.2)	10,345 (1.5)	24,462 (3.6)	19,385 (2.9)	4,296 (0.6)
청주시 상당구	98,486	32,467	48,189	5,863	3,434	1,339	4,396	2,432	366
청주시 흥덕구	157,524	47,915	78,794	8,217	6,854	2,758	7,004	5,476	506
충주시	91,918	36,646	43,750	2,616	2,790	1,117	2,543	1,960	496
제천시	61,628	26,645	24,551	2,707	2,977	747	1,954	1,598	449
단양군	18,125	7,391	7,417	814	607	244	653	825	174
청원군	67,547	19,545	34,810	4,779	3,379	933	2,713	881	507
영동군	27,377	9,531	6,135	7,115	1,160	589	627	1,949	271
보은군	20,649	6,457	5,000	6,713	788	391	481	603	216
옥천군	29,199	9,151	6,358	10,005	1,203	498	976	711	297
음성군	38,842	13,168	19,677	1,805	1,946	494	1,047	404	301
진천군	28,305	80,526	13,919	848	1,900	441	896	1,951	294
괴산군	20,933	7,616	9,432	984	999	572	678	376	276
증평군	16,010	5,304	8,387	701	540	222	494	219	143

2) 지역구 도의원 선거

제9대 충청북도의회 지역구 도의원 선거 득표 상황

정당별 / 지역	합계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무소속
합 계	674,592	255,956 (37.9)	282,082 (41.8)	60,920 (9.0)	19,142 (2.8)	2,386 (0.4)	11,852 (1.8)	42,254 (6.3)
청주시 상당구	98,293	36,131	52,072	8,846	-	-	1,244	-
청주시 흥덕구	157,164	55,908	89,709	-	-	-	7,256	4,291
충주시	91,473	36,919	44,045	-	-	-	-	10,509
제천시	61,623	27,081	30,891	-	-	-	-	3,651
단양군	18,280	5,965	6,069	2,894	-	-	3,352	-
청원군	64,934	22,609	15,472	5,118	16,934	2,386	-	2,415
영동군	27,692	12,470	-	15,222	-	-	-	-
보은군	20,907	8,919	-	9,775	-	-	-	2,213
옥천군	29,327	11,408	-	16,503	-	-	-	1,416
음성군	39,057	13,442	18,969	2,562	2,208	-	-	1,876
진천군	28,471	12,110	12,107	-	-	-	-	4,254
괴산군	21,136	7,239	7,555	-	-	-	-	6,342
증평군	16,235	5,755	5,193	-	-	-	-	5,287

3) 당선자 현황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의회 당선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20석, 자유선진당이 4석, 한나라당이 3석, 민주노동당이 1석을 차지하였고, 교육의원 4명이 선출되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민주당이 2석, 한나라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제9대 충청북도의회는 총 35명의 의원이 확정되었다.

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정당별 당선 현황

정당별 / 선거별	합계	정 당 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교육의원
계	35	4	22	4	1	4
지 역 구	32	3	20	4	1	4
비례대표	3	1	2	-	-	-

제 3 절 일 반 현 황

1. 의회연혁

1952. 5. 10.	제1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8명 당선)
1952.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2. 5. 29.	충청북도의회 제1대 의장선임(최동선)
1956. 5. 29.	제1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56.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0명 당선)
1956. 9. 1.	제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56. 9. 1.	충청북도의회 제2대 의장선임(노의중)
1957. 8. 26.	충청북도의회 제3대 의장선임(노의중)
1958. 3. 6.	충청북도의회 제4대 의장선임(최동선)
1959. 1. 15.	충청북도의회 제5대 의장선임(이기호)
1960. 8. 13.	제2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60. 12. 12.	제3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6명 당선)
1960. 12. 20.	제3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60. 12. 21.	충청북도의회 제6대 의장선임(서병주)
1961. 5. 16.	제3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1. 6. 20.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38명 당선)
1991. 7. 8.	제4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1. 7. 8.	충청북도의회 제7대 의장선임(한현구)
1993. 7. 1.	충청북도의회 제8대 의장선임(조성훈)
1995. 6. 27.	제5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40명 당선)
1995. 6. 30.	제4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5. 7. 12.	제5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5. 7. 12.	충청북도의회 제9대 의장 선임(차주원)
1997. 1. 12.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의장 선임(김동진)
1998. 6. 4.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7명 당선)
1998. 6. 30.	제5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1998. 7. 9.	제6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998. 7. 9.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의장 선임(김준석)
2000. 7. 9.	충청북도의회 제12대 의장 선임(김진호)

2002. 6. 13.	제7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선거(27명 당선)
2002. 6. 30.	제6대 충청북도의회 폐원
2002. 7. 9.	제7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2002. 7. 9.	충청북도의회 제13대 의장 선임(유주열)
2003. 10. 9.	충청북도의회 제14대 의장 선임(권영관)
2004. 7. 9.	충청북도의회 제15대 의장 선임(권영관)
2006. 3. 23.	충청북도의회 제16대 의장 선임(장준호)
2006. 5. 31.	제8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31명 당선)
2006. 7. 4.	제8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2006. 7. 4.	충청북도의회 제17대 의장선임(오장세)
2008. 2. 1.	충청북도의회 제18대 의장선임(이기동)
2008. 7. 7.	충청북도의회 제19대 의장선임(이대원)
2010. 6. 2.	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35명 당선)
2010. 7. 7.	충청북도의회 제20대 의장선임(김형근)

2. 의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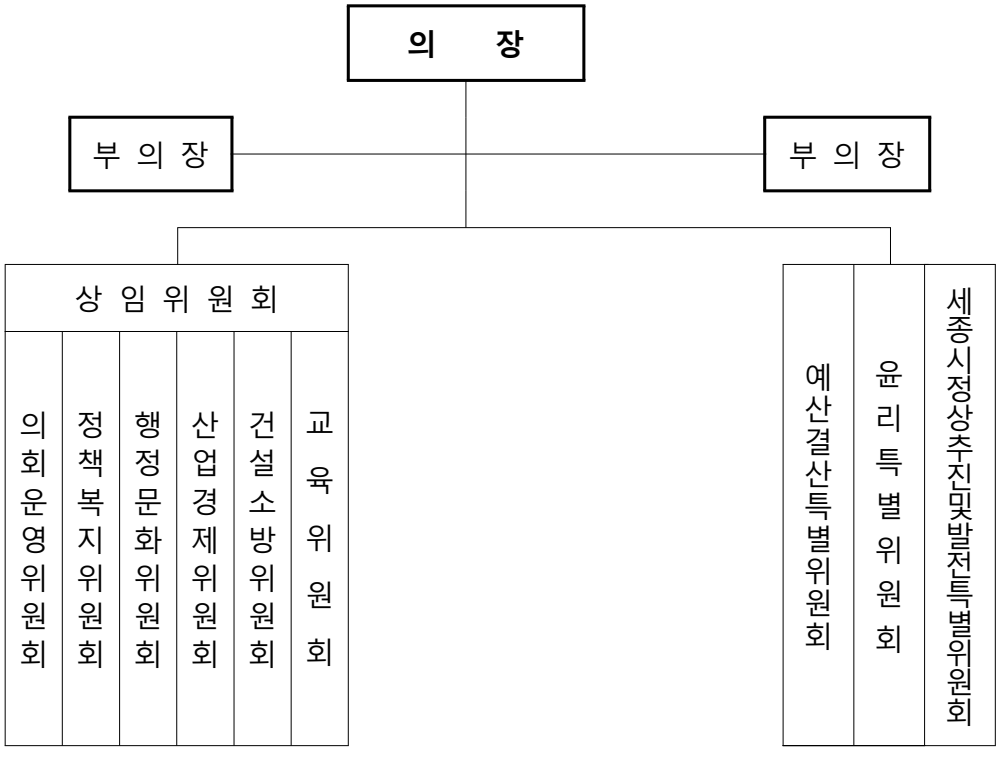

3. 의회구성

1) 의 원

제9대 충청북도의회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28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의원 28인과 비례대표 3인, 교육의원 4인 등 총 3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요도정을 심의 결정하는 등 법률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 제9대 도의회 의원임기 : 2010. 7. 7. ~ 2014. 6.30.

2) 의 장·부의장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위 원 회

가) 상임위원회

의회는 6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별 소관 집행기관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임명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교육의원은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임기종료까지 재임한다. 또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교육의원이 의장이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교육의원 4, 일반의원 3)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위원회 회의실 등 사무 공간 확보와 교육의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회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리모델링 사업과 교육전문위원실 사무직원 충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교육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10년 7월 9일자로 7명의 지원인력을 충원하였다.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현황

(단위 : 명)

총 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사무	속기
7	1	1	1	1	1	2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원 및 사무분장, 상임위원회 직제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5건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상임위원회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2. 교육사회위원회 8명	2. 정책복지위원회 7명이내
3. 행정소방위원회 7명	3. 행정문화위원회 7명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4. 산업경제위원회 7명이내
5. 건설문화위원회 8명	5. 건설소방위원회 7명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전문개정 2010.5.14 조례 제3261호)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위 원 회 별	위원 정수	소 관 부 서
의회운영위원회	10	○ 의회사무처 소관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복지위원회	7	○ 감사관실 소관 ○ 기획관리실 소관 ○ 보건복지국 소관 ○ 충북도립대학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 충북학사 운영 ○ 지방의료원 운영
행정문화위원회	7	○ 공보관 소관 ○ 여성정책관 소관 ○ 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 자치연수원 소관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
산업경제위원회	7	○ 경제통상국 소관 ○ 농정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 ○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
건설소방위원회	7	○ 균형건설국 소관 ○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 소방본부 소관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 ○ 충북개발공사 운영
교육위원회	7	○ 교육청(교육·학예) 소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개정2011.12.30 조례 제3419호)

< 제9대 전반기 의회 구성현황 >

○ 의　장 : 김형근(청주 제2)

○ 부의장 : 최진섭(청주 제4), 손문규(영동 제2)

위원회별 (정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10)	박문희 (산업경제)	김재종 (건설소방)	김도경(정책복지), 김동환(건설소방) 김영주(행정문화), 김양희(행정문화) 노광기(정책복지), 이광희(교　　육) 장병학(교　　육), 정　헌(산업경제)
정책복지위원회 (7)	심기보 (충주 제3)	박한규 (제천 제2) ↓ 노광기 (비례대표)	김광수(청주 제1), 김도경(청원 제2) 손문규(영동 제2), 장선배(청주 제3) ※ 강현삼(제천 제2) : 2011.5.11.선임
행정문화위원회 (7)	최병윤 (음성 제1)	김영주 (청주 제6)	김양희(비례대표), 박종성(청주 제8) 유완백(보 은 군), 정지숙(비례대표)
산업경제위원회 (7)	김봉회 (증평군)	정　헌 (괴산군)	김종필(진천 제1), 김희수(단 양 군) 박문희(청원 제1), 윤성옥(충주 제2) 황규철(옥천 제2)
건설소방위원회 (7)	권기수 (제천 제1)	김동환 (충주 제1)	김재종(옥천 제1), 이광진(음성 제2) 이수완(진천 제2), 임헌경(청주 제7) 임　현(영동 제1)
교 육 위 원 회 (7)	최미애 (청주 제9)	장병학 (교육의원 제4)	박상필(교육의원 제2), 이광희(청주 제5) 전응천(교육의원 제3), 최진섭(청주 제4) 하재성(교육의원 제1)

< 의원신분 변동사항 >

- 박한규 의원 : 2010.12.23. 사퇴
- 강현삼 의원 : 2011. 4.27. 재선거당선

나) 특별위원회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또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고
2010. 7.23 (2011. 6.30)	위원장 : 박종성 부위원장 : 김희수 위 원 : 김광수, 김도경 김종필, 유완백 윤성옥, 이광진 이광희, 임헌경 정지숙, 하재성 황규철	<2010. 7.23. 제292회 임시회> 1. 위원장선임의 건 2. 부위원장선임의 건 <2010. 9월, 제294회 정례회>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12월, 제296회 정례회>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영계획 수정안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 고
		5.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 5.18. 제300회 임시회>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 6.21. 제301회 임시회>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 7.11 (2012. 6.30)	위원장 : 이광희 부위원장 : 유완백 위 원 : 강현삼, 김도경, 김동환, 김영주, 노광기, 윤성옥, 이수완, 임 현, 장선배, 전응천, 정 헌	<2011. 7월, 제302회 정례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 9.28. 제303회 임시회>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1.12월, 제305회 정례회>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고
		6.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 5.15. 제310회 임시회>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2. 6.18. 제311회 임시회>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윤리특별위원회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고
2010. 9.16 (2012. 6.30)	위원장 : 박상필 부위원장 : 이수완 위 원 : 노광기, 유완백 임 현, 전응천 정 헌	<2010. 9.16. 제294회 정례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 성 일 (활동기한)	구 성 위 원	활 동 상 황	비고
2010. 9.16 (2012. 6.30)	위원장 : 김광수 부위원장 : 김영주 위 원 : 김동환, 김재종 박문희, 장병학 박한규 ※ 박한규 의원(2010.12.23. 사퇴)	<2010. 9.16. 제294회 정례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0.10.13. 제295회 임시회> 1.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2012. 6.22. 제311회 임시회> 1.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 4 절 의회사무처

1. 기구 및 정원

1)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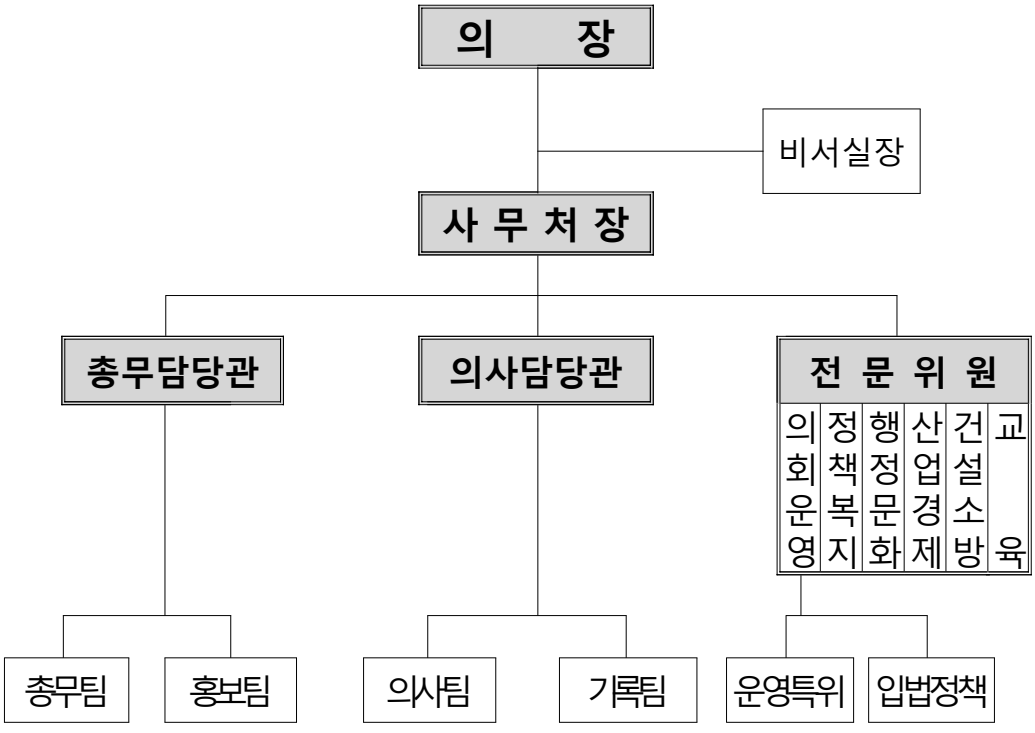

2)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기 타		
		소계	2-3급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가급	소계	6급	8급	소계	사무	기타	소계	시간제 계약직	무기 계약직
정원	72	46	1	7	9	29	2	2	2	1	1	20	14	6	2	-	2
현원	76	44	1	7	9	27	2	2	2	1	1	22	16	6	6	4	2

※ 교육청(교육위) : 7명(4급 1, 5급 1, 6급 1, 7급 1, 기능직 3)

2. 부서별 기능

○ 총무담당관실

분 장 사 무	비고
1. 의회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조정 및 사무개선 3.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 및 신분관리(신분증발급, 사직허가, 신분변동사항 통보 등) 5. 의전업무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6.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및 우호교류 협력추진 8. 의원공무국외여행 및 연수심의회 운영 9.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병역사항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12.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사(복무, 포상, 교육 등)관리 13.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 14. 기록물(문서·도서·대장·시청각물 등)관리 총괄 15. 의사당 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7.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의회 자료실 운영관리 20. 의회 회의실 사용조정 21. 의정백서·의회수첩 등 발간 22. 의회사무처소관 예산편성·집행·결산 총괄조정 23. 경리관 및 지출원 업무 24. 계약 및 용도사무 25. 직원 봉급 등 급여관리 26.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27.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28. 차량 및 물품 관리 2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30. 의정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홍보자료 발간 31. 의정소식지 발간 32. 의정활동 사진 촬영·보관 및 기자재 관리 33. 각종 연설문 작성 34. 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 운영 35. 음향, 방송시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36.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 37.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처내에 다른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의사담당관실

분 장 사 무	비고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5. 본회의장(의석배정 포함) 관리	
6. 각종 안건의 관리(접수, 분류, 인쇄, 회·배부, 이송 등)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업무 처리	
8.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도정질문, 서면질문 관련업무 처리	
10.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11.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보관관리	
12. 위원회 위원선임	
13. 전체의원 연찬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원의 타 기관·단체(위원회 포함)구성원 등 추천	
15.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6. 각종 회의상황 기록정리 및 보관	
17. 각종 회의록의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8. 속기사 및 기록장비의 운용관리	
1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	
20.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자료 및 웹서버 운용 관리	
21.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22. 의사당 회의 방청, 참관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실

분 장 사 무	비 고
1.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분석, 제공 및 법규의 조사·검토 3. 위원회 회부 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5. 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장 관리 6. 위원회 소관 예산 집행품의 및 물품관리 7. 위원회 소관 공인관리 8. 위원회 소관 통계자료 작성 9.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10. 위원회 소관 청원·진정의 처리지원 11. 위원회 소관 도정질문관련 업무지원 12.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업무 처리 13. 위원회 소관 장·단기 현안과제 연구, 조사 및 분석자료 제공 14.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15. 위원회 소속의원 연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소관 의원 행사 지원 및 일정관리 17.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소관 분장사무외에 각 전문위원소관의 일반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가.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나. 의원 연구활동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다. 전문위원실소관 분임경리관 업무 라.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조례·규칙안 등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바.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의정에 관한 장기·현안과제 조사·분석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지방의회운영관련 법규집 발간	

3. 청사현황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시설배치

층　별	시　설　명	면적(㎡)	비　고
총　계		3,867.1	
2 층	계	433.3	
	건설소방 전문위원실	60.8	
	위원회실	140.8	
	회의실	140.2	
	위원장실	43.46	
	차량대기실	48.0	
3 층	계	479.0	
	교육 전문위원실	61.6	
	위원회실	140.4	
	회의실	136.9	
	위원장실	46.7	
	여성의원휴게실	48.0	
	의회기자실	45.4	
4 층	계	396.4	
	행정문화 전문위원실	81.6	
	위원회실	120.0	
	회의실	98.4	
	위원장실	48.38	
	창고	48.0	

층 별	시 설 명	면적(㎡)	비 고
5 층	계	363.9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53.6	
	위원장실	52.0	
	회의실	96.0	
	특별위원회 회의실	104.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57.4	
6 층	계	1,298.9	
	본회의장	437.4	
	의원휴게실	111.2	
	의장실, 부의장실, 비서실	289.9	
	사무처장실	85.4	
	총무담당관실	121.5	
	의사담당관실	64.6	
	의사담당관실 (기록팀)	71.9	
	교육협력관실(교육청대기실)	74.0	
	의정전시관	43.0	
7 층	계	895.6	
	본회의장 방청석	138.7	
	의회 회의실	111.2	
	정책복지 전문위원실	61.9	
	위원회실	78.5	
	위원장실	36.3	
	회의실	113.9	
	산업경제 전문위원실	61.9	
	위원회실	78.5	
	위원장실	36.3	
	회의실	105.7	
	문서고	72.7	
동관 1층	의회자료실	84.3	

4. 의회사무처 간부 명단

(2012. 6.30. 현재)

직 위	직 급	성 명	기 간
사 무 처 장	**지 방 이 사 관**	**김 종 록**	2010. 1. 1. ~ 2010. 7. 7.
	지 방 이 사 관	**신 동 인**	2010. 7. 8. ~ 현 재
총 무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윤 영 창**	2010. 1. 1. ~ 2010.12.31.
	지 방 서 기 관	**김 호 기**	2011. 1.12. ~ 현 재
총 무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재 철	2009.11.13. ~ 2010.10.14.
	지방행정사무관	김 종 석	2010.10.15. ~ 2011.12.31.
	지방행정사무관	한 필 수	2012. 1. 5. ~ 현 재
홍 보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준 순	2009.11.13. ~ 2010. 8.12.
	지방행정사무관	김 종 석	2010. 8.13. ~ 2010.10.14.
	지방행정사무관	이 홍 신	2010.10.15. ~ 현 재
비 서 실 장	지방행정사무관	한 필 수	2008. 7. 2. ~ 2012. 1. 4.
	지방행정사무관	유 건 상	2012. 1. 5. ~ 현 재
의 사 담 당 관	**지 방 서 기 관**	**윤 충 노**	2010. 1. 1. ~ 2011. 1.11.
	지 방 서 기 관	**김 학 명**	2011. 1.12. ~ 2011.12.31.
	지 방 서 기 관	**이 학 재**	2012. 1. 1. ~ 현 재
의 사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종 석	2009. 1. 6. ~ 2010. 8.12.
	지방행정사무관	박 문 근	2010. 8.13. ~ 2012. 1. 4.
	지방행정사무관	방 천 수	2012. 1. 5. ~ 현 재
기 록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 상 돈	2010. 1. 6. ~ 현 재

직 위	직 급	성 명	기 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고 일 준**	2009. 7. 1. ~ 2010. 9.30.
	지 방 서 기 관	**조 병 옥**	2010.10.11. ~ 2011.10. 4.
	지 방 서 기 관	**정 헌 성**	2011.10. 5. ~ 현 재
운영특위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변 영 규	2009.11.13. ~ 2011. 7. 5.
	지방행정사무관	윤 상 기	2011. 7. 6. ~ 현 재
입법정책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박 문 근	2010. 1. 6. ~ 2010. 8.11.
	지방행정사무관	김 병 준	2010. 8.13. ~ 2011.12. 4.
	지방행정사무관	장 권	2011.12. 5. ~ 현 재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장 용 대**	2010. 1. 1. ~ 2010.12.31.
	지 방 서 기 관	**손 자 용**	2011. 1.12. ~ 2011.12.31.
	지 방 서 기 관	**연 병 호**	2012. 1. 1. ~ 현 재
행정문화전문위원	지방계약직"가"급	김 보 흠	2008. 1. 1. ~ 현 재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윤 양 한**	2009. 1. 1. ~ 2011. 6.30.
	지 방 서 기 관	**홍 범 희**	2011. 7. 1. ~ 현 재
정책복지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최 영 지	2010. 7. 1. ~ 2011. 5.30.
	지방행정사무관	남 기 운	2011. 5.31. ~ 현 재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민 병 완**	2008. 7. 1. ~ 2011. 6.30.
	지 방 서 기 관	**송 장 섭**	2011. 7. 1. ~ 현 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지방계약직 "가"급	유 지 영	2008. 1. 1. ~ 현 재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지방기술서기관**	**길 기 웅**	2010. 1. 1. ~ 2011. 1.11
	지방기술서기관	**나 시 찬**	2011. 1.17. ~ 2012. 4.17.
건설소방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	신 봉 순	2010. 1. 6. ~ 2011. 7. 5.
	지방시설사무관	김 명 회	2011. 7. 6. ~ 현 재
교육수석전문위원	**지 방 서 기 관**	**구 명 희**	2010. 7. 9. ~ 2010.12.31.
	지 방 서 기 관	**김 왕 년**	2011. 1. 1. ~ 현 재
교육전문위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이 윤 영	2010. 7. 9. ~ 2012. 4.30.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송 대 섭	2012. 5. 1. ~ 현 재

제2장 의정활동

제 1 절 제291회 임시회
제 2 절 제292회 임시회
제 3 절 제293회 임시회
제 4 절 제294회 정례회
제 5 절 제295회 임시회
제 6 절 제296회 정례회
제 7 절 제297회 임시회
제 8 절 제298회 임시회
제 9 절 제299회 임시회
제 10 절 제300회 임시회
제 11 절 제301회 임시회
제 12 절 제302회 정례회
제 13 절 제303회 임시회
제 14 절 제304회 임시회
제 15 절 제305회 정례회
제 16 절 제306회 임시회
제 17 절 제307회 임시회
제 18 절 제308회 임시회
제 19 절 제309회 임시회
제 20 절 제310회 임시회
제 21 절 제311회 임시회

제1절 제291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의회사무처장 김종록
○ 집회공고일 : 2010. 7. 1(공고 제2010-11호)
○ 집 회 일 자 : 2010. 7. 7(수) 오전 10시
○ 회　　기 : 2010. 7. 7 ~ 7. 8(2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 7. 7(수) 10:00	1	1. 의장·부의장 선거 o 의장(김형근) 당선인사 o 부의장(최진섭, 손문규) 당선인사 2. 제2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 7. 8(목) 10:00	2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장 선거 o 상임위원장 당선인사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o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인사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2	5	-	-	-	7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0. 7. 7(수) 11:33 ~ 12:01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3시간 19분	
1차(7. 7)	9:59 - 11:16	1시간 17분
2차(7. 8)	10:02 - 12:04	2시간 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5	·	100%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10. 7. 8 14:00	1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0년도 하반기 회의운영 계획 협의의 건 4.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정책복지 위 원 회	2010. 7. 8 11:00	1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행정문화 위 원 회	2010. 7. 8 11:00	1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산업경제 위 원 회	2010. 7. 8 11:00	1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건설소방 위 원 회	2010. 7. 8 11:00	1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교 육 위 원 회	2010. 7. 8 11:30	1	1.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제2절 제292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0. 7. 7(공고 제2010-12호)
○ 집 회 일 자 : 2010. 7.12(월) 14시
○ 회 기 : 2010. 7.12 ~ 7.23(12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 7.12(월) 14:00	1	1.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보고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의원, 교육위원회 이광희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박한규의원)
2010. 7.13(화) 10:00	2	1.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본회의 휴회의 건
2010. 7.23(금) 11:00	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	-	-	2	-	-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0. 7.12(월)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8시간 14분	
1차(7.12)	14:09 - 15:15	1시간 6분
2차(7.13)	10:02 - 16:44	6시간 42분
2차(7.23)	11:20 - 11:46	2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5	·	100%
3차 본회의	35	35	·	100%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 원 회	2010. 7.12 11:00	1	1. 제29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4.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10. 7.23 09:40	2	1.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연장 협의의 건
정책복지 위 원 회	2010. 7.14 10:30	1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도립대학 라. 충북개발공사
	2010. 7.20 10:30	2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보건복지여성국 라. 충북학사 마. 충북개발연구원
	2010. 7.21 10:30	3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행정문화 위 원 회	2010. 7.14 10:30	1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문화관광환경국
	2010. 7.19 10:00	2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7.20 10:30	3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2010. 7.22 10:30	4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행정국 2.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산업경제 위 원 회	2010. 7.19 10:00	1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2010. 7.20 10:30	2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2010. 7.21 11:00	3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농업기술원 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다. 충북테크노파크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2010. 7.23 10:40	4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0. 7.19 10:30	1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발전국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10. 7.20 10:30	2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건설방재국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010. 7.21 10:00	3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2010. 7.23 11:00	4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교육위원회	2010. 7.14 10:30	1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10. 7.21 10:30	2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7.22 10:00	3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감독 소홀 사안에 대한 대책 보고
	2010. 7.23 10:30	4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7.23 14:00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0. 7. 2	제 안 자	충청북교육감
회부일자	2010. 7. 6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어,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소관 조례를 일괄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등을 일부 개정함.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폐지(부칙 제2조)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 조례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나. 다른 조례의 제명 및 명칭 일부개정(부칙 제3조)

1)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9)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10)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1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7.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7.23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7. 2	제 안 자	충청북교육감
회부일자	2010. 7. 6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교육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발급 가능한 교육관련 민원서류에 대하여 온라인민원 이용 활성화와 대국민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5조제5항 신설)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가) 띄어쓰기

- 항 번호(①, ②) 다음에는 한 칸 띄고 본문을 씀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나) 용어정비 등

- 의한, 의하여, 의한다 → 따른, 따라, 따른다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에 따라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7.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7.23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7. 2	제 안 자	충청북교육감
회부일자	2010. 7. 6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제1호, 제8호, 제9호, 제10호)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

-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제3호)

○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 삭제

-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관할교육청 란을 삭제 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7.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7.23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7. 2	제 안 자	충청북교육감
회부일자	2010. 7. 6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지역교육청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함

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에 관한 사항 (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은 제외)을 추가함(안 제5조 제25호)

나)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26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7.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7.23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7. 2	제 안 자	충청북교육감
회부일자	2010. 7. 6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초등학교 분교장을 본교에 통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지함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폐지

가)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초등학교 폐 지 (휴 원 중)

나)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	2010.9.1.	학생수 감소

처 리 결 과 (의안번호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7.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7.23	원 안 가 결

제3절 제293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충청북도지사
○ 집회공고일 : 2010. 7.23(공고 제2010-13호)
○ 집 회 일 자 : 2010. 8. 2(월) 14시
○ 회 기 : 2010. 8. 2(1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 8. 2(월) 14:00	1	1. 제2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	2	-	-	-	-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0. 8. 2(월) 14:02 ~ 14:08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12분	
1차(8. 2)	14:08 - 14:20	1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0. 8. 2 11:30	1	1. 제2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0. 8. 2 13:20	1	1. 정책복지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0. 8. 2 10:30	1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7. 2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 7. 2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국단위 조정

≪1실 7국 1단 1본부 → 1실 6국 1단 1본부≫ △1국

○ 통합 (△1국) : 균형발전국 + 건설방재국 → 균형개발방재국

○ 명 칭 변 경 : 경제통상국 → 경제진흥국

○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국

‣문화관광환경국 → 여성문화환경국

○ 실·국·단·본부 건제순 조정

정책관리실→행정국→보건복지국→경제진흥국→균형개발방재국→
여성문화환경국→농정국→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소방본부
↳ 한시기구

2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조정

○ 신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설치 (균형발전 및 주민편의 도모)

- 시행시기 : 조례공포 후 6월내 출장소 조직 설치 후 시행
- 관할구역 : 제천시, 단양군
- 담당사무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서 따로 정함.

○ 명칭변경 : 농산사업소 → 종자사업소로 변경

○ 기관 위치변경 :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시 → 청원군)

3 실·국 및 하부기관 분장사무 조정

○ 국제기획·국제교류 업무 이관 (경제통상국 → 정책관리실)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통상진흥 등 수출지원 업무는 존치

○ 갈등관리 업무, 행정국에서 삭제 ※ 감사관으로 이관
○ 민방위 관련업무 이관 (행정국 → 균형개발방재국)
-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 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 업무 이관 (균형발전국 → 정책관리실)
- 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국 + 건설방재국 사무 → 균형개발방재국으로 통합
○ 청소년,여성,가족,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보건복지여성국 → 여성문화환경국)
- 청소년·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생활체육 등 체육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환경국 → 행정국)
-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등
○ 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업무 삭제 (북부출장소로 이관)
-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북부출장소 설치 후 시행)

3. 수정 주요골자

가. 부서명칭의 변경(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경제진흥국 ⇒ 경제통상국
○ 균형개발방재국 ⇒ 균형건설국
○ 여성문화환경국 ⇒ 문화여성환경국

나. 분장사무의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정책관리실 → 균형건설국)
○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균형건설국 → 행정국)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정책관리실 → 경제통상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8. 2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0. 8. 2	수 정 가 결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7.2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 7.2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민선5기 출범에 따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과 정원 감축을 위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937명 → 2,888명 (△49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47명 → 1,398명 (△49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 3>

○ 총계	2,937	→	2,888	△49
- 일반직	1,086	→	1,042	△44
· *4급이상*	*72*	→	*67*	*△ 5*
· *5급이하*	*1,014*	→	*975*	*△39*
- 연구직	138	→	137	△1
· *연구관*	*22*	→	*21*	*△ 1*
- 기능직	247	→	243	△4

※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8. 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8. 2	원 안 가 결

제4절 제294회 정례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충청북도의회 의장
○ 집회공고일 : 2010. 8.25(공고 제2010-14호)
○ 집 회 일 자 : 2010. 9. 2(목) 11시
○ 회　　기 : 2010. 9. 2 ~ 9.16(15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 9. 2(목) 11:00	1	1.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2010. 9.16(목) 11:00	2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 9.16(목) 11:00	2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2.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정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 o 특별위원장 당선인사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8	5	4	4	2	3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0. 9. 2(목) 11:02 ~ 11:10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2시간	
1차(9. 2)	11:10 - 11:38	28분
2차(9.16)	11:01 - 12:33	1시간 3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4	1	97%
2차 본회의	35	33	2	94%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0. 9. 2 09:50	1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010. 9.16 09:30	2	1.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0. 9. 3 14:00	1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감사관
	2010. 9. 6 10:30	2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2010. 9. 7 10:30	3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정책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감사관 마. 보건복지국
	2010. 9.15 10:30	4	1.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10. 9. 3 14:30	1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자치연수원 나. 문화여성환경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여성환경국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다. 공보관실 라. 행정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라. 행정국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0. 9. 6 10:30	2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10. 9. 7 15:00	3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연수원 나. 공보관실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9. 8 10:30	4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여성환경국 2.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0. 9. 6 10:00	1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나. 농정국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나. 농정국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나. 농정국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다. 농업기술원 2.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 농업기술원 3.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다. 농업기술원
	2010. 9. 7 10:00	2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2010. 9 .8 10:00	3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0. 9. 6 10:30	1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균형건설국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010. 9. 7 10:30	2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방본부
	2010. 9. 8 10:30	3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균형건설국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육위원회	2010. 9. 6 14:00	1	1.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 2.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0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0. 9. 7 10:00	2	1. 2010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010. 9. 9 10:00	3	1. 201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9.10 10:30	1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010. 9.13 10:30	2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010. 9.14 10:30	3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8.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 8.31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 효용성 제고

○ 시설 사용기준 시간 및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기준 제시로 사용료 징수 등에 명확성 확보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 등

○ 연수원 사용료(생활관) 인상(별표)

- 공무원교육관 : 5,000원 ⇒ 10,000원
- 도민교육관 : 3,000원 ⇒ 5,000원

○ 생활관 퇴실시간 및 연수원 1일 사용기준 시간 제시(별표)

○ 초과사용료 가산 산정 근거 제시(별표)

○ 연수원 사용료 인상분 등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부칙)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9. 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9.16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8.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 8.31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각종 공부의 열람수수료 면제대상 중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이·면대장이 중복되어 이·면대장을 삭제하는 한편, 면제대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반장에 통장을 추가하고,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정보공개담당부서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자 하며,

○ 국가보훈법 제5조에서 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지적되어 청주보훈지청에서 우리도에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옴에 따라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예비군 이·면대장을 관련규정에서 삭제(안 제5조제1항제3호)

○ 이·반장을 통·리·반장으로 관련규정 개정(안 제5조제1항제3호)

○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면제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제4호)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9.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9.16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8.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 8.31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과 지역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제도를 마련하고

○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대 국책기관 소속직원의 거주지 이전 유도 및 정착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안 제28조의2)

- 감면대상 : 충청북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
- 감면물건 :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기간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보조금신청일 기준 이전 24개월이내 신규투자 취득분 포함)
- 감면기간 : 고용보조금 최초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 지급받는 기간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안 제30조의3)

- 현행 :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이외의 개별이전이 승인된 공공기관. 다만,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개정 : 혁신도시와 혁신도시이외의 개별이전이 승인된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직원도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9.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9.16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8.25	제 안 자	박문희의원 외 6인 (김도경,김양희,김영주, 김재종,이광희,장병학)
회부일자	2010. 8.30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단행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서 변경된 위원회별 소관부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재 조정(안 제3조)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국 (안 제3조 제2호 가목)

○ 문화관광환경국 ⇨ 문화여성환경국(안 제3조 제3호 가목)

○ 균형발전국·건설방재국 ⇨ 균형건설국(안 제3조 제5호 가목)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9. 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9.16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0. 9. 8	제 안 자	김광수 의원
회부일자	2010. 9.14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출산 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 시책을 위한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5조, 제6조)

○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대상 (안 제7조)

○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자치단체별 지원금 분담, 충북도가 40%, 시군이 60% 부담(안 제8조)

○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 부여(안 제11조)

○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 고취와 출산장려에 따른 도민의 참여분 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의 날 운영(안 제12조)

○ 출산장려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안 제13조)

○ 저출산 대책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운영(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9.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 9.16	원 안 가 결

제5절 제295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임헌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0.10. 6(공고 제2010-15호)
○ 집 회 일 자 : 2010.10.13(수) 13시30분
○ 회　　기 : 2010.10.13. ~ 10.20(8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10.13(수) 13:30	1	1.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2010.10.18(월) 10:30	2	1.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건설소방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2010.10.19(화) 10:00	3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산업경제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2010.10.20(수) 14:00	4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10.20(수) 14:00	4	9.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7.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0	13	-	2	4	1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0.10.13(수) 13:30 ~ 13:54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6시간 59분	
1차(10.13)	13:55 - 14:04	9분
2차(10.18)	10:32 - 15:00	4시간 28분
3차(10.19)	10:01 - 11:40	1시간 39분
4차(10.20)	14:01 - 14:44	4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3	2	94%
2차 본회의	35	35	·	100%
3차 본회의	35	35	·	100%
4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0.10.13 11:00	1	1.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0.10.20 11:00	2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0.11. 2 10:00	3	1. 의원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0.10.14 10:30	1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0.10.14 14:00	1	1.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부지 교환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0.10.19 13:30	2	1.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0.10.14 14:00	1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자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의 건
	2010.10.18 15:10	2	1.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0.10.14 11:00	1	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교육위원회	2010.10.14 16:30	1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9.14	제 안 자	임헌경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봉회,박문희, 최미애,최병윤,최진섭)
회부일자	2010. 9.15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에 맞게 재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재 조정(안 제3조)

-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이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 9.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13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9.29	제 안 자	정 헌 의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민이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4항제4호의 “경제특별도”를 “충청북도”로 한다.

○ 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제5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9.29	제 안 자	김종필 의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4조 중 “의무”를 “책무”로 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중 “소비자행정”을 “소비자를 위한 행정”으로 한다.

○ 제13조 중 “도지사는 센터에”를 “도지사는 소비자가 센터에”로 한다.

○ 제17조제1호 중 “법”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9.29	제 안 자	김희수 의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유통정책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 중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9.29	제 안 자	박문희 의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을 “농어업”으로, “농업인력”을 “농어업인력”으로 한다.(제1조)

○ “농업이란”을 “농어업이란”으로 한다.(제2조제1호)

○ “농업이외의”를 “농어업이외의”로, “농업경영”을 “농어업경영”으로, “농업에”를 “농어업에”로 한다.(제2조제2호)

○ “농업”을 “농어업”으로 한다.(제3,4조)

○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제6조)

○ 도지사는 귀농인의 효율적인 귀농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제7조)

○ “농업경영”을 “농어업경영”으로 한다.(제8조제1항)

○ “농업창업자금”을 “농어업창업자금”으로 한다.(제9조제1호)

○ “농업”을 “농어업”으로 한다.(제12조제1항제2,3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9.29	제 안 자	윤성옥 의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농촌 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 187번지길 10-2(율량동 877)에 둔다.

○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생활필수품(단, 생활필수품의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4. 비교 전시·판매를 위한 타 시·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단,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 9.29	제 안 자	황규철 의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과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시행 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여성농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0.11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0. 7.15) 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추가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의 중복된 사항 삭제

-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 정치적 행위 조항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조정 및 추가 (안 제18조)

-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사망) 휴가일수 조정(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3일 → 1일)
-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추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0.11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10.12. 1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전국 자동차 무관할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 사용 본거지와 무관하게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신설(안 제10조의2)

- 자동차 등록시 사용본거지 시장·군수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납세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음.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 '10.12. 1 시행, 국토해양부 추진

- 수탁받은 시장·군수는 등록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토록 규정

처리결과 (의안번호4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5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평생교육 및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의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하여 충주학생회관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개편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청 직속기관으로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설치하고, 관장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절 신설)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충주학생회관을 폐지함(안 별표3)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 소재지를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1-9번지로 함(안 제17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5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5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2010. 6. 29.)에 따라 각급학교 정비구역안의 학습환경조사 및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요청,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고등학교 업무는 본청이, 중학교 이하 학교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정하였던 것을 관리·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급학교 정비구역안의 학습환경조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하고자 함(안 제5조제28호 신설)

○ 각급학교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요청,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안 제5조제29호 신설)

처리결과 (의안번호5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8	제 안 자	김양희 의원
회부일자	2010.10.11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충청북도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 및 대상의 범위와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와 제6조 및 제8조)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5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8	제 안 자	김재종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이광진,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3조).

○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 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수정 주요골자

○ 안 제5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검수범위)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중 시장 군수가 요청한 아파트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처리결과 (의안번호5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0.14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0.10.20	수 정 가 결

제6절 제296회 정례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충청북도의회 의장
○ 집회공고일 : 2010.11.10(공고 제2010-20호)
○ 집 회 일 자 : 2010.11.22(월) 14시
○ 회 기 : 2010.11.22 ~ 12.24(33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11.22(월) 14:00	1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2010.12.14(화) 11: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12.14(화) 11:00	2	10.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1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16.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19.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정헌 의원, 김양희 의원, 윤성옥 의원 20. 본회의 휴회의 건
2010.12.24(금) 11:00	3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9.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0.12.24(금) 11:00	3	18.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3.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 2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47	31	4	-	7	5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0.11.22(월) 14:00 ~ 14:07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7시간 57분	
1차(11.22)	14:07 - 15:08	1시간 1분
2차(12.14)	11:02 - 16:45	5시간 43분
3차(12.24)	11:01 - 12:14	1시간 1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4	1	97%
2차 본회의	35	34	1	97%
3차 본회의	35	33	2	94%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0.11.22 11:00	1	1. 2011년도 연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2010.12. 2 11:4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010.12.14 10:00	3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10.12.24 10:00	4	1.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0.12. 6 10: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감사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4.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정책관리실 3.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정책관리실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관리실
	2010.12. 7 10:00	2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4.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0.12. 7 10:00	2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보건복지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나. 보건복지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나. 보건복지국 5.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2010.12.15 10:00	3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010.12.16 13:30	4	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2.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3.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3-1.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0.12. 3 10:30	1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나. 자치연수원
	2010.12. 6 10:30	2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0.12. 6 10:30	2	6.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7.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2010.12. 7 10:30	3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문화여성환경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여성환경국 4.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6.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0.12.15 11:00	4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나. 공보관 다. 문화여성환경국 라.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0.12. 3 10:00	1	1. 2010~201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농정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2010.12. 6 10:00	2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0.12. 7 10:00	3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원 4.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010.12.15 10:30	4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0.12. 6 10:00	1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균형건설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나. 균형건설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균형건설국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0.12. 7 09:30	2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소방본부 3.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3-1.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4.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7.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10.12.15 10:00	3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균형건설국 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다. 소방본부 3.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교육위원회	2010.11.24 08:30	1	1.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
	2010.12. 3 16:00	2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3.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4.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2010.12. 6 10:00	3	1.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12. 7 10:00	4	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10.12.15 10:30	5	1. 2010년도 제6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 9 10: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4.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다. 행정문화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다. 행정문화위원회 4.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다.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10: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경제위원회 1.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나. 건설소방위원회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나. 건설소방위원회 3. 201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나. 건설소방위원회
	2010.12.13 10:00	3	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12.21 10:30	4	1.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소방위원회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전문가의 심의·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안 제3조)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를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한다.
- 안 제3조제3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안 제4조 중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7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수 정 가 결

2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정부의「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토록 함

2.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토록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0. 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0. 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과와 하천과의 통합으로 제4조제4호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민방위·민원개선과장”을 “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처 리 결 과 (의안번호4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1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0.11.18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2조 내지 제3조)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정함 (안 제4조)

1)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가능 (안 제5조)

○ 공익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 처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안 제6조)

○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안 제7조 내지 제8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 내지 제12조)

1)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포함 7명 (위촉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2)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이 신고내용의 당사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 보상금의 지급은 3천만 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함 (안 제13조)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 상 금 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안 제15조)

1)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2)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도 가능

○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6조)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6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폐지(2008. 3.28)됨에 따라「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폐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6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8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관련 법령과 통합되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내용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 지역정보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기구 정비(안 제6조)
- 명 칭 : 지역정보화협의회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위원회
- 위원장 : 도지사 → 행정부지사

○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정보화 환경변화의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안 제8조)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9조),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사업근거마련 (안 제15조~제18조)

○ 정보화 용역, 유지보수, 보안관리, 보험 등 기존법령과 중복사항 삭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7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8. 9.10.)됨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삭제(제2조)

- 의사인 의무직렬공무원(전임계약직 포함)에게 지급

➡ 92.11.20. 개정이후 현재까지 지급대상자(정·현원) 없음

○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삭제(제3조)

-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

➡ 94. 2.18. 신설이후 현재까지 지급대상자 없음

○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안 제2조)

-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백운면 덕동리,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별표)

처리결과 (의안번호7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조정,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정비 : 6건

- 부서명칭 변경 등 3건 :
  - 일자리창출과(신설), 미래산업과(변경), 기업유치지원과(변경)
- 업무조정(이관) 등 3건
  -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 생활경제과 → 일자리창출과
  -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무 : 생활경제과 → 일자리창출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기업지원과(구) → 기업유치지원과

○ 관련법령 등 정비 : 2건

- 근거법령 개정 : 1건 (민속공예산업 육성)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
- 자구수정 : 1건 (정보화담당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7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실국간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정책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직제규정에 맞게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업무이관에 따른 직위조정

- 부위원장 1인은 정책관리실장 ⇒ 행정국장(안 제10조제2항)
-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 ⇒ 정책기획관(안 제10조제3항제1호)
- 간사를 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장(안 제10조제5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7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도세 기본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단일법인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하여 2011. 1. 1부터「지방세기본법」(2010. 3.31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로 제정하여 도세 부과·징수 운영기준으로 삼고자 함.

※ 금번 조례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름.

■ 지방세법 분법 내용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구성

분법 (3개법)		자치법규
지방세기본법 (제정)	→	도세 기본조례 (제정)
지방세법 (전부개정)	→	도세조례 (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2. 주요내용

○ 서류 송달의 방법 규정 (안 제4조)

○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시기 규정 (안 제5조)

○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도세 세액한도 규정 (안 제6조)

- 고지서 세액이 50만원 이하의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가능

○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규정 (안 제7조)

- 성실납부자는 연간 3건이상, 최근 3년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의미
-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

처 리 결 과 (의안번호7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 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복잡한 지방세 세목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한 현행「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전면 개정한「지방세법」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도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 금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름.

■ 지방세법 분법 내용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구성

분법 (3개법)		자치법규
지방세기본법 (제정)	➡	도세 기본조례 (제정)
지방세법 (전부개정)	➡	도세조례 (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2. 주요내용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규정 (안 제3조)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납기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매년 갱신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는 1.15 ~ 1.31까지임

○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납기 및 부과대상지역 등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기간은 사용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함

처리결과 (의안번호7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11. 1. 1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일부 감면대상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므로

○ 현행「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중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감면하지 않은 감면대상을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며, 2010. 12. 31까지 감면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여 감면제도 운영에 연속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금번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따름.

■ 지방세법 분법 내용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구성

분법 (3개법)		자치법규
지방세기본법 (제정)	→	도세 기본조례 (제정)
지방세법 (전부개정)	→	도세조례 (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2. 주요내용

○ 현행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대상 중「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감면대상을 도세감면조례로 존치 : 20건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각장애 4급만 해당)
-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주택에 대한 감면 (미분양주택만 해당)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현대화사업 보조금대상만 해당)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

※ 현행 도세감면조례의 감면대상 중 20건 이외 감면대상(16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규정

○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1.12.31까지로 1년 연장

처 리 결 과 (의안번호7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수입증지 구입대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2010. 9.17)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2009. 5. 8)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 신설 (안 제2조제3항)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하게 개정

-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 1통 600원 → 1건 800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1건 500원 → 1건 800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 1건 3,000원 → 1건 8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1건 20,000원 → 1건 4,000원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 계속 → 갱신 또는 기간연장
-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군수 신고(신청)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 징수근거 삭제

- 종합게임장업 등록(지정) 신청 : 1건 20,000원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 1건 20,000원
-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

처 리 결 과 (의안번호7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14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6	제 안 자	김영주 위원 외 6인 (김양희,박종성,유완백, 장선배,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

○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처리결과 (의안번호8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15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6	제 안 자	유완백 위원 외 7인 (김양희,김영주,김희수,박종성, 임현경,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0.11.1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국내 관광사업자 개념에서 국외 관광사업자를 일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 관광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게 보조 및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 행정능률의 향상과 유연성을 갖춘 체계적인 관광 정책수립과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목의 변경

-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띄어쓰기 함

○ 용어 정의의 명확화(제2조)

- 국외여행사 정의 추가
- 관광사업자 정의 추가

○ 관광객유치 지원 범위 확대(제4조)

- 전세기 취항시 국외 여행사 추가
- 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 민간위탁 근거 마련

-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

- 서식 삭제(별지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조례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조례 문장을 재구성함.
- 그 밖에 일본식 표현(타, 당해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14	원 안 가 결

16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0.11.22	제 안 자	김광수 의원
회부일자	2010.11.24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여 대학생 누구나가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추진(제3조)

○ 학자금 이자 지원 및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학자금 지원순위 대상을 규정(제4조 내지 제6조)

○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제7조)

○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등 규정(제8조, 제9조)

○ 학자금 이자지원의 조건이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제10조 내지 제16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17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30	제 안 자	정 헌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황규철)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충청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각 해당 위원장이 즉시 변경 추천하여 충청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산업단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18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30	제 안 자	김종필 의원 외 6인 (김봉회,김희수,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우리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8조)

- 제8조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8조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남은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19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30	제 안 자	김희수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진흥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수출품”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수산어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어업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0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30	제 안 자	박문희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4조)

○ 폐지된 법령 삭제(안 제9조제1항제3호)

- 제2조 제목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의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각 한다.
- 제2조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품목)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상표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1〕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농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산업표준화법」,「축산물가공처리법」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 제9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4조 중 “인정된”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1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30	제 안 자	윤성옥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임업종자 등의 시험과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등)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임산물,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하 “위탁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2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30	제 안 자	황규철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정헌)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안 제1조 ~ 안 제5조, 안 제13조)
○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안 제12조)
○ 일부 조항의 신설(안 제3조제4호, 제5호)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의 제목 “(연구기능)”을 “(연구센터의 기능)”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연구개발
- 제3조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민에게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한 자생식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
5. 자생식물의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상품개발, 특허화를 통한 지역소득의 증대
-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센터장이나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제3조, 연구원은 제30조에 따른다.
-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관리권한) 연구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8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3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1.30	제 안 자	김봉회 의원 외 6인 (김종필,김희수,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충북도의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등)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지역”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2조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2조제5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9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4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2.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2. 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업무이관 등 변동사항 반영

○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권한위임 사무 신설 : 3건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관한사항(지정 등) : 2건(환경정책과)
- 북부출장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소내 전보권 : 1건 (총무과)

○ 근거법령 전부(일부)개정에 따른 권한사항 변경(삭제) : 7건

- 보안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1건) : 시도 → 시군
- 마약관련 업무(4건) : 시도 → 시군, 시도→식약청
- 의약품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1건) : 시도 → 식약청
- 당직의료기관의 지정(1건) : 시도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조정, 부서명칭 변경 등 : 74건

- 위임기관 추가 : 북부출장소
- 사업소 명칭변경 : 종자사업소 → 농산사업소
- 부서명칭 변경 : 8건
- 소관부서 조정 : 64건

・미래산업과 →생활경제과(18건) : 에너지,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무

・미래산업과 → 치수방재과(4건) : 승강기 관련업무

・보건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과(20건) : 한약사업, 마약관련 업무

・지역개발과 → 균형개발과(21건) :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관련업무

・도로과 → 균형개발과(1건)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 26건

- 권한위임 범위 확대를 위한 자구 변경 1건(환경정책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당초 :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등 제외

변경 : 당초 단서조항 삭제

- 관련법령 제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 7건(산림녹지과)

・보안림에 관한 사무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사무 (3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관한 사무 → 보호수 등에 관한 사무(3건)

・산림병해충의 구제·예방에 대한 조치명령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명령(1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기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18건

・관계법령 개정 : 농산지원과 7건, 보건정책과 2건, 식품의약품안전과 3건

・자구수정 : 식품의약품안전과 6건

처 리 결 과 (의안번호9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5 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2.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2. 8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안 제2조) 및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안 제3조)

○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및 헌혈 홍보, 정보제공(안 제5조)

3.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앞에 '다음'을 삽입한다.

○ 안 제2조(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 앞에 '도지사는'을 삽입하고, '지사'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로 하며, '필요한 설치'를 '필요한 공간의 설치'로 한다.

○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로 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9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6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수 정 가 결

26 충청북도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0.12.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2. 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2010. 6.30)되어

○ 근거법령이 없고 자문기능만 있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9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7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2. 8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2.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고생략 범위의 구체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인사반영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격사유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적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당연퇴직 규정 삭제(안 제9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적용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처리결과 (의안번호9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8 충청북도명예도지사 조례안

제안일자	2010.12. 8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2.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도정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를 충청북도명예도지사로 위촉하여

○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 및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도지사의 위촉·해촉 절차 마련(안 제3조)

- 실·국·단·본부장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
-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타 시·도 전출,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 가능
- 명예도지사를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회 통보

○ 명예도지사의 임기 설정(안 제4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단, 당해 명예도지사를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해촉

○ 명예도지사의 직무 범위 명시(안 제5조)

-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
- 기타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안 제6조)

○ 명예도지사로서의 자긍심 제고(안 제7조)

- 도민이 아닌 경우 '명예도민' 권리 부여
- 도정활동시 도지사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 가능

○ 명예도지사의 재정적 지원(안 제8조)

- 명예도지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비보상 등 지원 가능

처 리 결 과 (의안번호9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2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2. 8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2.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북부출장소 규모 재조정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직급책정 연장 협의(3급,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른, 한시직급정원의 명칭변경 및 기한연장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2,888명 → 2,892명 (증4명) (안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398 → 1,402명 (증4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안제4조 별표3)

- 총계 2,888명 → 2,892명 (증4명)

· 일반직 1,042명 → 1,045명 (증3명)

· 5급이하 975명 → 978명 (증3명)

· 기능직 243명 → 244명 (증1명)

※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 한시직급정원 명칭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 (부칙 개정)

- 명칭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 바이오밸리추진단장으로 변경
- 기한 : 2010년12월31일까지 → 2012년12월31일까지

처리결과 (의안번호10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3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0.12. 8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2.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직급책정(3급,한시) 연장협의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명칭변경 및 연장 기한을 조정하고,

○ 일부 기구의 신설과 명칭변경, 북부출장소 소관사무 지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명칭변경 및 기한 연장 (안 제5조, 제13조)

- 명칭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변경
- 기한 : 2010.12.31까지 → 2012.12.31까지 (2년 연장)

○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신설 (안 제25조)

- 대추연구소 신설(보은군 관내)

○ 사업소 명칭변경 : 종자사업소 → 농산사업소(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 북부출장소 소관사무 지정 (안 제59조)

-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광업, 전기, 산림, 농업, 환경 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0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0.12.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0.12.24	원 안 가 결

제7절 제297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2인
○ 집회공고일 : 2011. 1. 7(공고 제2011-1호)
○ 집 회 일 자 : 2011. 1.18(화) 14시
○ 회 기 : 2011. 1.18 ~ 1.27(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1.18(화) 14:00	1	1.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4. 도정에 관한 질문(박문희 의원)
2011. 1.19(수) 10:00	2	1. 2011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본회의 휴회의 건
2011. 1.27(목) 14:00	3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9.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1.27(목) 14:00	3	11.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8	16	-	1	-	1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 1.18(화)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8시간 40분	
1차(1.18)	14:09 - 15:30	1시간 21분
2차(1.19)	10:02 - 16:25	6시간 23분
3차(1.27)	14:02 - 14:58	56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4	1	97%
2차 본회의	35	34	1	97%
3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 1.18 11: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011. 1.27 11:00	2	1.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1. 1.20 10:00	1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2011. 1.21 10: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감사관 다. 충북학사 라. 충북개발연구원 마. 충북인재양성재단
	2011. 1.24 10:00	3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2-1.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5-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6.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11. 1.20 11: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행정국 2.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1.21 10: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나. 자치연수원 다. 문화재연구원 2.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1. 1.20 10:00	1	1.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011. 1.21 10: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신용보증재단 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충북테크노파크 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건설소방위원회	2011. 1.20 10: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1.21 10: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충북개발공사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라.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11. 1.20 10: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 1.21 10:30	2	1. 2010년도 제3-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 결과 보고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안

제안일자	2010.11.1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0.11.18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주요정책의 입안 및 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안 제2조)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방향,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

○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 자문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 : 공공혁신, 복지, 문화관광, 산업정책, 지역발전의 5개 분과 설치

○ 수당(안 제9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 유효기한(안 제11조) : 조례의 유효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중 "자문"을 "자문·협의"로 한다.
- 안 제3조중 "50명"을 "70명"으로 한다.
- 안 제6조 제1항중

제2호 "복지분과위원회"를 "복지·여성분과위원회"로 하고,
제3호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문화관광·환경분과위원회"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과위원회내에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처리결과 (의안번호7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4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1.24	수 정 가 결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서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 등 가입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0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4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수 정 가 결

3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11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라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과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목적에 학교 등에 무상급식 필요경비 지원을 추가(안 제1조)

○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 급식시설·설비비에서 급식운영비까지확대(안 제2조제2호)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농산물"를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용어변경(안 제2조제3호다목)

○ 우수식재료 품목을「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추가(안 제2조 제3호사목)

○ 급식지원 대상 중 의무교육기관 우선 지원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라 도지사의 급식경비 지원범위를 "일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급식경비 신청절차 일원화를 위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장도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신청토록 변경(안 제6조제1항)

○ 위원회 심의사항 중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재정분담방안"을 "학교급식 등 예산지원 방안"으로 통합(안 제8조제1, 2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0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인용조문, 조직명칭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정비

-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3항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중「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자치법」제110조 → 지방자치법」제142조
-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조 중
  「도로법」제64조 및「도로법」제67조 →「도로법」제76조제2항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13조 →「청소년기본법」제11조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동조례 제8조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제10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 → “보건정책과장”,
  “보건의약담당” → “건강증진담당사무관”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 중
  “지역개발과장” → “균형개발과장”
-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제1호의 가목
  “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0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6.25전쟁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됨(안 제2조)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함(안 제3조)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5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0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방안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재원 (안 제2조)

-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안 제4조)

-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0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분양가 인하율이 10%이하인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규정을 한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신설, 안 제6조제1항제2호 다목)

- 감면대상 : 전용면적 85㎡ 초과의 분양가 인하율 10%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감면범위 : 취득세의 50% 경감
- 감면기간 : 2011. 4.30일까지

※ 취득금액에 제한이 없고 다주택 보유자도 모두 감면대상이 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 자활기금의 용도 지정(안 제3조)

○ 자활자금 융자대여 한도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8조제1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14조)

○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제2조, 제10조, 제13조)

○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3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1조)

○ 충청북도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하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과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소방방재청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안 개정사항 반영

○ 규칙에서 규정하던 조항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

○ 그 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소방방재청의 전국 시·도 의용소방대 표준 조례 준칙 안 반영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근거 및 명칭 규정(안 제2조, 제3조)
- 지역여건에 따른 임명권자의 정원조정 규정 신설(안 제6조)
-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운영지도관제도 신설(제16조의2)
- 의용소방대의 근무 명령, 출동범위와 전담의용소방대 현장 활동 범위 및 시설, 장비기준 규정(안 제16조)
- 의용소방대원의 포상, 선진지견학 등 사기진작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 교육훈련, 출동수당, 재해보상 지급범위 명확화(안 제21조, 제23조, 제25조)

- 규칙에서 규정하던 조항을「소방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

○ 전담의용소방대 규정에 따라 약칭을 정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의용소방대 명칭 중 전담의용소방대를 추가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장학생의 자격, 추천 기준과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그 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제3조)

○ 장학생 선발 정원을 대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정비함(안 제5조)

○ 공납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화 하고 지급금액 조정함(안 제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 목적 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 삭제 및 간소화 함(안 제1조)
- 목적 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인용법령 표기, “자”를 “사람”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으로 변경

○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5조, 제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3호 단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종전 10,000원에서 무료로 함(안 별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2011학년도 학교신설과, 학교 교명변경, 기숙형중학교 개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과 학생수 감소에 의한 학교폐지, 지번 정정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학교 신설

가) 중학교

명 칭	주 소	개교년월일	설 립 사 유
양청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04번지	2011. 3. 1.	각리중학교 과대분리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2) 교명 변경

가) 유치원

변경전 명 칭	변경후 명 칭	주 소	변경년월일	변경사유
삼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보은삼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2011. 3. 1.	초등학교 교명변경에 따른 병설유치원 명칭변경

나) 초등학교

변경전 명 칭	변경후 명 칭	주 소	변경년월일	변경사유
삼 산 초등학교	보은삼산 초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2011. 3. 1.	해당 학교의 신청

다) 중학교

변경전 명 칭	변경후 명 칭	주 소	변경년월일	변경사유
원 남 중학교	속리산 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번지	2011. 3. 1.	내북중, 속리중을 통합하여 기숙형 중학교 개교

라) 고등학교

변경전 명 칭	변경후 명 칭	주 소	변경년월일	변경사유
청주기계 공업고등학교	청주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2011.3.1.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3) 학교 폐지

가) 초등학교

명 칭	주 소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문광초등학교 덕평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2011. 3. 1.	문광초등학교로 통합

나) 중학교

명 칭	주 소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속리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번지	2011. 3. 1.	속리산중학교로 통 합
내북중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5-1번지	〃	〃

4) 학교 주소변경

가) 병설유치원

명 칭	구 분	주 소	변경사유
운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번지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3번지	
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번지	〃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68번지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64B/L	지번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나) 초등학교

명 칭	구 분	주 소	변경사유
운동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4번지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30-3번지	
만수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64B/L	지번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다) 중학교

명 칭	구 분	주 소	변경사유
솔밭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14-5번지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15-6번지	
오송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 65BL	지번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552번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1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 5 신설)

○ 수련원 및 야영장 사용료 중 식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단서 신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15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0	제 안 자	박종성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유완백, 임헌경,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의 제명이 조례내용과 차이가 있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목의 변경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
-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그 밖에 일본식 표현(기타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1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16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1.11	제 안 자	임헌경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광진,이수완,임현)
회부일자	2011. 1.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 및 법령에 명기된 조항을 삭제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
(안 제7조제1항, 제8조 3항 및 6항)

○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라, ~내지 ⇒ ~부터, 가진 자 ⇒ 갖춘 사람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처리결과 (의안번호11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1.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1.27	원 안 가 결

제8절 제298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1. 2.24(공고 제2011-5호)
○ 집 회 일 자 : 2011. 3. 8(화) 14시
○ 회　　기 : 2010. 3. 8 ~ 3.17(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3. 8(화) 14:00	1	1.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최미애 의원, 이광희 의원) 3.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노광기 의원, 박문희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2011. 3.17(목) 14:00	2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본관 등 철거 8.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3.17(목) 14:00	2	1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장선배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5	13	-	-	1	1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 3. 8(화)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2시간 9분	
1차(3. 8)	14:09 - 15:29	1시간 20분
2차(3.17)	14:01 - 14:50	4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3	2	94%
2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 3.17 10:00	1	1.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1. 3.10 10:00	1	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11. 3.10 11:00	1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계획안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본관 등 철거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1.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6-1.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산업경제위원회	2011. 3. 9 14:00	1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11. 3. 9 14:00	1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3.17 10:00	2	1.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교육위원회	2011. 3.10 10:00	1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2011. 3.11 10:00	2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지역교육청 ·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3. 3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2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3. 3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왔으나,

○ 도정배심원제의 기능을 포괄하고 도의 주요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도정 정책자문단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2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3. 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바이오밸리, MRO사업, 구제역사후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2,892명 → 2,924명 (증32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02 → 1,430명 (증28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1,378 → 1,382명 (증 4명)

※ 교육공무원(42명), 의회사무기구(70명)는 변동 없음.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안 제4조)

○ 총 계	2,892명	→	2,924명	(증32명)
‣ 일반직	1,045명	→	1,077명	(증32명)
- 4급	*57명*	→	*58명*	*(증 1명)*
- 5급 이하	*978명*	→	*1,009명*	*(증 31명)*
‣ 기능직	244명	→	239명	(감 5명)
‣ 별정직	21명	→	20명	(감 1명)
‣ 연구직	137명	→	139명	(증 2명)
- 연구관	*21명*	→	*22명*	*(증 1명)*
- 연구사	*116명*	→	*117명*	*(증 1명)*
‣ 소방직	1,378명	→	1,382명	(증 4명)
- 소방령이하	*1,368명*	→	*1,372명*	*(증 4명)*

※ 지도직(24명), 교육공무원(42명)은 변경사항 없음.

○ 한시정원 표기 (부칙)

- 세종시 업무 관련 2명 (행정5급1, 행정6급1) → 2012. 9.30한
- 구제역사후관리팀 6명 → 2012.12.31한
  (행정5급1,축산6급1,토목6급1,환경6급1,행정7급1,수의7급1)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2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3. 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촬영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상산업 육성 시책수립 (안 제3조)
○ 영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 영상위원회 구성 (안 제5조)
○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안 제10조)
○ 특화사업의 추진 (안 제11조)

3.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안 제3조의 제목 “영상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을 “영상산업 육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상산업과의 연계를 통한”을 “영상산업과 연계한”으로 한다.

○ 안 제4조제1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5조제2항 중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어느하나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잔임 임기”를 “남은 임기”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할 수없을 때”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대행 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데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2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수 정 가 결

5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박종성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유완백, 임헌경,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3. 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의 정비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법령에 「 」 사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의 규정에 의한'를 '~에 따른'으로 변경
-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함.
- 그 밖에 일본식 표현(타, 당해 등),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

처리결과 (의안번호12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정헌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욱,황규철)
회부일자	2011. 3. 2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우리도의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안 제18조, 안 제21조~안 제24조)

- 제18조 중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 제4장 제목 중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1조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제21조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 제22조 제목 중 “위원회의 구성”을 “심의회의 구성”으로 한다.
- 제2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20명”을 “25명”으로 한다.

- 제22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은 행정부지사가되며 다른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 제22조제3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 제22조제3항제2호 중 “9명”을 “11명”으로 한다.
- 제2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 제22조제4항 중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 제22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 제22조제6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제23조 제목 중 “위원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 제24조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2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 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김희수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1. 3. 2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조문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안 제3조제2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이라함은“을 ” “농어업”이란“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인”이라함은“을 ” “농어업인”이란“으로 한다.
- 제2조제3호, 제4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한다.
- 제2조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2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 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황규철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정헌)
회부일자	2011. 3. 2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의 정비

(안 제1조 ~ 안 제8조, 안 제10조)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 제2조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이거나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거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2호 중 “인터넷”을 “인터넷 뱅킹”으로 한다.
- 제5조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6조 제목 중 “예약금”을 “예약금 납부와 취소”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후 3일 이내(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약한 자가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자동으로 취소한다.

-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거”를 “다음 각호에 따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일(check-in)”을 각각 “사용 예정일(check-in)”로 한다.
-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 중 “자연휴양림 내에는”을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에”로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3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 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임현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광진,이수완,임헌경)
회부일자	2011. 3. 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민선 5기에는 도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코자 세입재원으로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을 추가하여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용어 및 일부조문 개정 (제2조 제3호, 제6조)

- 불균형 실태조사 ⇒ “지역발전도 조사”

○ 국가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매년 지원예산의 5%이상 금액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는 조항 신설(제1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제11조, 제13조)

- “타 회계” ⇒ “다른 회계”, “기타” ⇒ “그 밖에”,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관리·운용에 필요한”으로

처리결과 (의안번호13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 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권기수 의원 외 6인 (김동환,김재종,이광진,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1. 3. 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9조를 제41조로 변경

○ 시험수수료(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도보 고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명시(안 제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안 제3조, 제4조)

-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정에 필요한”으로 개정.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3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 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5	제 안 자	장선배 의원 외 6인 (김광수,김도경,김영주, 노광기,손문규,심기보)
회부일자	2011. 3. 3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던 생활보장위원회를 폐지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로 개정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자활기금 운용 및 의료급여심의 기능 추가

○ 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 추가(안 제3조)
-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 위원 자격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추가

○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
-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조문 신설(안 제10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2조, 제3조)
- 도 자활기금 및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각 각 도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운영으로 관련 조례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3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2.28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3. 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행정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지정과, 실·국·본부·단별 분장사무의 현실화 등 업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책관리실 : 직제순 업무 조정, 업무명 현실화 및 구체화
-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 조정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

○ 행 정 국 : 신규·이관업무 추가 및 직제순 업무 조정
- 6.25전쟁 중 납북 피해 사실조사 업무, 경보통제 업무 등

○ 경제통상국 : 신규업무 추가 및 직제순 업무 조정, 문구 수정
- 신규 :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업무
- 수정 : “재래시장” → “전통시장” 으로 수정 등

○ 농 정 국 : 누락분 추가
- 친환경농업 및 농업기반조성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여성환경국 (누락분 추가)
-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균형건설국 : 소멸업무 삭제 및 신규업무 추가
- 신규 :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 관리
- 삭제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업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행복중심복합도시 관련 업무, 경보통제 업무

○ 바이오밸리추진단 : 이관업무 추가
-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 용어 변경 (전염병 → 감염병)
- 산림환경연구소 : 누락업무 추가 (수목원 조성 및 운영관리)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3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1. 3. 2	제 안 자	김동환 의원 외 12인 (권기수,김양희,김영주,김재종, 박종성,유완백,이광진,이수완, 임헌경,임현,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3. 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해설 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한 관광 충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 도내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3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안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안 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수습근무 및 표식(안 제6조~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등 지급(안 제8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사무의 위탁근거(안 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지원(안 제10조)

3.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처리결과 (의안번호13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3.10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3.17	수 정 가 결

제9절 제299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1. 3.31(공고 제2011-7호)
○ 집 회 일 자 : 2011. 4.12(화) 14시
○ 회　　기 : 2011. 4.12 ~ 4.21(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4.12(화) 14:00	1	1.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종필 의원, 최미애 의원, 장선배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박종성 의원, 임헌경 의원)
2011. 4.21(목) 14:00	2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12.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3	9	-	1	1	2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 4.12(화) 14:01 ~ 14:08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3시간 13분	
1차(4.12)	14:08 - 16:42	2시간 34분
2차(4.21)	14:02 - 14:41	3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3	2	94%
2차 본회의	35	32	3	91%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11. 4.21 10:00	1	1.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2.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본회의장 의석배정 변경 협의의 건
정책복지 위 원 회	2011. 4.13 10:00	1	1.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행정문화 위 원 회	2011. 4.13 11:30	1	1.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 위 원 회	2011. 4.13 09:30	1	1.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 채택의 건
건설소방 위 원 회	2011. 4.12 16:50	1	1.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교 육 위 원 회	2011. 4.13 10:30	1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4.20 10:30	2	1.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내북초등학교 이원폐교 처분 · 청성초등학교 능월폐교 처분

1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3.31	제 안 자	노광기 의원 외 6인 (김광수,김도경,손문규, 심기보,장선배,최미애)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조례제정 이후 불 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 중 임명공무원 규정(관계공무원 → 보건복지국장)(안 제2조)

○ 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 조정(4년 → 2년)(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조례 문장의 명사구 등 뛰어 쓰기, 쉽고 간결한 문장
- 명확한 문장,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투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3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3.31	제 안 자	손문규 의원 외 6인 (김광수,김도경,김재종, 노광기,심기보,장선배)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이해하기 쉬운 조문으로 정비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관련 조문 규정(안 제3조)

○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사용 용도 조문 규정(안 제4조)

○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안 제5조)

- 기금 운용관 : 보건복지국장
- 분임 기금운용관 : 식품의약품안전과장
- 기금 출납원 : 위생관리 담당사무관

○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6조)

- 위원장 : 보건복지국장에서 → 행정부지사로
- 당연직 위원 : 식품의약품안전과장에서 → 보건복지국장으로

○ 기금의 존속 기한 조문 명기(안 제14조)

-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3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4.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5조(감사) 삭제

3. 수정 주요골자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3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2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수 정 가 결

4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 주민투표 제도의 운영 및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20세 이상 ⇒ 19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청구인 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규정 마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4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 성장촉진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 운영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지식경제부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하며, 용어의 순화와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순화 및 변경(안 제명, 안 제2조, 안 제33조제1항제2호)

- 제명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변경
-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변경

○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제4항)

-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기금관리 공무원 회계관직을 직위 중심으로 지정(안 제17조)

- 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국장
-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 유치 관련 과장
- 기금출납원 : 투자 유치 담당 사무관

○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 조정(안 제27조)

-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지원 사항 포함
- 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지원으로 하고 지원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성장촉진지역 공장 운영비지원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 3년간 오·폐수처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지원
- 3년간 제품 생산 및 판매 물류비용의 50%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 지원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4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속 필요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폐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4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함(안 제7절)

○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안 부칙)

1)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2)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4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김종필 의원 외 6인 (김봉회,김희수,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우리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 제1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로 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제8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 ""자발적 협약"이란 법 제2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란 법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법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 제20조제5항 중 "「건축법」 제23조"를 "「건축법」 제27조"로 한다.
- 제22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4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박문희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운용중인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안 제5조, 안 제8 ~ 안 제10조)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제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상분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제3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 중 “정부포상규정”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충청북도포상조례”를 “「충청북도 포상조례」”로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4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4.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4.21	원 안 가 결

제10절 제300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1. 4.29(공고 제2011-14호)
○ 집 회 일 자 : 2011. 5.11(수) 14시
○ 회　　기 : 2011. 5.11 ~ 5.20(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5.11(수) 14:00	1	o 의원 선서(강현삼 의원) 1.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희수 의원, 이광희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2011. 5.20(금) 14:00	2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5.20(금) 14:00	2	1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부지 및 건물 취득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 15.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유완백 의원, 김양희 의원, 김도경 의원, 김영주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23	11	1	1	7	3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 5.11(수) 14:02 ~ 14:12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3시간 9분	
1차(5.11)	14:12 - 16:11	1시간 59분
2차(5.20)	14:01 - 15:11	1시간 10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3	2	94%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원회	2011. 5.13 16:00	1	1. 충청북도문화재단대표이사및이사선임과정규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1. 5.20 10:00	2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 위원회	2011. 5.12 10:00	1	1.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행정문화 위원회	2011. 5.16 10:30	1	1.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부지 및 건물 취득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 4-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위원회	2011. 5.13 10:00	1	1.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3.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4.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5.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 6.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가칭)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취득(교환) ·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 ·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 (가칭)창신유치원사 증축 ·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7.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 5.16 10:30	2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2011. 5.18 10:00	1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4. 4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 4. 7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장학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
(안 제5조제2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4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1호)을 적용하여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종위원회 수당지급대상 규정(제3조)
- 도 공무원은 위원회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 도 의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 의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3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충북개발연구원 제61차 정기이사회(2011. 3.18) 개최 결과 연구원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칭을 변경

- 조례명을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조문의 내용 중

- “충북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를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수정함(제1조)
- “연구원의”를 “충북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로, “충북개발연구원육성기금”을 “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으로 수정함(제2조1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2011. 3.22)되어 관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김에 따라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글자도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사용되도록 개정하여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의 글자 변경

- “한글전서체” → “한글” (안 제5조제2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11년 3월 25일자 조직개편사항 반영과 위임사무 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조정(삭제) : 2건

-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 및 몰수 마약류의 폐기·처분 등

※ 법제처 법률해석 결과 도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 사무로 판명되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 위임규칙에 반영 재위임

○ 위임범위 조정 : 1건

-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

·당초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

·개정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 균형개발과 → 도로과

○ 관계법령 정비 : 3건

- 도세 징수유예, 도세 기한의 연장, 도세 결손처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2	제 안 자	박종성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유완백, 이광진,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립예술단 창단 후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제반 문제를 감안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 명칭변경

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 → 교향악단

○ 예술단 규모 확대

- 단원 30명 → 42명
- 사무국직원 2명 → 규칙으로 정함.

○ 예술단 업무분장 구분

- 예술감독겸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한다.(신설)
-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연주기획, 홍보, 마케팅, 단원관리,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다.(신설)

○ 문구정비

- 예술단 → 도립교향악단
- 챔버오케스트라 → 교향악단
- 상임단원 →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 운영자문회 운영 현실화

- 명 칭 : 운영자문회 → 운영자문위원회
- 회 장 : 문화여성환경국장 → 위원장 단장(행정부지사)
- 부회장 : 예술감독 → 부위원장 문화여성환경국장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7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2	제 안 자	정지숙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유완백,이광진,최병윤)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도모

○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충북체육의 발전과 국제적 지위 고양

2. 주요내용

○ 행·재정적 지원(안 제2조)

○ 공무원의 파견(안 제3조)

○ 유효기간(부칙)

- 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3	제 안 자	장병학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전응천,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안 부칙)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처리결과 (의안번호16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3	제 안 자	임헌경 의원 외 6인 (김도경,김동환,김양희, 김재종,박문희,이광희)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기존 정례회의 회의일수의 부족으로 의안 심의시 촉박함을 해소하고 심도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집회일 재조정(안 제4조제2항)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을 '11월 15일'로 변경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6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3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평생교육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평생교육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 관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6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1. 5.12	제 안 자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회부일자	2011. 5.1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 거주 노인에게 일할 의욕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노인일자리 창출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안 제4조)
○ 노인일자리 창출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노인일자리 보급을 위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 도내 공공·민간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 권장(안 제7조)
○ 노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우선 구매(안 제8조)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 및 비영리단체 예산지원(안 제9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7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5.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5.20	원 안 가 결

제11절 제301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1. 6. 3(공고 제2011-20호)
○ 집 회 일 자 : 2011. 6.14(화) 14시
○ 회　　기 : 2011. 6.14 ~ 6.23(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6.14(화) 14:00	1	1.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박종성 의원, 권기수 의원, 정헌 의원, 정지숙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김종필 의원)
2011. 6.23(목) 14:00	2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6.23(목) 14:00	2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 북부출장소 이전 신축 1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김양희 의원, 장선배 의원, 강현삼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7	14	1	-	1	1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 6.14(화) 14:01 ~ 14:07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4시간 27분	
1차(6.14)	14:07 - 17:24	3시간 17분
2차(6.23)	14:00 - 15:10	1시간 10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4	1	97%
2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 6.14 11:00	1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011. 6.23 11:00	2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책복지위원회	2011. 6.15 10:00	1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충북도립대학
	2011. 6.16 09:30	2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1.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행정문화위원회	2011. 6.16 10:00	1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여성환경국 2.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여성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나. 행정국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변경계획안 ·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신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주요시설 건립부지 취득 · 북부출장소 이전 신축 6-1.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다. 공보관 라. 자치연수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1. 6.15 10:00	1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2011. 6.16 10:00	2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정국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1. 6.15 10:35	1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6.16 10:30	2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소방본부 2.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수 조정의 건
교육위원회	2011. 6.17 10:30	1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6.21 10:00	1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일자	2011. 5. 2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5. 4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과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 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절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안 제4조)
○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제출 절차(안 제5조, 제6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안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에 대한 교육(안 제15조)

3. 수정 주요골자

○ 주요 수정내용
- 제2조 '주민의 의견제출' 조항 신설
- 위원회의 기능에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추가
- 위원수를 60명으로 증원하고 5분의 1 이상을 공모제를 통해 위촉토록 하며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
- 협의회 및 연구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
-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나누어 6개로 재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5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수 정 가 결

2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5.20	제 안 자	황규철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정헌)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안 제3조)

○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안 제4조, 안 제5조)

○ 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안 제6조, 안 제7조)

○ 식생활교육의 지원(안 제10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7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2	제 안 자	이광진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제3조제5항, 제4조제2항 신설)

○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1 신설)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제5조제2항제1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인 ⇒ 명, 잔임 기간 ⇒ 남은 기간, 통할 ⇒ 총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7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김양희,박종성,유완백, 이광진,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6. 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 지원을 통하여 충청북도 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과 도서관 시책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며,

○ 이에 따라 도서관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대표도서관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충청북도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대표도서관의 책무, 설치, 소관업무 및 자료제출(안 제4조 ~ 제7조)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임기 (안 제9조 ~ 제10조)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11조)

○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7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정지숙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유완백,임헌경,최병윤)
회부일자	2011. 6. 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05년에 제정된「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충청북도 여성들의 발전에 기여하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 현상, 일·가정 양립 환경의 변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조례명을「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성주류화 패러다임을 반영하게 함.

○ 총칙을 보강하여 조례의 지향점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명의 변경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함.

○ 정의의 추가와 보완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살림.

○ 총칙의 보완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여 평등한 가족형성을 꾀하고, 제5조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의를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새롭게 정의하고,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여성정책 기본조례로서 성격을 분명히 함.

○ 성인지예산 제도의 적용

성차별의 개선을 위해「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조문을 추가함.

○ 직제개편에 따른 여성정책 주관 부서 명칭의 변경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과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7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도청을 찾는 민원인·방문객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및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징수된 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 중 “09:00~20:00”을 “08:00~20:00”으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제7호 중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를 “인정하는 각종 공공행사”로, “방문차량으로 사전 통보된 차량”을 “방문차량”으로 한다.
- 안 [별표] 주차장 이용안내판 중 “09:00~20:00”을 “08:00~20:00”으로 한다.

처리결과 (의안번호17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수 정 가 결

7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일부개정(2011. 2. 9)되어 국외숙박비 지급·정산에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외숙박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마련(안 제5조제1호)

- 현 정액지급 ⇒ 신용카드 사용 후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

※ 단, 카드사용이 어려운 국가는 현금을 선 지급 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8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징수하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말, 사슴 및 가축이외 동물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 급식용 축산물 등 검사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축검사 수수료(별표) 인상
- 소 : 1,200원 → 3,000원
- 돼지 (양, 염소 포함) : 400원 → 1,000원

○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
- 말, 사슴 : 3,000원
- 가축이외의 동물 : 1,000원

○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안 제6조)
- 도내 소재한 보육시설, 유치원 등의 명의로 급식용 축산물의 검사의뢰 시 : 50% 감면
- 축산물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 30% 감면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8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이관·조정에 관한 관계부처 합의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이 정비되었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중 자금의 융자 및 지원조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융자금 및 보조조건(안 제5조제3항)

- 이율을 정하는 부처장관 변경(행정자치부→농림식품수산부)
- 상환방법의 변경(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8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무분별한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에 의해 산불 오인출동이 급증함에 따라 출동소방력 저하가 심각히 우려됨.

○ 전체 산불의 26%가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부주의에 의해 발생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 제1항 각 호에 신고의무를 명문화 하여 산불 발생 원인인자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불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하의 논·밭두렁"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8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 6. 8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내용을 조정 및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의 중복된 사항 삭제

- 근무기강 확립, 복장 등,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겸직허가 등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5조제5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조정 및 추가(제18조제6항, 부칙, 별표 5)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특별휴가의 한시적 적용 특례 마련
-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사항 추가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6조제3항 중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을 “지참”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8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17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수 정 가 결

1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15	제 안 자	김재종 의원 외 6인 (김동환,김영주,박문희, 이광희,장병학,정헌)
회부일자	2011. 6.17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 보고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를 신설(안 제1조의2)

○ 폐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의회 보고 단서 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제3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처리결과 (의안번호18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2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15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김동환,김재종,박문희, 이광희,장병학,정헌)
회부일자	2011. 6.17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 도지사를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도지사를 법률에 의한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삭제한 것이므로

○ 교육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을 도지사와 같이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계공무원의 범위 일부 삭제(안 제2조)

-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교육감”을 삭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8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6.2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6.23	원 안 가 결

제12절 제302회 정례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충청북도의회 의장
○ 집회공고일 : 2011. 7. 1(공고 제2011-23호)
○ 집 회 일 자 : 2011. 7.11(월) 14시
○ 회　　기 : 2011. 7.11 ~ 7.22(12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7.11(월) 14:00	1	1.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3. 2011년도 상반기 도교육청 교육시책 보고 4.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하재성 의원, 김동환 의원, 전응천 의원, 이광진 의원)
2011. 7.22(금) 14:00	2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7.22(금) 14:00	2	9.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황규철 의원, 김재종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6	10	2	1	1	2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 7.11(월)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2시간 36분	
1차(7.11)	14:10 - 15:52	1시간 42분
2차(7.22)	13:59 - 14:53	54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 7.11 11:00	1	1. 2011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11. 7.22 11:00	2	1.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1. 7.13 10:00	1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2011. 7.14 10:00	2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 나. 충북도립대학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정책관리실
	2011. 7.15 10:00	3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나. 충북발전연구원 다. 충북학사 라. 보건복지국
	2011. 7.18 10:00	4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청주의료원 나. 충주의료원 다. 충북인재양성재단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11. 7.13 10:00	1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 나. 행정국 다. 자치연수원 라. 문화여성환경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여성환경국
	2011. 7.14 10: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다. 행정국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7.15 13:30	3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나. 문화여성환경국 2.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1. 7.13 10: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농업기술원 나. 경제통상국 2.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 7.14 10:00	2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2011. 7.15 10:00	3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라. 충북테크노파크
	2011. 7.18 10:00	4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나. 농정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나. 농정국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나. 농정국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다. 농업기술원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다.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2011. 7.12 11:00	1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발전국
	2011. 7.14 11:00	2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균형건설국 나. 소방본부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균형건설국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소방본부 4.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 7.15 10:00	3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충북개발공사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교육위원회	2011. 7.14 10:30	1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장연초 광진폐교 토지 처분 · 장연초 광진폐교 건물 처분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 7.18 10:00	2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지역교육청 · 청주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011. 7.21 10:00	3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단재교육연수원 나. 충청북도교육청 · 감사담당관, 교육국, 기획관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7.11 14:00	1	1.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11. 7.19 10:00	2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 7.20 10:00	3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1. 6. 3	제 안 자	임헌경 의원 외 12인 (권기수,김동환,김양희,김영주, 김재종,박종성,유완백,이광진, 이수완,임현,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6. 9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라 도서관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고,

○ 소규모의 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 작은도서관의 기능(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예산의 지원(안 제6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7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2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3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조제7호)

○ 진흥원 업무와 예산·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할 수 있는 업무기능을 추가(안 제8조제2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9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3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함께하는 충북」실현을 위하여 남부출장소를 설치코자 함.

2. 주요내용

○ 남부출장소 설치

- 시행시기 : 2012. 1. 1.
- 관할구역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담당사무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 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9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3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2조)

- 감면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
  -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감면내용 : 취득세 감면
- 감면기간 : 2011.12.31일까지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21조의 2)

- 감면대상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세목
- 감면범위
  - ·자동이체 신청시 : 건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 건당 300원
- 감면기간 : 2011.12.31일까지

○ 사치성재산 인용조항 정비(안 제23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9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6.3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검사 수수료 반환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반환 금지 문구 삭제 (안 제3조제4항)

○ 수수료 반환 조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 시험용 검체 소요량 중 중복문구 등 수정(별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9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8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7. 1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김양희,노광기,박종성, 유완백,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청남대는 도소속 기관임에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청남대 관광활성화 자문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 승용차 입장 실시, 야간개장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 운영위원회 삭제(안 제2조) :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안 제3조)

- 매표시간 : 08:30분부터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
- 관람시간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 가능

○ 무료입장권(안 제4조제4항) : 지역상가 15만원 구입시 무료입장권 2매 → 10만원 구입시

○ 사용료 반환(안 제10조)

- 사용개시일 전 : 10%를 공제한 잔액
-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 공제 후 잔액
- 사용일 이후 : 반환신청 불가

○ 관람료 징수(안 제12조) : 공연,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

○ 주차료 징수(안 제13조)

구분		당일(1회당 요금)
16인승 이상 승합차		3,000
15인승 이하 승합차		2,000
승용차		2,000
1,000cc 미만 경차		1,000
화물차	1톤초과	3,000
	1톤이하	2,000

○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 주차장 운영관리 신설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

처 리 결 과 (의안번호19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7. 1	제 안 자	박상필 의원 외 6인 (이광희,장병학,전응천,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2009년에 개정된「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평생교육수요자 수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기능과 지정 및 지정절차를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 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0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7. 4	제 안 자	임헌경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광진,이수완,임현)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방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리 (안 제1조)

1) 도로법 제43조 → 도로법 제41조

2) 위임 근거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추가

○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조항 정리 (안 제2조, 제3조)

○ 점용료조정산식은「도로법 시행령」제44조의 점용료조정산식을 적용 (안 제4조)

○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 (현행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0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1. 7. 5	제 안 자	김도경 의원 외 6인 (강현삼,김광수,노광기, 손문규,심기보,장선배)
회부일자	2011. 7. 7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법」등 관계법령에서 일부를 지원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4조)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돌봄, 인식개선, 교육, 사례관리, 상담지원, 역량강화 등

○ 장애인가족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문기구 활용 규정(안 제6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0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8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7.11	제 안 자	박문희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1. 7.13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됨으로써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문 신설(안 제5조)

○ 사회적기업 등, 연계기업에 대한 도세감면 조문 신설(안 제9조)

○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등)

처리결과 (의안번호20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7.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7.22	원 안 가 결

제13절 제303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1. 9. 9(공고 제2011-30호)
○ 집 회 일 자 : 2011. 9.20(화) 14시
○ 회　　기 : 2011. 9.20 ~ 9.30(11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9.20(화) 14:00	1	1.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질문의 건 o 이수완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박문희 의원, 하재성 의원, 장병학 의원, 정지숙 의원)
2011. 9.30(금) 14:00	2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 9.30(금) 14:00	2	9.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14.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15.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o 5분자유발언(윤성옥 의원, 김영주 의원, 김봉회 의원, 김양희 의원, 심기보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9	14	1	1	1	2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 9.20(화)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3시간 9분	
1차(9.20)	14:10 - 15:58	1시간 48분
2차(9.30)	14:01 - 15:22	1시간 21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5	-	100%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 9.20 11:00	1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 9.30 13:00	2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2011. 9.21 10:00	1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충북도립대학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정책관리실
행정문화위원회	2011. 9.26 10:30	1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나. 문화여성환경국 다.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 위 원 회	2011. 9.21 10:00	1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건설소방 위 원 회	2011. 9.21 10:00	1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2.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3. 첨단의료복합단지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
	2011. 9.22 10:00	2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소방본부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 육 위 원 회	2011. 9.21 14:00	1	1.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 9.30 11:30	2	1. 충북대학교에 대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2011. 9.28 10:00	1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8	제 안 자	권기수 의원 외 6인 (김동환,김재종,이광진,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1. 9. 9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옥의 정의 및 적용대상 (안 제2조, 제3조)

○ 한옥마을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안 5조, 제6조)

○ 한옥의 등록 (안 제14조)

○ 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안 제17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0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장병학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전응천,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 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독서활동지도(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연구비 지원 및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안 제7조)

○ 독서행사 실시 및 독서지도 유공자 표창(안 제8조)

○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안 제9조)

○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안 제10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0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하재성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장병학, 전응천,최미애,최진섭)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의 연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민이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정함(안 제2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0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전응천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장병학,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보조금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기관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 이의신청” 등의 조문 신설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에는 기관카드 사용을 명문화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안 제8조의2)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안 제18조의2)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1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박상필 의원 외 6인 (이광희,장병학,전응천,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

○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실용적인 평생교육실시

○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게 하여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및 지원(안 제2조)

○ 수요자 관점의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안 제3조)

○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학교의 중심 역할 명시(안 제4조제1항)

○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의무사항 명시(안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안 제5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1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유완백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이광진,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제10559호, 2011. 4. 5) 및 동법 시행령 개정(제22780호, 2011. 3.30)에 따라 과거 조례에 위임하여 정했던 과태료 경감 사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의 근거를 상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1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김양희,박종성,유완백, 장병학,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북문화재단의 재산(기금)으로 전액 출연하는 등 충청북도 문화예술정책 변화에 따라 기금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명칭 변경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 조항의 폐지

○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기금의 설치·관리·경과조치 명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1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8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김양희,박종성,유완백, 정지숙,최병윤,최진섭)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 충북문화재단 재산으로서 기금의 성격과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산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의 추가

-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

○ 제4조 신설

- 제4조에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처리결과 (의안번호21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이광희 의원 외 6인 (김도경,김양희,노광기, 박문희,장병학,정헌)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기 중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11. 7.14.)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10일→14일)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 120일 이내 ⇒ 130일 이내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6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 50일 이내 ⇒ 60일 이내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1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함께 하는 충북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추천 범위를 확대 운영하며

○ 시상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의 삭제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5년이상 도내 거주자 또는 직장근무자에서 타 시도 거주 충북출신인 자까지로 확대(안 제2조)

○ 도민대상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안 제3조)

○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으로 확대(안 제8조)

○ 시상시기 조정(안 제10조)

3. 주요 수정골자

○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회
  2. 문화체육
  3. 산업경제
  4. 선행봉사

- 제9조에 단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2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6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수 정 가 결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서울사무소” 설치

○ 소관사무의 총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소장을 둠

○ 국회·정당,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 소관사무 수행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2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 9.1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리 참석공무원 의결권 부여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현실화 및 상향조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치되게 조정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신설 및 조정

○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조정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2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2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 9.23	제 안 자	김재종 의원 외 6인 (김도경,김동환,노광기, 박문희,이광희,정헌)
회부일자	2011. 9.26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11. 7.14.)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감사기간 연장(안 제2조제2항)
- 10일 이내 ⇒ 14일 이내로 개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증언 또는 선서거부

○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정비
- 이유 → 사유(안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처리결과 (의안번호22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 9.3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 9.30	원 안 가 결

제14절 제304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1.10.11(공고 제2011-32호)
○ 집 회 일 자 : 2011.10.19(수) 14시
○ 회　　기 : 2011.10.19 ~ 10.27(9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10.19(수) 14:00	1	1.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정질문의 건(김종필 의원, 장선배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2011.10.27(목) 14:00	2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취득 ·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10.27(목) 14:00	2	7.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이광진 의원, 김종필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3	7	-	1	3	2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10.19(수)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2시간 32분	
1차(10.19)	14:09 - 15:53	1시간 44분
2차(10.27)	14:04 - 14:52	4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4	1	97%
2차 본회의	35	31	4	88%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10.19 13:00	1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동의의 건
	2011.10.27 13:00	2	1.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1.10.24 10:00	1	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1.10.26 15:30	1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취득 ·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2-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1.10.24 14:00	1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불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1.10.25 11:00	1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교육위원회	2011.10.24 10:00	1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3.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외천초등학교 유휴임야 처분 · 부강초등학교 유휴재산 처분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0.26 15:30	1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세계 수집명품 박물관 건립 ·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 충주의료원 임직원 기숙사 신축 ·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부지취득 · 육종시험포장 부지취득 2-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0. 7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10.13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꿔 도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정함(안 제2조)

○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의2신설)

-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도록 함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설문조사, 총학생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 구성 시 일반학부모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된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바꿔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2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0.2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0.27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0.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0.13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관리범위 확대 및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심의·관리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 건당 5천만원이상 → 금액불문 모든 정책연구용역으로 확대

○ 위원회 운영 중 회의소집 통지 기간 단축 (안 제7조)
- 회의소집 통지일 15일전 → 7일전으로 단축

○ 용역실명제 명문화 (안 제9조)
- 용역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용역실명제 운영

○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용역담당관 →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으로 개정

3. 수정 주요골자

○ 안 제9조(용역실명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② 제1항의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3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0.24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10.27	수 정 가 결

3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0.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0.13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비용추계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 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3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0.24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10.27	수 정 가 결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0.1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0.13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국회·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사무소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924명 → 2,928명(+4)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 반 직 : 1,077명 → 1,099명(+22)
  - ·일반직 4급 : 58명 → 59명(+1)
  - ·일반직 5급이하 : 1,009명 → 1,030명(+21)
- 기 능 직 : 239명 → 221명(△18)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3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0.2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0.27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0.11	제 안 자	정 헌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황규철)
회부일자	2011.10.13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안 제2조)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안 제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 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각 한다.
- 제2조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이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고충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 제16조제3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지원정보 시스템 『e-기업사랑센터』 운영

4. 기업애로 통합 온라인시스템『기업SOS』운영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3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0.2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0.27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0.11	제 안 자	황규철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정헌)
회부일자	2011.10.13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의를 개정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안 제1조, 안 제8조)

-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 제8조제6항 중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를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3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0.2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0.27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0.11	제 안 자	김희수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1.10.13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우리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조직)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안 제18조)

- 제18조제3항 중 “원예생명연구과장”을 “작물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험연구부장”을 “연구개발부장”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3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0.2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0.27	원 안 가 결

제15절 제305회 정례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충청북도의회 의장
○ 집회공고일 : 2011.11.10(공고 제2011-37호)
○ 집 회 일 자 : 2011.11.15(화) 10시 30분
○ 회　　기 : 2011.11.15 ~ 12.23(39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11.15(화) 10:30	1	1.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1~2015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도정질문의 건(김양희 의원) 8.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김재종 의원, 박문희 의원)
2011.12.16(금) 15:00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전응천 의원, 김양희 의원, 김도경 의원)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1.12.23(금) 11:00	3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12.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13.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21.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36	22	4	-	5	5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1.11.15(화) 10:43 ~ 10:51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4시간 4분	
1차(11.15)	10:51 - 12:45	1시간 54분
2차(12.16)	15:02 - 16:07	1시간 5분
3차(12.23)	11:02 - 12:07	1시간 5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4	1	97%
3차 본회의	35	33	2	94%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11.15 09:30	1	1.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1.11.29 14:00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11.12.16 14:00	3	1. 2012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011.12.23 10:30	4	1.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1.11.16 18:16	1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11.12. 5 10:00	2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정책관리실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정책관리실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정책관리실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정책관리실
	2011.12. 6 10:00	3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4.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2011.12.20 10:30	4	1.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1.12. 5 10:30	1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나. 자치연수원
	2011.12. 6 10:00	2	1. 2011~2015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행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2011.12. 7 10:30	3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문화여성환경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문화여성환경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여성환경국
	2011.12.19 10:30	4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 및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6.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7.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나. 공보관 다. 문화여성환경국 9.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1.12. 1 10:00	1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산업경제위원회	2011.12. 2 10:00	2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농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2011.12. 5 10:00	3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원
	2011.12. 7 10:00	4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농정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4.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5.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11.12.19 10:00	5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11.12. 1 10:00	1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건설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균형건설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균형건설국
	2011.12. 2 10:00	2	1. 2011~2015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소방본부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소방본부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건설소방위원회	2011.12.19 10:30	3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균형건설국 나. 바이오밸리추진단 3.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7.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교육위원회	2011.12. 1 10:30	1	1. 2014년도 진천·음성혁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 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 · 가칭)본성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 가칭)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2011.12. 6 10:30	2	1.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12. 7 10:30	3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12.19 10:30	4	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 9 10:00	1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의회사무처, 감사관, 정책관리실,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10:00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나.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나.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나.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2011.12.13 10:00	3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농정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업기술원 나.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가. 농정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업기술원 나.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업기술원 나.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2011.12.15 10:00	4	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12.21 10:30	5	1. 201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12.22 10:30	6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1.10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로명 주소가 확정고시('11. 7.29.)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조례 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 제1조(「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북 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로 한다.
- 제2조(「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6번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7(지북동)"로 한다.
- 제3조(「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를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317번길 59-9(방서동)"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013-19"로 한다.
- 제4조(「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충주시 호암동 산 751-7번지"를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7(호암동)"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번지"를 "청주시 상당구 토성로 21(사천동)"로 한다.
- 제5조(「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를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복대동)”로 한다.

- 제6조(「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58번지”를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2(사직동)”로 한다.
- 제7조(「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10(미평동)”으로 한다.
- 제8조(「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번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사직동)”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655번지”를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34(문화동)”로 한다.
- 제9조(「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69(사직동)”로 한다.
- 제10조(「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1-3번지”를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수목원길 51”로 한다.
- 제11조(「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0번지”를 “청원군 미원면 수목원길 51”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4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1.10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대한 자체 일제정비계획('11. 7.14.)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문정비가 필요함에도 개정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함으로써 현실과 불부합하게 된 조례의 조문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례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령 및 조문, 조직 명칭 등 상위법령 등과 상이한 사항에 대한 일괄개정

-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33개 조례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을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 안 제1조를 삭제한다.
-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4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20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수 정 가 결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1.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여성정책관, 복지분야 기능 강화, 도정 분야별 현안추진을 위한 팀 신설, 명칭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구조정≫ 1실 6국 1단 1본부 → 변동 없음

○ 명칭변경 (안 제5조)

‣정책관리실 → 기획조정실 ‣문화여성환경국 → 문화관광환경국

○ 이관조정 :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 → 여성정책관

-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실·국 분장사무 조정 ≫

○ 신설(경제통상국) :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일부삭제(문화여성환경국) (안 제11조)

- 여성기획, 권익증진, 가족지원,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사항

≪ 사업소 분장사무 조정 ≫

○ 신설(여성발전센터)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2조)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한다.
- 안 제6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 안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고, 제3조제2항 내지 제13항, 제17항, 제18항, 제29항, 제30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4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수 정 가 결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1.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도정비전과 연계된 팀 신설, 여성부서, 복지 분야의 인력보강,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928명 → 2,964명 (증36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34명 → 1,470명 (증36명)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총 계	2,928명	→	2,964명	(증 36명)
‣ 일반직	1,099명	→	1,135명	(증 36명)
- 2~3급	1명		1명	(변동없음)
- 3급	8명	→	8명	(변동없음)
- 3~4급	1명		1명	(변동없음)
- 4급	59명	→	60명	(증 1명)
- 5급 이하	1,030명	→	1,065명	(증 35명)

※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기능직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4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1.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위임 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개정

○ 남부출장소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5조)

◈ 별표개정

○ 권한위임 사무 신설 : 1건 <별표 4>

-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권 (총무과)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2건 <별표 1>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변경(관광항공과) : 시도 → 시군 (사무이양)
- 삭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균형개발과)
  - 삭도 :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외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 5건 <별표1>

- 근거법령 개정 : 4건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과태료 부과 징수 (2건)
  -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및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2건)
  - ※ 자동차저당법(폐지), 건설기계저당법(폐지)→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 부서명칭 변경 : 1건
  -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4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 9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1.10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30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 확대

-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3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 (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4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23	제 안 자	황규철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욱,정헌)
회부일자	2011.11.28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범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 수수료 징수 규정 명기(안 제11조제4항)

-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험등의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안 제12조)

-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처리결과 (의안번호25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25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1.11.28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 또한, 조례의 각 조문 중 어려운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수(數) 확대 및 임시 위원 위촉사항 신설 (안 제5조, 제8조)

- 20명 → 30명

○ 도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시책 수립 및 시행 규정마련 (안 제19조)

○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영향검토 구역) 조항 조정 및 신설 (안 제49조)

- 국가지정문화재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지역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
- 도지정문화재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지역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미터 이내로 축소 조정
- 영향검토지역내 인허가 신청시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현지조사 실시 조항 신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5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1.30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회부일자	-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중 제4조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어,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되,「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6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5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1.3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16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2	제 안 자	임현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광진,이수완,임헌경)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정의 (안 제2조)
○ 도지사, 도민의 책무 등 (안 제3조,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6조)
○ 전담부서, 자전거도로의 설치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5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2	제 안 자	임헌경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광진,이수완,임현)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의 사업계획 수립시 창의성과 예술성, 미적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본원칙, 대상기관,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시범사업 시행 및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처리결과 (의안번호25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2	제 안 자	이수완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광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 충청북도 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한 대행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처리결과 (의안번호26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2	제 안 자	권기수 의원 외 6인 (김동환,김재종,이광진,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09. 2. 6, '09. 8.1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안 제3조)
○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 (안 제4조)
○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안 제7조)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안 제20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기금 적립 (안 제32조)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안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6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4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7	제 안 자	장선배 의원 외 6인 (강현삼,김광수,김도경, 노광기,손문규,심기보)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열린감사 실현과 도와 시·군정의 감사기능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능률 제고를 위해 제정된 조례를 공정성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 구성 및 자격 등(안 제3조)

- 도민감사관의 시장·군수 추천내용 삭제
- 도민감사관 자격에 해당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

○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관련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척 및 회피(안 제5조의2)

○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범위 확대 (안 제7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6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5 충청북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7	제 안 자	심기보 의원 외 6인 (강현삼,김광수,김도경, 노광기,손문규,장선배)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붐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장기등 기증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충청북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 (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 운영(안 제10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6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2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8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2012학년도 학교신설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의 명칭 변경,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소규모 학교 폐지와 단설유치원 신설(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를 반영하고, 학교 설립 위치를「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4개원 및 고등학교 1개교 신설

가) 유치원

명 칭	주 소	개교년월일	설 립 사 유
창신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09번길 44	2012. 3. 1.	창신초병설유치원의 단설 전환
옥산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옥산시내1길 19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옥산초병설유 + 옥산초소로분교병설유)
오송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3로 101	2012. 3. 1.	만수초병설유치원의 단설 전환
금왕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76번길 30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무극초병설유 + 용천초병설유)

나) 고등학교

명 칭	주 소	개교년월일	설 립 사 유
오송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3로 95	2012. 3. 1.	오송생명과학단지 유입학생 수용

2) 특성화 고등학교 교명 변경

가) 고등학교

변경전 명 칭	변경후 명 칭	주 소	변경년월일	변경사유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4길 13	2012. 3. 1.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3) 단설유치원 전환과 원아 수 감소에 의한 병설유치원 7개원 폐지 및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초등학교(분교장) 3개교, 중학교 1개교 폐지

가) 유치원

명 칭	주 소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51번지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옥산초병설유+옥산소로분교병설유)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옥산초병설유+옥산소로분교병설유)
이원초등학교 지탄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2012. 3. 1.	이원초병설유치원으로 통합
무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6번지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무극초병설유+용천초병설유)
용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2012. 3. 1.	단설유치원 전환 (무극초병설유+용천초병설유)

나) 초등학교

명 칭	주 소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외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2012. 3. 1.	남이초등학교로 통합
이원초등학교 지탄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2012. 3. 1.	이원초등학교로 통합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94번지	2012. 3. 1.	남신초등학교로 통합

다) 중학교

명 칭	주 소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백곡중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76-1번지	2012. 3. 1.	진천중학교 및 진천여자중학교로 통합

라. 학교 주소 변경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6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7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8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이 2012.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의 주소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으로 함(안 제8조제2항)

나)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의 주소를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주소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렬로 19”로 함(안 제14조제2항)

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주소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287번길 5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59번길 33”으로 각각 함(안 제17조제2항)

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로 각각 함(안 제20조제2항)

바)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리로 536-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26”으로 함(안 제23조제2항)

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로 함(안 제29조제2항)

아)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주소를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로 함(안 제31조의4제2항)

2) 특성화고등학교등 공동실습소,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 및 영어체험센터의 위치를 변경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6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8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8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능직지방공무원 상위직급 확대 및 10급 폐지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용권이 달라 발생되는 기능직지방공무원 승진격차를 해소하는 등 교육장에게 위임된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사무 중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1호자목)

2)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기능직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경징계로 제한함(안 제5조제7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6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19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8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 산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3, 2011.11.17.)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18명에서 1명이 증원된 2,919명으로 함(안 제2조)

가)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 변동 없음

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2,911명 ⇒ 2,912명(증 1명)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관정원 감축 21명(2012. 7. 1 이후 적용)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6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1.12. 8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1.12.1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지에 따라「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 일부 수정

가) 벽지(해당란 삭제)

등급	시·군	구, 읍·면·동, 리	기관명	삭제사유
라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남신초등학교덕생분교장	2012. 3. 1. 남신초등학교로 통합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7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21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제안일자	2011.12.13	제 안 자	최병윤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유완백,이광진,정지숙)
회부일자	2011.12.16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은 충북도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즉, 진정한 지방 분권 참여 자치가 뿌리내리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도민이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충청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민들은 충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권리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방향 수립 및 장기적인 주민참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 도정참여는 도민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도정운영에 도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정책결정의 사후적 참여가 아닌 사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즉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조례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고 이행사항을 1년이 1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함.

○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회의 공개의 원칙 반영

○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있어 운영정례화와 추천공모제 도입, 사회적 약자 참여 확대

○ 예산편성과정의 도민참여

○ 도정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도민정책 토론 청구제도 도입

○ 도민의견 수렴의 다양화를 위해 주요 정책 결정시 도민의견조사 확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7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22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안일자	2011.12.13	제 안 자	최병윤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유완백,이광진,정지숙)
회부일자	2011.12.16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3조)

○ 지원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보고 (안 제4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안 제5조)

○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6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7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1.12.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1.12.23	원 안 가 결

제16절 제306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2. 1. 5(공고 제2012-1호)
○ 집 회 일 자 : 2012. 1.10(화) 14시
○ 회　　기 : 2012. 1.10 ~ 1.19(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1.10(화) 14:00	1	1.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정헌 의원, 박문희 의원)
2012. 1.11(수) 10:00	2	1. 2012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2. 본회의 휴회의 건
2012. 1.19(목) 11:00	3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승격 건의문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이광희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6	3	-	1	1	1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2. 1.10(화) 14:02 ~ 14:10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8시간 8분	
1차(1.10)	14:10 - 15:05	55분
2차(1.11)	10:02 - 16:46	6시간 44분
3차(1.19)	11:02 - 11:31	29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4	1	97%
2차 본회의	35	35	-	100%
3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2. 1.10 11:00	1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2012. 1.19 10:30	2	1.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2. 1.12 10:00	1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관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보건복지국 라. 충북학사 마. 충북발전연구원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정책복지 위 원 회	2012. 1.13 10:00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기획관리실 라. 청주의료원 마. 충주의료원
행정문화 위 원 회	2012. 1.12 10:30	1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행정국 2.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 1.16 10:30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연수원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다. 문화관광환경국
산업경제 위 원 회	2012. 1.12 10:00	1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012. 1.13 10:00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라. 충북테크노파크
건설소방 위 원 회	2012. 1.12 10:00	1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균형건설국 나.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012. 1.13 10:00	2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충북개발공사 다. 소방본부
	2012. 1.19 10:00	3	1.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국도승격 건의안 채택의 건
교 육 위 원 회	2012. 1.17 10:30	1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청풍초등학교 양평폐교 처분 2.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1.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1. 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11.12.30「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으로 규정된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2011.12.31로 만료되는「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연장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2011.12.31 → 2012.12.31)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취득세 면제)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취득세 경감)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7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1.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1.19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일자	2012. 1. 3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1. 4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도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7조)

○ 위촉위원의 임기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7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1.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1.19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1. 3	제 안 자	정지숙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유완백,이수완,최병윤)
회부일자	2012. 1. 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 도지사는 병역명문가가 청남대 등 도산하기관 시설에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해 주도록 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7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1.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1.19	원 안 가 결

제17절 제307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2. 2.24(공고 제2012-08호)
○ 집 회 일 자 : 2012. 3. 2(금) 14시
○ 회　　기 : 2012. 3. 2 ~ 3.12(11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3. 2(금) 14:00	1	1.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정질문의 건(김양희 의원, 김동환 의원) 4.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박문희 의원, 임헌경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2012. 3.12(월) 11:00	2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6.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3.12(월) 11:00	2	9.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4.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6	11	-	2	1	2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2. 3. 2(금) 14:01 ~ 14:10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2시간 29분	
1차(3. 2)	14:10 - 15:55	1시간 45분
2차(3.12)	11:02 - 11:46	44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원회	2012. 3. 2 13:30	1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3.12 10:20	2	1.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책복지 위원회	2012. 3. 5 10:30	1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행정문화 위원회	2012. 3. 6 10:30	1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충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 매각 2.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3.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 위원회	2012. 3. 2 13:20	1	1.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012. 3. 5 11:00	2	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교 육 위원회	2012. 3. 7 10:00	1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지역교육청 ·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3. 8 10:30	2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충주학생회관

1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1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상위법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 규정이 삭제(법률 제9843호, 2009.12.29)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8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1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3782(2011.10.28)호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의 추가위촉 민간위원 참여 확대 (안 제2조)

- 전체 위원수 9명 → 11명(민간위원 5명 → 7명)

○ 심사기준 신설 (안 제4조)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 안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
2.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3.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8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5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수 정 가 결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3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및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본청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고자「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함(안 제31조의7)

○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31조의8)

○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안 제31조의9)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8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3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격교습학원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1항)

○ 시행령의 교습과정 분류에 따른 조정과 국토개발, 조경,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신설(안 제2조의4 별표 1, 별표 2)

○ 지하실의 학원시설사용에 대한 규정 조문 변경(안 제2조의4 → 제2조의2)

○ 학원시설의 규제조항 삭제(안 제2조의4제5호)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교습 제한에 따른 예외(방학 중 허용) 문구 삽입(안 제2조의5제1항)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규정 삭제(안 제2조의6)

○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교습대상 확대(안 제2조의4제1항 별표 1)

○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안 신설(안 제2조의6)

○ 독서실 출입금지(24:00~04:00)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교습의 서면 중지명령 조항 삭제(안 제9조의2)

○ 종전의 우수학원 지정·육성을 교습소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을 적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8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5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3	제 안 자	이수완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광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법인 정관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재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을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법인명칭 변경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출방법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

처리결과 (의안번호28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3	제 안 자	이광진 의원 외 6인 (권기수,김동환,김재종,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명칭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변경하여

○ 생명산업의 중심인 '오송'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변경(안 제1조 등)

○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8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3	제 안 자	이광희 의원 외 6인 (김도경,김영주,김재종, 노광기,박문희,장병학)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제1항)

- 7월 10일 ⇒ 7월 1일

○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2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제2항)

- 11월 15일 ⇒ 11월 12일

○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제3항)

처리결과 (의안번호29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3	제 안 자	박종성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유완백, 이광진,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공사감독공무원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업체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도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과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도지사는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9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3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김양희,박종성,심기보, 유완백,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2. 2.24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는 체력측정을 통한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도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1999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수탁기관인 충청학원으로부터 위탁운영기간 만료('11.12.31)에 따른 협약해지를 요청함.

○ 체력측정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건강측정의 신뢰도 저하, 장비개선 및 시설확보 예산과다 소요(10억원, 연 운영비 4억원),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과의 차별화 곤란, 적정 수탁단체 선정 어려움 등으로 센터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처리결과 (의안번호29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6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9	제 안 자	김광수 의원 외 6인 (강현삼,김도경,노광기, 손문규,심기보,장선배)
회부일자	2012. 2.29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 위촉 근거조항 삭제(안 제5조 제2항)
- 보육시설연합회장, 보육정보센터장, 담당과장, 도의원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책위원회 업무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

○ 도지사의 취약보육 활성화 의무 부여 조항 신설(안 제20조)

○ 관련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제26조)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교직원”
-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29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2.29	제 안 자	김동환 의원 외 6인 (권기수,김재종,이광진,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2. 2.29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 역할을 대행하던 지역 발전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폐지됨에 따라

○ 그 기능을 수행할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심의·자문 기관 변경 (안 제4조제4항)

-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폐지) ⇒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제14조 중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처리결과 (의안번호29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3. 5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3.12	원 안 가 결

제18절 제308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2인
○ 집회공고일 : 2012. 4.10(공고 제2012-14호)
○ 집 회 일 자 : 2012. 4.16(월) 14시
○ 회　　기 : 2012. 4.16 ~ 4.25(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4.16(월) 14:00	1	1.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정질문의 건(이광진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재종 의원) 4. 본회의 휴회의 건
2012. 4.25(수) 11:00	2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4.25(수) 11:00	2	1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5.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박상필 의원, 권기수 의원, 이광희 의원, 임헌경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7	13	-	-	2	2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2. 4.16(월)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2시간 12분	
1차(4.16)	14:09 - 15:17	1시간 8분
2차(4.25)	11:09 - 12:13	1시간 4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3	2	94%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2. 4.16 11:00	1	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12. 4.25 09:30	2	1. 제3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2. 4.17 10:30	1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행정문화위원회	2012. 4.18 14:00	1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9인 발의) 6.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8인 발의) 7.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
산업경제위원회	2012. 4.18 09:30	1	1.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12. 4.17 16:30	1	1.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원회	2012. 4.17 10:30	1	1.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안(계속)

1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서민생활 불편,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신고포상금을 현금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지급하여 소방안전망 확보에 기여

2. 주요내용

○ 신고대상 시설을 나열식으로 명문화(안 제3조)

-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

○ 현재의 신고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9조)

○ 1인 월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9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행정용어 순화 및 금지 규정 완화와 중복 문구 등의 정리로 긍정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시험종별에 따른 처리기간과 검체소요량」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시험·검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행정용어 순화

○ “단속” → “점검”으로 개정 (안 제5조제1호)

○ “지도·단속” → “지도·점검”으로 개정 (안 제5조제3호)

2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규정 완화 (안 제8조)

변 경 전	⇨	변 경 후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		① 시험결과에 대하여 광고 또는 표시할 경우 **시험성적서 전문(全文)을 기재** ②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검정완료” 등 **유사문구 기재 불가**

3 법인인 경우 포함 표기 (안 제9조)

- 성명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변경 (별표)

① 단위 통일(표준화) : ℓ → L / cc, ㎖ → mL / M → m

- 국제단위계 기준 약호로 통일

② 문구 삭제

- 먹는물(샘물)검사 처리기간 중 “여니시아균검사28일” 문구 삭제

▸ 12일(여니시아균검사28일) → 12일

↳ 시험법 변경으로 12일내 검사 가능

③ 법령 개정에 따른 검사 명칭 변경

- 공중이용시설 검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④ 세분화 표기 : “임상학적 세균검사”난을 삭제 후 5종류로 세분화

시험종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소요량
레지오넬라균 검사	15일	1.대변 : 5g 이상 2.소변 : 10mL 이상 3.혈액(혈청) : 5mL 이상(1mL이상) 4.환경수계검체 : 1L 이상 5.조리식품 : 검체별 100g 이상 6.식품용수 : 1L 이상 7.호흡기검체 : 바이러스수송배지/무균용기
식중독균 검사	20일	
세포배양 관련 검사	30일	
결핵균 검사	12주	
기타 세균검사	10일	

⑤ 중복자료 통일 : 유통의약품 등 검사 → 의약품 등 검사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5조제1호 중 “점검”을 “단속”으로 하고, 제3호 중 “지도·점검”을 “지도·단속”으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7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수 정 가 결

3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업무가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고

○ 이와 함께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지정 및 취소, 지원 및 육성, 지정 유효기간 사항 일부 자구 수정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신청, 설치확인, 사후관리, 건축비용의 비율, 설치금액 산정 사항 신설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기, 기능, 위원장의 선임, 위원회의 운영 및 소집, 작품의 감정·평가, 위원의 의무, 위원의 해촉, 회의 공개, 간사 및 서기 사항 신설

3. 수정 주요골자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에 관해 애매하게 표현된 조항을 수정(안 제3조)

- “「문화진흥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근거법령에 따라 범위를 설정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지정에 관한 조항 삽입(안 제6조)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 심의위원의 창작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완화(안 제26조)

-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재직기간에 한하여 도내에서의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 ⇒ “심의위원은 재직기간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

○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순화

- 문장 머리에 “도지사는”을 삽입(안 제2조제3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7조제1항~제4항, 안 제1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수정 등 용어 정비

- 지원∨할∨수∨있다. ⇒ 지원할∨수∨있다.
- 회부∨할∨수∨있다. ⇒ 회부할∨수∨있다.
- 위원중에서 ⇒ 위원∨중에서
- 관여∨할∨수∨없다. ⇒ 관여할∨수∨없다.
- 임기중이라도 ⇒ 임기∨중이라도
- 해촉∨할∨수∨있다. ⇒ 해촉할∨수∨있다.
- 위임∨한다. ⇒ 위임한다.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따라
- 수행하는데 ⇒ 수행하는∨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8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수 정 가 결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과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사항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며, 심의회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함(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를 추가함(안 제6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까지로 함(안 제13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관련 지침에 맞게 정비함(안 제41조)

○ 변상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62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5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황규철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정헌)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2001년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기본재산 구성 등 조문을 체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명시(안 제3조)

○ 기본재산 구성을 위한 재원(안 제5조)

○ 사업평가 및 행정지원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8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6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윤성옥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명시함은 물론 기본재산의 조성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기센터의 주요사업 명시(안 제3조)

○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4조)

○ 중기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안 제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8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정헌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윤성옥,하재성)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공공기관 유치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유치 활동 중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조, 안 제38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2조)

○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명칭 변경(안 제4조)

○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37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8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박상필 의원 외 6인 (이광희,장병학,전응천,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2009년에 개정된「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대상 학생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특수한 재능이 있지만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조례의 목적과 특별장학생 요건 간에 불일치한 부분과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확대 및 공정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있어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을 확대하고 선발심의과정 체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를 “입학대상자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특별한 재능이 높은 자, 품행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으로 하여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1조)

○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제2조에 신설 함(안 제2조 4호)

○ 특별장학생 선정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 후,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최종 선정함(안 제4조)

○ 특별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0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6	제 안 자	장병학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전응천,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안전한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의 실시,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둠(안 제6조)

○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 교육감 및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안 제10조)

○ 교육감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을 담은 교재를 마련하고,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1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7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10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9	제 안 자	정지숙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유완백,최병윤,하재성)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근거하여 전문해설 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여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된「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1월 2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고시”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화·관광분야의 전문 해설인력으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

○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선발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 제도의 명확화

○ 관광안내서비스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1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8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 9	제 안 자	김양희 의원 외 6인 (김영주,박종성,유완백, 정지숙,최병윤,황규철)
회부일자	2012. 4.10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00년 제정·운영되고 있는「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 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전문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자본 유치 증진을 통한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 성공 보상금을 도입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조례의 제명

○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자본 유치 증진을 위해 유치 성공 보상금제 도입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1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4.18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대안)

제안일자	2012. 4.18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회부일자	-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2년 3월 12일 최미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제출되어 2012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2년 3월 19일 김양희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제출되어 2012년 3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위의 2건을 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2. 4. 18)상정, 심사한 결과 2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2. 대안의 제안이유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북도의 한부모가족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을 명시함(안 제4조)

○ 3년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공표 의무를 명시함(안 제5조)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7조)

○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8조~제10조)

○ 한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1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1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	-
	본 회 의	2012. 4.25	원 안 가 결

제19절 제309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충청북도지사
○ 집회공고일 : 2012. 4.26(공고 제2012-15호)
○ 집 회 일 자 : 2012. 4.30(월) 11시
○ 회　　기 : 2012. 4.30(1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4.30(월) 11:00	1	1. 제3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	-	-	-	-	1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2. 4.30(월) 11:01 ~ 11:07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8분	
1차(4.30)	11:07 - 11:15	8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3	2	94%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12. 4.30 10:30	1	1. 제3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행정문화 위 원 회	2012. 4.30 10:00	1	1.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제20절 제310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2인
○ 집회공고일 : 2012. 5. 3(공고 제2012-16호)
○ 집 회 일 자 : 2012. 5. 9(수) 14시
○ 회　　기 : 2012. 5. 9 ~ 5.18(10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5. 9(수) 14:00	1	1.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질문의 건(이광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2012. 5.18(금) 11:00	2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13	7	1	-	3	2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2. 5. 9(수)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1시간 25분	
1차(5. 9)	14:09 - 15:01	52분
2차(5.18)	11:00 - 11:33	33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 위 원 회	2012. 5.18 10:30	1	1.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정책복지 위 원 회	2012. 5. 9 17:00	1	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행정문화위원회	2012. 5.11 10:00	1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4-1.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5.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2012. 5.10 10:00	1	1.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12. 5.10 09:00	1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 취득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등 증축(변경) · 미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 속리산중학교 시설확충부지 취득 및 기숙사 증축 · 가칭)본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유치원사 취득 · 가칭)본성초등학교 교사 취득 · 가칭)본성중학교 교사 취득 ·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 처분 4.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5.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5.15 10:00	1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16	제 안 자	장선배 의원 외 6인 (강현삼,김광수,김도경, 노광기,손문규,심기보)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재해구호·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자립장학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현행 조례에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를 대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안 제4조 및 제10조)

- “범위내에서” → “범위에서”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9호 삭제(부칙)

-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중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1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 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3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 5.2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22> 개정에 따라 기능10급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한 9계급 체계로 개편(시행 : 2012. 5.24)

○ 이에 따른 기능10급 폐지를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별표)

- 10급 폐지, 9급 비율 상향 조정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재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조 정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48%이상	
증 감	-	-	-	-	18%	△18%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1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1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원 안 가 결

3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일자	2012. 4.30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북문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북문화관의 활용
- 문화예술작품의 전시,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 등

○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규정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관리 규정 마련

○ 기타 소장품 보관 관리 등

3. 수정 주요골자

○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관의”를 “충북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로 한다.
- 제3조 중 “충북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을 “문화관은”으로 한다.
- 제7조 중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 제15조제2항 중 “상호간 별도의 계약체결내용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따르며,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문화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1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11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수 정 가 결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4.30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학교 관할구역 편입지역 삭제 및 청원군 오송읍 설치로 인한 관할구역 위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지역 삭제(4개 학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부용면 일부지역

명 칭	주 소	삭제년월일	삭제사유
부강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 달미길 6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 지역 삭제
부강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로 25-7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 지역 삭제
부강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로 15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 지역 삭제
부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로 15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 지역 삭제

2) 오송읍 설치에 따른 위치 변경(8개 학교)

○「청원군 오송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치 변경

명 칭	주 소	변경년월일	변경사유
오송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3로 95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오송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2길 13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강외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2길 26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상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상봉길 9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만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2길 11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오송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3로 101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강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2길 26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상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상봉길 9	2012. 7. 1.	오송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위치 변경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2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안일자	2012. 5. 1	제 안 자	유완백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이광진,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정한 도내 거주 장애인을 말함

○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도지사는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

○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인력배치를 하여야 함

○ 도지사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장애인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음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2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1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5. 1	제 안 자	정지숙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박종성, 유완백,이수완,최병윤)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청남대 입장료 면제조문 신설과 중복 면제조항 정리 및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관람객 유치 지원을 위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4조제2항제5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제1항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4조제2항제6호)
-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
  → 「충청북도 명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안 제4조제2항제6호)

○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안 제4조제2항제10호)

○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할 때 : 2천원 할인(단, 단체입장 어린이 및 노인은 1천원 할인)
→ (안 제4조제3항제3호 신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2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11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5. 1	제 안 자	김희수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각종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센터의 기능 조항 신설(안 제3조의1)

-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안 제6조제3항제7호)

- 제6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처리결과 (의안번호32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원 안 가 결

8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5. 1	제 안 자	김종필 의원 외 6인 (김봉회,김희수,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2. 5. 2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충북테크노파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의 조성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 명시(안 제3조)

○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4조)

○ 테크노파크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안 제7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2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5.10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5.18	원 안 가 결

제21절 제311회 임시회

1. 집회공고 및 개회

○ 집회요구자 : 박문희 의원 외 11인
○ 집회공고일 : 2012. 6. 7(공고 제2012-27호)
○ 집 회 일 자 : 2012. 6.12(화) 14시
○ 회　　기 : 2012. 6.12 ~ 6.22(11일간)

2. 본회의 활동

1) 주요 처리안건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6.12(화) 14:00	1	1.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질문의 건 (김종필 의원, 윤성옥 의원, 강현삼 의원, 장선배 의원) o 5분자유발언(장병학 의원, 김양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2012. 6.22(금) 11:00	2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2012. 6.22(금) 11:00	2	9.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20.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26.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 27.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28.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문 29.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o 5분자유발언(김희수 의원, 정헌 의원, 이수완 의원, 장선배 의원)

2) 의안처리상황

계	조례·규칙	예산·결산	건의·결의	동의·승인	기 타
31	22	1	3	1	4

3) 회의진행시간

○ 개회식 : 2012. 6.12(화) 14:01 ~ 14:09

구 분	회의시간	소요시간
계(평균)	5시간 10분	
1차(6.12)	14:09 - 17:37	3시간 28분
2차(6.22)	11:04 - 12:46	1시간 42분

※ 회의시간에는 정회시간이 포함됨.

4) 의원출석

차수별	대상인원	참석	불참	출석율(%)
1차 본회의	35	35	-	100%
2차 본회의	35	34	1	97%

3. 위원회 활동

1) 회의상황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의회운영위원회	2012. 6.12 11:00	1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2012. 6.22 10:00	2	1.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석배정 협의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2. 6.13 10:00	1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나. 충북도립대학 다.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정책복지위원회	2012. 6.14 10:00	2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6.20 9:00	3	1.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동의의 건
	2012. 6.22 10:00	4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12. 6.13 13:30	1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나. 여성정책관 다. 행정국 라. 문화관광환경국 마. 자치연수원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3.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2. 6.19 15:00	2	1.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2012. 6.13 10:00	1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5.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위원회별	일 자	차수	심 사 안 건
건설소방 위 원 회	2012. 6.13 10:00	1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소방본부 다.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속철도(KTX)민영화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4.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 육 위 원 회	2012. 6.13 10:30	1	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6.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2012. 6.18 10:00	1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5.29	제 안 자	윤성옥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종필,김희수, 박문희,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조항 신설(안 제2조)

- 제2조를 제2조의1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충청북도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충청북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일부 조문의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 제3조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 제4조 중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하고, “통할”을 “총괄”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3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2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1	제 안 자	강현삼 의원 외 6인 (김광수,김도경,노광기, 손문규,심기보,장선배)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선진복지도 실현

○ 진폐로 추정되는 산재불인정 받고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적극적인 지원대책 추진

2. 주요내용

○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책 추진(안 제3조)

○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경비 지원(안 제5조)

○ 진폐근로자의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3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3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1	제 안 자	김도경 외 6인 (강현삼,김광수,노광기, 손문규,심기보,장선배)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안 제7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안 제8조)
○ 자살통계 분석, 홍보·교육(안 제9조, 제10조)
○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민간단체 지원(안 제12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3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4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1	제 안 자	심기보 외 6인 (강현삼,김광수,김도경, 노광기,손문규,장선배)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기업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보조금 및 행·재정적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우대 풍토 확산

○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도내 기관·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운영 신설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다자녀 우대풍토 확산을 통한 출산 장려 유도(안 제 11조)

-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할인혜택 부여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 수정(안 제12조)

- 출산장려의 날 → 인구의 날

○ 지원대상을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확대(안 제13조)

- 민간단체 → 민간단체 및 기업 등

○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관·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운영(안 제13조의2)

○ 알기 쉬운 법령기준 일부 자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3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5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1	제 안 자	손문규 외 6인 (강현삼,김광수,김도경, 노광기,심기보,장선배)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사업별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금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의 강화를 통해 기금 운용·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사업범위(용도)를 종전 사업비에서 임대료까지 확대

○ 자활공동체 등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한도 상향 조정 및 상환조건 조정

-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한도 : 1억 → 2억
- 전세점포 임대자금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상환 → 최장 6년까지

○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대상가구 및 지원근거 명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명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3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4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6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1	제 안 자	박문희 외 6인 (김동환,김영주,김재종, 노광기,이광희,장병학)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본부장, 담당관, 실·과·팀장급”을 “실·국·단·본부장, 담당관·과장급”으로 개정함. (안 제2조제2호)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3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2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7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

1. 제안이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 장학시설 ‘청람재’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시설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시설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람재의 시설명칭 변경

- ‘청람재’ ⇒ ‘충북학사 청람재’(안 제1~2조)

○ 기타 현실 불부합 조문 정비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8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력충원제도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안 제5조)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

-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
- 직제 및 정원 변경(전보 사유)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 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안 제10조)

-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인력충원제도 개선(안 제11조)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9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충청북도지사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NGO센터 기능 (안 제4조)

○ 위탁 근거 마련 (안 제5조)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 센터의 운영 (안 제6조 ~ 제10조)

○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 (안 제11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0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권기수,김양희,박종성, 유완백,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개정(2012. 2.27)에 따라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협조 및 지원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협조 및 지원(안 제2조제1항)

○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2조제2항의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한 지원을 삭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1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정지숙 의원 외 6인 (김봉회,김양희,김영주, 박종성,유완백,최병윤)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청사부설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문 신설과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조항 신설

-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의 차량
  → 「충청북도 명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
-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5)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2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유완백 의원 외 6인 (김양희,김영주,김재종, 박종성,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주요내용

○ 학교폭력 등 재정의

-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
-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 추가

○ 사업 및 예산지원 구체화 및 학교폭력 관련 사업 근거 제시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3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김동환,김양희,박종성, 유완백,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 및 복무사항 정비하고, 교향악단 공연 관람료의 감면 범위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술감독, 지휘자, 사무국장의 직무 명확화(제3조)

○ 직원의 위촉, 위촉기간, 해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 제9조)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의 수정(제11조)

○ 관람료 감면 대상 추가(제16조)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포함

처리결과 (의안번호34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4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김양희 의원 외 6인 (강현삼,김영주,박종성, 유완백,정지숙,최병윤)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행정문화위원회

1. 제안이유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문장순화와 표현의 명확화(안 제3조, 안 제21조, 안 제32조, 안 제34조, 안 제56조, 안 제23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마련(제38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8)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9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5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장병학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전응천, 최미애,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 교직원으로 함(안 제2조)

○ 상담내용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 사무로 하며, 상담 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고, 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49)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6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최진섭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장병학, 전응천,최미애,하재성)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안 제3조)

1) 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2) 제외대상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주민청구 조례안도 도의회에 부의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함.

○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안 제4조)

1)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 기재

2)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함.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함(안 제5조)

○ 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협의(안 제6조)

1)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 가능하게 함.

2) 비용수반 입안 시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함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50)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7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최미애 의원 외 6인 (박상필,이광희,장병학, 전응천,최진섭,하재성)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내 농·산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와 인구감소 심화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대상은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유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학생수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시설 개선, 학생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농·산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7조)

○ 작은학교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 우선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안 제11조)과 공모제를 통하여 배치된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함을 명시함(안 제12조)

○ 작은학교 교직원의 인사상의 우대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주거 편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직원 우대 사항을 명시함(안 13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51)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8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권기수 의원 외 6인 (김동환,김재종,이광진, 이수완,임헌경,임현)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1. 제안이유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저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 시장·군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시책을 추진(안 제2조)

○ 주택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및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3조)

○ 시장·군수는 주택의 신·개축 등 허가·신고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처리결과 (의안번호352)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19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3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2. 6. 8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교육장에게 기 위임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연계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임(안 제4조)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임(안 제5조제29항 단서)

3.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53)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7. 5	수 정 가 결
	본 회 의	2012. 7.13	수 정 가 결

2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충청북도교육감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1. 제안이유

○ 2012. 7. 1.자로 본청 기구 개편으로 국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2012. 9. 1.자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 신설 예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의 사무를 정함(안 제3조제1항・제2항)

○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학교 교육정책의 개발 조정' 업무를 삭제함(안 제6조제17호)

○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삭제(안 제5조의2, 제7조)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 중 '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제7호・제10호)

○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의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제32조)

○ 현행 조례의 이용과 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조번호(가지조문)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부터 제46조까지)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54)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21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일자	2012. 6. 4	제 안 자	김봉회 의원 외 6인 (김종필,김희수,박문희, 윤성옥,정헌,황규철)
회부일자	2012. 6. 5	소관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

1. 제안이유

○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로컬푸드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3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4조)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56)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2012. 6.13	원 안 가 결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22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자	2012. 6.1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회부일자	-	소관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및 명칭을 개정(안 제3조제2항)

- 여성정책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정책복지위원회로 변경
- 감사관, 충북문화재단(신설) ⇒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지방의료원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으로 명칭 변경

처 리 결 과 (의안번호357)	구 분	처리일자	처리결과
	위 원 회	-	-
	본 회 의	2012. 6.22	원 안 가 결

제3장 도정질문

제 1 절 제295회 임시회(2010.10.)
제 2 절 제296회 정례회(2010.12.)
제 3 절 제297회 임시회(2011. 1.)
제 4 절 제298회 임시회(2011. 3.)
제 5 절 제299회 임시회(2011. 4.)
제 6 절 제300회 임시회(2011. 5.)
제 7 절 제301회 임시회(2011. 6.)
제 8 절 제303회 임시회(2011. 9.)
제 9 절 제304회 임시회(2011.10.)
제 10 절 제305회 정례회(2011.11.)
제 11 절 제307회 임시회(2012. 3.)
제 12 절 제308회 임시회(2012. 4.)
제 13 절 제310회 임시회(2012. 5.)
제 14 절 제311회 임시회(2012. 6.)

제 1 절 제295회 임시회(2010.10.13.~10.20.)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

[질문요지] 1. 실제 MOU를 체결한 외국업체 대부분이 실제 투자자가 아닌 해외 자문 비즈니스 법인임에도 그 내용을 과장되게 언론에 보도하여 도민들이 사실을 오인토록 한 이유는?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MOU를 체결한 기관은 직접투자당사자가 아니며, MOU 당사자들은 오송·오창 등지에 설립된 학교와 병원시설에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는 시설투자자와 프로그램 참여자가 별도로 참여하게 됩니다.

[질문요지] 2. MOU를 체결한 법인체에 제안서 작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데, 보상금을 주고 MOU를 체결해 온 정황에 대한 도의 입장은?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충북도에서 미화 10만불을 갖다가 마이애미대학교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BMC와 마이애미대학교간에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으며, 10만불은 BMC에서 마이애미대학교에 지불하는 것으로 충북도는 직접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요지] 3. 도청 고위직 공무원들은 오송메디컬 그린시티사업이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MOU에 거액을 지불하면서 체결하고 MOU체결 법인체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자문컨설턴트회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용으로 과장되게 발표하면서 도민들을 현혹한 것에 대한 입장은?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오송메디컬 그린시티는 2009년 9월부터 하버드 협력병원체인 PHS와 그다음에 CREC, 그 다음에 마이애미대학과, 그 다음에 에모리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선거용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치한 4개 기관은 컨설턴트기관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요지] 4. 자본금 3억원의 부동산업으로 등록된 BMC가 2010년 4~5월경 주식가치를 33배로 높여 약 100억원으로 주식매각을 시도한 사건과 BMC가 충북도에 보증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설명?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BMC에서 자신의 주식을 33배로 높여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경제 활동이므로 관여할 바가 아니며, 보증을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요지] 5. 충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에 오송메디칼 그린시티사업 SPC에 참여를 해 달라는 공문 보냈다가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유는?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안, 즉 사업구상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들었고, 그 이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질문요지] 1.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관련

[답 변 :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 현재 댐 수위가 139.6m로 시공 가능 수위는 125m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5월경이 돼야만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비는 군에서 376억을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나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써 그 많은 돈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한강 살리기 제16공구 별곡지구 사업관련

〖답 변 :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 한강 살리기 사업 16공구에 대한 사전 설명회는 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충주에서의 설명회는 도에서 추진했으며, 지역별로 한 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 지반고는 현재 141m로 설계가 되어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143m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시 대안을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질문요지〗 1. 고입 연합고사 부활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연합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연합고사 부활로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요지〗 2. 학교 현장이 점수 위주 수업으로 탈바꿈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연합고사는 충북 83개 학교 중에 전문계고, 특목고를 뺀 48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비중도 67%가 내신성적이고 33%가 연합고사를 보게 되는데 연합고사는 그 내신성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 3. 고입 연합고사 부활로 학력 신장효과를 기대한다면 타 시·도에서 그것을 입증할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타 시도의 자료는 나온 것이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성적이 현재 나빠서 연합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와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연합고사를 도입했습니다.

[질문요지] 4. 수십년동안 병폐가 지적 되어온 입시 교육을 부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미래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 약간의 부작용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요지] 5. 창의성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다르게 현재 충북 교육이 입시 위주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창의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기본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요지] 6.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시험 외에 계속 성적 비교가 들어나는 시험을 보여서 성적을 올리려는 것이 맞습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3월달에 진단평가한 것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향상이 있었나를 보기 위해서 학교내로 처리를 하고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는 그것을 보고 안하도록 했습니다.

[질문요지] 7. 교사의 부담감과 학생의 강박감이 학습의욕이나 흥미 등에 미칠 역효과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1년에 학교에서 보는 시험 빼놓고 다섯 번을 보는데 그 정도라면 학생들의 체력에 저해가 가지 않고 학력과 체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평가가 부담을 줄이고 즐거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8. 제가 지난 100일간 판단한 충북교육은 각종 시험대비 교육활동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것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학력은 높고 인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학력은 위험하게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품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올림 운동이라든지 효도전화 365, 친구사랑의 날 운영, 경로당 방문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9. 11월 23일에 치러질 도단위 일제고사를 없애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올해는 기왕에 계획된 것이고 그래서 부담이 없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10.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이 시험을 본 학교가 스물여덟번 정도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날도 수업일수에 포함됩니까?

[답 변 : 부교육감 정일용]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나와서 수업받는 일수는 교육과정 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보는 건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11. 도교육청이 겉으로 드러나는 점수 높이는 데만 올인하고 수십억 예산까지 쏟아 붓는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변 : 부교육감 정일용]

○ 금년에도 한 140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평가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12. 충청북도의 교실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시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풀이식 수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부교육감 정일용]

○ 교과교실제 또는 다양한 ICT를 활용한 수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라든가 창의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3. 교과부 최근 자료에 의하면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최근 창의·인성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부교육감님께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 변 : 부교육감 정일용]

○ 창의·인성교육은 제가 미래인재정책관 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처음으로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할 정도로 인성교육을 위해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충북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14.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돼서 일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오간 일이 있는데 청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니까 2009년 청주교육청에서 있었던 교육장 회의시 이 학교현황자료를 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맞습니까?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 공식적인 배부가 아니고 어떤 시행을 치를 평가의 기본적인 과정, 교육과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질문요지 〕 15. 일제고사와 관련된 파행 사례들이 드러난 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 제가 단양교육장 시절 2008년도에 단양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거기 뒤에는 단양교육청 시절에 방과후 학교와 영어캠프가 뒤에 있었습니다. 시골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희망이라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재정 지원을 해 주고서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를 시킨 것이 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우리 교육청이 최상을 얻은 기반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해 줬고 교육이 희망이라는 목표 속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16.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파행사태가 일어난 데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 예, 알겠습니다.

〔질문요지 〕 17. 이번에 아쉬운 점이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호할 대책이나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62조에 보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18. 꼭 조례로 만들어서 내부자 고발이 좀 돼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 파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육청에서 아시고 정책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

[질문요지] 1. 경제자유구역 지정관련

[답 변 : 정무부지사 김종록]

○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오송 바이오밸리, 오창 BIT, 증평의 GT 등 BIGT 융합 클러스터화가 가능하고, 바이오밸리 등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여건이 우수하며, 준공 및 조성중인 산업단지 위주로 기반시설이 거의 완비된 최소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국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 된 전략으로 반드시 신규지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관련법에는 외국 기업에게만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내 지정시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2. 꿀벌 낭충봉아 부패병 관련

[답 변 : 농정국장 강길중]

○ 바이러스 질병인 낭충봉아 부패병은 법률에 명시된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낭충봉아 부패병을 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동 법이 발효되면, 방역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질병 발생시 살처분, 이동제한 등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에 종합적인 예방 및 방역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도 차원에서는, 낭충봉아 부패병 방제지원을 위해 2011년도 당초 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축산위생연구소 꿀벌질병진단센터를 통한 검진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동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

〖질문요지〗 1.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액에 대해 충북도의 지원이 가능한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조례 제정” 시 쌀 품목도 포함되도록 하여 관련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등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2.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쌀지원 방안은 가능한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교류협력기금 4억을 활용, 도에 보관중인 재고미 구입을 통한 대북 쌀 지원방안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쌀의 수급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기금을 통한 쌀지원 사업은 검토를 배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도 자체기금을 활용한 대북쌀지원사업은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 3.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답 변 :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 지방재정 상황과 전국적인 추진상황 그리고 국가 정책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4.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

[답 변 :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방법은 급식인원이 센터당 10만명 정도는 되어야 규모의 경영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학기 중 급식일수가 200일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개소당 30억원이 넘는 설치·운영비용이 드는 학교급식만을 위한 지원센터는 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단위에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요지] 5.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충북농업경영안정기금 마련에 대한 의견

[답 변 : 농정국장 강길중]

○ 정부에서는 현행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8개 직불제사업을 2013년부터는 1~2개의 직불제로 통합하여「농가소득보전 직불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9개 품목을 선정, 도상연습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액 등이 확정된 후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경영 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요지] 6.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입장

[답 변 :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 금강 10공구의 작천보 개량사업과 한강 7공구내 비내지구의 단양 쑥부쟁이, 장천지구의 생태습지 보호사업 그리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하여는 공동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상황과 전국적인 추진상황 그리고 국가 정책 반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 절 제296회 정례회(2010.11.22.~12.24.)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

〖질문요지〗 1. 충청북도의 농업정책방향 관련

〖답 변 : 농정국장 강길중〗

○ 유통분야, 농축산물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과 소규모, 중·대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인터넷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를 도와주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 금년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이 많이 감소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된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1시군 1대표 브랜드 육성이라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매년 추석 및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우리 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경영안정자금 차원에서 한 20억 정도 지원을 위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 작년 시군 대표쌀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2억원의 홍보예산을 세웠으나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시군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쌀 만톤 정도 규모의 논에 대체작목으로 축산 조사료 생산 등 현재 각 시군과 협조를 통해 내년도에는 대체작목으로 만톤, 전국적으로 20만톤 정도의 쌀이 덜 생산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과 청원군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음성, 제천, 괴산 3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액비저장고와 액비성분분석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액비부숙도판정기 사업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질문요지] 1. 도지사 관사 개방 및 수동관사 활용방안 용역 관련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도지사 관사 개방과 관련하여 관사 규모가 크고 경관이 수려하며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도지사 혼자 사용하기 보다는 도민과 함께 사용하고자 관사를 개방하였습니다.

○ 도지사는 자택에서도 도정업무 수행(접견, 집무)하고 있어 현행처럼 계속 임차 사용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하거나 이전하게 됨에 따라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 관사매입은 현 도지사만이 아닌 후임 도지사의 안정적인 거주와 집무를 위해 관사 매입을 추진하고 수동관사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개방한수동 관사를 개방 취지에 걸맞게 도민 모두의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단법인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10.11월~'11.3월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질문요지] 2. 오송메디컬그린시티 관련 지사 견해 및 향후 방향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오송메디컬그린시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정되나 사업을 제안한 BMC의 자본력 취약, 사업실적 미흡, 실현가능성이 희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7월부터 3회에 걸쳐 사업타당성 검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검증결과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 지역의 지속성장을 견인할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오송바이오밸리 추진사업은 민선4기에서 추진해 온 메디컬그린시티사업을 승계하여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서 오송 주변의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오송 바이오밸리 추진사업은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을 전면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대학, 병원 등 MOU체결 기관은 승계를 하는 등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

〖질문요지〗 1. 도지사현장방문 확대

〖답 변 :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 읍면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시·군으로, 시·군은 도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속으로 그리고 도민 속으로 다가가는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준비 관련

〖답 변 :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이 깊이 있고 또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배포 또는 자료도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학교운영 효율화 방안

〖답 변 : 부교육감 정일용〗

○ 일반적으로 50명 정도의 학교는 1인당 교육비가 2,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반면에 청주시내 1,000명 정도 되는 36학급의 경우 약 7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여러 가지 정서를 고민하고, 통폐합 기준은 50명 이하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1면 1교를 유지하되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운동의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권자가 해임으로 처분한 것은 합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육가족들이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가서 자랑스러운 충북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3 절 제297회 임시회(2011.1.18.~1.27.)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

[질문요지] 1. 구제역으로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관련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 우선, 식수대책으로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인근 주민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13개 지구 212㎞의 수도관매설 사업비 310억원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지원을 받아 금년도 3월말까지는 현지조사·측량 및 급수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5월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금년도 7월말까지는 수도관 매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인근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지하수 오염대책으로 매몰한 날로부터 6개월간은 월 1회, 이후에는 분기별로 1회식 3년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저류조에서 모인 침출수는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양성일 경우 톱밥처리 후 매몰지에 재 매몰하고,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 폐수처리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구제역관련 5일장 문제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그분들의 피해까지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구정이 임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과 관련단체가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적극 매입한다거나 자매결연 기관·단체·언론사 등에 홍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지원에 대하여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에다 이러한 사항을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4 절 제298회 임시회(2011.3.8.~3.17.)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질문요지〗 1. 복지재원 확충과 평생복지 실현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취임 후 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120억원의 절감재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저변의 농민, 노동자, 장애인, 전통시장 상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평생을 보살피는 복지실현을 위해 현장방문 중심의 도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2. 임기중 무상보육 실시계획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임기내 무상보육을 실시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다만,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추가 재원이 크게 소요되고 보육시설, 보육교사 확보 등에도 무리가 있어 도의 재정운영이나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 보육교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 최근 국가의 보육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하여 무상보육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크게 확대되고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는 전액 지원되는 점을 감안, 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결정한 것으로 향후,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무상보육이 앞당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3. 충북은 5년 주기로 중장기 보육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는가?

〖답 변 :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 우리 도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계획을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 의뢰예정이며, 금년도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시 전문가 및 보육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 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부지원 차별성 문제는?

[답 변 :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설립법령, 임용요건, 운영기준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요지] 5. 보육교사 수당 등 유치원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답 변 :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시간연장형 수당,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6.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간 지원 차별성 문제는?

[답 변 :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 국·공립 등 정부지원 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30~100% 지원, 민간보육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대신 기본보육료 지원 또는 보육료를 차등 수납함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예산지원 체제가 달라 발생하는 전국 공통적 사항입니다.

[질문요지] 7. 보육시설에 대한 질병예방 사업 지원에 대한 견해는?

[답 변 :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 보건소는 도내 총 3,986개소의 방역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보육시설 주기적 방역은 어려우나, 보육시설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방역소독과 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

[질문요지] 1.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 및 침출수 관련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 지난번 도정질문이후 바로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 동안 전체 직원 120명이 파견되어 211개소의 매몰지를 조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일단 지하수가 오염이 됐든지 안됐든지간에 심리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먹는 데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몰지 인근 500m이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왕에 지금 사후 관리 업무가 편성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 매몰지 사후관리팀하고 유기적인협조를 통해서 매몰지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민선5기 출범이후 산하단체 등에 대한 인사관련

〖답 변 :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 현재 개방형 직위는 네자리고요, 출자·출연기관장은 열여덟 자리가 있습니다.

○ 민선4기에 개방형 직원 네분, 유관기관 단체장에 열여덟 분이 임명이 됐으며, 민선5기에는 현재 개방형 직위 감사관하고 출자출연기관장에 열세 자리가 임명됐습니다.

○ 지사님은 도민 전체의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관리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께서는 그런 정무적인 보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의회 관련해서는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 드리고 협의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의회 관계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들이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국장들한테 질문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가능하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도민들께서 불필요하게 걱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 조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5 절 제299회 임시회(2011.4.12.~4.21.)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

[질문요지] 1. 구제역 매몰 지침준수 여부 및 미신고·무허가 가축사육관련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 충청북도는 지침을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서 바로 전 시·군이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관계 부단체장들도 회의하고 여러차례 확인도 하는 등 이런 것들을 권장하였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미흡한데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로 1월부터 2월, 3월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대부분은 지켰다고 생각되지만 정부합동조사 결과 약 20군데가 지적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엔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팀하고 농정국과 문화여성환경국이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또한 무허가, 미신고 농가 같은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농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처할 부분은 검찰에 고발하고, 또 지원을 통하여 양성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상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일단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요지] 2. 구제역 백신 접종지침 준수 여부 및 밀실사육과 보상문제
[답 변 : 농정국장 강길중]

○ 백신접종지침은 100% 잘 지켰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름대로 그 과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초기에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이 있었을 거라 판단합니다.

○ 법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있고 하니깐 최대한 지도 감독하여 미등록이나 단위면적당 사

육두수를 넘긴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최대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살처분 보상은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구제역이 걸려서 살처분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급을 하고 「축산법」에 의해서 미등록이나 많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3. 매몰지 주변지역 지하수 식수사용 문제 및 2차피해대책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매몰지 주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7차에 걸쳐 1,29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요청 하였고, 특히 심한 21소에 대한 사업비 181억원이 배부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농장 중심의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조직 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최미애 의원

〖질문요지〗 1. 현재 충북 도내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 자율선택권과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창의인성교육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각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요새는 아이들의 말을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학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2.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수업인데 왜 억지로 견뎌야 하지요?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 자율학습 점검 이후에는 통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질문요지] 3. 강제 확일적인 자율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특별한 그 항목으로 나온 것은 없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통계에서 사교육비보다 학교의 자율학습이 3배 정도 성능이 높다고 얘기하고 그 결과가 수능의 성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4. 자율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를 읽었는데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모두 학생들에게 심한 학업스트레스를 주고 가출 충동, 자살 충동과도 일관되게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사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요지] 5.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되고, 생활하는 시간이 14시간 정도 됩니다. 적당한 휴식시간이 오히려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 학교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요지] 6. 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학교 자율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죠? 그 자율학습 명칭에 걸맞게 학생의 자율학습 선택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학부모의 요청과 학생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강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하지 않는 애들은 학교에서 허락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7. 2011년도에 자율학습 운영계획을 보면 학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지도점검을 하셨나요? 전수 조사 하였나요?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장학사들을 학교별로 다 배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녔습니다.

○ 전수조사했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2회 정도 점검 나갔습니다.

〔질문요지〕 8. 자율학습 실태현황 점검표 조사항목에 보면 학생들의 인식이나 욕구나 불만을 조사하는 항목은 없었는데 사례수집을 위한 설문이나 면담조사 등은 없었나 보죠?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 교육감님도 현장에 11시에 학생들하고 자율학습교사 담당선생님하고 현장 방문해서 얘기도 듣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질문요지〕 9. 야간자율학습은 환경이나 방법이나 내용이 십수년전과 바뀐게 없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겠죠.

〔질문요지〕 10. 바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획일적으로 전교생 참가하라고 닦달하는 거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업하는 교실에 한꺼번에 밀어넣고 잡아두고 있는 것 또 학생의 요구, 그 복잡 다양한 요구를 절대 반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지금 충청북도의 학생들 자율학습 현황을 보면 많이 하는 학교는 90%

이상 전체가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학교는 14%부터 광혜원고등학교 같은 데는 4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학교와 적게 하는 학교는 71.8%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1. 단 10%가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학습을 하되 아이들이 원하는 환경과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2.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목적과 의의가 뭔가요?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야간자율학습은 반복학습입니다. 지금 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학생들이 수업한 것이 단 하루만이면 잊어버릴 확률이 7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하고 반복학습을 해야 장기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율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면 지도학습보다는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질문요지] 13. 진정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면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이지 않습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야간자율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학생들과의 진로상담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에 가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효과가 있을 때는 가정에도 보냅니다.

[질문요지] 14. 공부하는 공간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쉴 수 있는 교실을 따로 둘 생각은 있으십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높은 책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도에 있어서 졸린 학생은 가서 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정도 자유행동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15. 교육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 확인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16. 그런 것을 학교가 제대로 하는지 교육청,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위원이 추천한 인사로 하는 평가단을 꾸려서 점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 변 : 교육감 이기용 〕

○ 교육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전체 다 학교에 오셔서 점검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분들이 학교에 나오셔서 점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질문요지 〕 1.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태와 문제점은?

〔답 변 : 부지사 박경국 〕

○ 조기집행 추진실적(4. 6. 기준)은 (시·군 포함) 목표액 3조 3,516억원, 집행액 1조 6,512억원으로 집행율 49.27%로 전국 10위(전국 평균 집행율 49.31%)입니다.

○ 지방재정 조기집행 문제점은 조기집행 추진시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와 낭비·비효율 요인 제거 등 내실 있는 집행을 추진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

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 SOC 사업) 위주의 추진으로 서민경기를 회복하고 체감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나, 상반기 공사 집중, 이자수입 감소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요지] 2. 과학기술부의 입지확정 발표(2010.1월) 후 계획변경에 대해 과기부에 요구한 내용은 ?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2010. 8. 12. 충청권 3시·도지사 행정협의회 개최, 입지명시 건의, 교과위원장 방문, 충북도의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충청권 조성 건의 하였습니다.

[질문요지] 3. 분산배치 가능성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은?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거점지역에 집적하여야만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분산배치에 대해 충청권이 공조하여 공동대응 하였습니다.

[질문요지] 4.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태 및 문제점은?

[답 변 :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 노인일자리는 6,691명에 100억원이며, 시니어클럽은 2014년까지 3개소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문제점으로는 노인일자리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일자리 확대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요지] 5.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감사의 문제점은?

[답 변 : 보건복지국장 김화진]

○ 사회복지시설은 유형별로 근거법령 및 운영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시설 지도 점검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들도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요지] 6. 도정홍보관 폐관 사유 및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답 변 : 공보관 송인헌]

○ '07. 7월부터 3년간 운영결과 이용객 저조로 활용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10. 6월 당선자 업무보고시 폐관 활용방안 검토 지시를 통해 ’10. 9월 도 출입기자단 간사 건의로 도정 홍보관 공간에 브리핑룸 설치와 기자실, 공보관실 이전 확정.

○ 도정 홍보관 설치는 당시 오송·오창과학단지, 오송역, 청주공항활성화 등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과 충북의 미래비전을 우리도민과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관을 설치하고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홍보 경쟁체제 구도 속에서, 우리 충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충정에서 심층 검토하여 홍보관 건립 추진하였습니다.

〖질문요지〗 7. 민선5기 언론피해 구제 현황 및 정책방향은?

〖답 변 : 공보관 송인헌〗

○ 민선5기 출범이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 사례는 없었으며,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일 경우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정정보도청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수용 거부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합니다.

제 6 절 제300회 임시회(2011.5.11.~5.20.)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질문요지] 1. 야생동물 피해관련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 12개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과수작물이 4억 2,200만원 그리고 논밭작물이 3억 8,100만원해서 총 8억 300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파악이 됐고요 2010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과수가 1억 3,100만원, 그리고 논밭작물이 6억7,700만 원 해서 8억 8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에 구제역이 확산이 당초계획보다 수렵기간이 3개월 단축되었지만 '09년의 경우에는 충주, 괴산 2개의 시·군으로 한정됐던 것이 '10년에는 보은,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 4개 군으로 확대돼서 면적이 한 세 배 늘었고 그리고 실제 포획숫자를 보니까 특히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 멧돼지 같은 경우가 '09년도에 한 48마리에서 작년도에는 187마리로 해서 약 네 배 가까이 포획량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간은 단축됐지만 포획실적은 늘은 상태로 연말에 전체적인 통계가 집계가 되면 예년하고 비슷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시·군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해보고 실태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도와 시·군의 피해예방 대책이나 보상에 대해 피해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피해보상이 현실화 되도록 도와 시·군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2008년 2월 29일 환경부 고시로 내린 기준에 의하면 "피해보상한도액은 연 1회 그리고 500만원 이내로 한다", "피해액의 80% 이내만 보상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일부 감액한다" 등의 보상 제외항목을 좀 많이 해 놔서 보상액이 실제의 한 3분의 1 수준에 미치고 있다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은 피해방지단의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 이외의 지원은 의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더 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요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충북도 지원근거 마련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 16개 시도 중 일부가 예방사업,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라든지 피해단지 원사업 등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4,5개 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부분의 조례제정 여부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실제 환경부의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면 수렵장 운영을 해서 얻은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을 1차적으로 보상에 쓰도록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 피해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재정여건을 좀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질문요지〗 1. 새로운 교육 자치시대 도의회와의 관계 재정립 관련

〖답 변 : 부교육감 박춘란〗

○ 우리 교육청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의원님들과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서로 충북교육의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앞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도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주민과 관련된 주요사업 시행시 진행절차

〖답 변 : 부교육감 박춘란〗

○ 주민과 관련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지역주민 중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마치 의사결정을 미리 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다수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절차 및 매뉴얼에 따라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보다 공감할 수 있는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답 변 : 부교육감 박춘란〗

○ 학교비정규직 경력인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무가산금은 금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 소속기관에서의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로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연간 36만원부터 96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경력 인정과 특정 직종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향후 재정여건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일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강사의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운영되기에 275일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중 종일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방학기간 60일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학 중 종일반 수요를 고려하여 종일제 강사의 근무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연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일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풍일, 시험일, 개교기념일 등의 재량휴업일 등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 275일 근로자의 방학 중 근로일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의 유급휴일 적용과 토요일 미급식교 245일 급식종사자의 근로일수 추가 확대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또한 재정여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사항으로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2011년도 임금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무원보수 5.1% 인상은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에 적용된 것입니다. 공무원보수와 같이 연봉제 학교회계직원 역시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연간 보수총액에서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행 학

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가 단순하고 다양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조사·연구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4. 충북도내 학업중단 청소년 해결방안

〖답 변 : 부교육감 박춘란〗

○ 학업중단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의 이유로 현황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상담활동 및 담임, 진로상담부, 생활지도부의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458명, 2009년 1,54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09년 대비 9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 보은·단양교육지원청에 Wee센터를 설치하고 청원교육지원청은 가정형Wee센터로 전환하여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업중단 학생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성화고의 경우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발생 비율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나 직업교육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학업중단 학생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학생 복교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는 매학기 시작 전후에 복교 안내문을 발송하고 복교 예정학생은 복교전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복교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복교를 독려하는 한편, 방송통신고 편입, 대안학교 안내, 검정고시에 의한 학력 취득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개인신상자료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급학교에서 신상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교육청, 시·군 및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과 연계해서 학업 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

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경우에 상담실적이 10만 7,152건에 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을 위해 두드림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교육과 직업체험을 거쳐 사회로 진출시키는 3단계 과정을 거쳐 학업에 복귀시키고 사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청주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자립지원사업을 이수한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고용한 기업주에게는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09년 11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이를 근거로 교육청, 경찰청, 고용센터, 병원 등 청소년 관련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청소년통합지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협의회를 통해서 유관기관 간 정책제안이나 상호 정보교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5. 도의회가 도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본연의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계 일각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대립각을 세워온 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답 변 : 부교육감 박춘란]

○ 각종 단체에서는 단체 설립목적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이 어떤 입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그쪽의 어떤 독자적인 입장일 뿐이지 교육청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요지] 6. 도청의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의 교육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부교육감 박춘란]

○ 의회와 교육청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7. 어제 충북 청소년 강력범이 늘었다는 신문기사도 실리고 TV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 변 : 문화환경여성국장 이정렬]

○ 정보 보유주체인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부분이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8.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정기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답 변 : 문화환경여성국장 이정렬]

○ 09년도 말에 통합운영위원회의 훈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첫번째 운영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연 2회 이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원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 기관 간의 처리방향, 앞으로 어떻게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질문요지] 9.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업지원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답 변 : 문화환경여성국장 이정렬]

○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두드림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0. 그 대상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답 변 : 문화환경여성국장 이정렬]

○ 일단은 13세에서 24세까지의 중·고등학생 중에서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1.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답 변 : 문화환경여성국장 이정렬]

○ 지금 이런 사업들이 선제적인 방법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요지] 12.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업중단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에는 유예자와 면제자로만 학업중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의무교육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답 변 : 교육국장 정가흥]

○ 중학교는 내적으로 질병, 가사, 품행 원인들이 소주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자체지 분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3. 사업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올라올 무렵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변 : 기획관리국장 구명회]

○ 수립을 할 단계부터 현장 요구와 검증단계를 거쳐 올라옴에도 사업을 추진하면 이해가 갈려 찬성과 지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곤 합니다. 단위업무매뉴얼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발해서 사업 시행 초기부터 최소한도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요지〗 14. 이미 교육청이 결정 다 해놓고 수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기획관리국장 구명회〗

○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에는 반드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질문요지〗 15. 민원수렴 시스템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기획관리국장 구명회〗

○ 예,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 7 절 제301회 임시회(2011.6.14.~6.23.)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

〖질문요지〗 1. 병든소, 밀도살 한우, 학교 급식 납품 문제 원인 및 해결은 위한 도 대안

〖답 변 : 기획관리실장 고규창〗

○ 지난 4월 11일 검찰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도의 축산위생연구소와 괴산군이 합동으로 불법도축 현장을 단속했습니다.

○ 현장에서 도살된 젖소 한 두와 젖소의 태아 두 두 그리고 고기 1.4톤을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밀도축 행위자가 지난 2008년부터 금년 4월까지 약 30톤 정도를 유통시킨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도가 파악한 유통의 원인을 보면 현재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축검사시스템이나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 같은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그러나 불법도축의 문제는 제도권 밖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은밀히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 축산행정 분야에서 이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번 건은 일부 축산농가에서 폐사된 소를 축협에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사체를「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매립 처리하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이를 구입한 자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에서 도축하고 또 문서를 위조하고 소고기도 바꿔치기를 해서 정상가격보다는 훨씬 싼 값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불법도축과 관련해서 폐사된 소의 매매와 매매방지대책과 일부 보상 또 재원대책,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우협회와 협의도 하고 또 한우협회에 가입된 분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등 한우협회와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폐사된 소가 유통되어 한우시장 스스로 신뢰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축산

농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축검사 증명서는 전국적으로 수의직 검사공무원이 수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검사 증명서가 수기로 발급되는 이유로 해서 위변조와 불법 유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장은 발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원본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발생된 불법도축 행위는 이미 제도권 바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상시에 점검과 확인을 통해서 조기에 적발하고 대처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또 이와 유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합동점검과 식품위생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도민들이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우려를 하시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다수 축산농민이나 축산물 유통종사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업자가 불법도축한 고기를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금년 7월말까지 학교 급식업체를 포함한 육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시·군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서 폐사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도축 및 유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병든소, 밀도살 한우, 학교 급식 납품 재발방지 대책

〖답 변 : 충청북도 부교육감 박춘란〗

○ 병든 소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

와 그다음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 등을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질의 어떤 식재료 구매를 위해서 최저입찰제를 지양하고 또 서류검토는 물론이고 또 품질검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축산물 구매 검수 관련 서류 및 시스템을 철저히 검토하고 또 정비 보완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2011년 청주·청원 교복공동구매 가격 협의 과정에 대해

[답 변 : 충청북도 부교육감 박춘란]

○ 가능한 양질의 교복을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 그중에 보게 되면 개별 학교별로 공동구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개별 학교에서 이렇게 업체와 협상을 해서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한다거나, 또 그리고 한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전체 지역에서, 그 협의회에서 지역별로 협의구매를 통해서하게 되면 더 많은 선호하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동안 가능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가 학교운영위원회고,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들의 모임인 그 지역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겠다고 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조 요청을 통해서 그 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가능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격 협상부터 전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협의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

어서 물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들어 있긴 하지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회나 아버지회 등 다양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의원

〖질문요지〗 1.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현재 85개 기업(북부권: 52, 남부권:33)을 투자유치 하였습니다. 이 중 7개 업체에 보조금과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에 127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질문요지〗 2. 충북의 균형재정, 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민선5기 출범이후 “충북 비전 2014”를 수립, ‘3+1프로젝트’의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육성 등 18개 사업, 단양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 도내 15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등 중원 문화권 개발사업 및 지역특화육성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3.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1998년도부터 사업구상 및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경기침체

와 수익성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2010년 개발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4. 타 지역에 비하여 국가종합개발계획이 빈약한 북부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신발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단양군을 추가 포함하기 위하여 구역변경 계획을 수립, 국토부에 승인요청 하겠으며, 북부권 한방산업 종합발전 방안 추진을 통해 북부권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5. 충청북도의 제1역점시책이 무엇입니까?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보다 크고 강한 충북,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민선5기 비전으로 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을 균형발전축, 서부지역을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축, 그리고 인근 타 시도와 6개 협력권으로 설정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6. 충북관광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 "생명력이 넘치는 관광충북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4년까지 관광객 7천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관광객유치·마케팅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7. 충북도의 바이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 충북도와 의료계 및 관광업계 상호간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명병원 유치, 의료관광 기반 구축 등 바이오 및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8. 청주공항 MRO산업 유치를 위한 효과적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청주공항 MRO단지는 공항시설지역 관리권 밖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민영화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요지〗 9. 혁신도시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업부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무엇입니까?

〖답 변 :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 금년말까지 총공정율 60%까지 추진하고, 부지조성공사 준공시점인 2012년 말까지 100%완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의원

〖질문요지〗 1. 괴산 청천119안전센터 조속 설치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청천지역대의 설치는 인구, 면적, 소방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천지역은 관할 소방서 및 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방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19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소방수요,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천지역의 소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돼 있는 2013년 청천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는 문제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괴산소방서 설치 및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

〖답 변 : 소방본부장 전병순〗

○ 괴산군은 면적이 넓은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가 많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방서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타지역과 비교 시 소방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소방서

설치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괴산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괴산 구조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54명의 소방공무원을 적절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괴산지역 소방수요 증가 추세와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괴산군민이 소방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 요구는 괴산군의 소방여건과 지역주민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도에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총 5개 군으로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타 지역도 소방서 명칭은 그 소방서의 소재지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2개 시·군을 관할하는 소방서가 32개소가 있는데 지역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곳은 소방서 설치 당시에 관할 시·군·구 합의로 명칭을 정한 전라북도 무진장소방서 1개소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평소방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일부 지역 통합 시 명칭 선정의 곤란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지숙 의원

[질문요지] 1. 시·군 부단체장의 잦은 인사교류에 이유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부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과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 임용은, 도 과장급 공무원 중 도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부단체장 재직기간은

-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년 정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충주부시장 중앙부처 전출 옥천부군수 질병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재직기간이 1년 이내임에도 교체하였고
- 특히, 진천부군수의 경우는 체육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해 부득이 교체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부단체장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하여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청소 미화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도의 입장

[답 변 : 행정국장 운영현]

○ 우리 도에는 현재 청소전문 용역회사 소속의 미화요원이 남자 4명, 여자 14명 등 총 18명이 배치되어 청소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업무는 전국적으로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에 대하여 대부분 청소전문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으로써
- 우리 도에서도 IMF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과정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1993년부터 점진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다가 200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직접 고용으로 재전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직접 고용으로 재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청소용역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청소용역업체의 전문적인 청소관리와 효율적인 직원관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매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은 물론 규모가 큰 민간시설도 대부분 청소전문 용역회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또한, 직접고용으로 재전환이 어려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우리 도에서는 미화요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청소용역시행업체로 하여금 승계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3.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 및 강태재사태에 따른 도의 입장과 충북문화재단의 정쟁화 되는 데에 따른 도 대책

[답 변 :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정렬]

○ 문화재단 이사진은 재단의 중요 정책과 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분 중에서 활동영역별, 장르별, 지역별로 균형과 안배를 우선 고려하고 문화예술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이에 도에서는 도의회, 예총, 민예총, 문화원으로 부터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인사와, 도의 문화예술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민선 4기에서 재단설립 자문위원장과 발기인 대회시 참여한 인사를 포함해서 시·군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또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으로부터의 추천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인은 철저히 배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 각계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진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 헌신성 등을 고루 갖춘 분들로서, 도 입장에서는 검토가능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구성한 최선의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별 현황에서 민간인 16명중 예총이 8명, 민예총이 5명, 문화원이 2명으로 예총이 민예총 보다 더 많이 선임된 것은 회원 수를 감안한 것입니다.

○ 물론 관점에 따라, 문화예술계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와는 사전에 이사 후보 추천을 통하여 넓은 의미에서 협조와 양해가 있었던 사항이며,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등에서 이사진의 구성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아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코드인사, 보은인사, 한나라당 배제

인사니 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인 색깔 포장을 논하며 이사진을 전면교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 충북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권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선정된 이사진을 재검토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민선 4기 정우택지사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자문위원장을 위촉받아 10여회에 걸쳐 토론회, 공청회 등을 주도하였고 또, 문화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추진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문화예술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그간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한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고려,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의 보수는 없으며 교통비 등 실비보상차원의 활동비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차량, 기사, 비서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강태재씨 선임은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민선 4기에서 시작된 재단업무의 연속성과 역량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 강태재씨가 학력문제로 결국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게 되었지만, 학력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요건이나 고려사항이 아니고 도에 제출된 이력서에는 사실대로 기재되었으므로 학력 기재 진위여부가 이번 대표이사 선임과는 무관하며, 이를 연계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도에서는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의 진정한 바램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민선 4기부터 시작된 충북문화재단이 도민의 축복 속에, 빠른 시일내에 설립되어 설립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8 절 제303회 임시회(2011.9.20.~9.30.)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

[질문요지] 1. 진천·음성 혁신도시 전담 도출장소 설치에 대한 도의 견해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혁신도시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행정체제가 좋은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양 군의 의견이 한데 모아지도록 노력 할 것이며, 특히 도 의회와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행정체제가 구축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2. 진천·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압축포장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 "압축포장시스템"은 초과되는 폐기물을 압축하여 매립장에 일시 보관한 후, 소각물량이 적을 때 소각하는 시스템입니다. 향후, 폐기물 발생 추이를 관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천군·음성군과 면밀히 협의하여 "폐기물 압축포장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진천·음성 혁신도시 주변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지원대책은?

[답 변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정렬]

○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2007년에 수립된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매립장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2-2021년 까지 10년간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해당 군과 협의하여,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상세히 분석한 후, 기존 광역소각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과 혁신도시 주변에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4. 대규모 절개지 산사태 위험지구 현황 및 보수·보강대책은?

〔답 변 :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

○ 도에서는 대규모 절개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위험 특별관리 대상지로 분류하여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당 사업장 관계관에게 보수·보강토록 사전조치하여, 자연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5. 백곡저수지 사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는 무엇입니까?

〔답 변 : 농정국장 박종섭 〕

○ 총저수량이 26,619천톤으로 내진 특등급 설계기준을 적용하였고, 전면에 4~5m정도 성토를 하는데, 1회 30cm씩 층다짐을 실시하고, 검사시험도 반영하였으며, 또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위관리 실시와 제당 및 물넘이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장 하류에 저류시설을 설치,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 6.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매산마을 앞 통로박스 설치 관련 동일사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변 :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

○ 기존 국도 상에 통로박스를 100m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10. 1. 27일 접수되어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공사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첩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존설계 및 현지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연결로 설치 및 기존도로 가각정리 등 대안을 제시, 민원인과 합의('10. 2. 25)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해 공사 시행청의 현지조사 시 우리 도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최적방안 도출을 조율하는 등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7. 진천·음성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은 무엇입니까?

〔답 변 : 행정국장 박성수 〕

○ 양 군의 의견을 들어 행정구역 변경·조정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권역을 총괄·관리할 기구를 구성한 후, 동 기구에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 9 절 제304회 임시회(2011.10.19.~10.27.)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

[질문요지] 1. 시도비반환금 발생사유 및 제도적 보완장치

[답 변 : 행정국장 박성수]

○ 2010년도 1회계연도에 지출되어서 남은 금액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은 2010년도 결산이 끝난 후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처리 됩니다.

○ 예산은 명백성의 원칙도 있지만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반납을 받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표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순기가 도와 시군이 같아 결산 후 보조금반납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추경에 편성한 후 도에서 세입처리를 하니깐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군에서 집행되는 부분 중 연도폐쇄기 이후에 정산이 완료가 되면 부득이하게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고 결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를 하여 추진상태를 점검해서 사업이 종결되면 보조금을 반납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질문요지] 1.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충북도는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축제속의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청주시와 청원군과의 협조체계로 법적 이행절차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통합촉진을 위한 청주청원 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2.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문제점 및 추진계획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청주·청원간 재원분담 및 요금 단일화 시행시기는 미합의 상태이며, '12년 상반기중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향후 통합결정 일정을 고려하여 조기시행 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3. 청주·청원 외 타 시·군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대책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북부권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 촉진하고, 남부권은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구역 지정 추진으로 획기적인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중부권은 태양광산업 특구 육성과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의 허브 육성과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4.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태 및 문제점은?

〔답 변 :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3조 3,516억원이며 집행액은 3조 5,261억원으로 집행율은 105%이며, 문제점은 조기집행 미이행시 70%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연말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사업추진 지연 및 과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질문요지〕 5. 채무 증가원인과 상환 등 관리대책은?

〔답 변 :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수결손 보전, 정부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투자수요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채무 규모가 급증하였으며, 채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에는 100억원을 저금리채로 차환하고, 앞으로도 매년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정산분 등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상환 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6. 솔라밸리 마스터플랜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마스터플랜은 충북을 태양광산업의 세계적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

략으로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솔라밸리 마스터플랜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 중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 육성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7. 태양광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계획 및 타당성?

〖답 변 :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태양광제품의 시험분석, 성능평가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기술개발과 제품사업화를 촉진하고, 2014년까지 총 203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전지센터 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하여 태양광 연구기관 및 태양광기업들이 집적화될 수 있는 계기가 기대됩니다.

제 10 절 제305회 정례회(2011.11.15.~12.23.)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질문요지〗 1. 민선 5기 이시종지사의 인사관리, 조직개편 및 운용, 정책결정 및 집행 관련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73조2에 의하면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본회의 개막 개회 시간 4일 전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답변일 본회의 개회시간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 김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민선5기 이시종 지사의 인사관리, 조직개편 및 운영, 정책결정 및 집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로는 질문요지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4일 전까지 질문요지가 와야 되는데 질문 제목만 이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미처 갖지 못했습니다.

제 11 절 제307회 임시회(2012.3.2.~3.12.)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질문요지〗 1. 도지사의 본회의장 이석 관련, 코드인사 관련, 대학관련 정책, 도정 추진 실적 등 관련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본회의장을 떠난 것은 당시에 의장단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석을 하게 됐습니다.

○ 12월 16일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예산을 의결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고, 시정연설을 도지사가 마쳤고, 또 안건 의결까지 하는 것을 제가 마쳤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발언시간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이석을 했습니다.

○ 능력과 또 열의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연공서열도 같이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선 우리 도의 국장급들 인사를 보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국장급에 승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금 원장 임명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센터 원장에 응모자가, 그 해당자격에 해당되는 응모자가 겨우 두 명이었습니다. 세 명이었는데 한 분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었고요 두 명인데, 워낙 응모할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서 그 응모자가 겨우 두 명에 지나지 않은 그런 자원이었기 때문에 두 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는 아침 9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학교가 끝난 방과 후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오후 2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되는 거죠.

○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얼마든지 출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NGO센터 건립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김양희 의원님 포함한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이 돼서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군 통합의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 교통분야에서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6월달 시·군 의견 결정하기 전에 이 시내버스 문제하고 터미널 문제가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

〖질문요지〗 1. 댐주변 규제현황과 규제가 완화될 경우 환경오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 충주댐 하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본댐 하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1.645㎢와 조정지댐 하류에는 수변구역 20.56㎢가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청댐내에는 두개의 취수탑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178.999㎢, 특별대책지역 700.2㎢, 수변지역 190.202㎢가 지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규제지역 내에서는 유·도선 사업을 포함하여 음식점·숙박시설, 수상레저활동 등이 규제되어 지역주민들이 일부 경제활동과 생존권 보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요지〗 2.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댐 주변 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다각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 중에 있고, 아울러 대청호 유역에는 2011년도에 청원, 보은, 옥천 3개군과 공동으로 친환경 공동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에 옛 뱃길 도선운항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정책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요지] 3.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 친환경 도선운항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대청호 주변 방문객 등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가족 휴양시설 등의 조성을 통해 그 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요지] 4.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변화 및 환경오염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문화관광환경국장 김우종]

○ 현재 도선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도선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도선운항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은 신규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이미 설치된 친수공간과 선착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새로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하수관거를 통해 대청호 유역 밖으로 전량 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5.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시점과 조사항목, 조사결과, 그리고 피해대책을 위하여 도에서 취한 조치 및 중앙부처와 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변 : 균형건설국장 김재갑]

○ 충주댐·충주 조정지댐은 2007년 11월에 강원, 경북, 충북 3개도 공동으로『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용역을 통하여 2006년도 말 기준으로 피해를 조사하였으며, 2008년 12월 26일 완료하였고, 법제연구용역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관련부처 합동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질문요지] 6.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가 지급된 대상지역 및 지원규모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까?

〖답 변 : 균형건설국장 김재갑 〗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충주댐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며, 대청댐은 청원, 보은, 옥천군으로 주요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등이고, 최근 5년간 지원규모는 충주댐은 355억원, 대청댐은 165억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질문요지 〗 7.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의 대비 및 이에 대한 개선의견과 추진경과, 유사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결과는 무엇입니까?

〖답 변 : 균형건설국장 김재갑 〗

○ 주변지역 지원사업은『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단순비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이시종 지사님과 송광호 의원께서 발전판매 수입금의 지원기준 상향조정과 지원사업범위 확대를 개정건의하였고,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에서도 법개정을 건의중이며, 전국 18개 댐 소재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도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댐 주변지역의 직·간접피해에 대한 지원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12 절 제308회 임시회(2012.4.16.~4.25.)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의원

[질문요지] 1.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주요시책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육비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율이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므로, 각종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3자녀가구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기타 지원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국비 등의 추가지원이 없는 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요지] 3. 저출산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과 도차원의 향후대책은?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출산친화적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국민모두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요지] 4. 저출산 해소 및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충북도의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2011년도에 41개 기업체가 참여한 CEO포럼을 구성, 기업체 인사담당자 포럼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산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5.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충북도의 성과는?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2014년까지 25만1천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일자리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인턴사업 지원,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상생협약 시책 추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6.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재원마련대책 및 중장기계획은?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지방 재정운용상황이 열악하므로 전액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7. 혁신도시 연결 수도권전철 중부선 구축계획 변경을 음성군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와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구체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동탄노선을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요지] 8. 수도권전철 중부선의 노선변경을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충북 내륙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중부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질문요지] 9. 수도권전철 중부선 구축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감곡-혁신도시-증평-청주공항노선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10. 도내 농산촌 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초등학교 감소문제에 대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에서 연구하거나 실태분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부교육감 김대성]

○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예측과 관련정책의 연계 통합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관리자 및 교원연수’를 통해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1. 도내 초등학생수 감소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답 변 : 부교육감 김대성]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겠으며, 학교 및 지역교육청을 통해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 13 절 제310회 임시회(2012.5.9.~5.18.)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질문요지] 1.「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 왔고, 외국인주민들의 도정참여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외국인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이주여성 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 주민들의 자원봉사 또는 명예홍보대사 등으로 도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요지] 2. 외국인주민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본격적 의미에서 자치 행정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현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 되면 관련 협의회나 위원회에 외국인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르면 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사한 다문화정책실무협의회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문요지] 4.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외국인에게 주민들과 동등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산하기관을 통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5.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초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행정부지사 박경국]

○ 총 48개 과제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6억원을 지원하고, 49개 과제의 다문화가족 정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1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6. 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충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46%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목표나 중점과제와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증진이나 권익보호는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권익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요지] 7.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유린 문제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현실에도 예산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여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1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질문요지] 8. 최근 진천 외국인근로자 숙소에서 화재사건과 중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 등 충청북도의 작은 지원과 현재 조례의 현실화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9. 충청북도에 외국인을 위한 NGO에 지원하는 정책은 있습니까?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이주여성쉼터는 국비가 70% 지원되기에 매칭으로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는 분야는 도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거나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요지] 10.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계속 늘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정책기획관 오진섭]

○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인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1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은 기본적인 시책뿐이고 충북도의 자체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지정과 외국인근로자가 손쉽게 접근해서 인권침해 등 고충상담을 받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의 확대 및 조례에 명시된 대로 충청북도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 14 절 제311회 임시회(2012.6.12.~6.22.)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

[질문요지] 1. 도시가스 비용관련

[답 변 :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 도시가스의 공급비용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고 그것을 도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소비자 분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도에서 자율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지식경제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식경제부와 그런 정확한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지급수수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따로 어떤 전산시스템 이용 수수료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대로 전문기관에서 충분히 이 자료를,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수익으로 기부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비용 적정원가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급비용에 대한 철저한 정산으로 도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도시가스 비용개선촉구

[답 변 : 도시사 이시종]

○ 공급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지금 진행이 돼 왔다고 보고요.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

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도시가스 가격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우리 청주는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쌉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성옥 의원

〖질문요지〗 1. 충주의료원 이전관련

〖답 변 : 보건복지국장 윤성옥〗

○ 충주의료원을 이전하게 된 배경은 구의료원이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주의료원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쾌적하고 또 서비스 좋은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약국이 생기면 크게 무리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충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비티엘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 시설운영은 실시협약서 제39조에 의해서 준공확인이 되면 다음 날부터 운영사가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보다 나은 의료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진료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둘러서 했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충주의료원 규모가 타 병원에 비해서 관리 인력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또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인력으로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의료원의 경영상태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충주의료원 부지관련

〖답 변 : 행정국장 김경용〗

○ 사용 용도에 대해 일단 1차적으로 그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기관이 충주시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의 정제된 의견을 저희하고 협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들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개략적인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탁상감정에 의해서 예상치를 뽑아서 어느 정도 위아래 편차를 두고서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강현삼 의원

[질문요지] 1. 우리 도의 균형발전 관련 추진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시·군간 권역간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등 도로 교통망 확충, 심야(출퇴근) 버스 운영, 권역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 중원문화권특정지역개발, 낙후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확대(제천, 단양 포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및 전략사업 추진 남부, 북부 출장소개청,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 등 입니다.

[질문요지] 2. 각종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추진성과는?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 25개 사업지구 추진 및 단양과 제천을 포함시켜줄 것을 국토부에 신청예정,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 4개분야 29개 사업,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중 : '12. 8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 제1구간 기본설계 용역중, 심야(출퇴근) 버스 운행 ,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 등 입니다.

[질문요지] 3. 민선 5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관련 도 전체 및 시군별 투자유치 실적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도 전체 투자유치실적은 8조 305억원, 시군별 투자유치실적은 충주시 1조 5142억원, 청원군 2조 7,849억원, 진천군 1조 4,282억원 등 입니다.

〔질문요지〕 4. 투자유치 기업의 실제 투자 실적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민선 5기 총투자유치 실적은 8조 305억원이며, 실투자 실적은 3조 729억원(30.7%)입니다.

〔질문요지〕 5. 시·군간 편중된 투자유치실적의 격차 해소방안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기업에서는 이전시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나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 상담시 우선적으로 투자 유치가 불리한 성장촉진지역을(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권장함.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60억)으로 공유재산 확보 후 기업에 매각 추진하며 성장촉진지역은 보조금 지원시 도 지원 확대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보조금을 지원(인프라 등)합니다.

〔질문요지〕 6. 광역특별회계 전반적인 운영현황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광특회계는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광역발전계정과 포괄보조형식의 지역개발계정이 있는데 지역개발계정은 자치단체별로 매년 배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 및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이 있으며,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 개발수요 및 소요 재원,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7. 광역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시군별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지원하고,「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정한 낙후지역에 매년 별도의 재원(시도자율편성사업 한도액의 5%정도)을 마련 배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질문요지] 1. 청주·청원 통합 관련 통합시특별법 제정과 통합이행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통합시 특별법' 제정 방법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방법이 있는데, 통합법안의 제정방법을 정부입법으로 할 것인지,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는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며, 통합시 특별법(안)의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통합시 특별법(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합이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통합시 특별법에 근거한 '통합시 조례'에 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운영방안 등을 명시해서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2. 청주·청원 통합 관련 청원군지역의 농업육성대책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옥산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37억원 규모의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사업, 30억원 규모의 청남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을 '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3. 청주·청원 통합 관련 통합 결정시 정부지원 확대 방안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거 통합시 구청을 현재 2개 구청에서 4개 구청으로, 국은 현재 4개국에서 5개국으로 증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광특회계사업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정부의 재원배분

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4. 청주·청원 통합 관련 투표율 제고 방안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청주시와 청원군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65개소와 100인이상 기업체 117개소 총 182개 기관과 기업체에, 주민투표일인 6월 27일날 투표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과 중식시간 투표참여 등에 관하여 이미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요지〗 5. 통합시 발전 청사진 마련을 위한 로드맵과 도의 지원계획은?

〖답 변 : 도지사 이시종〗

○ 우리 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KTX오송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바이오밸리,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과학벨트조성을 완벽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향후, 청주·청원 양 자치단체의 주민의사에 따라 통합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시의 발전을 위한 법령상의 지원 외에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합시 발전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6.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 교육업무 추진 조직과 직제, 인력배치 등 계획은?

〖답 변 : 부교육감 김대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따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시 지역교육청도 통합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합되는 지역교육청은 현행 2국 6과 체제이나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국 범위 내에서 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의 변화와 청주·청원통합시 출범에 대비하여 금년 7월부터 지역

교육청 기구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구의 설치와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요지] 7. 통합시 일반계고 평준화 및 인접지역 학군 설정 문제는?

[답 변 : 부교육감 김대성]

○ 통합초기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향후 통합시의 도시발전계획 청사진이 수립되고, 행정구역별 주민 거주 분포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장 예산 · 결산안처리

제 1 절 2011~2012 예산심의
제 2 절 2009~2010 예산결산

충청북도의회는 도 및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도민의 부담이 되는 주민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9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는 회기 동안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총 19건의 예산안,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지출안 등과 관련된 심의와 이 중에서 예산 관련 안건을 접수하고, 심의·처리하였다. 접수된 19건의 예산관련 안건의 심의·처리에서 6건(31.6%)의 안건만을 원안 통과시키고, 13건(68.4%)은 수정가결 하였다. 도지사 제출 예산결산은 30%인 3건을 원안가결하고, 70%를 수정가결 하였다. 도 교육감 제출 예산결산은 33.3%를 원안가결 하고, 66.7%를 수정가결 하였다.

제9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처리 결과

(기간 : 2010. 7. 7.~2012. 6.30.)

구 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계 류)
					원안가결	수정가결	폐기	부결	철회	기타	
총 계			19	19	6	13	-	-	-	-	-
소계	예산결산안	도지사 제출	10	10	3	7	-	-	-	-	-
		교육감 제출	9	9	3	6	-	-	-	-	-
2010	예산결산안	소 계	8	8	3	5	-	-	-	-	-
		도지사 제출	4	4	1	3	-	-	-	-	-
		교육감 제출	4	4	2	2	-	-	-	-	-
2011	예산결산안	소 계	9	9	3	6	-	-	-	-	-
		도지사 제출	5	5	2	3	-	-	-	-	-
		교육감 제출	4	4	1	3	-	-	-	-	-
2012	예산결산안	소계	2	2	-	2	-	-	-	-	-
		도지사 제출	1	1	-	1	-	-	-	-	-
		교육감 제출	1	1	-	1	-	-	-	-	-

제 1 절 2011~2012년 예산심의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계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569억 751만원(5.5%)을 증액한 2조 9,992억 254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87억 4,312만 3천원(4.8%)이 증액된 2조 5,952억 2,859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1억 6,438만 7천원(10.4%) 증액된 4,039억 7,394만 9천원이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중 66건에 72억 2,235만 7천원은 삭감 의결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예비비 3억 935만 9천원을 삭감하여 못자리뱅크사업, 꿀벌벌집지원, 정책복지보좌관제 인건비 등 3건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 의결하였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흉작 및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의결하였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역 / 회계별	수정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합 계	*2,999,203*	*2,842,295*	*156,908*
○ 일반회계	*2,595,229*	2,476,485	*118,744*
○ 특별회계	*403,974*	*365,810*	*38,164*
- 공기업특별회계	*185,879*	*152,677*	*33,202*
• 지역개발기금	*185,879*	152,677	*33,202*
- 기타특별회계	*218,095*	*213,133*	*4,962*
• 충북도립대학운영	*9,827*	*7,577*	*2,250*
• 의료급여기금	*170,117*	*168,845*	*1,272*
• 농어촌개발기금	*15,148*	*9,657*	*5,491*
• 학교용지부담금	*5,399*	*7,247*	*-1,848*
• 광역교통시설	*4,524*	*3,687*	*837*
• 충청북도균형발전	*13,080*	*16,120*	*-3,040*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계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217억 5,722만원(4.1%)을 증액한 3조 1,209억 5,97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34억 996만 7천원(3.2%)을 증액한 2조 6,786억 3,85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3억 4,725만 3천원(9.5%)를 증액한 4,423억 2,120만 2천원이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중 53건에 65억 6,699만 1천원은 삭감 의결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예비비 3억 1,985만 6천원을 삭감한 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비를 증액 의결하였다.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보호와 시군의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의결하였다.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역 / 회 계 별	수정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합 계	*3,120,960*	*2,999,203*	*121,757*
○ 일반회계	*2,678,639*	*2,595,229*	*83,410*
○ 특별회계	*442,321*	*403,974*	*38,347*
- 공기업특별회계	*196,309*	*185,879*	*10,430*
• 지역개발기금	*196,309*	*185,879*	*10,430*
- 기타특별회계	*246,012*	*218,095*	*27,917*
• 충북도립대학운영	*7,495*	*9,827*	*-2,332*
• 의료급여기금	*192,339*	*170,117*	*22,222*
• 농어촌개발기금	*15,175*	*15,148*	*27*
• 학교용지부담금	*4,828*	*5,399*	*-571*
• 광역교통시설	*6,075*	*4,524*	*1,551*
• 충청북도균형발전	*20,100*	*13,080*	*7,020*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051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1조 5,504억원) 보다는 1,547억원(10.0%)이 증가하였고, 추경에 의한 2010년도 최종예산(1조 8,162억원) 보다는 1,111억원 (△6.1%)이 감소한 수준이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무상급식 분담금, 자체수입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다. 세출예산은 의무교육대상인 초, 중,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비 등 학교 급식비, 유아 및 저소득층 자녀, 특성화고 학생 학비 및 교육정보화, 교육복지 투자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 기숙형 중학교 신축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중점 편성하였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11년 예산안 (A)	2010년 예산액		증 감		비 고
	본 예 산	추경예산	본 예 산 대 비	추경예산 대 비	
1,705,138	1,550,433	1,816,244	154,705 (10.0%)	△111,106 (△6.1%)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각각 1조 8,015억 9,456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도(2011년도 1조 7,051억원) 보다 965억원(5.7%)이 증가하였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조 7,237억 8,900만 4천원, 자체수입 477억 3,689만 7천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300억 6,865만 9천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7,325억 9,936만 4천원, 평생·직업교육 31억 5,499만 1천원, 교육일반 658억 4,020만 5천원 계상하였다.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등 법정전입금 예정통보액, 무상급식 분담금 그리고 자체수입과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선진화,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 하였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교육, 대안교육 및 진로교육 강화,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12년 예산안 (A)	2011년 예산액		증 감		비 고
	본 예 산	추경예산	본 예 산 대 비	추경예산 대 비	
1,801,595	1,705,139	1,913,096	96,456 (5.7%)	△111,501 (△6.2%)	

제 2 절 2009~2010년 예산결산

제9대 전반기 도의회의 예산결산관련 활동은 2009년, 2010년 회계연도 충청북도 예산결산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이 3조 469억 9,807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2조 6,313억 105만 5천원(86.4%), 특별회계 4,156억 9,701만 8천원(13.6%)이었다. 예산현액 대비 1.1% 초과수납(337억원) 되었으며, 2008회계연도보다 11.8%인 3,227억 2,703만 4천원이 증가되었다.

세출결산 총액(지출액)은 2조 9,263억 2,395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2조 5,481억 7,801만 1천원(87.1%), 특별회계 3,781억 4,594만원(12.9%)이었다.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지출하였으며, 2008회계연도보다 15.6%인 3,952억 4,244만 3천원이 증가되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6억 7,412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4.0%이며, 이중 명시·사고이월액은 287억 3,043만 6천원(23.8%), 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8,240만 9천원(0.6%), 순세계잉여금은 911억 6,127만 7천원(75.6%)이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세입예산 관리부적정,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개선 권고,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액 과소계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대책 강구, 국고보조금 사업 운영 소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업무 개선권고, 계정과목 분류차이로 인한 재무보고서 정보이용자의 이용불편, 주요 기금예치금 운용개선 권고, 기금관리·운용 부적정, 기금활용 미흡 등이었다.

2009 회계연도 충청북도 회계결산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현년도 채 무 상 환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B)	세출(C)		소 계 D=(B-C)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013,282,367**	**3,046,998,073**	**2,926,323,951**	**0**	**120,674,122**	**28,730,436**	**782,409**	**91,161,277**
일반회계		2,607,667,747	2,631,301,055	2,548,178,011	0	83,123,044	28,730,436	782,409	53,610,199
특별회계		405,614,620	415,697,018	378,145,940	0	37,551,078	0	0	37,551,078
공기업	소계	167,912,539	177,839,054	154,068,295	0	23,770,759	0	0	23,770,759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167,912,539	177,839,054	154,068,295	0	23,770,759	0	0	23,770,759
기타	소계	237,702,081	237,857,964	224,077,645	0	13,780,319	0	0	13,780,319
기타	충북도립대학운영	7,077,385	7,291,481	6,528,212	0	763,269	0	0	763,269
기타	의료급여기금	171,822,437	171,706,347	170,983,170	0	723,177	0	0	723,177
기타	농어촌개발기금	13,548,777	13,566,433	10,640,748	0	2,925,685	0	0	2,925,685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21,768,056	21,706,274	14,970,384	0	6,735,890	0	0	6,735,890
기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986,119	6,985,378	4,565,131	0	2,420,247	0	0	2,420,247
기타	충청북도균형발전	16,499,307	16,602,051	16,390,000	0	212,051	0	0	212,05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이 3조 5,520억 4,531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3조 1,340억 1,669만 1천원(88.2%), 특별회계 4,180억 2,862만 3천원(11.8%)이었다. 예산현액 대비 15.1% 초과수납(4,622억원) 되었으며, 2009회계연도보다 16.6%인 5,050억 4,724만 1천원이 증가되었다.

세출결산 총액(지출액)은 3조 3,363억 7,40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2조 9,629억 2,199만 7천원(88.8%), 특별회계 3,734억 5,207만원(11.2%)이었다. 예산현액 대비 96%를 지출하였으며, 2009회계연도보다 14.0%인 4,100억 5,011만 6천원이 증가되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0억 9,469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5%이며, 이중 명시·사고이월액은 407억 9,836만원(23.8%), 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7,332만 9천원(0.5%), 순세계잉여금은 1,295억 2,300

만 4천원(75.7%)이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잉여금의 이입소홀, 보조금 정산 소홀, 사고이월 부적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장기계속 주요건설사업 예산책정 부적정, 지방교육세 및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소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의 부적정,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방안 전환, 지방세 고질적 체납자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대책소홀, 환경시설 유지비 관리실태 미흡, 도로공사 편입부지 보상 착오 및 사후관리 소홀, 시책추진보전금 집행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선정 및 결산 미흡, '행복 충북운동'실효성과 구체성 결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의 부적정(제도개선), 예산절감 시책 부적정(제도개선), 바이오컨벤션센터 지방채 발행목적 미달성 및 부지 장기간 방치, 채무결산 부적정, 점용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관리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2010 회계연도 충청북도 회계결산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현년도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B)	세출(C)		소 계 D=(B-C)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잉여금
총 계		**3,085,808,287**	**3,552,045,314**	**3,336,374,067**	**0**	**171,094,693**	**40,798,360**	**773,329**	**129,523,004**
일반회계		2,671,661,372	3,134,016,691	2,962,921,997	0	126,518,140	40,798,360	773,329	84,946,451
특별회계		414,146,915	418,028,623	373,452,070	0	44,576,553	0	0	44,576,553
공기업	소 계	186,550,863	189,380,159	153,798,818	0	35,581,341	0	0	35,581,341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186,550,863	189,380,159	153,798,818	0	35,581,341	0	0	35,581,341
기타	소 계	227,596,052	228,648,464	219,653,252	0	8,995,212	0	0	8,995,212
기타	충북도립대학운영	8,230,368	8,326,067	7,774,516	0	551,551	0	0	551,551
기타	의료급여기금	172,127,329	172,054,547	171,965,773	0	88,775	0	0	88,775
기타	농어촌개발기금	15,755,736	15,738,489	14,258,014	0	1,480,474	0	0	1,480,474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11,140,681	12,174,939	8,252,310	0	3,922,630	0	0	3,922,630
기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271,170	3,271,169	336,139	0	2,935,029	0	0	2,935,029
기타	충청북도균형발전	17,070,768	17,083,253	17,066,500	0	16,753	0	0	16,753

한편, 제9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 결과는 세입 ·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361억 4,1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1조 9,360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1%에 해당하는 1조 6,281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3,078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 처리 되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전용 운영의 부적정,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정, 교육경비보조금 확보에 대한 노력 미흡, 공유재산 관리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 결과는 세입 ·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429억 8,9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1조 9,427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8%에 해당하는 1조 6,472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2,955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월액은 1,478억 1,800만원 보조금 잔액 3,900만원 지방채 상환 17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59억 4,100만원 등으로 전액 처리되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비 지원 부적정,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에 대한 노력 미흡, 관행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결산 미흡, 행정착오에 의한 과오납금 반환 과다, 예비비 운영 부적정,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수 및 범죄경력 조기 확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및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집행 개선, 재무제표 연계성 오류, 회계처리 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 및 BTL 상환관리 등의 제도개선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제9대 전반기 교육청 예산결산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액 ①	예산현액 ②	세입결산액 ③	세출결산액 ④	세계잉여금 ⑤=③-④
2009	1,787,018	1,936,141	1,936,054	1,628,160	307,894
2010	1,833,496	1,942,989	1,942,775	1,647,229	295,546

제5장 행정사무감사

제 1 절 행정사무감사 개요
제 2 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3 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1 절 행정사무감사 개요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비교

구 분	행 정 사 무 감 사	행 정 사 무 조 사
범 위	도정업무전반	도정업무중 특정사안
시 기	매년 정례회중 14일 이내	수 시
요 건	법정감사 - 본회의 승인	재적의원 1/3이상 발의 - 본회의 의결로 결정
성 격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의 회의
주 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방 법	감사와 조사는 같은 방법에 의해 실시	

제 2 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 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기 간 : 2010년 11월 23일(화)부터 12월 2일(목)까지(10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별	대 상 기 관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정책복지위원회	○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감사관실 ○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 충북개발연구원, 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행정문화위원회	○ 공보관실,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 자치연수원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산업경제위원회	○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건설소방위원회	○ 균형건설국,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방본부, 충북개발공사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교 육 위 원 회	○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교육지원청

4. 감사반 편성

위원회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의회운영 위 원 회	박 문 희	김재종, 김도경 김동환, 김영주 김양희, 박한규 이광희, 장병학 정 헌	수석전문위원 조병옥 전 문 위 원 변영규 행 정 6급 유영상 속 기 사 2명
정책복지 위 원 회	심 기 보	박한규, 김광수 김도경, 노광기 손문규, 장선배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전 문 위 원 최영지 행 정 6급 김병태 행 정 7급 민동기 속 기 사 2명
행정문화 위 원 회	최 병 윤	김영주, 김양희 박종성, 유완백 정 지 숙	수석전문위원 장용대 전 문 위 원 김보흠 행 정 6급 최철재 행 정 7급 김희제 속 기 사 2명
산업경제 위 원 회	김 봉 회	정 헌, 김종필 김희수, 박문희 윤성옥, 황규철	수석전문위원 민병완 전 문 위 원 유지영 행 정 6급 김주희 행 정 7급 김왕일 속 기 사 2명
건설소방 위 원 회	권 기 수	김동환, 김재종 이광진, 이수완 임헌경, 임 현	수석전문위원 길기웅 전 문 위 원 신봉순 행 정 6급 이덕항 행 정 7급 방해진 속 기 사 2명
교 육 위 원 회	최 미 애	장병학, 박상필 이광희, 전응천 최진섭, 하재성	수석전문위원 구명회 전 문 위 원 이윤영 행 정 6급 이충환 행 정 7급 임민순 속 기 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12. 2.(목)	10:30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정책복지위원회	11. 23.(화)	10:30	▪ 감사관실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4:00	▪ 정책관리실	
	11. 24.(수)	10:30	▪ 충북도립대학	〃
		14:00	▪ 보건복지국	
	11. 25.(목)	10:30	▪ 보건환경연구원	〃
		14:00	▪ 인재양성재단	
		15:00	▪ 충북개발연구원	
		16:00	▪ 충북학사	
	11. 26.(금)	10:30	▪ 청주, 충주의료원 BTL사업 현장	현 지 확 인
	11. 29.(월)	10:30	▪ 청주의료원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1:30	▪ 충주의료원	
	11. 30.(화) ~ 12. 1.(수)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행정문화위원회	11. 23.(화)	11:00	▪ 현지확인(행정분야)	현 지
	11. 24.(수)	14:00	▪ 공보관실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1. 25.(목)	10:30	▪ 행 정 국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1. 26.(금)	10:30	▪ 자치연수원	자 치 연 수 원
	11. 29.(월)	10:30	▪ 현지확인 (문화여성환경분야)	현 지
	11. 30.(화)	10:30	▪ 문화여성환경국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2. 1.(수)	10:30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12. 2.(목)	10:30	▪ 종합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	11. 23.(화)	10:00	▪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 24.(수)	10:00	▪ 농정국	〃
	11. 25.(목)	10:00	▪ 농업기술원	〃
	11. 26.(금)	10:00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14:00	▪ 신용보증재단	
	11. 29.(월)	10:00	▪ 지식산업진흥원	〃
		14:00	▪ 테크노파크	
	11. 30(화) ~ 12. 1.(수)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건설소방위원회	11. 23.(화)	10:00	▪ 균형건설국	건설소방위원회 회 의 실
	11. 24.(수)	10:00	▪ 현지확인(균형건설국)	현 지
	11. 25.(목)	10:00	▪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건설소방위원회 회 의 실
	11. 26.(금)	10:00	▪ 소방본부	건설소방위원회 회 의 실
	11. 29.(월)	10:00	▪ 충북개발공사	〃
		15:00	▪ 현지확인(충북개발공사)	현 지
	11. 30.(화)	10:00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건설소방위원회 회 의 실
		14:00	▪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	
	12. 1.(수)	10:00	▪ 현지확인(소방본부 소관)	현 지
	12. 2.(목)	10:30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교육위원회	11. 23.(화)	10:30	▪ 교육과학연구원 ▪ 단재교육연수원 ▪ 중앙도서관 ▪ 학생교육문화원 ▪ 학생종합수련원 ▪ 학생외국어교육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11. 24.(수)	10:30	▪ 보은교육지원청 ▪ 옥천교육지원청 ▪ 영동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11. 25.(목)	10:30	▪ 충주교육지원청 ▪ 제천교육지원청 ▪ 단양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11. 26.(금)	10:30	▪ 청원교육지원청 ▪ 진천교육지원청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음성교육지원청	청원교육지원청
	11. 29.(월)	10:30	▪ 청주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11. 30.(화)	10:30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12 1.(수) ~ 12. 2.(목)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위원회별 지적사항

위 원 회 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계	367	159	208
의회운영위원회	2	-	2
정책복지위원회	59	11	48
행정문화위원회	37	37	-
산업경제위원회	68	22	46
건설소방위원회	79	12	67
교육위원회	122	77	45

7. 감 사 결 과

의회운영위원회

□ 건의사항(2건)

○ 도의회 운영 및 사무처 소관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개선

○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이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시 정확하고 오류 없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

정책복지위원회

□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11건)

【감사관실 : 1건】

○ 사회복지시설 관련 비위 등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을 위해 지난 2007년 증원된 감사관실 인력의 활

용 실적이 미흡함. 시군 정기감사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감사 등 감사부서의 더욱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2011년도에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테마감사 등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정책관리실 : 2건】

○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다수(19개)임. 또한 한명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임(최대 10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있어서 평가방법이나 대상, 기준 등이 통일성이 없고 도의 의도대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음. 전년도와의 비교를 통한 누적평가 등 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보건복지국 : 3건】

○ 최근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 종전 1층에 있던 장애인 관련 부서가 올해 직제개편 후 4층으로 이전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시 1층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보고 및 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늦게는 2010년 9월 28일에 정산보고가 된 경우도 있으며 2010년 10월말 현재 총 116건 14,537,016천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남. 미회수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조치를 하고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정산보고 및 잔액 반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충북개발연구원 : 1건】

○ 정책과제가 도민을 선동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연구성이 있는 과제만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또한 모든 연구과제에는 연구원이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람

【청주의료원 : 4건】

○ 금년도 총 3회에 걸쳐 장의용품 가격조정을 실시한 내역을 보면 품목별로 30~40%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되는 등 조정폭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함. 가격 조정시 내부적인 임원회의를 통해서만 하고 있는데 향후 의료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격조정을 하시기 바람

○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칠성판을 상주와 협의 없이 재사용하여 왔고 판매대금을 받지 않도록 한 내부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당 1만원씩 대금을 징수하여 왔음. 책임자 문책과 의료원의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 감사관실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장의용품 등 물품 구매시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아 재고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품목별로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경우에도 소요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필요한 수량만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고 용역, 물품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견적서 없이 냉온 정수기 렌탈료를 비롯한 5가지 사업을 수의계약하여 1년치 보험료 705만 720원을 선급비용으로 지급하였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건의 및 촉구사항(48건)

【감사관실 : 4건】

○ 도민감사관이 지역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 의문시 됨. 지역여론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도민 감사관의 자격범위도 시민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도의 감사결과를 보면 표창인원과 수범사례 발굴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감사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함. 특히 중앙의 감사실적과 비교해도 도의 감사실적이 훨씬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음.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람

○ 시군 감사결과에는 신분상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감사에는 신분상 조치가 거의 없는 것은 관행적인 제식구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음. 향후 본청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도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몇 년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는데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정책관리실 : 5건】

○ 2008년도부터 개최해 온 아이디어 챌린지 사업이 입상 아이디어의 도정 반영실적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부족한데 축소 또는 폐지 등 큰 틀에서의 사업 전환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정부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독려와 점검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폐단도 많이 있음. 향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기 집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지방교부금 감소, 과다한 지방채 발행,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손실분 등 3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에 건의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정책연구용역이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전에 검증절차가 미흡함.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심사시 원가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자료중 공통사항인 '국정감사시 국회제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국회의원명과 자료 제목만 표기하여 제출한 부서가 있는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부터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 전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보건복지국 : 11건】

○ 보육시설 관련 지도점검이 2010년도에 1회, 20개 시설에 불과하였는데중앙에서 시달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도 지도점검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종사자들을 위해 잘 쓰여지고 있는 지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람

○ 도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실정을 보면 별다른 여가활동 없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푸드뱅크사업은 남는 음식물의 처리와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최근 이 사업이 다소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교사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보건진료소에서 처방하는 의약품과 의료보험청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나 허위진료에 따른 부당청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장애인 주단기시설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지속적인 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복지부 권고안의 95% 내외에 불과하며 대우수당도 타 시도에 비해 하위권에 속해 있음. 이로 인해 이직률 상승 및 사기저하 등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우리 도의 노인자살률이 전국 2~3위권에 속해 있음.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의 고립감이 주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 활용 및 각종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여 자살률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청주청원 통합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각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시설의 공동사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바람
○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옥천 부활원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보건진료소의 신축보다는 이동진료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보건진료원에 대한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충북도립대학 : 5건】

○ 교수인원 29명중 2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교수는 17명에 불과함. 교수들의 연구활동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대학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이 4년간 20억원에 이름. 학교발전을 위해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북부지역을 포함하여 도내 각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졸업생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기금 교외장학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우리 도 출신 학생으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입학자원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대학의 학과 등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4건】

○ 내년부터 의무교육대상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의 모든 분야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급식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람
○ 최근 석면 검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천 수산, 한수, 덕산 지역에 토양오염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4대강 사업지역중 특히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수질측정망 등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6대 국책기관 관련하여 기술습득, 정보공유, 상용화, 공동사업 등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인재양성재단 : 2건】

○ 장학금 선정 기준에 가정형편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여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장학금 수혜자중 우리 도를 위해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인재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충북개발연구원 : 3건】

○ 연구원별 수탁과제를 보면 도에서 의뢰한 것이 48%, 시군에서 의뢰한 것이 37%로 도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 시군별 연구과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밀레니엄종합타운 개발과 관련하여 도의 추가요구에 의해 총 4번에 걸쳐 추가사항이 있었음. 약 19억원정도의 연구용역비가 소요 되었지만 내용이 모두 사장되었고, 민선4기 투자유치성과 연구용역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포함시키는 등 용역내용이 의뢰한 기관의 요구에만 맞는 연구용역이 되고 있음.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활동에 임하시기 바람.

○ 1999년부터 충북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치 운영되어 온 충북학 연구소가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역발전연구센터'로 통합되어 업무가 추진되고 있음. 충북학 연구 업무는 우리 충북의 역사와 문화 등 정체성 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종전 충북학연구소와 같이 별도의 기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충북학사 : 5건】

○ 청람재의 경우 교통편이나 내부시설 등 면학환경이 열악하여 도내 학생들의 이용이 적은데 학생들의 편의를 개선하여 도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 새로 이전한 충북학사의 시설이 일반 학교기숙사보다 좋다고는 하나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쉴 수 있는 편의 공간이 부족함. 신문, 컴퓨터 등과 접하면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 바람
○ 충북학사의 조직에 비해 지금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지 의문시 되는데 조직진단 등을 통해 인력운용 문제에 대해 검토 바람
○ 충북학사 이사가 주로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사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봄. 도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청람재 이용학생이 우리 도가 아닌 외부 출신이 많음. 청람재 건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청람재 존폐의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임. 도내 학생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또는 존폐의 문제까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청주의료원 : 7건】

○ 가정의학과의 경우 외래환자 수입은 연간 1억원이 조금 넘는데 비해 전문의 2명의 연봉은 3억이 넘음. 관련 규정상 가정의학과가 청주의료원에 꼭 설치되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아님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정형외과, 내과 등 일부 의사의 경우 타 병원의 평균보수보다 훨씬 높은 1인당 2억4천에서 3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실적은 전혀 없고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와 수술만 이루어지고 있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일반 산부인과에서 하기 힘든 불임 시술 등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주기 바람
○ 타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직원 친절도가 낮다는 여론이 있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친절교육 외에 성과급 반영, 친절공무원 선발 등 개인적인 인센티브 제공 및 야간근무수당 조정 등 친절도 제고와 이직률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대민 무료진료서비스 대상기관 선정시 소외계층 등 진료서비스의 사각에 놓여 있는 계층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대상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람
○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해 러시아연방 브리티야 공화국과 접촉 중인

데, 실제 우리나라와 자매결연 등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단기고용직원 47명중 1년 미만 근무자가 대부분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정규직과 동등한 일을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시 원가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인부들의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용역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충주의료원 : 2건】

○ 충주의료원 이전예정부지 진입도로가 상당히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사도 심한 편임. 예정도로 외에 별도의 우회도로 등 진입로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감리단 등 관계기관과 진입로 경사 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장의용품 구매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이나 견적입찰이 많은 편인데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해 납품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제한을 통해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행정문화위원회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37건)

【공보관실 : 4 건】

○ 실국별 모바일 웹 QR코드 제작 및 활용방안

○ 전광판 모니터링 및 관리 철저

- 행사 만료 전광판 광고내용 적시 교체
- 전광판 광고물 계약 이행 확인 및 모니터링

○ 온라인 웹진 콘텐츠 강화 및 뉴스레터 정기적 발행 철저

○ 홍보예산사용에 대한 주의

- 도정홍보와 지역행사 등에 홍보비 이중 지원 지양할 것
- 파워블로거 간담회시 개인당 예산 과다 지출 등 주의

【행정국 : 10 건】

○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복지지원 시설(휴양시설) 확대 정책
- 각종 청내 복지시설 및 휴게 공간 개선

○ 인사정책 개선
-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
- 인사위원회 심사시 같은 날 심사할 경우 서면심사 지양

○ 해외교육 및 연수 등 교육효과 활용 극대화 방안

○ 세입확대를 위한 체납징수 대책
- 체납세액 징수 대책
- 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 확보할 것

○ 각종 공사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 도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최소화 할 것

○ 도유재산 관리 철저
- 도유지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검토 및 납세 강화
- 도유지 불법점거 상태 등 재산 실태 파악 철저

○ 도청 청사내 도의회 공간 확보 방안
-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대한 검토

○ 도 체육진흥 및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 도민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에 있어 여론수렴 등 도민의견의 적극적 반영
- 체육시설 이전 및 체육단지 조성 등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
- 전국 체전 성적 향상을 위한 대책

○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홍보 및 시설 대책
- 문화재발굴에 따른 시설 건축 대책
-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홍보 방안 연구할 것

○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안전대책 수립
- FISA(세계조정연맹)의 권고안에 적합한 시설・인력・장비 확보
- 구조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계획 등을 위한 안전전담 부서 확보 및

테러대비 등 안전대책 강구

【문화여성환경국 : 16 건】

○ 도서관 활성화 정책 추진
- 대표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도서관 활성화 대책

○ 문화예술 정책 활성화 방안 추진
- 도정목표인 창의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작예술 활성화 방안
-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단체간 갈등방지 대책

○ 도립예술단 관리 개선
- 도립예술단 지휘자 임용과정에서 야기 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도립예술단 복무규정 관리 철저

○ 여성긴급전화 1366 활성화
- 여성긴급전화 1366의 민간위탁 추진

○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지사와의 간담회 정례화 강구
- 여성정책계획에 여성단체장 및 임원 참여 확보

○ 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 대책
- 농촌지역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 청소년 보호시설 내 청소년 정서지원 강화 방안

○ 청남대 운영 활성화 방안
- 승용차 입장제 개선 방안 검토
- 조경 관리 철저 및 동상 앞 설명 부착
- 개방형 직위자 선임 등 활성화를 위한 인력방안 검토
- 대통령 조형물(FRP) 훼손된 것 대책 강구

○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개선 방안

○ 대충청방문의 해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충북만의 관광활성화 방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사업 발굴 추진 철저

○ 생태교란동식물에 대한 대책

○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철저
-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비 확대 지원 등 활성화 방안
○ 수돗물에 대한 대도민 홍보방안 마련
○ 탄소 포인트제 실시 등 적극적 환경정책 구현

【자치연수원 : 4 건】
○ 강사 교수법 확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강구
○ 사이버 교육 활성화 방안
- 사이버 교육 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
- 사이버 교육의 다양성 강화 방안
○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교육 강화 방안
○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대여) 활성화 방안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3 건】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 문화재 발굴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
○ 운영위원회 효율성 검토 및 정관을 현실에 맞게 검토할 것

산업경제위원회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22건)

【경제통상국 : 5건】
○ 도시가스 공급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할 것
○ 국제통상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예산이 매년 동일한데 업무개선 내용과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각종 경축행사시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 위원회 개최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심의위원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충실히 할 것

○ 노사정포럼 운영시 통상국에서 일정한 규정을 정하여 각 시·군, 각 단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할 것

【농정국 : 2건】

○ 옥천 뱀장어 치어방류시 사전·사후 DNA가 차이가 발생해(국산·북미산)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농번기 농민에게 임대되는 농기계가 비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고장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향후 전문적인 사람이 이를 조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농업기술원 : 3건】

○ 농기계 임대사업을 2~3개 면을 대상으로 작목반에 위탁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정할 것

○ 가축분뇨를 액비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액비시설용 개별 적산전력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3건】

○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기존에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도록 할 것

○ 소상공인 자금 대출시 중기센터, 신보, 금융권 대출 등 2중 3중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이러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개선할 것

○ 중기센터가 정관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기업사랑 농촌사랑운동본부 관련, 농협업무 관련 등)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시정할 것

【충북신용보증재단 : 1건】

○ 중기센터와 협의하여 소상공인 자금 대출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개선할 것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3건】

○ 예산집행이 11월 말임에도 그 집행 실적이 저조한바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추진함으로써 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정관에 지식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식품회사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정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에 대한 조속한 결제를 통해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충북테크노파크 : 5건】

○ 기업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 사업이 특정기업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올 예산집행 현황 자료 작성시 세출 및 현액이 다른 기관의 경우 집행률로 나타나는데 테크노파크만 증감으로 표시하여 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것

○ 감사자료 제출시 의원들이나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성들여 만들 것

○ 임대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미흡하니 시설관리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한 각종 행사의 소모성, 낭비성 행사를 지양할 것

□ 촉구 및 건의사항(46건)

【경제통상국 : 8건】

○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요금 산정시 배관효율 등 충북도의 적용기준이 없음.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

○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시행할 것

○ 도시가스 요금 산정시 도에 회계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회

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이 분야에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할 것

○ 도에서 정기적으로 양대 노총과 사용자, 경제인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도록 할 것.

○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주말장터 형태의 시장을 육성하고 홍보하여 시골지역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

○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근거가 없음. 재단설립 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관련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정국 : 16건】

○ 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상황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수지분석표를 작성할 것

○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장이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군청, 읍면장들과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직급 상향이 필요함. 관련 부서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직급상향에 노력할 것

○ 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이 회식 중 쓰러진 상황과 관련하여 공상여부를 신중히 분석하여 향후 건강이 회복되면 복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다슬기 치패방류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것

○ 농민단체 등 보조금 지급 후 그 관리가 미흡한데 향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것

○ 농정국이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재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육성하여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액비저장시설 등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

○ 올바른 액비생산을 위해 액비시설에 별도의 적산전력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가축분뇨의 매입량과 반출되는 액비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일지를 꼼꼼히 확인할 것

○ 액비 반출시 최소한의 시료검사에 철저를 기할 것

○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축산부서 직원과 환경정책과 직원간 공조를 통해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기할 것

○ 쇠고기 이력제 실시, 쇠고기 15등급제 실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제값을 주고 좋은 등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할 것

○ 제천에 북부출장소가 개청할 경우 종자사업소의 종자보급과를 출장소내의 기구로 개편할 예정인데 이는 업무성질상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

○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농자재를 스스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2012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군 양돈농가가 필요로 하는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확보에 노력할 것

【농업기술원 : 9건】

○ 시범사업의 경우 선별을 통해 시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시범포 사업시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주변의 노인들을 적극 활용할 것

○ 신품종 개발, 특허 출원 등 기술원에서 직접 생산 또는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친환경 관련 사업이 소득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도의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

○ 오디를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개발할지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할 것

○ 청사 경비업체 선정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급적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설립 취지에 맞게 각 단체가 제출한 사업성과 또는 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부실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개인별 또는 시군별 시범사업 선정시 개인 또는 시군이 복수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 의혹이 없도록 할 것
○ 기술원의 각 연구소장들이 해당 농가와 긴밀한 간담회를 통해 농가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2건】

○ 가경동 중기센터 옆 공터(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당초 구입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 계약직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충북신용보증재단 : 4건】

○ 채권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상권,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계약직·임시직 직원이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데 임직원들이 노력하여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4건】

○ 결원된 직원을 조속히 채용하고, 채용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 재단의 자립화를 위하여 자구노력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을 양성할 것

○ 진흥원이 수탁사업만 진행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충북테크노파크 : 3건】

○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이 그 임기가 끝날 경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및 기술보급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경비용역 업체 등을 선정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테크노파크와 경제통상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도 보강하여 이를 추진할 것

건설소방위원회

□ 시정·처리요구사항 (총 12건)

【균형건설국 : 5건】

○ 괴산장류식품사업 협약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 및 매각대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 할 것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장소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 4대강 사업 작천보고정보의 퇴적물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진천 초평천 영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배수관거 뚜껑 닫은 곳 거푸집 자국 없도록 마무리 하고 잔토부지 말끔히 정리할 것

○ 동량-금성간 도로공사 구간 중 2000년도에 보상이 끝났음에도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 조속히 철거가 되도록 조치할 것

【소방본부 : 4건】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의 경우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 119지역안전센터 통합으로 인한 민원발생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소방차량 구입 후 5~7개월만에 주요부품의 하자가 발생했다. 검수철저 및 고가장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소방본부 사무실과 상황실을 이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충북개발공사 : 1건】

○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040억을 투자해서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자금부담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함

【충청북도교통연수원 : 2건 】

○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운수사업자의 교육역시 중요하다.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 정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여 시행할 것

□ 촉구・건의사항 (총 67건)

【균형발전국 : 27건】

○ 진천, 음성 혁신도시 공정률(20%)이 타시도 (44%)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사업시행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
○ 혁신도시 주변의 정주여건이 매우 부족하다. 정주여건 조성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조기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괴산장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관(괴산군수, 도의원, 기업인 대표 등)대책회의를 개최할 것
○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균형개발과 업무가 과중하다. 2개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것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

○ 백두대간 벨트 공동개발구상 관련 당초 목표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계획을 수정할 것
○ 충청권광역경제권활성협의회의 연계협력사업중 태양전지, 솔라벨리의 연구내용에 대하여 우리도에 유리한 조건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추가용역은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용역발주건에 대하여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발주 할 것
○ 소도읍가꾸기 사업 중 보은읍과, 봉양읍에 도비지원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
○ 자전거 도로조성시 남부권 지역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청원-문의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지연 원인분석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 청풍대교 접속도로 82호선 공사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
○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영동군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도 차원의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교통불편신고 사항중 부당요금징수, 난폭운전, 정류소 미정차 신고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
○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청주↔오송역간 교통대책을 강구할 것
○ 충주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충주시와 협의하여 견실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실시 후 실태점검 및 운영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4대강 사업중 작천보의 어도(21m)를 더 확장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것
○ 하천편입용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특정재원을 마련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도로명주소사업은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지 변경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 할 것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 음성 일양약품 정문개설 요청건에 대하여 원하는 장소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 11건】

○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인건비 부족액 확보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
○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국가가 추진하지 않고 민자유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건립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오송바이오밸리의 성패여부는 민자유치에 있다. 바이오벤처타운 건설은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국립노화연구원의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단의 유치 전략을 강구할 것
○ 바이오상징탑의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최대의 높이로 하여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바이오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잦은 계획변경으로 민선5기 신뢰성이 추락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것
○ 바이오밸리 추진동력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 전담부서 2개과 이상, 부지사 1명을 책임자로 지정, 50명이상의 정원 확보 및 정원의 20~30%는 개방형직위로 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오송바이오밸리 정주여건 조성사업 중 학교유치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 첨복단지 홍보를 위한 예산확보와 우수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

【소방본부 : 11건】

○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빌딩 화재를 교훈삼아 장비 현대화와 사전훈련을 통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에어백이 설치된 차량을 구입하여 활용할 것

○ 보은, 단양, 괴산지역의 소방서 설치가 계획보다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의용소방대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초기 진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대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촌지역의 경우 군복무 대체투입 등 소방인력 증원시책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지역안전센터 통합으로 인하여 사무실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 근무인원에 맞는 근무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
○ 영동소방서 구청사의 경우 4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용도폐지하여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할 것
○ 초고층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급 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전문의용소방대를 일반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소방직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병원신세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장비의 안전성 확보 등 소방직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굴절사다리차의 부품결함(유압펌프 불량 등) 발견시 즉시 A/S 하고 소방서간 훈련 횟수도 균형 있게 실시하여 효율적인 장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충북개발공사 : 10건 】

○ 감정평가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선정위원회 외부인사가 현재 1명인데 증원하여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할 것
○ 오창 제2산업단지의 원금 및 이자회수 방안과 공동주택 분양가액의 신중한 검토를 통한 분양계획에 철저를 기할 것
○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와 보은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실제 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MOU변경 또는 파기 후 새로운 MOU체결 후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조직운영을 경직화된 공조직에서 유연한 기업경영시스템으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

○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경제전망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한 2011년도 사업계획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무허가 오리농가 보상 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사업대상 선정시 속전속결형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이자발생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지역건설장비 및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 밀레니엄타운 개발은 수익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청주시에 매각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5건】

○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 교통불편신고 현황을 보면 2009년보다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 충북도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대상자의 범위, 자체사업 발굴 기금운영 등 적극적인 자립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획일적인 교육운영을 탈피하여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
○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시군의 경우 업무를 이관하여 시군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 3건】

○ 제천한방엑스포 학술회의 개최 성과물을 잘 활용하여 한방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영구시설물이 방치되면 안되며 영구시설물 활용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엑스포 조직위에서 도와 제천시로 인계인수할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 작성하여 인계인수 할 것

교육위원회

□ 시정·처리요구사항 (총 77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 : 5건】

○ 방과후 학교 예산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보다는 교과학습 위주로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중등교사 72% 참여하는 등 현직교사의 참여 비율이 높고, 일부 작은 학교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수업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과학습 위주보다 학생들의 특기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비중을 높이고, 가능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운영 할 것

○ 농산촌 전원학교, 농산촌 연중 돌봄교실 지원예산은 학생 이탈 방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촌 학교와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나 사업계획 및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음.

감독청에서는 대상학교의 사업시행을 꼼꼼히 검토해 주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좋은 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후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학교 회계직의 계약서 내용이 학교 마다 실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불평등하거나 부당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계약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호칭에서 인격적으로 비하되는 호칭이 많아 현장근무의 심적 갈등 요소가 됨. 가능하면 회계직의 계약기간을 365일로 개선하고, 불평등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정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학교회계직도 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학생과 관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존중하는 의미인 '선생'으로 하거나 적정한 호칭을 사용하여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

○ 국가의 브랜드인 한글(국어교육),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것.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마구잡이 외국어 행정용어 사용안하기

- 한글교육 브랜드화
- 한글학력경시대회(학교별, 지역교육청별) 실시
- 학교별 학습독서 목록(학년별, 학기별, 단원별, 차시별) 작성 후 연중 교과시간에 독서지도의 촉구
- 학년에 맞는 한글 맞춤법 지도

○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공문서 줄이기, 통계시스템 활용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추진할 것

【도교육청 : 12건】

○ 폐교된 학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대관리비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

○ 신설학교 설립 시 학생수용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착오 없도록 하고 학구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

○ 일부 교장·교감의 징계사유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도를 넘는 사안인 데도 징계양정이 경고, 주의로 경미하게 처분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관련 업무를 재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기 바라며, 앞으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품위유지 관련 정신교육을 강화할 것

○ 기초학력책임지도 중심학교 43개교(초28교, 중15교)중 참여 학생 3~10명 미만인 학교와 300명이 넘는 학교 등 43개교 모든 학교에 일괄 3,000천원씩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바 학력부진 학생 수를 감안한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할 것

○ 초빙교장(2007~2010) 공모 현황을 보면, 초·중·고교 41개교 중 21개교에서 1명만이 공모하고 임용 되었는바, 이는 초빙교장 공모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다수의 대상자가 공모토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 학생야영장(제천, 충주, 괴산청천) 시설이 낡고 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야영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거나 폐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내 각급학교 보통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습기자재 TV 348대가 노후화되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특수학교 방과후 바우처를 치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타 방과후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
○ 특수학교 순회학급(재택)을 위한 별도의 치료사 및 치료지원 바우처 대신 치료사 증원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영부 훈련과 관련하여 “코치, 감독의 충분한 의견 청취반영, 학부모의 긍정적 참여 유도, 코치 수당의 현실화” 등 성적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6회 걸쳐 1,000천원씩 개산급 지급과 일부 축·조의금은 1회에 5만원이상 지출 하였는바,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건별 지출하고, 축·조의금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 최근 발주된(2년 이내) 사업 중 빈번한 설계 변경이 있는 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교육청 : 34건】

(공 통 : 17건)

○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실적이 좋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관내 교직원인사관리규정을 만들 때는 교육청별, 학교군 별로 직접 교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만들어 주고, 일반 행정직인사도 내신서를 받아서 해주기 바라며, 교장·교감도 나이스에서 일반직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 통일·안보교육의 교육실적, 참여도, 활동이 미흡하므로 예산확보는 물론,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을 세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지역교육청은 학교의 식기세척 세제를 수거해서 분석한 내용을 학교에 알려, 학교장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식당을 찾아가서 학생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해보고 식사예절 지도도 해 줄 것
○ 학교별 칠판사용에서 화이트보드 사용과 백묵 사용 칠판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교장들께 권장해 주기 바람
○ 초·중등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연 10만 원 이상 책정될 수 있도록 지도 할 것

○ 100명 이하 작은 학교의 부진학생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장학컨설팅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폐교재산을 교육재정 확보에 급급하여 시설보수 없이 입찰을 통해 대여하고, 대부분 외지인에게 낙찰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은 혜택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장은 공유재산 임대수수료 미 납부자를 직접 찾아 만나보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
○ 방과후 교육과 관련하여 원거리 지원 강사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 지원과 특기종목 지정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지킴이 미지정 학교와 교내 CCTV 미설치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우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줄 것
○ 연중 방과후학교 운영 후 문제점, 개선점, 학습자료 전시회가 담긴 성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효율적인 컨설팅 장학을 통한 수업의 질 높이기에 만전을 기할 것.
- 교단수업을 훼손시키지 않는 장학위원 구성(교사, 교감(장), 학부모, 퇴직 유능한 교원 등)
- 장학사의 권한 부여 및 업무경감
- 관내 교장단, 교감단 회의시 공개수업 참관 및 담임 지원
○ 지역교육청은 검증된 학습부진아 검사지를 만들어 학교별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한 후, 체계적으로 지도 할 것
○ 새터민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사성, 생색내기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할 것

(청주교육지원청 : 5건)

○ prosumer로서의 학부모 교육은 바람직하나 교육내용을 학교참여에 중점을 두지 말고 “부모는 자녀교육의 책임자다.”, “내 아이는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추진 할 것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활용토록하고 도교육청에서 인증된 방과후학교 운영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인증된 우수강사를 많이 활용할 것

○ 엘리트 체육예산 과다 편성 운영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의 체육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대책을 강구 할 것

○ 학교운영위원회의 원안 가결 율이 96%로 학부모들의 제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검토 할 것

○ 청주교육지원청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 교과부의 지침에 따른 주민 및 학교구성들에게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보공개, 선택의 기회 제공 미흡
- 낙찰자 선정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낮은 할인율의 입찰자가 낙찰되는 등 예산절감을 하지 못한 점이 발견됨
- 특히, 샛별초등학교 인도잔디 운동장조성은, 주민, 학부형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촉박한 시간 속에서 밀어 붙여서 갈등을 유발한 점이 문제임
- 샛별초가 위치한 생태마을의 특수한 환경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임.
- 산남중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이 단지 BTL 사업 학교라는 이유로 운동장 조성 사업을 취소한 점 등에 대해 지적함

  향후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샛별초 운동장조성 사업은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쳐 생태마을 위상에 걸맞는 갈등 없는 운동장 조성이 되게 할 것

(충주교육지원청 : 1건)

○ 예성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어 잉여교실이 많은데 인근의 중앙초, 국원초 학구도 재조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제천교육지원청 : 3건)

○ 학교교육 유예자나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아 교육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 장락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상이고 교실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인근 중앙초등학교나 홍광초등학교는 급당 인원이 28명 정도에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인바 장기 수용계획을 고려한 현학구도 조정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

○ 제천시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천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것

(충주·제천교육지원청 : 1건)

○ 충주, 제천 관내(시내) 단설유치원 건립계획을 마련할 것

(충주·제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1건)

○ 충주학생야영장, 제천 학생야영장, 청천학생야영장의 시설이 낡고 열악한 환경과 이용자 수 급감함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옥천교육지원청 : 4건)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친구사랑, 우정의 날' 행사를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바람

○ 장야초 개교이후 생긴 삼양초 유휴교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남부 영어체험센터를 3개 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보은·영동지역 학생 수송 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방과후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강사 수당이 시간당 바이올린 22명 대상에 90천원, 가야금 17명 대상에 135천원, 컴퓨터 14명 대상에 30천원, 무용 67명 대상에 30천원을 지출 하였는바 특성, 지역여건,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시간당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단양교육지원청 : 2건)

○ 원어민 교사 채용에 적정을 기할 것

- 채용주체, 방법 및 심사기준
- 무자격(교원자격증, TESOL 자격증 미소지자) 대책

○ 최근 5년간 연도별 초등학교 재적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직속기관 : 26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 7건)

○ 2003년, 2004년 1007종 제작 및 구입한 귀중한 점자도서 자료들을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입모의고사’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맞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업무 분장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천체관측 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농촌 소규모 학교에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 할 것

○ 전자도서관 해킹으로 부터 학생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연구학교 발표 우수사례는 일선학교에 파급 및 일반화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

○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충북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 할 것

○ 충북진로정보센터 운영은 최신 입시정보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입시요강 분석 및 자료탑재로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로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 6건)

○ 각급 기관마다 글로벌 인재 교육을 위한 영어교육을 경쟁 하듯 많이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어교과를 비롯한 기초 기본교육 및 예절을 다루는 연수가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재교육연수원은 영어교육 만큼은 외국어교육원으로 일원화 하고, 단재교육연수원은 컨설팅 장학을 위한 전문직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단재교육연수원은 교사 및 공무원 연수과정에 ‘의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과목이 없지만 충청북도 공무원연수원에서는 정규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공무원과 의회관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교원 및 공무원 연수과정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수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집합연수 중 ‘상시 출석연수’를 하루 정도 ‘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각종 교직원 연수에 안보의식 교육시간과 인성교육시간을 최소 30%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자체 지급기준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등 법령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

○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관한 연수과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여성권한척도와 성별지수가 최하위이며, 성인지에 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비중을 고려하여 연수과정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

(충청북도중앙도서관 : 6건)

○ 중앙도서관의 주 업무는 학생독서지도임에도 학생독서교육 및 행사가 빈약하고 평생교육 위주로 운영된다고 사료됨
2011년도부터 다양하게 학생독서지도를 활성화하고, 초·중·고교 학년별 학습독서목록을 제정하여 전 교사 및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학습도서를 다양하게 갖추어 알찬 독서교육과 20개 지역도서관과 연계하여 밀도 높은 독서교육을 실시할 것

○ "금빛평생봉사단"을 당초 결성 목적에 맞게 운용할 것이며, 교육전문 퇴직자의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잘할 것

○ 도서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족한 아동도서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

○ 점자도서관 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 시집 등 기증도서를 발간년도 기준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 연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학생과 일반인으로 이용자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토대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개선하여 학생 이용자 수와 대출 건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 3건)

○ 한국의 브랜드이며, 충북교육청의 브랜드인 한글사랑관의 보완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박물관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충실한 내용으로 재정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수영장을 찾는 민원인들이 수영장 사용료를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 2건)

○ 학생의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 및 비수기에도 진천, 대천종합수련원이 활용되도록 각급학교와 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으로 교직원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 2건)

○ 청주영어연수원 운영 시 도보로 다니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과정을 저학년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것

□ 건의 및 촉구사항(총 45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 : 6건】

○ 모든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방과후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검토할 것

○ 학교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 BTL 사업으로 신·증축한 건축물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다목적교실 건립 시 규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냉방기 등 내부시설도 확충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것

【도교육청 : 10건】

○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 공립·사립유치원간에 인건비나 시설비 등 지원 격차가 크다고 사료되는바 격차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충북 도내에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소규모학교를 경제논리로 폐교시키지 말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할 것
○ 친환경 녹색 성장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할 것
- Green job 관련
- 실생활과 관련 실질적 방안
○ 2011년 3월 도교육청 직제개편 시 교실수업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부교육감 직속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는「학교정책 기획총괄부」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수준 높은 컨설팅 장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행정사무 요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승진자 현황을 살펴본바 최초임용일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빠른 승진 자와 늦은 승진자 간에 10~15년 정도로 크게 차이가 있는바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인사에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 초·중 소년체전 수영종목 금메달 84개중 노골드의 성적을 만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
○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보건교육 대책과 보건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지역교육청 : 24건】

(공 통 : 8건)

○ 지역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에 큰 관심과 적극적 예방활동을 펼쳐 줄 것
○ 최근 친환경 녹색(Green)성장에 대한 것이 전 세계적 화두인데, 지금부터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Green 산업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학생안전사고 지도 대책 및 각종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
○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강의 수업시간이 극히 적은데 학생들의 건강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 배정 방안을 강구할 것
○ 방과후 중심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방과후교육 공동체 구축이 절실한 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 할 것

○ 전국최초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은 교육장들이 관심을 갖고 군수·군의원 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임. 특히 청원교육장은 유치원생 226명 무상급식을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나라서 최초로 유·초·중 전액 무상급식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 지역교육장들의 학교 현장방문이 일부지역 조사결과 월평균 1~2회 정도인데 현장(학교)지도에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적극 활동하여 주기 바람

○ 교육지원청 개편의 주목적은 교실수업개선을 위함인데 장학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컨설팅 장학을 위한 예산 수립 및 장학지도에 앞장서는 행정지원 촉구

(청주교육지원청 : 7건)

○ 감사자료에 의하면 학력 미달학교가 극히 저 비율인 학교와 높은 비율의 학교의 편차가 크다고 사료되는바 학력 미달학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요망

○ 초·중등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안을 경고(불문) 처분으로 징계 양정을 처분하였는데 앞으로 교원의 복무 및 기강을 확립하여 교사로써의 품위를 유지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배움터지킴이 전국 최초 운영의 시도는 바람직하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모범적으로 시행할 것

○ 각급학교의 선수육성비 자체예산 확보에 큰 차이가 있으며,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도 일정하지 않은 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자율방범대”와의 연계성 지도방안을 모색할 것

○ 청주시청은 무상급식비(99억)지원으로 2009년 98억, 2010년 147억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2011년에는 대폭 줄인 다고 하니,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경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 밀도 높은 컨설팅 장학을 위한 장학사의 전문연수, 권한이양, 예산수립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

(청원교육지원청 : 2건)

○ 청원군은 날로 세가 확장되고, 이런 추세라면 공장도 많이 건설되고 각종 시설들도 많이 들어와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재의 일부 학교가 신도시에 편입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사립 구분하지 말고 "마이스터고" 설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오창산업단지 내 (가칭)각리2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앞당겨 학부모의 숙원인 과대·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보은교육지원청 : 1건)

○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이해 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육 등은 매우 미약함.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동교육지원청 : 2건)

○ 저소득층자녀 및 소외계층자녀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귀가 방안 마련과 버스기사의 입장을 고려한 근무여건을 강구할 것

○ 초·중학교 부진아 학생비율이 A학교 3-6학년 494명 중 29.35%, B학교 38명 중 33%, C학교 23명 중 39%가 부진아로 높은 편인 바, 부진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요망

(진천교육지원청 : 1건)

○ 진천삼수초 본교 학교용지(임야 14,364㎡)가 현재 근린 공원부지이기에 운동장을 확장할 수 없는 바 진천교육지원청은 법규개정을 통해 운동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것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1건)

○ 괴산북중학교 입학생은 감소하는 반면, 괴산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해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등 제반 여건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것

(음성교육지원청 : 2건)

○ 매력 있는 음성교육을 위한 행복한 학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음성지역은 산업체가 많이 조성된 지역이므로 체험학습에 끝나지 말고 이들 산업체들이 지역교육과 학생들에게 인적·물적 지원을 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

○ 지역 연한제에 의한 인사정책을 청주권 중심이 아닌 군지역의 교육적 입장을 생각해서 가족을 이루어 지역에서 교직활동을 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배려조치 적극 검토 할 것

【직속기관 : 5건】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 2건)

○ 기관 명칭에 걸맞게 단재선생님의 정신,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선왕의 정신 등 정신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망

○ 교직원 능력개발 연수체제 운용으로 맞춤형 학교방문 연수나 지역단위 현장연수 AT-CAMP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연수이므로 연수운영 확대하도록 할 것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 1건)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 1건)

○ 대천임해수련원 비성수기 특히 3~4월, 9~10월에 객실료 20,000원씩인데 교육청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 1건)

○ 청주영어체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학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

제 3 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요구 하며,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기 간 : 2011년 11월 16일(수)부터 11월 29일(화)까지(1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별	대 상 기 관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정책복지위원회	○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감사관실 ○ 충북도립대학, 보건환경연구원 ○ 충북발전연구원, 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행정문화위원회	○ 공보관실,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 자치연수원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산업경제위원회	○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건설소방위원회	○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 추진단 소방본부, 충북개발공사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교 육 위 원 회	○ 충청북도교육청 ○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교육지원청

4. 감사반 편성

위원회별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의회운영 위 원 회	박 문 희	김재종, 김도경 김동환, 김영주 김양희, 노광기 이광희, 장병학 정 헌	수석전문위원 정헌성 전 문 위 원 윤상기 행 정 6급 조미숙 속 기 사 2명
정책복지 위 원 회	심 기 보	노광기, 김광수 김도경, 강현삼 손문규, 장선배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전 문 위 원 남기운 행 정 6급 김병태 행 정 7급 민동기 속 기 사 2명
행정문화 위 원 회	최 병 윤	김영주, 김양희 박종성, 유완백 정 지 숙	수석전문위원 손자용 전 문 위 원 김보흠 행 정 6급 김서준 계약직(나급) 정숙정 행 정 7급 김희제 속 기 사 2명
산업경제 위 원 회	김 봉 회	정 헌, 김종필 김희수, 박문희 윤성옥, 황규철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전 문 위 원 유지영 행 정 6급 김주희 행 정 7급 손정훈 속 기 사 2명
건설소방 위 원 회	권 기 수	김동환, 김재종 이광진, 이수완 임헌경, 임 현	수석전문위원 나시찬 전 문 위 원 김명회 행 정 6급 이덕항 행 정 7급 방해진 속 기 사 2명
교 육 위 원 회	최 미 애	장병학, 박상필 이광희, 전응천 최진섭, 하재성	수석전문위원 김왕년 전 문 위 원 이윤영 계약직(가급) 성선진 행 정 6급 이충환 행 정 7급 임민순 속 기 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의회운영 위 원 회	11. 29.(화)	14:00	▪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정책복지 위 원 회	11. 16.(수)	10:00	▪ 감사관실	정책복지위원회 회 의 실
		14:00	▪ 정책관리실	
	11. 17.(목)	10:00	▪ 충북도립대학	〃
		13:30 16:00	〈현지확인〉 ▪ 청주의료원 공사완공 현장 ▪ 충주의료원 신축현장 등	청 주 충 주
	11. 18.(금)	10:00 14:00 16:00	▪ 청주의료원 ▪ 충주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정책복지위원회 회 의 실
	11. 21.(월)	14:00	▪ 인재양성재단	〃
		15:00	▪ 충북발전연구원	
		16:30	▪ 충북학사	
	11. 22.(화)	10:00	▪ 보건복지국	〃
	11. 23.(수)	11:00	〈현지확인〉 ▪ 장애인생활시설 '청산원'	옥 천
	11. 24.(목) ~ 11. 29.(화)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행정문화 위 원 회	11. 16.(수)	10:00	▪ 현장감사	옥 천 군
	11. 17.(목)	10:00	▪ 현장감사	청원군, 충주시
	11. 21.(월)	10:30	▪ 공보관실, 자치연수원 ▪ (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문화위원회 회 의 실
	11. 22.(화)	10:30	▪ 행 정 국	〃
	11. 23.(수)	10:30	▪ 행 정 국	〃
	11. 24.(목)	10:30	▪ 문화여성환경국	〃
	11. 25.(금)	10:30	▪ 문화여성환경국	〃
	11. 28.(월)	10:30	▪ 종 합 감 사	〃
	11. 29.(화)	10:30	▪ 종 합 감 사	〃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산업경제위원회	11. 16.(수)	10:00	▪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1. 17.(목)	10:00	▪ 농정국	〃
	11. 18.(금)	10:00 14:00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용보증재단	〃
	11. 21.(월)	10:00	▪ 농업기술원	〃
	11. 22.(화)	10:00 14:00	▪ 지식산업진흥원 ▪ 테크노파크	〃
	11. 24.(목) ~ 11. 25.(금)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건설소방위원회	11. 16.(수)	10:00	▪ 균형건설국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17.(목)	10:00	▪ 균형건설국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18.(금)	10:00	▪ 현지확인(균형건설국 소관)	현지
	11. 21.(월)	10:00	▪ 바이오밸리추진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22.(화)	10:00	▪ 현지확인 (바이오밸리추진단소관)	현지
	11. 23.(수)	10:00	▪ 소방본부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24.(목)	10:00	▪ 현지확인(소방본부소관)	현지
	11. 25.(금)	10:00 16:00	▪ 충북개발공사 ▪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28.(월) ~ 11. 29.(화)	10:30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별	일 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교 육 위 원 회	11. 16.(수)	10:00	▪ 교육과학연구원 ▪ 단재교육연수원 ▪ 중앙도서관 ▪ 학생교육문화원 ▪ 학생종합수련원 ▪ 학생외국어교육원 ▪ 청명학생교육원 ▪ 충주학생회관	교 육 위 원 회 회 의 실
	11. 17.(목)	10:30	▪ 충주교육지원청 ▪ 제천교육지원청 ▪ 단양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11. 18.(금)	10:30	▪ 청원교육지원청 ▪ 진천교육지원청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 음성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11. 21.(월)	10:30	▪ 보은교육지원청 ▪ 옥천교육지원청 ▪ 영동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11. 22.(화)	10:30	▪ 청주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11. 23.(수)	10:30	▪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	
	11. 24.(목)	10:30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충청북도교육청
	11. 25.(금)	10:30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11. 28.(월) ~ 11. 29.(화)		▪ 감사결과 종합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6. 위원회별 지적사항

위 원 회 별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
계	429	153	276
의회운영위원회	5	1	4
정책복지위원회	77	25	52
행정문화위원회	56	46	10
산업경제위원회	72	26	46
건설소방위원회	89	16	73
교육위원회	130	39	91

7. 감 사 결 과

의회운영위원회

□ 시정사항(1건)

○ 의회사무처의 예산결산, 예비비, 기금 등 심사진행이 상임위별로 상이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일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건의사항(4건)

○ 청소년 의회교실을 시지역 뿐만 아니라 군단위 지역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해줄 것.

○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에 비해 인사문제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충북의정 발간과 관련 작은 의정활동 까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충북의정”은 좀 더 편안하게 1회성으로 보고 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쪽 수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받아볼 수 있도록, 편집방향·배포방향을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하기 바람.

○ 전체의원 연찬회가 실무능력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사와 개최시기 등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정책복지위원회

□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총 25건)

【감사관실 : 1건】

○ 도 감사시 적발되지 않았던 사항이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자주 있음. 종합감사시 재정시스템이나 서류확인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고의 일계표 및 월계표 등 현금출납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정책관리실 : 6건】

○ 우리 도에서 운영중인 91개 위원회 중 지난 2년간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7개나 됨. 또한 위원들의 회의 참여율도 저조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도 부족한 실정임.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여성위원 참여와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도립대학의 특성상 취업률이 매우 중요함에도 교원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며 연구실적은 50%를 차지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교원인사 등과 관련한 보완지시 공문이 있었는데도 아직 교수 승진 등과 관련한 도와 도립대학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 도립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교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도립대 교원인사 관리 규정이나 학칙 등을 모두 교수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며, 교원 평가시 내부 교원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실제 외부 평가위원들은 다양하게 평가를 한 반면 내부위원들은 전부 A를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기간도 매우 촉박하게 운영되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관련 규정과 제도운영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2010년도에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은 용역금액이 78억 정도인데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된 것은 21억원 정도에 불과함. 금액차이가 과다하게 나는 것은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향후 정책연구용역 심의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11년 2회 추경예산에 청남대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편성된 사례도 있으며, 2012년 예산에 편성된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비 76억원은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음. 조속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2011년도 예산절감 실적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69%, 국제부담금 47% 등 예산절감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게 당초 사업부서에서 과다한 금액을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보건복지국 : 5건】

○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인데 최근 2년간 보건복지국 직원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전보제한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보인사가 되어 복지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음. 향후 사회복지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은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자부담금과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시설에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같은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한 달 이상 복용할 수 있는 과다한 양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의약품 오남용 및 국가재정 부담

등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과다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운영이 활성화되어 보건진료소 운영 및 수입금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응급실 운영 및 저소득층 간병인사업, 의료진간의 소통 문제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충북도립대학 : 4건】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입학자원 감소 등과 관련해 대학의 학과 개편 등 생존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예산반영을 통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용역예산도 편성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현행 교수회에서 심의하여 만들어진 학칙과 교원인사관리규정을 보면 교원중 정교수 비율이 70%에 달해 교원 직급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교원 평가기준도 대학의 설립취지와 부합되는 취업률은 4%에 불과한 반면 당해 직급에서 200%의 연구활동 실적만 있으면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활동 항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원인사관리규정과 학칙 등을 기술인력 보급이라는 대학설립 목적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람

○ 교원 연구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에게 심사의뢰하는 기일이 촉박하여 면밀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사의뢰일과 심사보고서 작성일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외부심사위원들은 A, B, P 등 점수가 고른데 비해 내부 심사위원들은 평가점수가 모두 A임.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도립대에서 64억원을 들여 여학생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수요가 적고 통학버스와 관련된 문제 등의 이유로 기숙사 건립을 포기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은 잘못임. 향후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획 발표 전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람

【충북발전연구원 : 2건】

○ 과제 수행에 있어 시기가 매우 중요함. 특히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된 용역은 늦어도 8월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용역중인 사례가 있음. 도에서 용역을 의뢰하여도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는 용역수행을 거부하는 등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2009년과 2010년 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공통지표에서 리더쉽 부분이 취약하고 사업성과 부분에서는 평가항목별 편차가 많이 나는데 부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충북학사 : 1건】

○ 입사생 선발시 시군별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선발에 형평을 기하고 입사생에 대해 매년 재심사를 하여 시군 안배로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청주의료원 : 2건】

○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 등 재고물품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외부감사보고서에 지적되었는데 재고물품 정리 등을 통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외부감사보고서가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 되고 있음. 내실 있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의료원 운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직접 외부감사기관을 선정하고, 외부감사 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충주의료원 : 4건】

○ 외부감사보고서가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음. 내실 있는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 직접 외부감사기관을 선정하고, 외부감사 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친절교육을 강화했음에도 2011년도에 민원발생이 증가되었음.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불합리한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 직원간 갈등이 발생되는 등 조직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조직 및 직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조직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건의 및 촉구사항(총 52건)

【감사관실 : 5건】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청주의료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후 감사관실에서도 종합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조속히 청주의료원의 전반적인 경영상태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시·군 감사시 서류확인 위주의 감사로 인해 공금횡령 등 비리에 대한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금횡령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부서는 일원화되어야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도 감사부서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위촉후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도민감사관이 있는 등 계획대비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각종 감사시 도민감사관을 적극 활용 하여 도민감사관 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실적이 미흡하며, 감사대상이 모두 장애인 시설임.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고르게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비리 등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정책관리실 : 6건】

○ 2010년말 현재 우리 도 지방채 잔액이 4,452억원으로 2009년도에 발행한 1,801억원의 상환기간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현재 300억원 수준을 훨씬 넘어서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 도와 시·군간 이자수입 손실이 3년간 500억원이 넘는 실정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은 최소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실적이 114%에 이르는 등 최소화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며, 감사원에 건의한 내용도 매우 형식적이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건의한다고 밝힌 바도 있으면서 건의하지 않았음. 향후 예산 조기집행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추진하고 타 시·도와 힘을 모아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람

○ 도의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고 재원을 시·군별로 배분·감독하는 것인데,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도에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시·군 복지관과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도의 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음. 우리 도에서 직접 건립하여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군에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양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어 추진하시기 바람

○ 병든 소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봄.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부, 남부, 북부 등 권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련 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람

○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는데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도 저하가 원인이라고 생각함. 향후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군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기간예고제 대상사업 65건중 15건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을 해 준 바가 있는데 기간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봄. 향후 기간예고제 사업의 기간 연장기준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보완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보건복지국 : 11건】

○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충북으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보건소 등 보건행정기관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각종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도내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우리 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시설임에도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유난히 지적사항이 많은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외에 수시감사를 통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타 시설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도내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지원 등 협조 관계 강화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우리 도의 노인자살률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지정 받을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도 자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노인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도내 노인전문병원의 요양보호사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되었는데 공립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운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되어 도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적인 문제는 적극 건의하여 문제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람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사업을 통해 검진을 받은 산모들이 분만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분만병원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검진부터 분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산모들의 모든 검진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격차가 커서 도시지역의 보육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람

○ 보건소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보건소와 의료원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 도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복지부 권고안의 96% 수준으로 전국 하위권에 속해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이 2012년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에 대한 지원 여부,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재정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충북도립대학 : 4건】

○ 참옻을 활용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이 담당교수의 불미스런 문제로 인해 박람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도립대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무너졌음. 차질 없는 국비 지원 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람

○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언론에는 등록금의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 30%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음. 2012년도에 30%만 인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판단하여 향후 무상등록금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 도립대학발전재단 기금 모금 목표액 중 옥천군 출연금과 기타 출연금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여 기금이 목표대로 모금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2건】

○ 제천지역의 석면 오염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순발력 있게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보건환경 119지원팀 운영실적이 미흡하며 모두 일반적인 검사업무로 볼 수 있음. 도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충북발전연구원 : 4건】

○ 연구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립암센터 유치나 태양광 산업과 같은 전문분야의 연구위원이 없어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신뢰성과 설득력이 부족함. IT·BT 등 우리 도 현안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연구위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발전연구원의 운영방식과 과제배분 등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며, 특히 연구위원 3명에 대한 재임용 미조치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갈등이 외부에 표출됨으로써 연구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음.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향후 내부적인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원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최근 3년간 수탁과제를 한건도 의뢰하지 않은 시·군이 상당수가 있는 등 시·군의 과제 수탁이 미흡한 실정임. 시·군과의 정책적인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여 시·군 수탁과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군 담당 정책자문과에게도 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발전연구원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과제수탁을 늘려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제수탁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음. 연구원의 자립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과제수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충북학사 : 3건】

○ 입사생 선발시 현재 기회균등 부분에 포함되어 선발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별도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청람재의 경우 충북학사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여 도내 학생들의 지원률이 저조하고 외지 학생들이 상당수 입사해 있으며 결원률이 15%에 이름. 도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시기 바람

○ 입사생 선발심사 기준이 학업성적 80%, 생활수준 20%로 되어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와 넓은 의미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생활수준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충북인재양성재단 : 4건】

○ 인재양성재단의 기금 목표액이 2017년까지 10년간 1,000억원인데 도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민간기탁금은 대부분 금융기관 등 일부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기금 기탁자들의 저변 확대 및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면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언론계, 여성계 등 도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기관·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장애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곰두리 장학금이 매년 19,000천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장애학생수의 증가를 감안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동기 유발 차원에서 장학금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글로벌인재에 대한 해외문화 체험학생 선발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선발기준에 현재 30%로 되어 있는 소득수준 비중을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청주의료원 : 7건】

○ 의료수익이 매년 20~30억 적자가 나고 있는데 특히 2009년도에 비

해 2010년도 인건비가 15% 정도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의료 비용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생각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청주의료원의 총체적인 경영문제에 대해 도감사관실에 감사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을 것을 주문했고 추진하기로 답변도 하였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의료원에서 11종의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신 이에 필요한 시약을 장비 임대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사용과 신규구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장비운용 종합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

○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의료원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보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러시아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접근성 문제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봄. 의료원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청주권에 접근이 용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시기 바람

○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낮아졌으나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음. 이직률 감소와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성과급 인상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조직에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간 관리자급 직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충주의료원 : 6건】

○ 산부인과 의사가 공보의 1명뿐이어서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종합병원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의료원에서 10종의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신 이에 필요한 시약을 장비 임대업체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사용과 신규구입의 비용평가 등 장비임차 사용 문제

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료원 전체 장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장비 운용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

○ 조직에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간 관리자급 직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사업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농촌지역에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료원에서는 건강검진 위주의 사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비롯하여 충주의료원의 진료시스템 전반에 대해 도내 북부권 주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시기 바람

○ 저소득층 간병지원사업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최대 수용인원 대비 25% 정도 수준으로 실적이 저조한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행정문화위원회

□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총 46건)

【공통사항 : 4건】

○ 주요사업 설명자료 작성시 자부담 액수를 기타 란에 표시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정산서 제출시 자부담 포함 정산서를 받을 것

○ 각종 위원회 활성화

- 위원회 정기적 개최 노력할 것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할 것
-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

○ 민간인 국외여비 책정시 20% 이상 자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행정절차를 무시한 조례,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

【공보관실 : 4건】

○ 도정홍보 역량 강화

- 도정현안사업을 홍보협의회를 통해 적극 발굴 홍보

- 중앙지 및 지방지 특집기사를 더욱 활용하고, 중앙지의 특집기사에 만전을 기할 것

○ 도정홍보소식지 발간 개선
- 형식, 부수, 전달체계, 기사내용, 단가절감 개선안 마련할 것

○ 명예기자단, 블로거기자단 운영
- 기자단 통합 운영안 마련할 것

○ SNS 활용
- SNS의 네트워크(팔로워, 친구맺기) 적극 확장할 것

【행정국 : 12건】

○ 인사운영 합리성 제고
- 소수직렬, 기술직렬의 승진 불이익 없도록 할 것

○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정보 공개청구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및 정보공개 비율 높일 것

○ 행정자료실 활성화
- 공무원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도서구입

○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철저히 할 것
- 대상단체 기준, 보조금 지원 기준 등 점검
- 보조단체 및 지원예산 선정시 타당성 확보할 것
- 정산 관리 철저히 할 것

○ 지방세 징수 철저
-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방세 징수 철저히 할 것
-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색출할 것

○ 수의계약 관리 철저
- 부정 수의계약 없도록 관리할 것
- 각종 물품계약 구매시 충북지역업체의 물품을 가능한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

○ 공유재산 매각, 교환 등에는 사전에 감정평가하여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요구할 것

○ 생활체육행사시 시·군 부담 완화
- 도지사배 시·군행사시 시·군 재정부담 완화할 것
- 도·시·군간 예산지원 비율 지침 마련할 것

○ 도비지원 체육시설 무료 사용 대상자 확대
- 소년체전, 도민체전 참가 도대표선수 무료 대여할 것
- 고령자, 저소득층 무료 지원 방안 마련할 것

○ 체육회 운영 감독 철저
- 시·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운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 시·군체육회장 및 생활체육회장의 임기를 명문화하여 장기집권이 없도록 할 것

○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운영비 예산의 적정성 확보
- 충주조정선수권대회 예산 중 운영비 증액요구액(자원봉사, 문화재, 차량관리 등)이 과다 계상된 바 철저한 산출기초를 제시하여 적정성을 요할 것

【문화여성환경국 : 21건】

○ 관광항공과 용역 결과 활용 강화
- 관광자원화,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평가,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만의 특색있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제5차 충북권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 정지에 따른 사후계획 수립할 것

○ 드라마세트장 설치·운영 효율화
- 설치시 다용도(촬영세트장, 체험관, 전시·공연장 등)활용 방안 고려할 것
- 드라마촬영 적극적 섭외로 세트장 활용도 높일 것

○ 충북도 우수 관광상품 공모전에 더욱 우수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이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대회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외국인 관광 활성화
- 숙박시설 확충할 것
- 아울렛, 화장품 매장 등 기반시설 확충안 마련할 것
-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급감한 원인을 분석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청남대 관광 활성화
- 입구, 초소, 매표소를 한옥으로 개조할 것
- 청원군에서 개설하는 자전거 도로 포장을 마사를 다져 흙길로 조성할 것
- 안내원 외국어 능력자(도 관광안내원 채용기준) 우선 채용 및 운영 인원 축소
- 기존 지정 장소 안내방법을 개선하여 본관 등 일부 지정 장소에 안내원 배치하고 기타 지역은 안내판 및 터치스크린(외국어 설명 포함) 방법 등으로 시스템 개선

○ 청남대 용역관리 강화
- 용역인원(청소, 조경관리, 관광안내원) 절감할 것
- 관광안내원 위탁 용역 관리 철저

○ 미술대전 수상작 관리 강화
- 작품훼손 방지 및 전시·관람 환경 개선 방안 강구
- 수장고에 보관중인 수상작 활용방안 강구

○ 전업예술인 지원 강화
-「예술인 복지법」통과에 따른 준비 등 전업 예술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문화예술 국비예산 확보 노력
-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분야 예산 비율 증진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 노력할 것

○ 도내 문화불균형 해소
- 문화 소외 시·군에 문화기반시설 조성할 것

○ 무형문화재 지원 확대
-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확대 검토
- 무형문화제 축제 개최

○ 각 문화재 보수 철저히 하여 재보수 사례 억제할 것

○ 대표도서관 설치
- 대표도서관 설치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 여성폭력 대응 기능 강화
- 보은, 괴산, 단양, 증평 등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여성폭력 대응 기능 강화할 것

○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리 강화
- 운영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 및 지도 철저히 할 것
- 운영·관리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표 상근 방안 강구할 것

○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 교육 강사 전문성 확보

○ 석면지붕 교체 지원 철저
- 교체 대상 선정의 타당성 확보
- 교체 대상의 연차별 확대

○ 누수로 인한 유수율 제고 사업 강화
-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을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도민들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수율 제고사업을 강화할 것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 홍보 및 교육 적극 활성화할 것
-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

○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대책 마련

○ 하천생태복원
- 시내에 있는 하천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므로, 중앙에 협조를 건의하고 도비를 더욱 투입하는 등 하천생태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자치연수원 : 2건】

○ 교육과정 내실화
-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고 있는 유사중복과정을 정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강화할 것

○ 장애인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제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3건】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적 개선
- 예산안 중 목적사업비 32억 원 중 2억 4천만 원 정도만 수주하여 약 19억 원 정도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할 것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안 마련할 것

○ 예산편성 개선
- 전체예산 중 '2012 민속문화의 해' 사업 7억이 추가로 수입되었으나

전체예산 증감이 없이 단순 목적사업 보조금으로 수입되어 일반예산에 편성된 것은 위법 부당으로 사료되므로 개선

○ 조직 구성 및 이사회 운영 개선

- 조직개편관련 정관수정 조속히 이행할 것
- 이사비 수당, 교통비 등을「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것

□ 건의 및 촉구사항(총 10건)

【공통사항 : 2건】

○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일 것

○ 개방형직위제 취지를 살릴 것

-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등 개방형직위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할 것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공모에서 외부 청소년전문가가 응모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

【행정국 : 3건】

○ 주차장 수입금이 직원 주차장 확보 및 민원인 서비스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 활성화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장려

○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경기장 관련 4차례 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여론수렴, 타당성 조사 충분히 하여 철저하게 추진할 것

【문화여성환경국 : 4건】

○ 청남대 인근 주민들이 친절, 청결, 맛있는 음식 개발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바람

○ 도지원 및 시·군지원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간 기능이 중복되고,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기능과 서비스를 체계화할 것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액이 전체적으로 44%이며, 목표액이 징수율 55%에 그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므로 납부를 독려 바람

○ 환경사고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환경사고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도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단속하기 바람

【자치연수원 : 1건】

○ 실기교육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실무자)로 강사 섭외할 것

산업경제위원회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총 26건)

【경제통상국 : 10건】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

○ 취약계층 취업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발굴·육성할 것

○ 자료 제출시 상세한 설명, 사업비 표시 등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줄 것

○ 미국에 파견되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직원이 2년 활동 후 귀국할 예정인데 이를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것

○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패널티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 공공근로 사업을 농촌의 경우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줄 것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에 겸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미 수령한 수당에 대해 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것

○ 도시가스회사의 영업비용(인건비, 지불준비금 등)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검토하여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 할 것

○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시 신속, 정확한 정산을 수행하여 결산내용이 정산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농정국 : 4건】

○ 귀농귀촌 정책이 시군의 계획을 취합하는데만 그치지 말고충북도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귀농귀촌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

○ 학교급식 납품하는 축산물 업체에 대해 매월 1회씩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유해조시 피해에 대해 환경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대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할 것

○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종료시 신속, 정확한 정산을 수행하여 결산내용이 정산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농업기술원 : 5건】

○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시 지원되는 보조금의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고 이러한 사항들을 시군 센터에 지침으로 내려보낼 것

○ 대한잠사회 예산지원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예산절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것

○ 보조금 지급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지킬 것

○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시 신속, 정확한 정산을 수행하여 결산내용이 정산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것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1건】

○ 비정규직 직원을 1~2년 근무 후 계약해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충북신용보증재단 : 2건】

○ 직원들의 채권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 제출된 자료의 양이 적고 내용이 부실하여 향후 이를 개선할 것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1건】

○ 오창넷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충북테크노파크 : 3건】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재무제표 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자료를 만들 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것

○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월될 경우 이를 도에 통보하여 업무가 공유되도록 개선할 것

○ 공사용역 등에 있어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

□ 촉구 및 건의사항(총 46건)

【경제통상국 : 13건】

○ 유사석유 판매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민에게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 보조금 지급과 정산시 관계 법령과 충북도의 조례를 근거로 철저를 기할 것

○ 자료 요구시 업무담당자가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병행해 줄것

○ 농가의 태양광 발전으로 획득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고 있는데 농가와 한전의 계약이 농가에 불리하게 되어있어 이를 개선 한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농가의 시설투자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전에 협조를 구할 것

○ 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향후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

○ 충북도가 다른 국가의 도시와 원활한 교류 및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 대표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조합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분쟁해결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것
○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대 노총과 경영자 단체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열어 놓도록 노력할 것
○ 내년 도시가스 요금 책정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시가스 중장기 시설계획에 환상망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시가스 수급지역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도매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시가스 요금책정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보고서에 도시가스 회사의 인건비, 기술보급료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

【농정국 : 7건】

○ 함량 미달인 액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할 것
○ 육우에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에 육우가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농축산 기자재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이 공급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 기자재 구입비 지원시 정액으로 보조 해 줄 것
○ 내년 상반기에 충북도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줄 것
○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 불법 농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도록 노력해 줄 것
○ 묘목생산이 충북 옥천이 1위인데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에 “묘목”도 꼭 들어가도록 해 줄 것
○ 도축검사인원을 늘려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잔류물질이 있는 가축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농업기술원 : 9건】

○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화될 수 있도록(시책사업) 적극 노력할 것
○ 양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향후 잠사시험장은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를 모색할 것
○ 도 또는 시군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사전 농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개 할 것
○ 시범사업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
○ 보조금이 원칙대로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양봉농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 기후변화에 따라 토종작물이 지속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도사와 연구사의 비율이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태양광을 이용한 축산단지 건립 방안을 검토할 것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5건】

○ 충북도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수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현재 충북도청 내에 있는 일자리창출센터의 직원들이 중기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과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것
○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내 기업이 중국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홍보 및 상담부스 설치시 입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
○ 도내 기업의 특성에 맞고,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충북신용보증재단 : 2건】

○ 신용보증 사업을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
○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연초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3건】

○ 신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진흥원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진흥원에서 개발한 각종 정보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계획을 세워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

○ 용역업체 선정시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로 선정하도록 노력할 것

【충북테크노파크 : 7건】

○ 임직원 성과급 지급시 제규정을 준수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도내 기업에 기술력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우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 기업지원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이 정확한 선정기준과 지침에 맞게 운영할 것

○ 테크노파크에 위탁되는 수탁사업의 경우 일정 수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테크노파크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한데 테크노파크가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것

건설소방위원회

□ 시정·처리요구사항(총 16건)

【균형건설국 : 9건】

○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추진시 6개월마다 지도점검 미실시하였음. 2단계 전략사업추진시 규정대로 지도점검을 시행할 것

○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낙후시군에 사업비가 우선배정 되도록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

○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먼저 선정한 후 예산을 반영할 것
○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보은군의 R&D 센터 대부계약서 확인 후 잘못 된 부분 수정 보완할 것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중 재오개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시는 지역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선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보은, 영동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사업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속리산연계도로 선형개량공사 구간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행정대책 미흡으로 민자사업 추진없이 국가지원예산 21억만 선투자되고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였으므로 업무담당자와 책임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도로공사시 통로암거는 최소높이를 3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제정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바이오밸리추진단 : 3건】

○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 도비지원액이 너무 적으니 도비지원 증액 방안을 강구하여 내실있고 성과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
○ 바이오밸리 국제공모 수상작품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용역 수립시 개발중심축을 충북(옥산)방향으로 하여 별도의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시행할 것

【소방본부 : 1건】

○ 의용소방대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11월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충북개발공사 : 3건】

○ 당기순이익 대비 기부금의 납부액이 너무 낮은데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충북도민의 재산임. 해양수산체험관, 세계수집명품박물관 건립계획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촉구・건의사항 (총 73건)

【균형건설국 : 29건】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시 관리자의 검토가 미흡하여 보고서의 내용이 오류, 누락, 착오된 내용이 많은바 금후부터는 정확히 작성할 것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비하여 행정적 지원이 빈약한 상황임. 신도시건설팀 개편 또는 T/F 팀을 구성하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법정액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교통유발부담금 미징수 금액이 많은바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 100억원이상 금액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대비한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을 강구 할 것

○ 도로제설작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제방도로에 차량교차 구간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 도로선형개량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한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공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초정-미원간 제2충청내륙고속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논리개발, 연구, 중앙부처 협의 등 노력을 경주할 것

○ 초정-미원간 제2충청내륙고속도로의 예산 115억 중 50억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중부내륙철도 복선전철사업은 충주시와 충청북도의 관심이 적은 상황으로 충청북도에서 먼저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할 것

○ 도로공사, 하천공사 시행시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지 말고 보상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방하천 내에 편입된 사유지 중 미보상된 사유지의 경우 도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 강구 할 것
○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학교가 2014년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 혁신도시내 산업용지 분양가가 63만원인데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혁신도시현장에 자주 출장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의 인원충원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할 것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영동군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을 거울삼아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브랜드택시 도입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내용이 실제실적과 다르게 보고를 했는데 금후 보고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정확성을 기할 것
○ 청주-남이-부용-세종시, 강내-오송역- 세종시 구간 버스노선확보대책을 강구할 것
○ 버스요금 환승제 대기시간 30분이 적정한지 타 시·도와 비교하여 개선 추진할 것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사업 사업비의 대부분이 민자유치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액을 조례에 규정한대로 보통세의 5%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할 것
○ 백두대간 벨트사업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
○ 옥천 금산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
○ 지역창조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이 부족한데 향후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것
○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사업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바이오밸리추진단 : 13건】

○ 오송바이오밸리 국제공모전은 민자유치의 요인이 부족한바, 향후 연구용역 수행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오송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의 100%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 바이오밸리 추진단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우수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국립암센터 분원유치를 위하여 정치적 논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MOU 체결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핵심연구시설 건립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오송단지 진입도로 중앙투융자심사 미실시로 감사원 감사시 지적당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몽고메리카운티 현지확인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현지확인을 추진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시는 관련 업무를 경제통상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오송단지 정주여건 중 오송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것과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같은 레저시설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2구간 건설현장 신촌교차로에 차량통제시설을 설치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소방본부 : 13건】

○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된 이후 실적이 저조한데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카지노 출입공무원 적발의 건은 근무기강 해이의 결과임. 복무관리 강화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할 것
○ 소방본부 상황실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체적 지휘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단양이나 보은군 등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불만이 없도록 인구, 출동회수, 면적 등을 종합검토하여 소방력을 재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과 지급기준 선정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3교대근무를 위한 부족인원 135명 충원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및 총액인건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소방업무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19지역대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의용소방대원의 시·군간 조정을 통하여 군단위 취약지역에서도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노후차량 교체예산은 적기에 집행할 것
○ 시군 행사시 지급되는 경품을 소화기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난구조대 훈련시 육상장비와 헬기를 동원하여 합동수난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충북개발공사 : 15건】

○ 신척산업단지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진천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신척산업단지 주거 및 상업용지 분양이 어려우면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청원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금년 말이면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 조기집행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

○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 제천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30%로 매우 낮은 편이므로 분양가격을 낮추어서라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 신척산업단지내 오리농가 지장물 철거와 관련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옥천 군서면 도시개발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90억원은 1단계와 2단계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사업은 1단계 분양 후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정책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충북도 및 보은군과 협력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공공기관으로서 공적기능과 사기업으로서 수익적 기능의 균형감각이 부족하고, 공적기능에 대한 성과가 낮음. 이에 대하여 공적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2012년 경영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
○ 지구단위별 수익성 보다 균형발전차원에서의 사업추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해양수산체험관과 세계수집명품박물관건립계획은 추진하고 있으면서 11월 업무추진상황보고시 세계수집명품박물관은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함이 있는바 앞으로는 업무보고시 차질 없도록 할 것
○ 제천제2산업단지는 수해피해와 하자가 발생했는데 입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전국대비 보수수준이 매우 낮은 편인데 보수인상 및 인력충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것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4건】

○ 식당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시행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 정화조와 지하수개발공사는 일괄발주 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우수한 강사선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식당의 조리실 개선공사는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교육위원회

□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총 39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 : 8건】

○ 충주학생회관 건물 공연장 2층 관람석의 무대가시권이 확보되지 않고 계단이 경사가 급하여 학생들에게 매우 위험한데 이는 설계와 시공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리한 객석 늘이기를 시도한 탓이라고 판단됨

- 향후, 담당공무원은 설계와 시공과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 동 공사의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와 시공사의 잘못을 가려내어 이를 바로잡고 특히 무대 시야확보문제와 가파른 계단 문제를 완벽하게 개선할 것

○ 학교 비정규직(학교회계직) 계약서 사본을 받아 검토한 결과, 고용불안, 노동시간, 근로조건. 무급보건휴가,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을 무시한 내용이 있으며 계약서가 학교장 재량으로 작성이 가능하여 악용될 소지가 높음

- 학교회계직의 처우, 신분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약서의 불편부당한 내용을 개선하고 충청북도 전체 학교회계직 직군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지역 별 편차 없이 조건이 동등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농산어촌 돌봄학교와 전원학교 등은 사업의 성격이 복지를 비롯하여 학교시설이나 재무와 관련되기보다 교육적 측면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을 잘 못하였음. 교과부 정책 사업 배분 등과 관련하여 업무분담 시 사업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할 것

○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와 국어교육의 본질 지도를 위하여 2012년부터 보은・괴산증평교육지원청처럼 학교별, 지역교육지원청별 도대회(학생교육문화원에서 주관)를 필히 실시하고, 초・중학교 전학년 대회를 실시할 것

○ 비위생적 도축 및 불법유통과정으로 납품된 99개교 9,000여명의 사건이 현재 재판중임. 향후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학교납품 식자재에 우수 식자재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시행할 것

1) 학교마다 철저한 납품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 실시
2) 축산물 구매 및 식재료 검수 시스템 실시
3) 소중개 등록제 실시
4) 도축검사 및 발급실명제 실시
5)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 실시
6) 쇠고기(수산물, 농산품) 이력추적제 실시
7) 최저가 낙찰제 지양
8)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철저 확인

○ 많은 학교에서 불량학생 지도 시 진술서 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진술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라고 되어있음. ‘진술서’라고 한 이유는 학교에서도 선도대상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 됨. 학생이 어떤 문제의 활동으로 인해 처벌이 되는 경우, 경찰과 법의 판결 이외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유의 처리가 학교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에 상응하는 듯 한 용어와 서식을 활용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학교는 수사권과 진술 요구권에 해당하는 문서의 사용을 개선하도록 할 것

○ 2011년 전체학생수가 줄었음에도 오히려 학업중도 포기 학생이 증가했고, 청주를 비롯하여 지역별로 모두 증가였는 바, 고교의 경우 학업중단 사유의 대부분이 학교부적응이어서 이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제기 됨. 학업 중단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도 조기진단과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종합 대책’ 을 세울 것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철저
-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건별로 너무 개조식으로 되어 있어 추진성과 또는 기대효과 등이 없어 감사위원으로 참고하기가 몹시 부족하여 상세히 보고할 것

【도교육청 : 11건】

○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이 학교 당 4~5개로 교사와 학생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불만이 많고 오히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되고 있지 않고 있음
-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기초학력 부진 프로그램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과 우선 현재 프로그램 수를 재조정하기 바람

○ 야간 자율학습 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전자기기 사용 등을 위한 휴게실을 마련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90% 이상 설치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교실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생이 많았고 교사들로부터 이용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음
- 휴게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와 자유롭게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할 것

○ 각급학교 컨설팅 장학시 경력이 적은 교사나 신규교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전국의 지역교육청을 교실수업 개선, 컨설팅 장학을 돕는 교육지원청으로 바꾼 정책의 의도와 다름
- 일정기간 안에 수업개선을 위한 컨설팅 장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운영하도록 할 것

○ 충북도내 전 학생·교원·학부모들에게 '사람다운 교육'을 위해 중장기(5년) 도교육청 특화사업 계획 수립하여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의 모든 학급마다 연계·일원화 하고, 충북 학생들의 효행·질서의식을 생활화 시키는 총체적 시책을 계획·수립하고 연중 운영할 것

○ 충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관련 사업전담 전문인력의 배치 학교와 미배치 학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확대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사업전담 전문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며, 도교육청 사업 전담 부서로의 이관 필요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
- 노조 전담부서 및 교육감 직계약 요구
- 비정규직 협의체 신설 및 노동조합 활동 인정 할 것
- 유치원 종일제 강사, 특수교육보조, 조리원 중 인문계고 종사자의 275일 근무를 365일로 전환하고 영양사 면허수당 지급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도교육청 도금고의 이자수입액이 타 금융기관, 혹은 타 거래 이자수입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세출예산 중 예산절감비율 5%분은 1년동안 묵혀두는 사례가 있는 바, 1차 추경 예산편성 시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할 것

○ 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청주지역 일반계 고교 학교배정에서 청주고에 1차 지망 신입생을 100% 선발하는 우선권을 준 것은 고교평준화정책을 위반한 것 임. 또한 이해당사자가 전형위원으로 선발권 결정 회의에 참여한 것은 회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의결과는 인정 될 수 없는 바, 2012년 학교배정은 기존 방식으로 선발할 것

○ 교원평가제도에 민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장·교감 중 1명, 수석·부장교사 중 1명, 동료교사 중 1명이상 학부모·학생들이 참여토록 되어 있는데 장·단점을 점검 보완하여 추진하기 바람

○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로 학생들의 처분건수가 2010년 201명, 2011년 178명 등 각종 교육은 물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학생들 처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교육청 : 13건】

(공　통 : 7건)

○ 2006년부터 교육부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음에도 도내에 설치된 학교는 극소수인 바, 조치하기 바람

○ 청주시내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교내강사는 83.6%, 전체 중학교 중 78.3%의 교사들이 방과후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바, 방과후 수업에 현장 교사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같은 내용이 반복 학습되고, 교사의 다음날 학습준비시간이 적어 학업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특기적성교육으로 진행하고, 외부강사를 활용 하도록 할 것

○ 초빙교사(초·중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결국 초등보다는 중·고등학교, 읍면단위보다는 시단위로 쏠림 현상이 있는 바,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개선방향을 모색 할 것

○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평가대비 문제풀이식 수업 운영 등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학습지도 방식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장학지도 강화, 일과 전 1시간, 일과 후 2시간의 특별 보충과정 운영 포함,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 물의를 빚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등 감독을 강화 할 것

○ 학교 스포츠클럽운영 관련하여

- 2011학년도 2학기부터 동아리 형태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2~15개씩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학교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지도교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책이 미비하고 평일에는 방과후 교육활동과 중복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점들은 수정보완하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

○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대부분 시·군이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계획·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2010년도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작성

- 문제점 및 조치결과 보고사항 대부분 막연하게 뚜렷한 결과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서술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검토할 것임' 등으로 표기되어 있음
- 적극적인 조치 결과보고서를 능동적·계수적으로 표기하기 바람

(충주교육지원청 : 2건)

○ 엄마 품 온종일돌봄교실은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부족한 학생에게 학교가 상당 부분 학생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인데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15시간이나 되므로 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생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놀이 숙제 등 심적 부담이 크지 않도록 시간표를 짜야함

- 달천초등학교는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학년 대상 돌봄교실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전 학년 학생

플랫홈으로 이용하는 등 돌봄교실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도록 할 것

○ 검정교과서 선정위원과 학교운영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 요망

(제천교육지원청 : 1건)

○ 신백초 시험부정 건 징계교원 성과급 수령은 잘못된 예산 집행인 바, 지급된 성과급은 회수하도록 할 것

(음성교육지원청 : 1건)

○ 음성 용천초등학교 내에 들어선 폐가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생활에 철저를 기할 것

(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교육지원청 : 1건)

○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전 차단

- 지역별 시설별 주변 환경, 자재공급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단양·옥천·보은·영동교육지원청 : 1건)

○ 교과부는 농촌 이농현상과 학생이탈을 막기 위해 농산촌학교의 교육격차해소, 학생과 교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산촌 돌봄학교와 농산촌 전원학교사업에 기대를 걸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음. 일부 학교에서 성과가 있기도 하지만 농산촌 전원학교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바,

-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지역과 학교의 상생발전의 틀로 실질적인 역할, 기능, 활동을 목표로 계획하였는지?
- 학생이 학교를 진정으로 좋아하게 되었는지?
- 교사의 교수활동이 학생중심으로 변화되었는지?
-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높아졌는지?
- 교육청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했는지?

위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결과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지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직속기관 : 7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 3건)

○ 연구시범학교 중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환경생태교육 연구시범학교 5개교가 모두 괴산·진천·보은·청원 등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바, 도시 지역학교로 확대 운영하기 바람

○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 체험학습 운영을 가족단위 신청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늘림은 물론 훼손된 시설물을 연중 보수·운영하기 바람

○ 연구학교운영 관련

- 본도 223개교 연구시범학교 중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19개교, 안보의식강화 연구학교가 1개교, 인성교육 연구시범교가 9개교로 역사의식과 나라사랑 연구시범학교는 단 한곳도 없는데 2012년 계획에는 일부 반영되도록 할 것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 2건)

○ 2011년 성인지, 성희롱 관련 강사의 강의록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연수 시 성인지 개념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 좀 더 현실적이고 풍부한 예시와 토론, 역할극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기능직대상 사무능력향상 연수과정이 내부강사 7명, 외부강사 2명으로 기능직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를 5년이상 종사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가 교육하는 것에 비해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바, 외부 전문상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 2건)

○ 청명학생교육원 입소 및 복귀 절차와 관련하여

- 입소, 복귀, 잔류 등의 군대 용어사용을 시정·지양하고 진취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

○ 공무원 정·현원 규정 중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에 존재하는 15명의 교사를 '정원'에 포함시켜 편법적 인력운용을 정상화 시키도록 할 것

□ 건의 및 촉구사항(총 91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 : 7건】

○ 2010년 행감에서 인조잔디 시공업자 담합문제를 지적한 바,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 바, 업자들의 담합은 공무원들의 날카로운 감시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됨

- 이후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 업자들이 담합하지 못하도록 담합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함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학률에 비해 취학율이 32.8%로 매우 낮은 편인 바, 이는 탈북학생과 결혼이민자자녀 등이 한국 정착과정에서 부모의 문제도 있으나 출입국관리소 등에 등재 된 학생에 대해 취학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취학율을 높일 것을 촉구함

○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미달교 점검 및 행정안전부 문서(2008.1.27)에 의거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에 미달되는 학교가 많은 바, 2015년 1월 26일까지 각 유치원, 초등학교 별 놀이기구 설치비에 대해 예산편성 및 설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교육적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학생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선택적 교육활동비의 농촌지역 학교별 격차는 작은 학교 학생들의 복지와 돌봄, 학습 지원에 대한 문제이며, 또한 학생들의 활동에 들어가는 특별활동비 등이 학교구성원의 능력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면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지도가 요망됨

○ 교원업무경감 관련, 현장 교원들에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타시도의 교무행정사 등의 도입을 포함한 교원업무경감에 노력할 것

○ 학교장 출장 관련

- 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장 출장 횟수가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바, 학교장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에 전념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도교육청 : 33건】

○ 도교육청 교육국 산하 각 과에서의 기획운영, 평가조정, 통제 업무의 중복 등 혼선·갈등이 심하여 부교육감 직속 가칭 '학교정책담당관실'을 신설·운영하여 도교육청 교육행정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촉구함

○ 농업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4장 제 27조)에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농산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소속하에 농산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발전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음. 이는 법으로 정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으며 태만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농산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실질적 구성과 활동을 촉구함.

○ 일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과 혼동을 피하고, 충북의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2011.2)으로 학생중심 기능조정 필요와 충북중앙도서관과 11개 지역교육청 도서관 명칭에 "학생"을 표시하여 학생전용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바람

○ 도내 초·중·고교 학교신문 제작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표현력 신장과 학교 홍보를 위해 편찬 홍보하고 있음이 고무적인 바,

- 충북글짓기 지도회 주최 학교문집·신문 콘테스트 대회에 도교육청은 적정 예산을 수립·개선하고 공동대회 개최를 촉구함

○ 독서교육의 새 틀을 짜기 위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알찬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별 학습독서 목록을 도내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작성·활용하고 있는 바,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도서구입 및 활용을 촉구함

○ 2010. 9. 1.부터 도교육청에서 일괄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도내 유·초·중·고교·특수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해 감사업무 기간을 축소해서라도 3년간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중 1회는 필히 실시하여 청렴교육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할 것

또한, 매 감사시마다 적발 감사보다 지도 감사에 역점을 두면서 감사 우수사례 발굴 및 담당학교와 담당자에게 표창할 것

○ 2010년 도교육청 최다 예산절감 사례는 바이러스 백신 S/W구축인데 8,938만 1천원이며, 노후 영상기자재 교체사례는 6,571만 2천원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는바, 도내 최다 예산절감 담당자에게 연말에 포상할 것을 건의함

○ 신설 학교마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 남녀가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 수업종료 후 하교 길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육감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 체계적인 사례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교육청의 소통-불통 문제 관련

- 장애인 농성 장기화, 소통이 안되는 문제
- 샛별초 청주교육지원청과 학부모간 협상 후 징계처리와 합의안 처리 등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조치문제
- 행정실장 자살로 인한 유가족 등에 대한 경찰고발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과정
- 민원인 방문 시 셔터내리는 문제 등이 모두 교육청의 소통부재로 이루어지는 일인 바,

  교육청의 문을 열고 민원인을 만나는 열린교육감실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직업교육보다는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특성화고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바, 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홍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 세우기 바람

○ 기숙사 운영 관련하여

- 도내 기숙사 보유학교가 52개교로 90%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편중되어 인문계고와 특성화고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 1인당 기숙사비가 학교 간 편차가 심하므로 가급적 행정지도로 학교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BTL사업으로 신·증축한 건축물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다목적교실 건립 시 규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냉방기·온풍기 등 내부시설도 확충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 중소기업제품 구매 시 가격이나 제품의 질이 비슷하다면 가급적 도내 제품을 구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기 바람
○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수익성 사업 활성화로 기금마련에 많은 보탬을 주었는 바,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점검으로 환영받는 안전공제회가 운영되기를 바람
○ 학교체육지정종목 관련 자료를 보면 302개교에 1,041 종목을 임의로 배정하였는데 수행 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 지정종목 지정 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종목을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 감독 및 코치를 배치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전문계고 취업에 대하여
- 취업실적이 저조한데 명분 없이 지원금을 준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전년도 실적으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을 차등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타당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신규 교직원 배치에 대하여
- 제천, 단양지역에 신규 교직원 배치가 과다하여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배치된 직원은 일정기간 전보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바,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윤리, 통일, 안보담당 교사 교육에 대하여
- 신규교사 임용전·후 도교육청 차원에서 윤리, 통일, 안보교육은 최소 6시간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학교 방화 관리자 자격증 및 책임자에 대하여
- 도내 자격증 미소지자가 76명, 책임자가 교장, 교감인 경우가 21명으로 책임자 규정이 확실치 않아 소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단위학교 방화관리자 책임자는 행정실장이나, 학교장 중에 관리자 지정을 통일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 행정실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 학교 구성원들을 보면 무기 계약직들이 학교마다 5~25명씩이나 되

고 그들은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직에 있는 행정실장에게도 학교 규모에 따라 품위 유지비를 주는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교육광고 홍보판에 대하여

- 고정광고판이 타시도와의 경계지역에 한 곳도 없는데 도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타 시·도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도내 순회코치 선생님들이 모두 215명으로서 금년도에 교체된 코치 선생님이 29명으로 잦은 코치의 교체는 학생들의 사기저하가 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업중단학생의 전담시설이 도내 5개소(청주 1, 청원 1, 괴산 1, 제천 2)인데 전담시설의 증설 및 현대화 방안 강구하기 바람

- 중단학생(초 112명, 중 243명, 고 1,085명)

○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인사정책 수립 요망

- 고위직(교장, 교감 이상, 일반직 5급 이상 등) 공무원들의 최초 임용과 현 직급 승진년도를 비교하면 10년~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바,
- 적절한 개선대책 강구 요망

○ 201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 등으로 수많은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 바,

- 보조금 지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두고 지원 되어야 하고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목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우리 도가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소년체전에 수영종목이 많지만 최근 3년간 수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 코치들 사기진작, 예산확보와 효율적 운영, 학부모님들과 대화, 노민상 같은 우수지도자 자원 활용, 연맹과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 지속적인 유능선수 발굴, 우수선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람

○ 학생들 건강권보호차원에서 책 소독기를 지역교육청별로 한 두 개 정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람

○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경사상이 쇠퇴하고 교권까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반인륜적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효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함

○ 감사자료를 보면 10년간 폐교된 학교가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4개교 등 29개교인데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39개가 폐교예정인 바,

-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나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 정부에서도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농산촌 지역에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 돌봄학교, 전원학교, 기숙형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그 성과에 대해 검토 분석한 바가 있는지? 에 대해 검토해 보고 교육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작은 학교 희망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함께 논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건의함

○ 행정권한 위임에 대한 조례취지가 현장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감사권의 회수로 교육장 통솔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 최소한의 감사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없는지?
- 법적문제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와 교육감님의 의지로 돌려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폐교관리와 관련하여

- 폐교재산의 유지와 제대로 된 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임대가 곤란한 폐교는 진천의 구)백곡중학교 경우처럼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든지, 괴산의 광진분교처럼 지자체와 협의·매각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지역교육청 : 30건】

(공 통 : 7건)

○ 체험학습운영 시 숙박계약등 문제점에 대하여

- 위탁방식과 G2B계약 방식을 이용할 경우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도시 소규모학교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든지 하여 현실에 맞게 계약 집행을 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기 바람

○ 초등학교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 학구위반자에 대하여

- 2012년도부터는 위반 학부모가 없도록 규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초등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하여

- 현재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인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5개 과목을 3, 4, 5, 6학년별로 분석하여 단위학교 별로 선정하고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많은 샘플을 받아서 학교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서 선택하는데 각급 학교의 많은 시간을 뺏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의 책자들이 소각되는 현실인 바, 지역교육청 별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학생 건강검진 검사기관 및 비만아 관리 대하여

- 비만학생에게 가정통신문만 발송한 학교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비만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체육활동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어야 되겠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관련하여 비만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 비만아 감소를 위한 종목을 특별히 더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

○ 초·중·고 학생 수업태도에 대하여

-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생들과 많은 대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재미난 수업전개방법을 연구해야 되며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학교교육이 취업과 바로 연결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이 외부기관이나 단체 주관행사의 단편적 행사 위주와 상당수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교육을 마무리 하였는바,

- “저탄소 녹색성장”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의 인식교육
- 녹색 생활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중심 프로그램 개발
- 이를 적용하여 실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3단계 교육 등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보은군과 옥천군의 교육경비보조가 조례에 규정된바와 다르게 보은은 20.6%, 옥천은 16.7% 등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타·시군에 적극 홍보하여 교육경비보조가 증가되도록 노력할 것

(청주교육지원청 : 5건)

○ 청주시내 학교 소음 측정결과 관련,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실 소음기준은 5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데, 청주시내 학교 대부분이 50dB 넘는 곳도 23곳인 바, 측정 시간과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수치이므로 지속적 관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다목적실(강당) 증·개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 투자사업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들도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일·안보교육 예산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독도교육은 물론 체험활동을 많이 하게 하여 통일·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줄 것을 촉구함

○ 교육장의 급식현장지도 실적이 초등 9개소, 중등 7개소만 다녔는데 전국 최초 무상급식의 실현이 충북임을 감안하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급식현장을 수시 점검지도 요망

○ 청소년 심야게임 접속과 관련하여 SHUT DOWN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 특히, 이들은 돌봄기능이 필요한 학생들이므로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게임 중독 등에 대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므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대안놀이탐구 등 예방책을 세워 주시길 바람

(충주교육지원청 : 2건)

○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부족한 학생에게 학교가 많은 부분 학생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인데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15시간이나 되므로 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생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놀이 숙제 등 심적 부담이 크지 않도록 시간표를 짜야함.

- 그러나 달천초를 비롯한 3개 학교는 학습비중이 너무 높아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 이는 교과부의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충주시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의하면 시세수입액의 3% 범위 내로써 충북 시·군 중 최하위인 바, 충주교육장은 충주시청과 의회를 방문하여 시세수입액의 5%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 2건)

○ 통학버스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검토바람

○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재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람

(청원교육지원청 : 2건)

○ 청원교육장은 퇴직을 3달 남긴 상황이긴 하나 행감일정과 맞물려 있는 해외연수에 참가하여 행감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직자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바,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청원군 내 신송초, 각리초, 옥산초 등 3개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비 문제풀이 등을 한 사례가 있음. 이는 정규수업을 파행운영 함으로써 창의 인성교육을 후퇴시키고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를 왜곡하였음

-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진의 원인 규명과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의 본래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음

- 이는 청원교육청지원청의 관리 소홀과 업무태만의 결과라고 보여짐. 의원의 조사활동지원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교육청 간부는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였음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보은교육지원청 : 1건)

○ 속리산중학교의 성공은 보은교육 뿐만 아니라 충북교육의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니, 교육장은 속리산중학교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옥천교육지원청 : 1건)

○ 학교 증·개축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교시설의 누수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특히, 누수학교 비율이 28.5%에 달하므로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영동교육지원청 : 1건)

○ 영동산업과학고 골프과 신설사업비가 65억이 명시이월 되어 예산집행 비율이 58.69%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불용율이 30.73%되므로,
- 예산 수립 시 철저한 계획과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 1건)

○ 방과후학교 예산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보다는 교내강사 중심의 교과학습 위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진천교육지원청 : 2건)

○ 백곡중학교(2012.2.28) 폐교이후, 「토요 백곡문화학교」를 계획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바, 대안으로 가칭「충북문학학습체험관」을 설치하여 도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향토문학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진천 미래지기 포럼 등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행사 주도권을 교육기관이 주도하도록 노력할 것

(음성교육지원청 : 1건)

○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누수학교가 34학교 중 26%인 9개교가 되므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청원·음성·괴산증평교육지원청 : 1건)

○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실적이 진천교육지원청이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가입율 및 학습 이수율이 타 시·군 교육청보다 우수하므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

(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교육지원청 : 2건)

○ 방과후학교 운영결과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비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못한 점도 많으므로 지역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의 질을 높이도록 정책을 강구하기 바람

○ 각종 사건·사고 예방 철저

-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교육장 주관 하에 학교별 특별교육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단양·옥천·보은·영동교육지원청 : 1건)

○ 교과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학교장과 교사의 노력만으로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거듭 난 여러 실증적 사례가 전국에 있으므로 탐방해 보고 벤치마킹하도록 촉구함

(단양교육지원청 : 1건)

○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시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와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 요망 (매포초 관련)

【직속기관 : 21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 4건)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스타 부분에 탑재된 주제별 학습동영상(국어, 수학, 과학, 음악, 독서 등 모든 과목)의 컨텐츠와 “교과 핵심특강” 이 교사중심의 설명식, 지식전달위주의 주입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충북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창의·인성교육, 자기주도적 학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학생의 학습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자극하며, 학습내용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강구바람

○ 사이버가정학습 가입율은 전년대비 44.1% 향상된 반면 학습이수율은 4.3% 밖에 향상되지 않았음. 사이버가정학습 가입율과 병행하여 학습이수율 제고에도 노력하여 효율적인 사이버가정학습이 되도록 노력할 것

○ 전자책(E-Book) 업체부도로 유지보수기간이 지남

-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사이버가정학습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높아졌으며 가입자 수는 12만명에 이르고, 1일 평균 접속자는 30,000여 명에 이르는 등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되고, 프로그램상 어느 학급에서 얼마나 활용하는가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리자인 교장, 교감들의 관리프로그램 활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바,

- 학교 관리자들에게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해 널리 홍보하여 많이 활용토록 하고 열심히 하는 학급 담당교사에게 수당 지급, 승진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6건)

○ SNS, 소셜네트웍, 모바일 교육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 연수포상기금 잔액이 1,500만원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기금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 교직원 연수와 관련

- 역사안보의식, 인성교육시간 30%를 과정별 연수에 넣도록 요청한바, 현실적으로 과정별 연수에는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곤란하므로 내년도 연수계획에는 정책교양 과목 중 역사, 안보, 인성교육시간을 30%이상 반영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의함

○ 교육이념「홍익인간」정신교육과 한민족의 이념적 시조이신 단군선왕과 관련「홍익인간」이념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지방공무원 교육과정 중 청렴도향상과정 40명 대상은 비리공직자나 감사처분 대상자로 집중교육 할 것을 건의

○ 자연재해, 학교 내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의식 제고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이 필요한 바, 안전교육이 반영된 연수운영 과정 개설, 안전요원의 연수과정, 시설관리직원 등 다른 직무연수에도 반영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교육과학연구원 및 단재교육연수원 : 1건)

○ 각종 연수 후 설문지 분석결과 장·단점을 차기연수에 꼭 반영하도록 할 것

(충청북도중앙도서관: 3건)

○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학생이 일반인의 1/3밖에 되지 않으므로 점진적으로 학생이용 증대에 노력할 것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교 학습도서 목록 작성 및 활용을 거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앙도서관도 교과별, 학기별, 단원별, 차시별로 만들어진 학습도서목록을 비치하고 이에 적정한 도서를 한 학급분량 정도를 연차적으로 구입 활용토록 하기 바람

○ 지난 10년간 금빛봉사단 자원봉사자 실버지급액이 1만원인데 현실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기 바람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1건)

○ 학생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치염소산나트륨 100ℓ와 응집제 1ℓ를 넣어 물을 정화시키고 수영장물은 연 1회 전체 교체하는데 비용은 9,160만원이 드는 바,

- 연 1회만 전체 물을 갈아주어도 사용자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수도 요금 부담에 대해 청주시와 협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람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 3건)

○ 진천종합수련원에서는 동절기 학생들의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가족 동계캠프일정을 12.29~12.30(1박2일) 신규사례로 개발하여 교육가족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세외수입 일환으로 사회단체(J.C라이온스 등) 가족동반 해맞이 12.31~1.1(1박2일)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 3건)

○ 청명학생교육원 입소 및 복귀 절차와 관련하여

- 장기적으로 기숙사 증축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람

○ 37명 중 1년 이상 미 복귀 학생은 교육원에서 심리치료 등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원적 학교 복귀 기간이 학생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학생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위탁 학생들의 교육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제6장 청원 및 진정처리

제1절 청 원
제2절 진 정

제 1 절 청 원

1. 처리개요

○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주소, 성명,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청원서와 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장이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이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된 청원은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청원인 및 각 의원에게 통지한다.

2. 청원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3. 처리현황 : 없음.

제 2 절 진 정

1. 처리개요

○ 진정은 의원의 소개를 필요치 않으며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된 민원을 말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그리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것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고 위원회에서는 관련된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심사를 하여 처리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 및 지역의원에게 통보한다.

2. 처리내용

1) 정책복지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임복만 (청주흰돌교회 담임목사 외 6명)	흰돌어린이집 명의 변경 관련 진정서	•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관련 사항은 어린이집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청주시에 이첩 통보하였음(2011. 4.28)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452-13번지 외 2필지상의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는 건축법, 석유사업법(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충청북도 주유소 허가기준 고시 등 당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1996. 5.23 일자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이 허가된 사항임.
이은숙 (사천예능어린이집 원장)	2011년도 사천예능어린이집 과잉 행정처분 구제	• 영유아 보육법 45조(보육시설의 폐지 등)에 의거 행정처분된 사항으로 처분 권한이 청주시(상당구)에 있으므로 도의회에서는 청주시의 처리 결과에 대한 조정 권한이 없음. • 향후 도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문성광 외 1	전원주택지로 분양된 오창 단지내 불법원룸에 대한 건축허가 조사 및 철거 조치	• 도 감사관실과 협의 결과 자체감사 기구를 운영하는 청원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민원은 청원군으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
정정진	공정한 보육정보센터위탁 신청과 보육정책위원 선정에 대한 부적격 재심의 요청 건	•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위탁기관 공개모집은 도 자체감사 결과 제반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됨. • 보육정보센터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 위탁 선정 관련 공고일 이전인 2010.11. 1. 기 구성된 것이며 한보련 관계자의 심의 참여는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자 모집공고 제6조 라항의 심사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참여시킨 것임.

2) 행정문화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장해상	공수부대 낙하훈련장 저지 진정서 및 서명서	•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시 처리상황 점검 및 의견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	충주 황금박쥐서식지 보전 관련 진정서	• 도의회 현장방문은 2010.10.28. 개최 예정인 이행감시단 15차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의정활동 시 반영토록 하겠음. • 아울러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관련부서와 간담회 결과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붉은박쥐 서식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이의재 (회문마을 골프장 건설 반대 모임 회장 외 32명)	충주시 신니면 회문마을 골프장 건설 반대	• 충주시 신니면 회문마을 골프장은 06. 5. 7.주민설명회를 거쳐 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에 따른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해 협의절차에 있으며, 현재 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실제적 권리 이익을 침해 받았거나 골프장 건설에 법적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없음. • 또한 세일개발과 마을주민 민원인이 11. 6.11.원만한 합의 및 주민합의 협약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실과 민원인 대표가 마을주민간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내부종결함.
이중희	청남대 관리사업소 자가용 출입조치에 대한 재고 요청	• 자가용 출입부분에 대해 재고 요청은 청남대와 주변지역의 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 제2조2항에 따라 구성된 청남대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야할 사항임. • 도의회에서는 대청댐다목적댐 조성에 따른 이주와 대통령 휴양시설인 청남대 건설로 피해를 입은 문의면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음.
이완규	진천군 종 박물관 및 성종사 홈페이지의 범종 제작기법에 대한 내용정정 및 철저한 검증 요청	• 진천 종박물관 및 홈페이지 내용의 진위 판단은 종 박물관 관리주체인 진천군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 주철장 원광식이 전통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판단 여부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관련사안으로 사료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김성규 외 2	70세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중지 철회 요청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일률적 연령제한 등 차별행위가 없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예고중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에 관한 고시 제정 후 제반규정에 따라 업무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음.
장필여	(사)한국국악협회 제천지부 정상(명예)회복 및 공식 인준 요구	• 재판 계류 중이므로 사법기관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지회와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지회 제천지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임.
이종호 외 1	폐기물처리시설(광역매립시설 확장) 입지 결정 변경 고시 이의제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변경고시 부분은 청주시에서 처리할 사안이며, • 도의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와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음.

3) 산업경제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강태만 외 29	쌍암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반대 탄원서	•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청,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사 3개 기관이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앞으로도 쌍암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김용갑 외 357	비룡담(제2의림지)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반대 탄원서	•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청,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사 3개 기관이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하였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앞으로도 비룡담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
오동운	삼기저수지 둑 높임 결사 반대	• 한국농어촌공사괴산지사 현장방문 간담회와 충북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요구함. • 이후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를 근거로 충북도에서 12.17일자로 삼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승인함. • 우리 도의회에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
안치권 (보은군이장협의회장)	보은 첨단산업단지 관련 건의문	• 제29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 보은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은첨단산업단지의 MOU 체결사항이 보은군에 과중한 재정 부담을 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이 실현 가능성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함. • 또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보은군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주문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김사현	삼기저수지 증설반대	• 삼기저수지 둑 높임 결사반대(오동운) 처리결과 참조
유재성 (백곡호변개발추진위원장) 외 5명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원안 추진 청원서	• 도 처리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진지하게 대화하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요구함. • 충북도에서는 2011. 1. 2일자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입장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를 심의 중에 있음.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음.
윤홍용 (사리면분뇨처리장 저지대책위원장)	사리면민의 고충해결 요청	• 괴산군은 201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사리면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과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음. • 도의회에서도 향후 현장조사 및 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음.
윤명수	광혜원면 구암마을 전주 설치 수정 요청	• 전주 설치는 국가대표 훈련원의 신청에 따라 배전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한전은 전력 수급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하여 전력공급의 의무가 있음. • 한전 진천지점에서는 고압배전 선로 설치에 대하여 이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공사를 착수한 상황임.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을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한전에 지속 건의요청토록 하겠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신동렬	도시가스 설치 요구	• 사직2동은 청주시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가스 설치투자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 현재로서는 설치투자가 어려움. •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한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추후 사직2동의 재개발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공급토록 한다고 함. •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직2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할 것임.

4) 건설소방위원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우상익	오송분기역유치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 도의회에서 기 처리한 민원회신(의사담당관-193, 2008. 1.28)으로 답변을 갈음함. • 향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요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윤정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구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현재 청원군에서 토지 매수를 진행 중이므로 청원군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안인호 (미호천작천보주민대책위원장) 외 287명	작천보 가동보 수문에 대한 주민탄원서	• 작천보 수문 방식은 특정업체와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가동보 형식 중 우리도에서 최적이라 판단되는 수문방식을 선정한 후에 '11. 1.19. 공개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 5월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우려하는 작천보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향후 위법행위 발생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류지우 (후산리재건추진위원장)	제천시 청풍면 지방도 532호선 확포장 요구	• 제천시 청풍면 후산리~황석리 구간 지방도 532호선 확포장 공사는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보상 완료된 가옥 철거 문제는 보상업무를 추진한 제천시에 조속히 철거토록 충북도에서 조치하였음. • 앞으로도 도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송원근 (동량면 이장협의회장)	충주시 동량면 지방도 532호선 확포장 조기착공 건의문	• 충청북도에서 충주시 동량면 금잠~장전고개 구간 지방도 532호선 확포장 공사를 조속 착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가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도의회와 충북도는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강훈호	도시자연공원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 등과 건의서 제출	•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다수 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도시자연공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앞으로 14일 이상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후 도에 결정요청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 소유자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훈 외 1	청주시 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 촉구	• 청주시의 도심공동화 해소대책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입안권을 가진 청주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도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신정희	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제방공사로 인한 보상관련 진정	• 본 민원은 충청북도에 기 제출한 민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인 충청북도에서 직접 현지조사 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함.

진 정 인	건 명	처 리 내 용
유호찬	청원군청의 주택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진정	• 본 민원은 청원군수가 비송사건 재판 절차를 이행중인 사안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요망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제도개선 및 건의하도록 하였음.
이훈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추진 요구	•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청주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5) 교육위원회 : 해당 없음.

제7장 세종시정상추진및 발전특별위원회 활동

제 1 절 운영개요
제 2 절 활동내용

제1절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운영 개요

1. 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 7명 (위원장 김광수)

※ 김영주, 김동환, 박문희, 박한규, 김재종, 장병학

○ 제29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2010. 9.16.)구성

2. 활동기간 : 2010. 9.16. ~ 2012. 6.30.

3. 구성목적

○ 세종시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와 우리 도 배후지역의 발전 전략 등을 모색하고,

○ 의회 차원에서 세종시 건설의 정상추진을 위한 개선·보완방안 제시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4.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

○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고,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세종시 설치특별법의 조기 제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 참여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 7. 1.)

제2절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1 특별위원회 구성

○ 제29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2010. 9.16.) 구성
○ 활동기간 : 2010. 9.16. ~ 2012. 6.30.
○ 구　　성 : 도의원 7명(위원장 김광수)
- 김광수, 김영주, 김동환, 김재종, 박문희, 장병학, 박한규

2 제1차 세종시특위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 9.28.(월) 11:00
○ 장　　소 : 특별위원장실(신관 5층)
○ 참석인원 : 위원장외 6명
○ 주요내용
- 충북도의 세종시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상황 파악
- 우리도가 향후 추진할 중점 추진사항 등 청취
-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 추진

3 편입예정지 여론파악을 위한 도지사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0. 9.30.(목)
○ 장　　소 : 세종시 편입예상지역(청원일원)
- 부용면 8개리, 강내면 3개리
○ 참석인원 : 위원장외 2명
○ 주요내용
- 세종시 편입관련 지역주민 의견 청취

4 편입예정지 방문 여론파악

○ 일　　시 : 2010.10. 7.(목)
○ 장　　소 : 세종시 편입예상지역(청원일원)
- 부용면 8개리, 강내면 3개리

○ 참석인원 : 위원장외 5명
○ 주요내용
- 편입지역의 경계와 세부실태 확인
- 지역주민의 정서와 여론 동향 파악

5 청원군 일부 세종시 편입에 따른 정책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0.10. 7.(목) 14:00
○ 장　　소 : 예술의 전당(1층 소회의실)
○ 주　　관 : 중부매일
○ 참석인원 : 위원장외 4명(부위원장 지정 토론)

6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참석

○ 일　　시 : 2010.10.10.(일)
○ 장　　소 : 국회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2층)
○ 우리도 참석자 : 세종시특위 위원장, 도지사, 청원군수
- 홍재형 국회부의장, 변재일의원, 노영민의원, 정범구의원, 오제세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박병석, 양승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등
○ 주요안건
- 법적지위는 완벽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할 것
- 관할구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
- 시행시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으로 함
- 사무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대정부 건의안 채택

○ 일　　시 : 2010.10.13.(수)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신관 5층)
○ 참석인원 : 위원장외 6명
○ 건의안 주요내용
-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할 것
-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완벽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할 것

- 사무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관할구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세종시 편입여부를 결정할 것
- 세종시 편입예정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 할 것

8 언론 홍보

○ 일　　시 : 2010.10.19.(청주MBC), 20.(충주MBC)
○ 인 터 뷰 : 김광수 위원장
○ 주요내용 :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내용과 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을 홍보

9 국회 및 대정부 방문

○ 일　　시 : 2010.11. 4.(목)
○ 방문기관 : 국회, 행정안전부
○ 방문인원 : 5명(특위 3, 타위원회 2)
- 김광수, 김영주, 장병학, 하재성, 이수완

○ 주요내용 :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설명과 정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문 현황 파악

○ 일　　시 : 2010.11.22.(월)
○ 장　　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남 연기군)
○ 방문인원 : 위원장외 3명
○ 내　　용
- 세종시 편입예정지역 관련, 각종 시설의 설치 추진 계획 “브리핑” 요청(교량 및 도로 건설, 그린벨트 지정, 학교 설치 등)

11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0.12. 9.(목)
○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12. 9)에 따른 환영
- 세종시 편입지역 등 종합발전방안 마련 촉구

12 세종시 편입지역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1. 6.21.(화)
○ 장　　소 : 부용면사무소
○ 주　　관 : 세종시 정상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비상대책추진위원회
○ 토론참가 : 김영주 부위원장

13 세종시 연계 충북발전방안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1. 7.19.(화)
○ 장　　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주　　관 : 충북발전연구원
○ 토론참가 : 김광수 위원장

14 세종시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사회통합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1. 8.30.(화)
○ 장　　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주　　관 : 충북발전연구원
○ 토론참가 : 김광수 위원장

제8장 부 록

Ⅰ. 역대 도의원 명단
Ⅱ. 의회일지
Ⅲ. 의정통계 및 자료
1. 회기운영
2. 의안처리 현황
3. 대집행부질문 현황
4. 행정사무감사 지적현황
5. 연도별 방청현황
6.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현황
7.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현황
8. 의원 연구활동 및 의정학술 연구용역
9. 전체의원 연찬활동
10. 위원회별 연찬활동
11. 5분 자유발언 현황
12.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지원실적

Ⅰ. 역대 도의원 명단

1. 제 1 대 : 28명(1952. 5.29.~1956. 8.13.)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田命植	1903. 4. 7	청주 사직2구 126	1954. 3.25 보선
	崔東善	1900.10.25	북문로2가 137	제1대 의장
청원군	韓廷求	1910.10. 8	청원 남이 양촌84	제1대 내무위원장
	張應斗	1903. 5. 4		제1대 징계자격위원장
	全炳壽	1898. 9.26	청주 북문2가 114	제1대 문교사회위원장
	閔丙斗	1898.11.29	청원 북일 현동66	제1,2,4대 산업위원장
보은군	具然鴻	1915.10.20	보은 마로 관기386	제4대 내무위원장
	李殷濟	1915. 6. 8	보은 삼산	
옥천군	權福仁	1911. 8.29	옥천 청산 지전34	제1대 부의장
	姜在仁	1905. 7.26	옥천 금구113	제2대 문교사회위원장
영동군	朴貞鉉	1910. 9.10	영동 학산 봉산481	제3대 문교사회위원장
	孫俊鉉	1901.12. 4	영동 계산662	제3대 내무위원장
	柳性淵	1902.12. 8	매곡 노천84	제1대 예산결산위원장
진천군	李再範	1905. 8.17	진천 덕산 옥동209	제3대 징계자격위원장
	盧達先	1917. 3. 1	진천 읍내275	제2대 징계자격위원장
괴산군	金泳泰	1904. 1. 5	괴산 상모 온천376	
	金瑞應	1900.11.15	괴산 서부259	
	李錫圭	1912. 1.20	괴산 동부623	
음성군	鄭用彦	1906. 4.24	음성 금왕 무극126	
	李起浩	1912. 7.20	음성 읍내307	
중원군	李孝承	1910.11. 5	중원 엄정 미내47	제4대 징계자격위원장
	洪鍾漢	1901.12.15	충주 성서동129	제2대 내무위원장
	金興吉	1915. 2.23	충주 용산동663	
	李元培	1918. 4.19	중원 주덕 제내345	
제천군	韓源錫	1918. 6. 6	제천 수산 수산602	1954.11.24 보선
	盧意重	1909. 2.20	제천 의림87	제3대 산업위원장
	柳浩烈	1910. 2.10	청풍 읍리380	제4대 문교사회위원장
단양군	金重熙	1919. 3. 5	단양 단양 상방241	
청주시	洪元吉	1915.10.15	청주 수동2구441-9	1953.11.16 사직
제천군	金鏡	1918. 6.19	제천 신동476	1954. 8. 6 사직

2. 제 2 대 : 30명(1956. 8.14.~1960. 8.12.)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安相烈	1915. 1.20	청주 우암동104-2	제8대 징계자격위원장
	金元會	1898.10. 3	영동103-5	1959. 4.25 보선
충주시	李夏榮	1914.12. 1	충주 용산동481	제7대 내무위원장
청원군	吳永鎭	1922. 9. 4	청원 문의 남계374	
	吳鎭世	1921. 4. 5	현도 죽전65	제7대 징계자격위원장
	韓相大	1909. 8.24	송파구잠실주공A410-501	제6대문교사회위원장,60. 7. 2사직
	趙壽石	1916.12. 9	청원 강내 신촌65-2	제5대 징계자격위원장
	李濟世	1911. 1.17	청주 수동1295	제2, 4대 부의장
보은군	尹瀅植	1915.10.30	보은 보은 삼산	1958. 6. 5 보선
	尹台勳	1924. 2.15	청원 남이 양촌리 53-46호	제4대 예산결산위원장
옥천군	李仲茂	1916.12. 5	옥천 이원 지정48-2	1958. 6. 5 보선
	姜晃會	1900. 4. 6	이원 강청39	1958. 6. 5 보선
영동군	金秉淵	1897. 2. 5	영동 영동 계산205	
	李鍾命	1905. 8. 2	황금 추풍령415	1959. 9.22 보선
	韓秉洙	1911.10.18	영동 중앙185-1	제5대 예산결산위원장
진천군	柳義烈	1909. 5.22	진천 진천 읍내328-1	제7대 산업위원장
	金振穆	1925. 7.14	청주율량현대A402-704	제8대 내무위원장
괴산군	金振聲	1909. 7. 2	괴산 괴산 서부226	제8대 산업위원장
	金泳泰	1905. 1. 5	상모 온천376	제5대 문교사회위원장
	金瑞應	1900.11.15	괴산 서부259	제6대 내무위원장
음성군	李起浩	1912. 7.20	음성 읍내307	제2대의장, 3부의장, 5산업위원장
	宋馨植	1904. 4. 1	대소 윤리178	
	趙春衡	1905. 1.10	금왕 무극103	제8대 문교사회위원장
중원군	禹柄勳	1919. 7.15	중원 엄정 신만416	제6대 징계자격위원장
	李元培	1918. 4.19	주덕 제내345	제5대 내무위원장
	洪鍾漢	1899.12.15	앙성 본평382	제5대예결위원장, 6대산업위원장
제천군	金容翼	1919.11. 6	제천 제천 의림43	1958. 6. 5 보선
	朴永聲	1916. 3. 3	금성 구룡309	
	韓源錫	1918. 6. 6	수산 수산589	제3대 예산결산위원장
단양군	池德九	1915.11. 6	단양 단양 하방142	1960. 7. 5 사직
청주시	崔東善	1900.10.25	청주 북문2가137	제4대 의장, 1959. 2.10사직
보은군	具然鴻	1918. 6. 6	보은 보은 관리38-6	1959. 2.24 사직
옥천군	郭楨觀	1896. 2.24	옥천 옥천 금구258	1958. 1.31 사직
	權福仁	1911. 8.29	청산 명치179	1958. 2.24 사직
영동군	金善行	1909.11.10	영동 영동 부용334	제7대문교사회위원,59. 8. 5사직
제천군	盧意重	1909. 2.20	제천 제천 의림87	제2대 의장, 1958. 2.24사직

3. 제 3 대 : 26명(1960.12.12.~1961. 5.16.)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徐丙周	1918. 1. 3	청주 내덕174	제6대 의장
	朴魯精	1906. 9. 3	북문1가1-2	
충주시	申相玉	1925. 2.29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로 26 흰돌3단지 국제A 306-1304	
	閔昌基	1909. 3.25	충주 성서85-5	
청원군	李長壽	1905.11.13	청원 문의 문산22	
	洪性來	1918. 9.19	남이 척산638	
	朴鍾和	1930.10.11	경기 이천증포 신안A108-403	
	金漢植	1918. 1.11	청원 오창 백현52	
보은군	尹瀅植	1915.10.30	보은 보은 삼산99-1	
	尹台勳	1924. 2.15	청원 남이 양촌리 53-46호	제5대 부의장
옥천군	李熙昌	1920. 1.20	옥천 옥천 하계32-1	제9대 산업위원장
	李龍熙	1931. 6.10	서울 서초 방배809-27	
영동군	韓秉洙	1911.10. 8	영동 학산 조산536	
	鄭喜澤	1922. 8.30	대전동구가양1동옥수A706	
진천군	李仁澤	1912. 7.24	진천 진천 읍내277	1961. 4. 보선
	李政儀	1914. 5.15	덕산 옥동209	
괴산군	朴元植	1907. 7. 7	괴산 불정 탑평682	
	李圭弘	1909. 2.25	증평 송산454	
음성군	朴魯昇	1927. 4.22	음성 음성 평곡325	
	趙春衡	1905. 1.10	금왕 삼봉103	제9대 문교사회위원장
중원군	李宬圭	1912. 9.17	중원 신니 선당357	제9대 내무위원장
	崔勉昇	1925. 6.13	동량 조동1284	제6대 예산결산위원장
제천군	元容轍	1900. 6. 9	제천 제천 명동169	
	嚴鳳翼	1914. 6. 4	청풍 읍리366	
단양군	趙東秀	1907. 4. 8	단양 대강 장림113	
	金鳳云	1914. 3.15	영춘 상리414-1	
진천군	柳羲烈	1909. 5.22	진천 진천 읍내 328-2	1961. 1.25 별세

4. 제 4 대 : 38명(1991. 7.1.~1995. 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주시	韓章壎	1943.12.11	청주 우암동326-5 감초당	문교사회위원장(전)
	金俊錫	1942.11. 8	봉명 아이파크A 105-1204	
	尹泰漢	1947. 1. 1	영운동 70-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吳運均	1950. 6.23	봉명동 1825	의회운영위원장(전), 부의장(후)
	趙誠勳	1939. 3. 1	사직2동벨라A A동302호	제8대 의장
	朴晩淳	1941. 3.19	복대동2607세원테마빌A206-101	
충주시	金仁植	1936.12. 6	충주 안림 578-1	건설위원장(후)
	朴鍾浣	1939. 5.24	문화동 사직산 5길 13	
	金演權	1933. 8. 4	교현1동 185-3	내무위원장(전), 부의장(후)
제천시	張寅基	1937. 9.11	제천 남천동 343 2/4	
	李炳斗	1946. 9.16	중앙로2가 76-30	
	權湧河	1929. 1. 7	영천동 322	부의장(전)
청원군	金孝天	1950. 5.27	청원 미원 미원 522-3	
	韓玹求	1939. 4.19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5차B동 1004호	제7대 의장
	車珠龍	1937. 9.13	내수 마산7리 주공A 106-603	교육사회위원장(후)
보은군	朴商浩	1936.11.26	보은 보은 죽전리 52 22/2	부의장(전)
	朴鍾起	1939.11.29	삼승 우진리 348-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옥천군	鄭震澈	1940. 8.30	옥천 옥천 금구5-70 동화약국	의회운영위원장(후)
	陸鳳鎬	1936. 2.16	이원 대흥 529-1	
	安哲浩	1940.12. 8	청산 지전리 37-2	산업위원장(전)
영동군	鄭光洙	1953. 1.10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A 415-203	
	李炳圭	1927.11.10	영동 황간 마산42-12	
	李光浩	1933. 4. 1	양산 가곡4길 9-21	내무위원장(후)
진천군	金慶會	1952. 6.15	진천 진천 신정리 395-2 화랑유치원	
	劉永勳	1955. 4.30	초평 용정376-3	
괴산군	金基韓	1937.12.15	괴산 사리 방축 307-3	기획경제위원장(후)
	金奉三	1935. 1.30	증평 교동 60	건설위원장(전)
	柳明熙	1939.10.13	괴산 동부545	
음성군	車珠元	1929.12.11	음성 음성 읍내 299	
	成耆德	1957. 6.20	경기 광주 쌍령동 현대A 104-1302	
	奉夏勇	1946. 7. 9	음성 대소 삼양로 798번길 15-3	
중원군	金在根	1955. 4.23	충주 이류면 대소리 김재근약국	
	李殷載	1938.12. 1	중원 노은 수룡757	
	禹范成	1938.12. 9	엄정 용산387-1	
제천군	金鎭學	1949. 2.19	제천 수산 수산 592-2	
	朴起陽	1936. 3.30	봉양 주포152-12 1/7	농림수산위원장(후)
단양군	申完燮	1940.11.16	단양 단양읍 별곡리 394	예결, 댐특위위원장
	安載元	1950. 2. 3	매포 평동리 1142번지	

5. 제 5 대 : 39명(1995. 7. 1.~1998. 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朴 用 仁	1937.10.10	청주 북문로3가 대우타워 904호	기획경제위원장(후)
	金 俊 錫	1942.11. 8	봉명아이파크A 105-1204	의회운영위원장(전)
	金 春 植	1958. 9. 2	비하계룡리슈빌A 206-1201	
	崔 鍾 哲	1954. 1. 3	운천동세원105-106	
	林 憲 用	1958. 6.12	비하 효성A302-107	
	朴 晩 淳	1941. 3.19	복대2607세원테마빌206-101	
충 주 시	金 仁 植	1936.12. 6	충주 안림 578-1	
	權 寧 觀	1947. 1. 9	칠금동 38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尹 炳 泰	1951. 5.20	지현동 55 11/3	
	金 在 根	1955. 4.23	이류면 대소리 김재근약국	의회운영위원장(후)
	李 善 鎬	1958. 9.27	신니면 대화리 462-3	
	崔 先 煥	1945. 3.25	동량면 대전리 289	
제 천 시	李 吉 廈	1957. 2.19	제천 고암 부강A101-508	
	李 炳 斗	1946. 9.16	중앙로2가 76-30	부 의 장(후)
	李 丙 哲	1955. 6.24	화산1동657공설빌라401	
	朴 尙 秀	1945.10.26	신백동 극동A 19-202	
	崔 英 洛	1958. 2.28	봉양읍 명암리 122	
청 원 군	李 敏 熙	1950. 4.13	청원 남일면 고은리 421 4	
	吳 成 鎭	1948. 9.26	현도 양지 41-9	1998. 4. 3 사직 건설교통위원장(후)
	車 珠 龍	1937. 9.13	내수 마산7리 주공A 106-603	1998. 4. 3 사직 내무위원장(후)
보 은 군	李 香 來	1950.10.16	보은 마로면 기대리 103-1 29	1998. 4. 4 사직 농림수산위원장(후)
	劉 載 喆	1928.10.25	산외면 장갑리 404-8	교육사회위원장(전)
옥 천 군	宋 在 周	1937.11. 7	옥천 옥천 금구 104	1998. 5. 2 사직 기획경제위원장(전)
	安 哲 浩	1940.12. 8	청산 지전 38-3	부 의 장(후)
영 동 군	張 準 浩	1941. 4. 1	영동 영동 계산 688-28	
	鄭 泰 禎	1946. 4.29	대전 동구 가양동 옥수A 706	
진 천 군	韓 相 文	1934.10. 5	진천 진천 신정리 장산A 904	건설교통위원장(전)
	劉 永 勳	1955. 4.30	초평 용정376-3	1998. 4. 3 사직 부의장(전)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괴 산 군	金 大 鎬	1952. 2.21	괴산 괴산 서부리411-1 동산운수	
	朴 蘊 燮	1940.12.13	청천 송면리 32	
	柳 明 昊	1942. 2.28	증평 중동리 1-3 3/1	1998. 4. 3 사직
음 성 군	車 珠 元	1929.12.21	음성 음성 읍내 299	제9대 의장
	成 耆 德	1957. 6.20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현대A 104-1302	내무위원장(전)
	朴 濟 國	1938. 8.18	삼성 덕정리 765-10	교육사회위원장(후)
단 양 군	安 載 元	1950. 2. 3	단양 매포 평동 1142	1998.4.4 사직 농림수산위원장(전)
비례대표	宋 玉 順	1942. 4. 2	청주 금천동 장자마을부영A 301-1005	
	金 東 鎭	1936.10. 2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제주대림요양병원	제10대 의장
	李 鍾 國	1929. 6. 6	청주 내덕2동 신라A2-203	
	崔 準 九	1944. 9. 4	보은 속리산면 사내리 법주약국	1998. 5. 8 의석승계
제 천 시	金 元 植	1956.12.30	제천 영천동 314 14/1	1996.10.15 자격상실
	金 鎭 學	1949. 2.19	제천 수산 수산 592-2	1996. 4.12 자격상실
옥 천 군	李 喜 福	1954.11.18	옥천 청산 백운578	1996. 4.12 자격상실
단 양 군	申 完 燮	1957.10.13	단양 단양읍 별곡리 394	1997. 5.19 사직 부의장(전)
비례대표	朴 鶴 來	1923. 3.11	청주 석교동 34-10	1998. 4.25 사직

6. 제 6 대 : 27명(1998. 7. 1.~2002. 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金 俊 錫	1942.11. 8	청주 봉명 아이파크A 105-1204	제11대 의장
	黃 太 模	1940. 6. 3	탑동 현대A107-303	2000. 6.12. 보궐 교육사회위원장(후)
	金 珍 鎬	1948.12.22	산남 계룡리슈빌A 103-1301	제12대 의장
	申 澤 秀	1945.10.11	복대1동 82-15	관광건설위원장(후)
	金 春 植	1958. 9. 2	청주 비하 계룡리슈빌A 206-1201	2000. 2.12. 사직
충 주 시	權 寧 觀	1947. 1. 9	충주 칠금동 381	부의장(전)
	沈 興 燮	1962. 4.14	연수 주공A406-1101	2000. 6.12. 보궐
	尹 炳 泰	1951. 5.20	지현동 55 11/3	2000. 2.12. 사직
제 천 시	崔 英 洛	1958. 2.28	제천 봉양읍 명암리 122	부의장(후) 산업경제위원장(전)
	李 吉 廈	1957. 2.19	고암동 부강A 101-508	
청 원 군	申 大 植	1939. 3.25	청원 남일 두산 349-2	부의장(후)
	朴 魯 喆	1948.11. 3	청주 개신 98-9 박노철법무사사무소	교육사회위원장(전)
보 은 군	具 本 善	1949. 3.25	보은 보은 교사그린A4-201	2001. 7.27. 자격상실
	朴 鍾 起	1939.11.29	삼승 우진 348-1	부의장(전)
옥 천 군	李 根 成	1949. 9.26	옥천 옥천 마암 대청연립 다-307	2002. 5.27. 사직
	庾 東 燦	1939.10.25	옥천 장야리 271-2	의회운영위원장(후)
영 동 군	張 準 浩	1941. 4. 1	영동 영동 계산 688-28	의회운영위원장(전)
	曺 永 在	1953. 6.19	황간 신흥 28	2000.11. 1. 보궐
	鄭 泰 禎	1946. 4.29	대전 동구 가양동 옥수A 706	2000. 9. 4 사직 관광건설위원장(전)
진 천 군	崔 種 錄	1940.11.11	진천 문백면 봉죽리 308-13	2000.11. 1. 보궐
	趙 平 熙	1955. 2.18	덕산면 신척리 383-1 7	2000.11. 1. 보궐
	金 柱 泊	1940. 4. 5	진천 가산 185	2000. 9.15. 사직
	金 炯 泰	1937. 2.13	광혜원 광혜원 목화A 101-303	2000. 9.15. 사직
괴 산 군	金 大 鎬	1952. 2.21	괴산 괴산 서부리411-1 동산운수	산업경제위원장(후)
	韓 賢 泰	1958. 9.25	증평 증평 창동 예단인A 1002-801	기획행정위원장(전)
음 성 군	金 昭 政	1943. 6.29	음성 음성 읍내 478-1	
	柳 周 烈	1952. 1.25	감곡 주천 380	기획행정위원장(후)
단 양 군	李 光 鍾	1944. 2.26	단양 단양읍 상진리 7길 1	댐관련특위위원장
	李 完 永	1953. 5.13	매포읍 평동3리 272-14	2001. 7.27. 자격상실
비례대표	朴 在 秀	1955. 5.12	청주 탑동 308-1	2000. 7.13. 사직
	吳 長 世	1955. 5.12	복대1동 현대2차A 203-304	2002. 2.21. 자격상실
	朴 鶴 來	1923. 3.11	석교 43-10	윤리특위위원장
	任 鳳 彬	1940. 2.21	충주 문화 럭키A 103-705	2000. 7.25. 승계

7. 제 7 대 : 27명(2002. 7. 1.~2006. 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吳 長 世	1955. 5.12	청주 복대1동 현대2차A 203-304	교육사회위원장(전),부의장(후)
	李 大 遠	1956. 2. 5	금천동 현대A 201-1402	2003.12.24 보궐,교육사회위원장(후)
	朴 在 國	1940.11. 5	장성동 158-3	부의장(전)
	金 正 福	1959.12.22	봉명동 현대아이파크A 110-1206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위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위위원장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위위원장(1기)
충 주 시	權 寧 觀	1947. 1. 9	충주 칠금동 381	제14·15대 의장; 2006. 3.31 사직
	沈 興 燮	1962. 4.14	연수동 주공A 406-1101	예산결산특위위원장(2기),관광건설위원장(후)
제 천 시	金 文 天	1954. 9. 7	제천 남천동 용두천로 116	
	延 哲 雄	1942. 7.12	화산동 109-15	예산결산특위위원장(3기)
청 원 군	韓 昌 東	1956. 2.26	청원 남이면 가좌리 351	의회운영위원장(전)
	朴 鍾 甲	1959. 3.30	내수읍 원통리 393-1	
보 은 군	金 洪 云	1938. 7. 4	보은 보은읍 누청리 345	의회운영위원장(후)
	鄭 相 赫	1941.12.25	화북면 쌍암리 354-3	댐관련대책특위위원장; 2006. 4. 3 사직
옥 천 군	姜 求 星	1946. 7. 7	옥천 옥천 금구리 5-39	예산결산특위위원장(1기)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위위원장(2기), 2006. 4.10사직
	庾 東 燦	1939.10.25	옥천 장야리 271-2	기획행정위원장(전), 부의장(후)
영 동 군	張 準 浩	1941. 4. 1	영동 영동 계산 688-28	부의장(전), 제16대 의장
	曺 永 在	1953. 6.19	황간 신흥 28	산업경제위원장(전)
증 평 군	崔 在 玉	1954.10. 4	증평 증평 장동 189	기획행정위원장(후)
진 천 군	張 柱 植	1957.11.12	진천 북이면 석성리 512-1	
	宋 殷 燮	1940. 9.16	이월면 송림리 686	윤리특위위원장
괴 산 군	金 煥 東	1950. 3.10	괴산 괴산 동부 661-16	산업경제위원장(후)
음 성 군	李 基 東	1959. 7.28	음성 음성 한성진주A 103-1402	
	李 泌 鎔	1961.11.28	금왕 무극리 주공A 203-1205	2003.11. 5보궐
	柳 周 烈	1952. 1.25	청주 가경 효성A 104-102	제13대 의장; 2003. 9.30 사직
단 양 군	李 光 鍾	1944. 2.26	단양 단양읍 상진리 7길 1	관광건설위원장(전)
	李 範 潤	1939. 5.12	매포읍 평동4리 산16-1	
비례대표	姜 祐 信	1946. 1.30	청주 흥덕 사직동 202-27	
	趙 季 淑	1941. 1.22	흥덕 봉명로 191번길 23	
	鄭 潤 淑	1956. 9.23	흥덕 운천동 1119	
청 주 시	黃 太 模	1940. 6. 3	청주 탑동 현대A 107-303호	2002.10. 3 별세

8. 제 8 대 : 31명(2006. 7. 4.~2008. 6.30.)

구분 / 시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청 주 시	金 光 洙	1946. 5.22	청주 금천 153-33	
	李 大 遠	1956. 2. 5	금천 현대A 201-1402	제19대 의장
	金 法 基	1967.10.18	사직1동 243-27	
	朴 在 國	1940.11. 5	장성 158-3	
	鄭 潤 淑	1956. 9.23	운천동 1119	산업경제위원장(전)
	權 光 澤	1956. 8. 3	가경푸르지오A 507-1102호	
충 주 시	李 彦 九	1955. 2.28	충주 봉방 84-7	건설문화위원장(후)
	沈 興 燮	1962. 4.14	연수 연수주공A 406-1101	부의장(전)
제 천 시	李 鍾 昊	1954.10.29	제천 청전 청전현대A 102- 205	의회운영위원장(전)
	閔 景 煥	1964. 3. 1	동현 현대A 103-1108	댐관련대책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위위원장(4기), 2010. 3.23 사직
청 원 군	韓 昌 東	1956. 2.26	청원 남이면 가좌리 351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위위원장
	朴 鍾 甲	1959. 3.30	내수읍 원통리 393-1	산업경제위원장(후)
보 은 군	金 仁 洙	1953.10. 1	보은 보은읍 교사리 34-7	
	李 永 福	1951. 2. 1	수한면 발산리 248-4	의회운영위원장(후)
옥 천 군	李 揆 完	1953. 1.19	옥천 옥천읍 문정리 430-1 하늘빛A 105-408	
	朴 永 雄	1961.10. 7	이원면 원동리 671-1	예산결산특위위원장(3기)
영 동 군	林 玄	1944. 1. 8	영동 영동읍 계산리 256-3 대성A 306호	교육사회위원장(후)
	曹 永 在	1953. 6.19	황간면 신흥리 28	부의장(전)
증 평 군	崔 在 玉	1954.10. 4	증평 증평읍 장동리 189	부의장(후)
	延 晩 欽	1953.11. 1	도안면 석곡리 24	행정소방위원장(후)
진 천 군	張 柱 植	1957.11.12	진천 북이면 석성리 512-1	예산결산특위위원장(1기)
	宋 殷 燮	1940. 9.16	이월면 송림리 686	건설문화위원장(전)
괴 산 군	金 渙 東	1950. 3.10	괴산 괴산읍 동부리 661-16	2010. 4. 1 사직
	吳 容 植	1946. 9. 4	사리면 이곡리 456	2010. 3.23 사직
음 성 군	李 基 東	1959. 7.28	음성 음성읍 한성전뜸A 103-1402	교육사회위원장(전), 제18대 의장 2010. 3.23 사직
	李 泌 鎔	1961.11.28	금왕읍 무극리 주공A 203-1205	행정자치위원장(전),2010. 3.23사직
단 양 군	金 和 壽	1958. 9.30	단양 단양읍 상진리 823	예산결산특위위원장(2기)
	李 範 潤	1939. 5.12	매포읍 평동4리 6-1	부의장(후)
비례대표	崔 美 愛	1950. 9.26	청주 죽림동 가경주공3단지A 304-708	
	崔 光 玉	1957.10. 8	모충 443-10	2010. 4.26 사직
	姜 太 元	1968. 4.18	가경 효성A 104-901	
청 주 시	吳 長 世	1955. 5.12	청주 복대1동 현대2차A 203-304	제17대 의장, 2008. 1.22 사직

Ⅱ. 의회일지

1. 2010년도 하반기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7. 7	□ 제9대의회 개원식 ○ 일 시 : 2010. 7. 7.(수) 11:3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자 : 120여명	
7. 7	□ 제291회 임시회 ○ 회 기 : 2010. 7. 7. ~ 7. 8.(2일간)	
7.12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0. 7.12.(월) 13:2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자 : 17명(의장단9, 사무처간부8) ○ 내 용 -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10년 하반기 의사일정(안), 전체의원 의정연찬회	
7.12	□ 제292회 임시회 ○ 회 기 : 2010. 7.12. ~ 7.23.(12일간)	
7.12	□ 청주 MBC특별토론회 의장님 참석 ○ 일 시 : 2010. 7.12.(월) ○ 장 소 : 청주 MBC ○ 주 제 : 민선5기 지방의회는 어떻게 가야하나?	
7.15	□ 전체의원 의정연찬회 ○ 일 시 : 2010. 7.15. ~ 7.16. (1박2일) ○ 장 소 : 단양 대명리조트 ○ 참 석 자 : 68명 정도(의원 및 사무처직원) ○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이해 / 청주대교수 윤기택 - 지방의원의 역할과 과제 / 충북대교수 강형기	
7.19	□ 팀별 업무보고 ○ 일 시 : 2010. 7.19. ~ 7.20. 16:00 ○ 장 소 : 7층 회의실 ○ 보고일정 - 7.19. : 산경위, 건설위, 행정위, 총무담당관실 - 7.20. : 운영위, 정책위, 교육위, 의사담당관실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7.22	□ 지방의원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0. 7.22.(목) 19:00 ~ 21:30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자 : 100여명(도·청주·청원의원, 학계관계자 등) ○ 주 관 : 행동하는복지연합, 도의회, 청주·청원군의회	
7.26	□ 건설소방위원회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 7. 26.(월) 10:00 ○ 장 소 : 건설소방위원실 ○ 참 석 자 : 17명(의원7, 집행부10) ※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과장급이상 ○ 내 용 :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수렴	
7.29	□ 전국시·도 의장협의회 사무처장 방문 ○ 일 시 : 2010. 7.29.(목) 14: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자 : 이발 외 2명 ○ 내 용 : 협의회 사무처 현황 및 업무보고	
8. 2	□ 제291회 임시회 ○ 회 기 : 2010. 8. 2.(1일간)	
8. 3	□ 전국소년체전 충북선수단 결단식 참석 ○ 일 시 : 2010. 8. 3.(화) 14:00 ○ 장 소 : 주성중학교 다목적실 ○ 참 석 자 : 교육위원회 위원 5명	
8.11	□ 도지사 관사개방 기념식 ○ 일 시 : 2010. 8.11.(수) 10:00 ○ 장 소 : 대성동 관사 ○ 참 석 자 : 100여명(도지사, 지역주민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테이프커팅	
8.10	□ 건설소방위원회 4대강사업관련간담회 ○ 일 시 : 2010. 8.10.(화) 14:00 ○ 장 소 : 건설소방위원실 ○ 참 석 자 : 10명(의원7, 집행부3) ○ 내 용 : 4대강사업추진현황	
8.12	□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일 시 : 2010. 8.12.(목) 14:30 ○ 장 소 : 충남도청 대회의실 ○ 주 관 :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선) ○ 참 석 자 : 100여명(충청원 시도지사, 의회의장, 지역국회의원, 대책위원, 시민사회단체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출범 선언문 낭독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8.12	□ 제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 일 시 : 2010. 8.12.(목) 19:00 ○ 장 소 : 청풍호반 특설무대 ○ 주 최 : 제천시,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 참 석 자 : 3,000여명(도지사,도의장,송광호국회의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13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0. 8.13.(금)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자 : 18명(의장단9, 사무처간부9) ○ 내 용 : 의원 해외연수 상임위원회, 일정등 확정	
8.15	□ 제65주년광복절 기념식 ○ 일 시 : 2010. 8.15.(일) 10:00 ○ 장 소 :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 참 석 자 : 의원 10명, 사무처직원 22명 ※ 김형근의장 참석 : 만세삼창 선창	
8.19	□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일 시 : 2010. 8.19.(목) 15:00 ○ 장 소 : 천안 상록리조트 ○ 참 석 자 : 시도의회의장 16명 ○ 내 용 : 12대 전반기 임원 선출, 차기회의장소 개최 선정의 건	
8.24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1주년, 민선5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2010. 8.24.(화) 14: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자 : 150여명(도의원,시의원,청원군의원,도단위 기관단체장,전문가등) ○ 주 제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 김형근의장 참석 :축사	
8.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0. 8.24. ~ 8.25. ○ 장 소 :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 ○ 참 석 : 21명(의원 12, 직원 9) ○ 교육내용 : 예산·결산 홍보기법, 지방재정의 이해 등	
8.26	□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의원홍보단 발대식 ○ 일 시 : 2010. 8.26.(목) 09:30 ○ 장 소 : 7층 의회회의실 ○ 참 석 자 : 50명(도의원, 정무부지사, 엑스포관계자, 도의회직원) ○ 주요내용 : 홍보영상물시청, 엑스포현황 및 추진상황보고, 홍보결의다짐 등 ※ 발대식후 홍보활동차 타시도 출발 - 정책복지위(광주,대전,충남), 행정문화위(서울) - 산업경제위(경남), 교육위(광주,전북)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8.30	□ 행정도시 정상 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0. 8.30.(월) 10:30 ○ 장 소 : 의회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32명(충북, 충남, 대전) ○ 주 관 :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 김형근의장 참석 : 인사말씀	
8.30	□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0. 8.30.(월)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 참 석 자 : 사도 의회운영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 48명 정도 ※ 우리의회 참석 : 박문희위원장 외 2 ○ 주요내용 : 간담회 및 안건처리 -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선출 - 제2차 정기회 회의장소 선정 등	
8.30	□ 건설소방위원회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의원홍보단 방문 ○ 기 간 : 2010. 8.30. ~ 8.31.(1박2일) ○ 방문의회 : 대구·경북·강원도의회 ○ 홍 보 단 : 건설소방위원회 7명 ○ 내 용 : 엑스포 홍보 및 방문요청, 입장권 판매 등	
8.30	□ 행정문화위원회비교견학 및 연찬회 추진 ○ 기 간 : 2010. 8.30. ~ 8.31.(1박2일) ○ 장 소 : 제주도 ○ 참 석 : 행정문화위원장외 9명 ○ 주요일정 - 8. 30. : 제주도의회 방문, 제주대학교(예산심사기법) - 8. 31. : 제주도감사위원회(감사기법)	
8.31	□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 일 시 : 2010. 8.31.(화) 14: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자 : 100여명(의장님, 지사님, 지역주민 등) ○ 주 관 : 정범구국회의원 ○ 토 론 자 : 황희연(충북대교수), 최용환(충북개발연구원)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9. 1	□ 청주공항 국제선 취항식 ○ 일 시 : 2010. 9. 1.(수) 09:00 ○ 장 소 : 청주공항 ○ 참 석 자 : 100여명(정무부지사, 국회의원, 청주시장 등) ○ 주 관 :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 김형근의장 참석 : 테이프커팅, 기념촬영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9. 2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0. 9. 2.(목) 09: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자 : 17명(의장단9, 사무처간부8) ○ 내 용 : 도정질문계획, 의정비 결정 협의등	
9. 2	□ 제291회 임시회 ○ 회 기 : 2010. 9. 2. ~ 9.16.(15일간)	
9. 2	□ 전체의원 간담회 ○ 일 시 : 2010. 9. 2.(목) 13:40 ○ 장 소 : 서관 중회의실(5층) ○ 내 용 : 의정비 결정 관련 의견 수렴	
9. 2	□ 전체의원연찬회 ○ 일 시 : 2010. 9. 2 .(목) 14:00 ~ 17:00 ○ 장 소 : 서관 중회의실(5층) ○ 참 석 자 : 전체의원 및 사무처직원 ○ 내 용 : 예산안·결산 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9. 3	□ 행정안전부장관 방문 ○ 일 시 : 2010. 9. 3.(금) 11:30 ~ 13:00 ○ 참 석 자 : 16명(장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 내 용 : 현안사항 청취 및 환담, 기념촬영, 오찬	
9. 3	□ 산업경제위원회 제천 한방엑스포 홍보 ○ 일 시 : 2010. 9. 3.(금) 09:00 ○ 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 참 석 자 : 7명(의원 5, 직원 2)	
9. 3	□ 교육전문위원회 청명학생교육원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0. 9. 3.(금) 14:30 ○ 장 소 : 진천 청명학생교육원 ○ 참 석 자 : 교육위원회 의원 7명	
9. 3	□ 도민 대토론회 ○ 일 시 : 2010. 9. 3.(금) 14:00 ○ 장 소 : 대회의실 ○ 주최·주관 : 충청북도/충북개발연구원 ○ 참 석 자 : 100여명(도지사, 충북개발연구원장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9. 4	□ 제20회 충청북도생활체육문화축제 ○ 일 시 : 2010. 9. 4.(토) ○ 장 소 : 제천체육관 ○ 주 최 : 충청북도생활체육회 ○ 참 석 자 : 5,000여명(12개 시·군선수, 임원 및 동호인)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9. 6	□ 제6회 충청북도 평생학습 축제 ○ 일 시 : 2010. 9. 6.(월) 10:30 ○ 장 소 : 학생교육문화원 ○ 참 석 자 : 500여명(교육감, 교육관계자 등) ○ 주최/주관 : 충청북도교육청/충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9. 6	□ 도지사 관사 개방 기념행사 ○ 일 시 : 2010. 9. 6.(월) 18:00 ○ 장 소 : 관사 일원 ○ 내 용 : 현대미술 작품전시회, 작은음악회 ○ 참 석 사 : 100여명(마을주민, 시민단체, 도의원, 향교관계자, 도청직원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인사말씀, 테이프커팅	
9. 7	□ 제1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2010. 9. 7.(화) 11:00 ○ 장 소 : 청주실내체육관 ○ 주 최 : 충청북도, 청주시 ○ 주 관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참 석 자 : 1,000여명(도지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표창(5)	
9. 9	□ 간행물 편집위원 위촉 ○ 일 시 : 2010. 9. 9.(목) 11:00 ○ 장 소 : 의장실 ○ 대 상 자 : 위촉위원 5명 - 도의원 : 장선배, 이광희 의원 - 전문가 : 청주대학교 서경원 교수 중부매일 편집부국장 송장희 다산에드컴 이사 최홍석	
9. 9	□ 산업연구원 제4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충북선수단 격려 ○ 일 시 : 2010. 9. 9.(목) 09:00 ○ 장 소 : 인천 송도컨벤션센터 ○ 참 석 자 : 11명(의원 7, 직원 4)	
9. 9	□ 무심천 유등문화제(불기 2554년) ○ 일 시 : 2010. 9. 9.(목) 19:30 ○ 장 소 : 무심천 체육공원 ○ 주 관 : 청주청원불교연합회 ○ 참 석 자 : 300여명(도지사, 교육감, 청주시장, 홍재영국회의원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9.10	□ 함께하는 충북 사회복지사 워크숍 ○ 일 시 : 2010. 9.10.(금) 14:00 ○ 장 소 : 청풍리조트 힐호텔 ○ 주 관 :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영석) ○ 참 석 자 : 400여명(도내 민간 및 공공부문 사회복지사)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9.11	□ 충청북도 기독공직자 선교대회 ○ 일 시 : 2010. 9.11.(토) 10:30 ○ 장 소 : 오창대교회 ○ 내 용 : 예배, 시군찬양경연대회 ○ 참 석 자 : 500여명(도지사, 청원군수, 변재일국회의원, 전병학·박상천·김종필의원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9.14	□ 제14회 청소년의회교실 ○ 일 시 : 2010. 9.14.(화) 10:30 ○ 장 소 : 본회의장 ○ 행사내용 : 의장선거, 안건처리, 청남대 견학 등 ○ 참 석 자 : 70여명 (청원 북이초, 괴산 칠성초) ※ 김형근의장 참석 : 개회식, 수료식, 기념촬영	
9.15	□ 2010 충청권벤처프라자 개막식 ○ 일 시 : 2010. 9.15.(수) 11:00 ○ 장 소 : 코엑스 ○ 주 최 :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공동) ○ 참 석 자 : 200여명(시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장, 벤처기업인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테이프커팅, 전시관 관람	
9.15	□ 제천 한방EXPO 개막식 행사 참석 ○ 일 시 : 2010. 9.15.(수) 15:00 ~ 20:00 ○ 장 소 : 제천 한방EXPO장내 ○ 참 석 자 : 40여명(의원 33, 직원 7) ○ 내 용 : 개막식, 행사장 관람	
9.17	□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10. 9.17.(금) 11:30 ○ 장 소 : 의장실 ○ 위촉인원 : 15명(상임위별 각 3명) - 정책복지 : 한규량, 한장훈, 이태수 - 행정문화 : 정상완, 임승빈, 문석기 - 산업경제 : 황신모, 이양희, 박철용 - 건설소방 : 황희연, 김지학, 박병호 - 교 육 : 송대헌, 김병우, 이혁규 ○ 위촉기간 : 2010. 9. 17. ~ 2011. 6. 30.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9.25	□ 청주축협 조합원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10. 9.25.(토) 11:30 ○ 장 소 : 농업기술원 ○ 주 최 : 청주축산농협 ○ 참 석 자 : 500여명(도지사, 김도경의원, 국회의원, 청원군수, 조합원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9.28	□ 청주향교 추기석전 봉행 ○ 일 시 : 2010. 9.28.(화) 10:30 ○ 장 소 : 청주향교 ○ 주 최 : 청주향교(전교 유혁목) ○ 참 석 자 : 500여명(지사님, 의장님, 청주.청원 유림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집전-아헌관, 기념촬영, 오찬	
9.28	□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 9.28.(화) 11:00 ○ 장 소 : 특위 회의실 ○ 주요내용 - 세종시 관련 법률추진 현황(국회) - 우리 도가 추진할 사항(주요쟁점), 향후 추진방향 검토 - 타 시·도 세종시 특위관련 진행상황 등 (대전, 충남)	
9.28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0. 9.28.(화) 14:00 ○ 장 소 : 전북도의회(전주) ○ 내 용 - 2011년 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협의회 정관 일부개정 의견 등	
9.29	□ 충주무술축제 개막식 ○ 일 시 : 2010. 9.29.(수) 18:30 ○ 장 소 : 무술테마파크 ○ 참 석 자 : 1,000여명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9.29	□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 일 시 : 2010. 9.29.(수) 17:00 ○ 장 소 : 충주호암체육관 ○ 주 관 :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 참 석 자 : 5,000여명(이재오특임장관, 환경부차관, 시장, 군수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축사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9.29	□ 행정문화위원회 제91회 전국체전 결단식 참석 격려 ○ 일 시 : 2010. 9.29.(수) 11:30 ○ 장 소 : 충북스포츠센터 ○ 참석위원 : 위원장외 2명 ○ 주요내용 : 선수 격려	
9.30	□ 충청권 광역의원 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 ○ 일 시 : 2010. 9.30.(목) 10:00 ○ 장 소 : 대전 리베라호텔 ○ 주 관 : 충청광역권개발위원회 ○ 참 석 자 : 200여명(의장님, 의원 21명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건배제의	
10. 4	□ 참여예산제도 토론회 ○ 일 시 : 2010.10. 4.(월) 14:00 ○ 장 소 : 의회 회의실 ○ 주 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패널참석 : 장선배 의원	
10. 7	□ 세종시 특위 현장 확인 ○ 일 시 : 2010.10. 7.(목) 09:30 ○ 장 소 : 세종시 편입 예상지역 - 청원군 부용면 8개리, 강내면 3개리 ○ 주요내용 - 편입지역의 경계와 세부실태 확인 - 지역주민의 정서와 여론 동향 파악 ※ 현장 확인 후,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정책 토론회 참석(당일 14:00 예술의 전당)	
10. 8	□ 고문변호사 재위촉 ○ 일 시 : 2010.10. 8.(금) 14:00 ○ 장 소 : 의장실 ○ 위촉대상 : 박충규 충북변호사 부회장 ○ 위촉기간 : 2010.10.10. ~ 2011.10. 9.	
10.11	□ 무상급식 협상지원단 1차 회의 ○ 일 시 : 2010.10.11.(월) 14:00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 7층) ○ 참 석 자 : 협상지원단 및 담당국장 ○ 내 용 : 기관별 의견청취 및 토론	
10.13	□ 제295회 임시회 ○ 회 기 : 2010.10.13. ~ 10.20. (8일간)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0.13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0.10.13.(수) 09:30 ○ 일 시 : 의장실 ○ 참 석 자 : 17명(의장단 9, 사무처간부 8) ○ 내 용 : 도정질문 일정안내 등	
10.13	□ 전체의원 연찬회 ○ 일 시 : 2010.10.13.(수) 14:00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 7층) ○ 대 상 : 전체의원 및 사무처직원 ○ 주 제 : 지방의회 운영기법 ○ 강 사 : 박봉국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원장)	
10.14	□ 정책복지위원회 주요 정책사업관련 현지확인 ○ 일 시 : 2010.10.14.(목) 14:00 ○ 장 소 : 드림스타트 청주센터(성화동) ○ 참 석 자 : 11명(의원 7, 전문위원 등) ○ 내 용 : 사업내용 청취 및 시설견학	
10.14	□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우수 농·산촌 작은학교 방문 ○ 일 시 : 2010.10.14.(목) 08:30 ○ 방문기관 : 보은 수정초, 청원 동화초	
10.14	□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0.10.14.(목) ○ 일 시 : 곰두리체육관 ○ 참 석 자 : 최병윤 위원장 등 6명	
10.14	□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지 현지확인 ○ 일 시 : 2010.10.14.(수) 11:00 ○ 장 소 : 청주의료원 ○ 참 석 자 : 행정문화위원장 등 6명 ○ 내 용 : 정신병동 신축예정지	
10.15	□ 의원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 일 시 : 2010.10.15.(금)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위 원 : 박종관외 7명 ○ 안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정책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연수계획 심사 ※ 위촉장 수여 : 2010.10.15. 10:30 / 의장실	
10.15	□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우수 농·산촌 작은학교 방문 ○ 일 시 : 2010.10.15.(금) 08:30 ○ 방문기관 : 단양가곡초 대곡분교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0.18	□ 세종시 특위대정부건의안 채택 ○ 일 시 : 2010.10.18.(월) 10:30 ○ 장 소 : 본회의장 ○ 내 용 :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 제안설명 : 김광수 세종시특위위원장	
10.19	□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0.10.19.(화) 12:00 ○ 대 상 : 한국농업경영인충북도연합회 ○ 참 석 자 : 30명 (의원 7, 한농 20, 직원 3) ○ 안 건 :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방안, 2011년도 농업예산 확충방안, 자연재해·FTA농업대책기구 설립	
10.19	□ 무상급식 협상지원단 회의(2차) ○ 일 시 : 2010.10.19.(화) 15:00 ○ 장 소 : 의회 회의실 ○ 참 석 자 : 7명(의원 3, 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등) ○ 내 용 : 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기관별 입장 청취 등	
10.20	□ 충주덕신초 의회견학 ○ 일 시 : 2010.10.20.(수) 10:00 ~ 11:00 ○ 방문인원 : 학생 48명(인솔교사 6) ○ 방문목적 : 지방자치의 이해 ○ 견학장소 : 본회의장	
10.20	□ 청풍명월직업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0.10.20.(수) 10:30 ○ 장 소 : 교육과학연구원 ○ 참 석 자 : 교육위원회 의원 7명	
10.20	□ 교육위원회 학원조례개정 사전 설명회 ○ 일 시 : 2010.10.20.(수) 13: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담당부서 : 충북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	
10.20	□도의회 주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0.10.20.(수) 15:00 ~ 16:30 ○ 장 소 : 도청 서관 5층(중회의실) ○ 내 용 : “9대 의회 운영방향과 과제”	
10.22	□ 역대 도의회의장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0.10.22.(금) 12:00 ○ 장 소 : 모모야마 ○ 참 석 자 : 18명(의장, 역대의장12, 부의장2, 처장, 사무처2)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0.22	□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0.10.22.(금) 14:00 ○ 장 소 : 전라남도의회 ○ 내 용 : 시·도 의회간 정보교환 및 안건 처리 ○ 참 석 자 : 운영위원장 외 2명	
10.23	□ 제6회 직원 화합 한마음 축제 ○ 일 시 : 2010.10.23.(토) 10:00 ~ 16:00 ○ 장 소 : 중앙초 운동장 ○ 주 최 :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 팀 구 성 : 12개팀(실국별 연합팀 구성)	
10.23	□ 정책복지위원회 해외연수 ○ 기 간 : 2010.10.23. ~ 10.31.(7박9일) ○ 인 원 : 11명(의원 7, 직원 4) ○ 지 역 : 호주, 뉴질랜드 ○ 내 용 : 선진 복지정책 등 정책연수	
10.25	□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 기 간 : 2010.10.25. ~ 10.31.(6박7일) ○ 지 역 : 일본 ○ 인 원 : 11명(의원 7, 직원 4) ○ 내 용 : '농산촌 작은학교 살리기' 국외성공사례 비교연수	
10.28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및 오송역 준공식 ○ 일 시 : 2010.10.28.(목) 11:00 ○ 장 소 : 오송역 ○ 참 석 자 : 1,000여명(지사님,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테이프커팅	
10.29	□ 건설소방위원회 해외연수 ○ 기 간 : 2010.10.29. ~ 11. 1.(3박4일) ○ 인 원 : 10명(의원 7, 직원 3) ○ 지 역 : 중 국 ○ 내 용 : 도시계획 및 교통, 재난예방 공공디자인 선진분야 연수	
11. 2	□ 연구활동계획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0.11. 2.(화) 10: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심의안건 : 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최미애의원 신청) ※ 연구주제 : 학교급식소 식판위생 관리조사연구	
11. 2	□ 운영위원회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0.11. 2. ~ 11. 3. ○ 장 소 : 수안보 파크호텔 ○ 대 상 :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사례로 알아보는 공직선거법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1. 4	□ 세종시 특위 국회·정부방문 ○ 일 시 : 2010.11. 4.(목) ○ 방 문 자 : 세종시특위 위원 7명 ○ 방 문 처 - 국 회 : 의장, 부의장, 각 정당원내대표 등 -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행복도시건설청(지역개발과) ○ 내 용 : 세종시설치 특별법 조기제정 건의문 설명	
11. 8	□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인대 방문 ○ 방문기간 : 2010.11. 8. ~ 11.12.(5일간) ○ 방 문 단 : 16명(의장, 부의장1, 의원8, 처장, 직원4, 통역1) ○ 주요활동 -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방안 협의 - 광서장족자치구 주요인사 접견 및 주요 기관 방문	
11.13	□ 제9회 충청북도 보육인대회 참석 ○ 일 시 : 2010.11.13.(토) 10:00 ○ 장 소 : 음성군 체육관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표창장 수여	
11.15	□ 중국 길림성 구태시 카론진 당서기 방문 ○ 일 시 : 2010.11.15.(월) 14:30 ~ 15:30 ○ 장 소 : 의장실 ○ 방 문 단 : 길림성 구태시 카론진 장림업 당서기 등 12명 (중국방문단 7, 에이전트 등 5) ○ 방문목적 : 도내업체(사료회사)의 중국투자유치를 위해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	
11.16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0.11.16.(화) 15:00 / 의장실 ○ 참 석 자 : 18명(의장단9, 사무처간부9) ○ 내 용 - 제29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2011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안) 등	
11.16	□ 예결특위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0.11.16. ~ 11.17. ○ 장 소 : 수안보 상록호텔 ○ 대 상 : 22명(의원 13, 직원 9) ○ 주요내용 - 효율적인 예산기법 - 2011년 재정운영 여건·방향 및 예산안 편성기준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1.17	□ 시·도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0.11.17. ~ 11.18. ※개회식 : 2010.11.17.(수) 14:00 ○ 장 소 : 경상남도의회(창원시 소재) ○ 참 석 : 16명(전국시·도의회 의장) ○ 안 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 등	
11.22	□ 제296회 정례회 ○ 회 기 : 2011.11.22. ~ 12.24.(33일)	
11.22	□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0.11.22.(월)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심사안건 - 2011년도 연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1.24	□ 의정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0.11.24.(수) 11:00 ○ 보 고 자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 석 : 20여명 -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내 용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및 활성화 제도	
11.26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0.11.26.(금) 14:30 ○ 장 소 : 경기도의회 ○ 참 석 : 운영위원장 외 2명 ○ 안 건 - 지방의회 당면 현안사항 및 공동이해 관련사항 협의	
12. 1	□ 교육위원회 의안관련 현장 방문 ○ 일 시 : 2010.12. 1.(수) 10:00 ○ 장 소 : 괴산, 청주 ○ 안 건 : 오성 기숙형중학교 설립, 목도고 기숙사 증축, 창신유치원사 증축, 청심초등학교 설립	
12. 1	□ KBS 특별생방송 희망2010 "불우이웃에게 희망의 손길을" ○ 일 시 : 2010.12. 1.(수) 11:00 ○ 장 소 : 성안길 철당간 ○ 참 석 자 : 도내어린이집, 학교, 민간단체 ○ 내 용 : 현장모금 생방송, 나눔문화 홍보 ※ 김형근 의장 참석 : 인터뷰, 성금기탁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2. 1	□ 제16회 아시안게임 충북선수단 환영식 ○ 일 시 : 2010.12. 1.(수) 11:40 ○ 장 소 : 중회의실 ○ 참 석 자 : 30명(선수단 17, 도지사, 교육감, 경기단체 등 13) ※ 김형근 의장 참석 : 환영사, 꽃다발 증정	
12. 2	□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10.12. 2.(목) 17:00 ○ 장 소 : 라마다 ○ 참 석 자 : 130여명 정도 ○ 주 관 : 충청북도,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12. 3	□ 교육위원회 의안관련 현장 방문 ○ 일 시 : 2010.12. 3.(금) 09:00 ○ 장 소 : 진천, 청원 ○ 안 건 : 혜원중학교 분리이전(광혜원, 진천읍내), 오송유치원 설립	
12. 7	□ 충북새농민회 전진대회 ○ 일 시 : 2010.12. 7.(화) 11:00 ○ 장 소 : 명암타워 ○ 참 석 자 : 500여명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12. 7	□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 일 시 : 2010.12. 7.(화) 14:00 ○ 장 소 : 청주시민회관 ○ 참 석 자 : 800여명(도지사, 자원봉사자 및 단체)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12. 7	□ 제7회 위탁가정의 날 「우리는 한가족」 행사 ○ 일 시 : 2010.12. 7.(화) 18:30 ○ 장 소 : 티아라 ○ 주 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참 석 자 : 150여명(모범 위탁부모 및 후원자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격려사 및 시상	
12. 8	□ 제15회 청소년의회교실 ○ 일 시 : 2010.12. 8.(수) 10:3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자 : 70여명 (청주 봉명고, 대성고) ○ 행사내용 : 의장선거, 안건처리, 청남대 견학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2. 8	□ 충북식생활교육네트워크 창립총회 ○ 일 시 : 2010.12. 8.(수) 15:00 ○ 장 소 : 충청북도학생문화회관 ○ 참 석 자 : 200여명 ○ 주 관 : 충북식생활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회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12. 8	□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보고회 ○ 일 시 : 2010.12. 8.(수) 17:00 ○ 장 소 : 선프라자 ○ 참 석 자 : 150여명 ○ 주 관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12.11	□ 2010 사랑의 다리 ○ 일 시 : 2010.12.11.(토) 11:30 ○ 장 소 : 사회복지센터 ○ 주 최 : 사)한국농아인협회 충북도협회 ○ 주 관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상당지구협의회 ○ 참 석 자 : 200여명(홍재형·오제세국회의원, 김화진보건복지국장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및 오찬	
12.14	□ 전체의원 송년만찬 ○ 일 시 : 2010.12.14.(화) 18:00 ○ 장 소 : 경화반점 ○ 참 석 자 : 45명정도(의원 35, 사무처간부 10) ○ 내 용 :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의원님간의 화합도모	
12.16	□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우수학교 시찰 ○ 일 시 : 2010.12.16. ~ 12.17. ○ 장 소 : 전라북도 일원 ○ 시찰학교 - 삼우초등학교 : 농산촌 전원학교로 교과부 우수교 선정 - 화산중학교 : 국내유일 사립자율중학교 기숙형중학교 운영 우수사례	
12.17	□ 제빵왕김탁구 드라마 전시, 체험관 개관 ○ 일 시 : 2010.12.17.(금) 15:00 ○ 장 소 : 청주 첨단산업단지내 동부창고 ○ 참 석 자 : 1,000여명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테이프커팅 등	
12.20	□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준공식 ○ 일 시 : 2010.12.20.(월) 10:30 ○ 장 소 :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 참 석 자 : 400여명(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등) ○ 주요내용 : 준공식, HIT R&D 비전 선포식, 오송타운 시찰, 오찬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2.2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공동포럼 ○ 일 시 : 2010.12.23.(목) 13:3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참 석 자 : 300여명 ○ 주 최 : 변재일 국회의원 ○ 주 관 : 충청권 3개시도 연구원 ○ 내 용 : 주제발표 및 토론	
12.24	□ 2010 도의회 폐회연 ○ 일 시 : 2010.12.24.(금) 12:00 ○ 장 소 : 도청 구내식당 ○ 참 석 자 : 의원, 도및교육청 간부 등 80여명	
12.27	□ 2010 충청북도장애인체육상 시상식 ○ 일 시 : 2010.12.27.(월) 11:00 ○ 장 소 : 선프라자 ○ 참 석 자 : 130여명(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시장, 축사	
12.27	□ 단재교육상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0.12.27.(월) 14:00 ○ 장 소 :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 참 석 자 : 최진섭, 장병학, 이광희, 전응천, 하재성의원	
12.28	□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개청식 ○ 일 시 : 2010.12.28.(화) 15:00 ○ 장 소 : 북부출장소 청사 광장(의병도서관 주차장) ○ 참 석 자 : 300여명(유관기관 단체장,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현판식	
12.30	□ 2010 종무식 및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행사 개최 ○ 일 시 : 2010.12.30.(목) 19:00 ○ 장 소 : 청주롯데시네마 ○ 참 석 자 : 의장, 의원, 사무처 직원 및 가족 등 90여명 ○ 진행일정 - 표창장 전수 및 의장표창 수여 - 의장님 인사말씀, 폐식 - 영화 관람	

2. 2011년도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 3	☐ 사랑의 떡 나누어주기 행사 ○ 일 시 : 2011. 1. 3.(월) 06:00 ○ 장 소 :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참 석 : 의장, 의원, 처장 등 10명 ○ 주요내용 : 떡(콩설기)과 차(茶) 제공 및 격려	
1. 3	☐ 충혼탑 참배 ○ 일 시 : 2011. 1. 3.(월) 09:00 ○ 장 소 : 사직동 충혼탑 ○ 참 석 : 의원, 사무처간부 등 17명 ※ 김형근 의장 참석 : 헌화 및 분향	
1. 3	☐ 2011년도 시무식 ○ 일 시 : 2011. 1. 3.(월) 10:00 ○ 장 소 : 7층 대회의실 ○ 참 석 : 의원, 사무처 전직원 ※ 김형근 의장 참석 : 인사말씀	
1. 4	☐ 2011 신년 인사회 ○ 일 시 : 2011. 1. 4.(화) 11:00 ○ 장 소 : 라마다 ○ 참 석 자 : 300여명(도지사,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건배제의	
1. 5	☐ 2011 충북체육상 시상식 및 신년회 ○ 일 시 : 2011. 1. 5.(수) 11:00 ○ 장 소 : 선프라자 ○ 참 석 자 : 300여명 ※ 김형근 의장 참석 : 시상, 축사, 축하떡절단	
1. 5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1 신년인사회 ○ 일 시 : 2011. 1. 5.(수) 15:00 ○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 참 석 자 : 150여명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1.11	☐ 건설소방위원회 화재진압 부상 소방공무원 위로 방문 ○ 일 시 : 2011. 1.11.(화) ○ 장 소 : 청주성모병원 ○ 방 문 자 : 10명(건설소방위원7, 직원3) ○ 대 상 자 : 청주동부소방서 박석기(남, 30세) ※ 우측 하퇴부 개방성 골절, 치아손상 ○ 내 용 : 부상소방관 위로·격려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13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1. 1.13.(목) 10: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자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대변인, 사무처장 등 ○ 주요내용 -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 타 상임위 소관 조례 제·개정 관련 의견청취 - 구제역 방역초소 방문 등 기타 안건	
1.18	□ 제297회 임시회 ○ 회 기 : 2011. 1.18. ~ 1.27.(10일)	
1.22	□ 충북협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 일 시 : 2011. 1.22.(토) 18:30 ○ 장 소 :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참 석 자 : 500여명(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단체장, 충북인사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당선축하패수여, 축사	
1.25	□ 의정참여단 위촉식 ○ 일 시 : 2011. 1.25.(화) 14:00 ○ 장 소 : 의원휴게실(신관6층) ○ 참석대상 : 40여명(의정참여단, 도의원, 사무처 직원) ※ 김형근 의장 참석 :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 내 용 - 위촉장 수여 - 제9대 의회 홍보비디오 시청 - 교육(의정참여단 안내)	
1.26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1. 1.26.(수) 10:00 ○ 장 소 : 청주소망의집(노인의료시설) ○ 위 문 단 : 의장, 총무팀장외 1명 ○ 위 문 품 : 성인용기저귀, 화장지 등	
1.27	□ 전체의원 연찬회 ○ 일 시 : 2011. 1.27.(목) 15:00 ~ 16:30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 7층) ○ 대 상 :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 강 사 : 충북대교수 황희연 ○ 내 용 : 지역발전정책 최근 추세와 향후 대책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2. 9	□ 2010 의회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 기 간 : 2011. 2. 9. ~ 2.11.(2박3일) ○ 장 소 : 제주도일원 ○ 인 원 : 총 12명(유공자 6, 배우자 6) - 음창규, 김병태, 유영상, 김희제, 하헌인, 채희봉	
2.1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민·관·정·의회연석회의 ○ 일 시 : 2011. 2.14.(월) 10:30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 7층) ○ 참 석 자 : 34명 정도 - 의장, 도지사, 충북지역 국회의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추진협의회 - 세종시비상대책위원회 -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 각 정당 충북도당 대표	
2.1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수 결의대회 ○ 일 시 : 2011. 2.15.(화) 14:00 ~ 14:20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 참여대상 : 478명 / 대전·충북·충남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 대전광역시의회 : 89명 / 광역 26, 기초 63 - 충청북도의회 : 166명 / 광역 35, 기초 131 - 충청남도의회 : 223명 / 광역 45, 기초 178 ○ 주 최 : 충청권 3개시도 광역·기초의회	
2.16	□ 충북도립대학 제12회 학위수여식 ○ 일 시 : 2011. 2.16.(수) 11:00 ○ 장 소 : 옥천문화원 ○ 참 석 자 : 600여명(학위수여자 382명) ※ 김형근 의장 참석 : 시상, 축사, 오찬	
2.16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 선포식 ○ 일 시 : 2011. 2.16.(수) 15: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자 : 200여명(국회의원, 시장, 군수, 언론, 기관장, 기업인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 내 용 : 경축공연, 비전 선포식, 비전 제막식	
2.16	□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및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 일 시 : 2011. 2.16. ~ 2.17.(1박2일) ○ 장 소 : 강원도 평창 용평 ○ 참 석 자 : 행정문화위원장·위원(6), 직원(4)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2.22	□ 충북여성포럼 제13차 정기총회 ○ 일 시 : 2011. 2.22.(화) 14: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자 : 70여명(임원, 운영위원, 일반회원 등) ○ 주 최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유영선/동양일보상무이사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2.23	□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1. 2.23.(수) 14: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자 : 200여명 ○ 주관/후원 : 충청일보/충청북도,충북개발연구원	
2.25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1. 2.25.(금) 10:4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19명(의장단10, 사무처간부9) ○ 주요내용 - 도정질문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시민사회단체간담회 실시 (각 상임위별) 등	
2.25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기 간 : 2011. 2.25. ~ 2.26.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안 건 : 지방의회 당면 현안사항 및 공동이해 관련사항 협의 ○ 참 석 자 : 운영위원장 외 3명	
3. 1	□ 제92주년 삼일절 기념식 ○ 일 시 : 2011. 3. 1.(화) 10:30 ○ 장 소 : 청주시민회관 ○ 참석의원 : 16명 ※ 김형근 의장 참석 : 만세삼창 선창 및 오찬	
3. 8	□ 제298회 임시회 ○ 회 기 : 2011. 3. 8. ~ 3.17.(10일간)	
3. 8	□ 충청북도의회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1. 3. 8.(화) 16:30 ○ 참 석 : 45명(도의원, 교육청관계자, 이해관계자) ○ 내 용 : 개정조례안 의견청취	
3. 8	□ 무상급식 관련 학교방문 ○ 일 시 : 2011. 3. 8.(화) 11:30 ○ 장 소 : 우암초등학교 ○ 참 석 자 : 교육위원회 의원 7명 ○ 내 용 : 무상급식 관련 실태파악 및 배식봉사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3. 9	□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사수 충북지역 민관정공동대책위 출범식 ○ 일 시 : 2011. 3. 9.(수) 10:00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 석 자 : 500여명(도의원, 시군의원, 단체장 등) ○ 행사내용 : 개회선언, 경과보고, 인사말씀, 출범선언문 낭독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개회선언	
3.10	□ 건설소방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일 시 : 2011. 3.10.(목) 10:00 ○ 장 소 : 영동, 청원 ○ 참 석 자 : 9명(의원7, 직원2) ○ 내 용 : 도계마을 육성사업 현지확인	
3.10	□ 조례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 조 례 명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일 시 : 2011. 3.10.(목) 14:00 ~ 16:00 ○ 장 소 : 7층 의회 회의실 ○ 참 석 자 : 90명 정도 - 외부토론자 · 사회 : 심의보 충청대학 교수 · 토론 : 전태식 道노인회장, 이명희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장 이수한 청원군노인복지관장, 강신옥 우암시니어클럽관장 김화진 道보건복지국장	
3.15	□ 무상급식 학교 현장 방문 ○ 일 시 : 2011. 3.15.(화) 11:10 ○ 장 소 : 석교초등학교 ○ 참석인원 : 8명(의장, 의원3, 학교4) ○ 행사내용 : 환담(교장실), 배식, 오찬	
3.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1. 3.15.(화) 16:30 ○ 장 소 : 예결특위사무실(신관5층) ○ 참 석 자 : 도, 교육청 담당과장 및 담당자 ○ 내 용 : 품셈 및 원가계산 절감방안 토론	
3.15	□ 교육위원회 교육현장 방문 ≪수회초등학교≫ ○ 일 시 : 2011. 3.15.(화) 15:00 ○ 내 용 : 우수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증가한 작은학교 ≪충주교직원복지회관≫ ○ 일 시 : 2011. 3.15.(화) 17:00 ○ 내 용 : 교직원복지회관 운영실태 파악 ≪연풍초등학교≫ ○ 일 시 : 2011. 3.16.(수) 13:30 ○ 내 용 : 다양한 운동장 조성에 대한 현장 확인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3.16	□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현장 청취 ○ 일 시 : 2011. 3.16.(수) 10:00 ○ 대 상 :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3.16	□ 건설소방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일 시 : 2011. 3.16.(수) 10:00 ○ 장 소 : 옥천, 영동, 청원 ○ 참 석 자 : 건설소방위원 7명 ○ 내 용 :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옥천) - 도계마을 육성사업(영동, 청원)	
3.16	□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수 충청권 결의대회 ○ 일 시 : 2011. 3.16.(수) 15:00~17:10 ○ 장 소 : 대전역 광장 ○ 행사내용 : 개회, 대회사, 격려사 및 연대사, 공동행동, 결의문 낭독, 가두행진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연대사	
3.17	□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 서명운동	
3.17	□ 전체의원 연찬회 ○ 일 시 : 2011. 3.17.(목) 10:30 ~ 12:00(90분)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7층) ○ 참 석 자 :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 강 사 : 김용석(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내 용 : 나도 BEST 지방의원	
3.18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3.18.(금) 16:00 ○ 장 소 : 대구광역시의회 ○ 안 건 : 지방의회 당면 현안사항 및 공동이해 관련사항 협의 ○ 참 석 자 : 운영위원장 외 2명	
3.22	□ 강원도의회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차 예방 ○ 일 시 : 2011. 3.22.(화) 11:00 ○ 방문인원 : 9명(운영위원장, 사회문화위원장, 사무처직원 등) ○ 주요내용 - 2018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기념품 전달 - 지방의회 차원의 홍보 협조 요청 - 충북도의회 기자단과의 간담회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3.23	□ 제2차 임시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1. 3.23.(수) 16:0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 주요안건 - 정책자문위원회위원수당등지급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광역의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정치자금법」개정 건의의 건 등	
3.29	□ 정책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11. 3.29.(화) 11:00 ○ 장 소 : 정책복지위원실 ○ 참 석 자 : 5명(김도경 의원, 사회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복지팀장, 전문위원 등) ○ 내 용 :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협의	
4. 5	□ 과학벨트사수관련 청와대 항의 방문 ○ 일 시 : 2011. 4. 5.(화) 14:00 ○ 장 소 : 청와대 앞 ○ 참 석 자 : 도의원, 충청권출신국회의원, 비대위상임대표 등 ○ 주 관 : 과학벨트 충청권 공대위 ○ 내 용 : 개회사,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낭독	
4. 8	□ 충북소년체전 개회식 ○ 일 시 : 2011. 4. 8.(금) 10:00 ○ 장 소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 참석의원 : 교육위원회 전체의원	
4.11	□ 201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1. 4.11.(월) 15:00 ○ 장 소 : 의장실 ○ 참석대상 : 14명(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대변인, 사무처장, 과장급8, 팀장급5) ○ 내 용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1/4분기)	
4.12	□ 제299회 임시회 ○ 회 기 : 2011. 4. 12. ~ 4. 21.(10일간)	
4.13	□ 문화예술인 초청정책간담회 ○ 주 제 : 충청북도 문화예술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11. 4.13.(수) 14:00 ~ 15:00 ○ 참 석 자 : 12명(의원 6, 문화예술계 6) - 문화예술계 :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등 3개 단체회(지회)장 및 사무처장	
4.14	□ 농민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 일 시 : 2011. 4.14.(목) 10:30 ○ 장 소 : 산업경제회의실 ○ 참 석 자 : 15명(의원 6, 농민단체 5, 관계부서 4) ○ 내 용 : 건의사항 청취 및 대화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4.14	□ 교육위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 ○ 일 시 : 2011. 4.14.(목) ○ 방 문 교 : 보은 내북초(이원 폐교) 옥천 청성초(능월 폐교) 부지	
4.18	□ 정책복지위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1. 4.18.(월) 14:00 ○ 인 원 : 53명 정도 - 정책복지위원, 전문가, 장애인 관련 17개 단체 대표 등 <공술인(公述人)> · 남상래 장애인단체 道연합회장 · 임승빈 지적장애인복지충북협회장 · 변창수 지체장애인충북협회장 · 강경희 여성장애인연합충북지부장 ·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충북지부장 · 최정옥 충청북도 복지장애인과장 ○ 내 용 :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견 수렴 ○ 조치계획 - 의견 수렴 결과 검토 - 입법예고 및 조례안 상정(6월경)	
4.18	□ 건설소방위 주요현안사업 현지확인 ○ 일 시 : 2011. 4.18.(월) 10:00 ○ 인 원 : 10명(의원7, 직원3) ○ 장 소 : 청원, 진천, 음성, 충주 -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예정지구(청원, 충주) - 혁신도시(진천,음성)	
4.19	□ 제16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일 시 : 2011. 4.19.(화) 10:3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자 : 70명(청주 우암초, 제천 장락초) ○ 행사내용 -의장선거, 안건처리, 청남대 견학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개회식 , 수료식 , 기념촬영	
4.19	□ 과학벨트 분산배치음모 규탄 500만 충청인 궐기대회 개최 ○ 일 시 : 2011. 4.19.(화) 14:00 ○ 장 소 : 청주체육관 앞 ○ 규 모 : 1만명(충북8천명,대전1천명,충남1천명) ○ 참석대상 : 전체의원 ※ 김형근의장 참석 : 연대사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4.20	□ 행정문화위 공청회 실시 ○ 주 제 :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방안 ○ 일 시 : 2011. 4.20.(수)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7층) ○ 발표 및 토론자 : 9명 - 발 표 : 김영주·임헌경 의원, - 공술인 : 곽동철 청주대 교수 외 6명 ○ 참 여 : 8명(의원 및 의정자문위원)	
4.21	□ 전체의원 연찬회 ○ 일 시 : 2011. 4.21.(목)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7층) ○ 대 상 :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 강 사 : 신원섭(충북대 산림학과교수) ○ 내 용 : 치유의 숲 조성과 발전방안	
4.26	□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연찬회 ○ 기 간 : 2011. 4.26. ~ 4.27. ○ 장 소 : 장령산 휴양림(옥천군서면) ○ 참 석 자 : 25명(예결특위위원 13명, 사무처장, 직원 등 12명) ○ 내 용 -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 강의 ※ 천우정 국회 행정사업평가팀장 - 충청북도 재무회계 결산정보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등	
4.29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4.29. ~ 4.30. ○ 장 소 : 제주도 롯데호텔 ○ 안 건 : 현안 협의	
5. 2	□ 건설소방위원회 자체연찬회 ○ 기 간 : 2011. 5. 2. ~ 5. 3.(1박2일) ○ 장 소 : 리솜 프레스토(제천) ○ 참 석 자 : 10명(의원7, 직원3) ○ 내 용 : 위원회 의정활동방향 연찬	
5. 2	□ 4.27재·보궐선거 도의원 당선자 등록 ○ 일 시 : 2011. 5. 2.(월) 14:00 ○ 장 소 : 총무담당관실 ○ 등록서류 : 당선통지서 사본, 도의원 개인기록카드 등 9종 ○ 등록시 배부 - 의원배지, 업무용가방, 의회운영책자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5. 4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특별좌담회 ○ 일 시 : 2011. 5. 4.(수) 14:00 ○ 장 소 : 도청 중회의실 ○ 주 최 :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 참석의원 : 김영주 의원	
5. 4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1. 5. 4.(수) 15:00 ○ 장 소 : 의장실 ○ 안 건 : 제2회정례회 회기변경의 건 등	
5. 9	□ 교육전문위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 ○ 일 시 : 2011. 5. 9.(월) 10:00 ○ 내토중 다목적실, 청풍초·중 다목적실, 선수기숙사 신축 - 충북체육고 이전부지(진천 문백 도하리) - 진천생명과학고 기숙사 신축 - (가칭)대소금왕고 설립부지 취득	
5.11	□ 제300회 임시회 ○ 회 기 : 2011. 5.11. ~ 5.20.(10일간)	
5.12	□ 산업경제위 현지 확인 ○ 일 시 : 2011. 5.12.(목) 10:00 ○ 장 소 : 내수면연구소 ○ 참 석 : 11명(의원 7, 직원 4)	
5.12	□ 교육전문위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 ○ 일 시 : 2011. 5.12.(목) 10:00 ○ 장 소 : 영동 산과고 교사, 기숙사, 골프연습장 수곡중 다목적실 신축	
5.12	□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백지화 저지 충북지역 도·시군의회 궐기대회 ○ 일 시 : 2011. 5.12.(목) 13:30 ○ 장 소 : 도청 신관 앞 ○ 참 석 자 : 166명(도의원 35, 시·군의회 131) ○ 내 용 : 대회사, 격려사, 궐기사, 결의문 낭독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대회사	
5.16	□ 행정문화위 충북참여연대와의 정책간담회 ○ 일 시 : 2011. 5.16.(월) 14:00 ○ 장 소 : 행정문화위원실 ○ 참 석 자 : 12명 정도(의원 6, 참여연대 6) ○ 내 용 :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도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관련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5.18	□ 제17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일 시 : 2011. 5.18.(수) 10:3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자 : 70명(청주 대성여상, 충주 중산고) ○ 행사내용 : 의장선거, 안건처리, 청남대 견학 등 ※ 김형근의장 참석 : 개회식 , 수료식 , 기념촬영	
5.19	□ 건설소방위 주요현안사업 현지확인 ○ 일 시 : 2011. 5.19.(목) 10:00 ○ 장 소 : 보은, 옥천, 영동(3개군) ○ 내 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 천연자원물 웰빙타운 투어조성(보은) - 지역전략산업클러스터 구축(옥천) - 고령친화 클러스터 조성(영동)	
5.19	□ 산업경제위 농민단체 간담회 ○ 일 시 : 2011. 5.19.(목) 11:00 ○ 장 소 : 도의회 회의실 ○ 대 상 : 농촌생활개선회 등 5개 단체 ○ 참 석 자 : 19명(단체 10, 의원 7, 집행부 2) ○ 내 용 : 농민단체 건의사항 등 수렴	
5.20	□ 전체의원 연찬회 ○ 일 시 : 2011. 5.20.(금)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7층) ○ 대 상 :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 강 사 : 이수경(충청대 방송연예과) ○ 내 용 : 이미지 리더십	
5.23	□ CJB생방송 투데이 촬영(의장) ○ 프로그램 : CJB생방송 투데이 ○ 일 시 : 2011. 5.23.(월) 14:30 ○ 장 소 : 의장실 ○ 주요내용 : 시사 따라잡기 “도의회 부활 20주년” ※ 방송일정 : 5. 26(목) 07:10/동일 18:30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5.25	□ 경기도의회 시·도 비교방문 ○ 일 시 : 2011. 5.25.(수) 15:00 ○ 장 소 : 6층 의원휴게실 ○ 참 석 자 : 28명 - 도의회(9) : 의장, 부의장, 대변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 총무·의사담당관, 의회운영·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 경기도의회(19) : 의원11, 경기개발연구원2, 공무원6 ○ 주요내용 : 환담, 본회의장 시설견학 및 기념촬영	
5.25	□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 기 간 : 2011. 5.25. ~ 6.13.(20일간) - 교육청 : 2011. 5. 25. ~ 6. 1.(8일간) - 도 : 2011. 6. 2. ~ 6.13.(12일간) ○ 위촉장 수여 - 일시 : 2011. 5.25.(수) 10:00 / 의장실 - 위원 : 8명(도의원2, 회계사2, 세무사2, 전직공무원2) ○ 결산검사위원 회의 개최 - 일시 : 2011. 5.25.(수) 10:30 / 예결위 위원장실 - 배석 : 도·교육청관계관(회계과장,경리팀장), 의사담당관	
5.26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5.26.(목) 14:00 ○ 장 소 : 대전광역시 의회 ○ 안 건 : 지방의회 당면 현안 및 공동이해 관련사항 협의 ○ 참 석 자 : 운영위원장 외 2명	
5.29	□ 산업경제위 위원 해외연수 ○ 기 간 : 2011. 5.29. ~ 6. 3. ○ 연 수 지 : 러시아 ○ 인 원 : 11명(의원 7, 직원 4)	
6. 1	□ 교육위 전국소년체전 참관 및 교육활동 우수학교 방문 ○ 기 간 : 2011. 5.30. ~ 6. 1. ○ 전국소년체전 참관 : 진주 및 경남 일원 ○ 교육활동 우수교 방문 - 방문교 : 여수시 소라면 관기초등학교 - 특 색 : 시골 작은 학교가 우수 교육활동으로 학생수 증가	
6. 1	□ 2011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해외연수 ○ 기 간 : 2011. 6. 1. ~ 6. 9.(9일간) ○ 장 소 : 4개국(영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 인 원 : 8명(의원6, 공무원2) ○ 내 용 - 재난 및 안전을 고려한 도시구조와 건축구조 - 환경친화적 녹지조성 및 조경 실태 - 건설, 재난, 교통,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견학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6. 2	□ 행정문화위 자체연찬회 실시 ○ 기 간 : 2011. 6. 2. ~ 6. 3.(1박2일) ○ 장 소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 ○ 내 용 :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심사기법 연찬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토의	
6. 2	□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 ○ 일 시 : 2011. 6. 2. ~ 6.13.(12일간) ※ 교육청 : 2011. 5.25. ~ 6. 1. ○ 장 소 : 예결위 회의실 (신관 5층)	
6. 6	□ 제56회 현충일 추모식 참석 ○ 일 시 : 2011. 6. 6.(월) 09:50 ○ 장 소 : 충혼탑 광장 ※ 김형근 의장 참석 : 헌화	
6. 7	□ KBS청주방송총국 시사토론 ○ 일 시 : 2011. 6. 7.(화) 22:00 ~ 23:00 KBS1 생방송 ○ 참 석 자 : 김영주 의원 토론패널 참여 ○ 주요내용 : 지역신문의 현주소, 충북지역신문지원조례안 내용,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해법 등	
6. 8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1. 6. 8.(수) 15:00 ○ 장 소 : 의장실 ○ 주요안건 - 지방자치부활 20주년 추진상황 - 의정참여단 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협의 건 등	
6. 9	□ 제50회 도민체전 개회식 ○ 일 시 : 2011. 6. 9.(목) 19:30 ○ 장 소 : 영동군민운동장 ※ 김형근 의장 참석 : 축사	
6.14	□ 제301회 임시회 ○ 회 기 : 2011. 6.14. ~ 6.23.(10일간)	
6.14	□ 의원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 6.14.(화)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충청북도 주요 재정지출 사업의 분석 및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방안 ○ 제 안 자 : 임헌경 의원	
6.16	□ 정책복지위 자체직무연찬회 ○ 일 시 : 2011. 6.16. ~ 6.17.(1박2일) ○ 장 소 : 강화도 일원 ○ 내 용 : 직무연찬 및 벤치마킹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우리마을」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6.20	□ 김형근의장과 대화의 시간 ○ 일 시 : 2011. 6.20.(월) 16:30 ○ 장 소 : 7층 회의실 ○ 대 상 : 사무처 전직원 ○ 내 용 : 사무처직원과의 공감대 형성 및 조직발전방안	
6.20	□ 청남대대통령역사문화관 준공식(축사) ○ 일 시 : 2011. 6.20.(월) 14:00 ○ 장 소 : 청남대	
6.21	□ 김형근의장 해외연수 ○ 일 시 : 2011. 6.21. ~ 6.28. ○ 장 소 : 오스트리아, 체코 ○ 주 관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21	□ 제18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일 시 : 2011. 6.21.(화) 10:3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자 : 70명(청주 석교초, 진천 삼수초) ○ 행사내용 : 개회식, 의회교실 체험, 청남대 견학 등 ※ 환영사: 최진섭 부의장, 수료식: 김종필 의원	
6.22	□ '농·산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1. 6.22.(수) 14:00 ○ 장 소 : 도청 서관 5층 중회의실 ○ 참 석 : 교육청 업무관계자 및 작은 학교 교장 등 100여명	
6.23	□ 의원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 6.23.(목)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연구 ○ 제 안 자 : 김동환 의원 외 4명	
6.23	□ 전체의원 연찬회 ○ 일 시 : 2011. 6.23.(목) 15:00 ○ 장 소 : 의회회의실 ○ 내 용 - 의정학술연구용역 보고회(20분) · 충청북도 재무회계 결산정보 활용방안 연구 (충북대 경영학부 이장희 교수) - 연찬회 강의(80분) · 충북균형발전과 권역별 발전방안 (영동대 도시부동산학과 백기영 교수)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7. 4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1. 7. 4.(월) 17:00 ○ 장 소 : 의장실 ○ 주요안건 : 지방자치부활 20주년 기념행사 등	
7. 8	□ 지방자치부활 20주년기념 경축행사 및 토론회 ○ 일 시 : 2011. 7. 8.(금)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50명정도(의원35, 초청인사115) ○ 행사일정 - 13:30 ~ 14:00 축하공연(충북도립예술단) - 14:00 ~ 14:45 기념식 - 15:00 ~ 17:00 정책토론회	
7. 11	□ KBS라디오 의장님 인터뷰 ○ 일 시 : 2011. 7.11.(월) ○ 장 소 : 의장실 ○ 인 터 뷰 : KBS청주방송라디오 “유용의 시사투데이” ○ 내 용 - 제9대 의회 1년간 의정활동 성과 - 기타 의정 현안사항 등	
7. 11	□ CJB청주방송 의장님 방송녹화 ○ 녹화일시 : 2011. 7.11.(월) ※ 방송시간 : 2011. 7.17.(일) 07:20 ○ 장 소 : CJB청주방송 스튜디오 ○ 인 터 뷰 : 최지현의 “피플&이슈” ○ 내 용 - 제9대 의회 1년간 의정활동 성과 및 의정 현안사항 등	
7.11	□ 제302회 정례회 ○ 회 기 : 2011. 7.11. ~ 7.22.(12일간)	
7.11	□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 7.11.(월) 11:00 ○ 장 소 : 운영위원장실 ○ 안 건 :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선택실태에 관한 연구 ○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외 4명(단체)	
7.12	□ 북부권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1. 7.12.(화) ○ 장 소 :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1층 대회의실) ○ 인 원 : 200명 내외 ○ 주요내용 - 개회식(인사말, 축사 등) - 정책토론회(100분) - 질의답변(방청객)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7.19	□ 세종시 연계 충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1. 7.19.(화) ○ 장 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참 석 자 : 200명 정도 ※ 김형근 의장 참석	
7.22	□ 제3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일 시 : 2011. 7.22.(금) 14:00 ○ 장 소 : 옥천체육센터 ○ 내 용 - 2010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및 기타안건 의결 - 5분자유발언(황규철, 김재종 의원)	
7.22	□ 충북 남부권 균형발전 다짐 대회 ○ 일 시 : 2011. 7.22.(금) 15:00 ○ 장 소 : 옥천체육센터 ○ 참 석 자 : 500여명(도·군의원, 군수, 유관기관단체장등) ○ 내 용 - 남부3군(보은,옥천,영동)균형발전기원 및 다짐결의	
8. 4	□ 산업경제위원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접견 ○ 일 시 : 2011. 8. 4.(목) 14:00 ○ 장 소 : 산경위원장실 ○ 방 문 단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등 4명 ○ 내 용 :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예매 안내	
8.14	□ UN사무총장 충북방문 오찬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1. 8.14.(일) 12:30 ~ 14:10 ○ 장 소 : 후렌드리호텔(충주 호암동) ○ 참석대상 - 200명정도(도내기관장,관계부처장·차관,사무총장친인척 등) ※ 의장 참석 : 건배제의 ○ 주요내용 : 환경인사, 인사말씀, 건배제의, 오찬 등	
8. 15	□ 제6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 시 : 2011. 8.15.(월) 11:00 ~ 13:00 ○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주 관 : 충청북도 ○ 참석인원 : 1,500여명(도의원13,직원20) ※ 의장 참석 : 만세삼창, 오찬참석	
8. 16	□ 2011 을지연습 비상소집 ○ 일 시 : 2011. 8.16.(화) 06:00 ○ 대 상 : 사무처 전직원 ※ 도의회 상황실 근무자 : 7명(1일2명) 시·군통제관(음성) : 1명(기록팀장)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8. 17	□ 2011 을지연습 참관 ○ 일 시 : 2011. 8.17.(수) 11:00 ~ 11:50 ○ 참 관 : 10명(의원7, 사무처직원3) ※ 참석의원 : 의장, 최진섭부의장, 최미애·김영주·김양희·정지숙·장병학의원 ○ 격 려 품 : 버무리설기 4말 ○ 주요내용 : - 을지연습 상황 보고 청취(종합상황실) - 실시단 순회 및 격려품전달	
8.19	□ 여름방학 현장학습 학생 도의회 견학 ○ 일 시 : 2011. 8.18.(목) 14:30 ○ 인 원 : 25명(초등학생 22, 인솔교사 3) ○ 목 적 : 지방자치의 이해 ○ 내 용 - 의회 홍보영상물 상영(10분) - 본회의장 및 의정전시관 견학(15분) ※ 의회소개 : 의사팀장	
8.22	□ 행정문화위원회 자체연찬회 실시 ○ 일 시 : 2011. 8.22.(월) ○ 장 소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 내 용 -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 내용, 예산심사 기법 -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8.23	□ KBS 생방송 시사토론 출연(의장) ○ 프로그램명 : KBS생방송 시사토론 ○ 일시·장소 : 2011. 8.23.(화) 22:00 / KBS공개홀 ○ 토론내용 : 지방자치부활 20년 성과와 과제 등	
8.25	□ 산업경제위원회 연찬회 ○ 일 시 : 2011. 8.25. ~ 8.27.(2박3일) ○ 장 소 : 제주도일원 ○ 내 용 : 직무연찬 및 벤치마킹 등 - 제주도의회 방문 등	
8.26	□ 네팔여성단체 우리 도의회 방문 ○ 일 시 : 2011. 8.26.(금) 11:00 ○ 장 소 : 의원 휴게실 ○ 참석인원 : 17명(방문단11, 우리의회6) ○ 주요내용 : 충북여성포럼과 네팔여성 단체와의 국제교류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8.27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1. 8.27.(토) 14:00 ○ 장 소 : 대구광역시의회 ○ 참 석 : 전국 시·도의회의장 ○ 주요내용 : 의장협의회 임원 선출 및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	
8.30	□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 및 주요인사 경기 참관 ○ 개회식 - 일 시 : 2011. 8.30.(화) 19:30 -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 참 석 : 9명(의원 7, 직원 2) ○ 경기 참관 - 일 시 : 2011. 9. 1.(목) 11:00 - 장 소 : 청주공업고등학교 - 참 석 : 9명(의원 7, 직원 2)	
9. 1	□ 교육위원회 의원연찬 및 현장방문 ○ 의원연찬회 및 교육시설·폐교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 기 간 : 2011. 9. 1. ~ 9. 2. - 장 소 : 영동학생야영장 - 방 문 지 : 영동학생야영장, 구)부상초(폐교), 구)봉산분교(폐교)	
9. 2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사무처) ○ 일 시 : 2011. 9. 7.(수) 14:00 ○ 위 문 단 :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등 ○ 위문시설 : 현양원 ※ 위문금 전달	
9. 8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 ○ 일 시 : 2011. 9. 8.(목) 15:00 ○ 장 소 : 의장실 ○ 주요안건 - 2012년도 의정비 관련, 전체의원 연찬회, - 2011 해외우호교류 일정 등	
9.20	□ 제303회 임시회 ○ 회 기 : 2011. 9.20. ~ 9.30.(11일간)	
9.20	□ 전체 의원 홈페이지 교육 ○ 일 시 : 2011. 9.20.(화) 본회의 종료 후 ○ 대 상 : 전체 의원 ○ 대 상 : 3층 정보화교육장 ○ 내 용 : 홈페이지 특징, 사용요령 및 자료관리 방법 설명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9.22	□ 중국 흑룡강성대표단 환영 만찬 ○ 일 시 : 2011. 9.22.(목) 18:30 ○ 장 소 : 가화한정식 ○ 방문인원 : 서광국 부성장 등 61명 ○ 주 재 : 도 의장 ○ 주요내용 - 만찬사·답례사, 방문기념품 전달 - 양 지역 교류확대 및 발전방안 모색 등	
9.22	□ 정책복지위원회 자체 직무연찬회 ○ 기 간 : 2011. 9.22. ~ 9.23.(1박2일) ○ 장 소 : 영동군 일원 ○ 내 용 : 직무연찬 및 시설 방문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기법 연찬 - 분만취약지 산부인관 방문(영동병원)	
9.22	□ 교육위원회 자체연찬회 및 우수학교 방문 ○ 기 간 : 2011. 9.22.(목) ○ 자체연찬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우수학교방문 :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9.23	□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인대대표단 도의회 방문 ○ 방문기간 : 2011. 9.23. ~ 9.25. ○ 방문인원 : 곽성곤 주임 등 16명 ○ 방문기관 : 충북도의회, 충청북도 ○ 주요내용 - 도의장 예방 및 좌담회, 환영만찬 - 청남대·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견학	
9.28	□ 역대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1. 9.28.(수) 11:30 ○ 장 소 : 가화한정식 3층 ○ 참 석 : 역대도의원 ○ 내 용 : 인사말씀, 의정회등 현안논의	
9.28	□ 제19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일 시 : 2011. 9.28.(수) ○ 인 원 : 70명(강서·충주연수초) ○ 행사내용 : 개회식, 의회교실 체험, 청남대 견학 등 ※ 환영사 : 박종성 의원	
9. 29	□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충청권 대토론회 ○ 일 시 : 2011. 9.29.(목) 14:00 ~ 16:00 ○ 장 소 : 도청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권 3개시·도의회 ○ 참 석 : 100명정도(도의원,암관련 전문가 등) ○ 내 용 : 국립암센터 분원유치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9.29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11. 9.29. ~ 9.30. ○ 장 소 : 송도 테크노파크갯벌타워 ○ 참 석 : 전국 시·도의회의장 ○ 안 건 : 2011년도 임원 선출의 건 등	
10. 5	□ 고문변호사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11.10. 5.(목) 10:00 ○ 장 소 : 의장실 ○ 변 호 사 : 박충규(47세,사시31회,법무법인 정동) ○ 내 용 :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0. 6	□ 행정문화위원회 해외연수 실시 ○ 인 원 : 9명(의원 5, 직원 4) ○ 기 간 : 2011.10. 6. ~ 10.12.(5박7일) ○ 장 소 : 오스트리아, 스위스 ○ 내 용 - 친환경도시, 환경시설, 자연문화 등 방문 및 시설견학 - 외국의 자연·역사·사회·경제 등 다문화 체험 -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10. 7	□ 의회사무처 직원 연찬회 ○ 일 시 : 2011.10. 7. ~ 10. 8.(1박2일) ○ 장 소 : 충북 학생종합수련원 임해수련원(대천) ○ 참 석 : 75명정도(의회사무처 직원) ○ 연찬내용 - 의정 직무연찬, 소양분야 특강 - 직원화합 및 체육행사 등	
10. 10	□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11.10.10.(월) 15:00 ○ 장 소 : 경주 코모도호텔 계림실 ○ 참 석 : 운영위원장 외 2명 ○ 안 건 : 협의회 운영관련 현안사항	
10. 17	□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1.10.17.(월) 15:00 ○ 장 소 : 소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 10명 ○ 내 용 : - 의정비 잠정액 결정 - 주민여론수렴 방법 결정(여론조사, 공청회 등)	
10. 19	□ 제304회 임시회 ○ 회 기 : 2011.10.19. ~ 10.27.(9일간)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0. 20	□ 전체의원 연찬회 ○ 기　　간 : 2011.10.20. ~ 10.21.(1박2일) ○ 장　　소 : 제천 청풍레이크호텔 ○ 참　　석 : 80여명(전체의원 및 사무처직원) ○ 주요내용 -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윤진훈교수) - 꿈너머 꿈(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 스마트폰의 이해와 기본기능 활용법(정혜경팀장)	
10. 22	□ 제7회 직원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일　　시 : 2011.10.22.(토) 10:00 ○ 장　　소 : 중앙초 운동장 ○ 팀 구 성 : 12개팀(의회+자치연수원 연합팀 구성) ○ 경기종목 : 4종목 - 줄다리기, 피구, 족구, 5인6각 이어달리기 ※ 의장님 참석(축사)	
10. 26	□ 제20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일　　시 : 2011.10.26.(수) ○ 인　　원 : 70명(진천중, 충주 미덕중) ○ 행사내용 : 개회식, 의회교실 체험, 청남대 견학 등	
10. 27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1.10.27.(목) 17:00 ○ 장　　소 : 청남대 ○ 참　　석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등 60명 ○ 안　　건 : 제6기 전반기 제2대 임원선출 등	
10. 27	□ 의원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10.27.(목) 13: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장실 ○ 심의대상 -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선택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보고 및 정산 ○ 연구의원 : 이광희 의원 외 4명 ○ 심의내용 : 연구활동결과보고 청취 및 정산내용의 적정성 등	
10. 27	□ 건설소방위원회 자체연찬회 ○ 기　　간 : 2011.10.27.(목) ~ 10.28.(금) ○ 장　　소 : 제주도 ○ 인　　원 : 10명(의원 7, 직원 3) ○ 내　　용 : 조례안 발의 및 행정사무 감사 심사기법 등 직무연찬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0. 28	□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11.10.28.(금) 16:00 ○ 장 소 : 소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 10명 ○ 내 용 - 2012년도 의정비 최종액 결정 - 의정비심의위원회명으로 의정비 결정결과 언론에 발표 ※ 여론조사 : 2011.10.24. ~ 10.27. 예정	
10. 31	□ 전라북도의회『지방재정건전화연구회』도의회방문 ○ 일 시 : 2011.10.31.(월) 14:00 ○ 장 소 : 의장실 ○ 인 원 : 18명 정도(우리도의회 6, 전북도의회 12) ○ 목 적 : 타 사도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현황 등 청취	
11. 1	□ 우호교류10주년 기념 중국흑룡강성 인대 방문 ○ 기 간 : 2011.11. 1. ~ 11. 4.(3박4일) ○ 인 원 : 14명(도의원9, 직원5) ○ 목 적 : 10주년 기념 행사, 기업체 방문 등 우호교류 추진	
11. 7	□ 청주 MBC 의장님 인터뷰 ○ 일 시 : 2011.11. 7.(월) 09:40 ○ 장 소 : 의장실 ○ 프로그램명 : 청주 MBC 시사매거진 창 ※ 방송시간 : 11.10(목) 23:00 ~ 23:20 ○ 내 용 : 의정비 관련 인터뷰 녹화	
11. 7	□ 간행물편집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11. 7.(월) 11:00 ○ 장 소 : 7층 회의실 ○ 참 석 : 간행물편집위원 7명 ○ 안 건 : 충북의정 제213호 간행물 심의(9·10월)	
11. 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1.11. 8. ~ 11. 9. ○ 장 소 : 단양 대명리조트 ○ 대 상 : 23명(의원 13, 직원 10) ○ 주요내용 - 충북주요재정지출사업의 분석 및 재정지출 구조개선 방안 - 2012년도 재정운영 여건·방향과 주요예산안 편성내용 등	
11.10	□ 의장·상임위원장단회의 ○ 일 시 : 2011.11.10.(목) 15:00 ○ 장 소 : 의장실 ○ 안 건 - 제30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012년 연간회기운영계획(안)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1.15	□ 제305회 정례회 ○ 회　　기 : 2011.11.15. ~ 12.23.(39일간)	
11.15	□ 산업경제위원회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1.11.15.(화) 11:30 ○ 장　　소 : 산업경제회의실 ○ 참 석 자 : 17명(소상공인8, 의원8, 직원1) ○ 내　　용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11.17	□ 제11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11.23.(수) 15:00 ○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 ○ 참　　석 : 16명(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 내　　용 : 당면 현안사항 협의 ※ 의정비관련 개선건의안(충청북도의회 제출예정)	
11.23	□ 건설소방위원회 학술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 일　　시 : 2011.11.23.(수) 15:00 ○ 장　　소 : 의회 7층 회의실 ○ 인　　원 : 15명(의원7, 연구진2, 관계공무원6) ※수행기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1.24	□ 제21회 청소년 의회교실 ○ 일　　시 : 2011.11.24.(목) 10:00 ○ 대　　상 : 70명정도(청주대성고, 중앙여고) ○ 내　　용 : 개회식, 의회교실체험, 청남대 견학 등	
11.25	□ 「충청북도의정회설및및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추진 ○ 주요내용 - 도지사는 의정회비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 추진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제안)로 추진	
11.29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11.29.(화) 14: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	
11.29	□ 의원연구활동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11.29.(화) 14: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장실 ○ 심의대상 : '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보고 및 정산 ※ 연구기간 : 2011. 8. 1. ~ 10.31. ○ 연구의원 : 김도경 의원 외 4명 ○ 심의내용 : 연구활동결과보고 청취 및 정산 내용의 적정성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2. 9	□ 의정참여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1.12. 9.(금) 11:00 ○ 장 소 : 의회 회의실(7층) ○ 참 석 : 30명정도(의정참여단 26, 도의회 4) ○ 주요내용 : 제9대 의회 의정 성과 설명, 우수제안 발표 및 토론 등	
12. 9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최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일 시 : 2011.12. 9.(금) 10:00 - 안 건 : '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처·감사관실·정책관리실·충북도립대 · 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올해부터 실·국별 심사	
12.21	□ 월간 지방자치, 의장 인터뷰 ○ 일 시 : 2011.12.21.(수) 14:00 ○ 장 소 : 의장실 ○ 주요내용 : 도의회의 차별화된 우수사례 등	
12.23	□ 2011년도 도의회 폐회연 ○ 일 시 : 2011.12.23.(금) 12:00 ○ 장 소 : 도청 구내식당 ○ 참 석 : 78명(의원, 도및교육청관계관, 출입기자 등) ○ 내 용 : 인사말씀, 건배제의, 오찬 ※ 의장 하실 일 : 인사말씀	
12.27	□ 연합뉴스, 의장 인터뷰 ○ 일 시 : 2011.12.27.(화) 11:00 ○ 장 소 : 의장실 ○ 주요내용 : 2011 의정평가 및 새해 운영 방향 등	
12.29	□ 2011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서부서 시상 ○ 일 시 : 2011.12.29.(목) 11:40 ○ 장 소 : 회의실 ○ 참 석 : 70여명(의장,각상임위원장,집행부 및 사무처직원) ○ 우수부서 : 5개 실국 - 보건복지국,행정국,농업기술원,바이오밸리추진단,보은교육지원청 ※ 의장 하실 일 : 인사말씀, 표창장수여	
12.30	□ 2011 연말행사 <부서별 순회 격려> ○ 일 시 : 2011.12.30.(금) 15:00 ○ 장 소 : 각부서 ○ 참 석 : 의장, 희망인원, 사무처장 등 <종무식> ○ 일 시 : 2011.12.30.(금) 19:00 ○ 장 소 : 롯데시네마 ○ 참 석 : 130여명(사무처직원과가족,의장,희망인원) ○ 내 용 : 표창장수여, 인사말씀, 영화관람 등	

3. 2012년도 상반기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 2	□ 충혼탑 참배 ○ 일 시 : 2012. 1. 2.(월) 09:00 ○ 장 소 : 충혼탑(사직동 소재) ○ 참 석 : 의장, 의원, 사무처 간부 ※ 김형근의장 참석 : 헌화 및 분향	
1. 2	□ 산성주변 자연정화활동 ○ 일 시 : 2012. 1. 2.(월) 10:30 ○ 장 소 : 상당산성 ○ 참 석 : 의장, 의원, 사무처 전직원 ○ 내 용 : 상당산성 주변 정화활동	
1. 2	□ 의장, MBC신년특별대담 녹화 ○ 일 시 : 2012. 1. 2.(월) 14:30 ○ 장 소 : 청주MBC스튜디오 ○ 내 용 : 2011의정성과 및 신년 의정방향 등	
1. 5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 시 : 2012. 1. 5.(목) 11:00 ○ 장 소 : 의장실 ○ 주요안건 -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2012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201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정기 변동신고 안내 등	
1.10	□ 제306회 임시회 ○ 회 기 : 2012. 1.10. ~ 1.19.(10일간)	
1.11	□ 지사님 초청 전체의원 만찬 ○ 일 시 : 2012. 1.11.(수) 18:00 ○ 장 소 : 경화반점 ○ 참석인원 : 44명(도의원35, 사무처간부9) ○ 진 행 : 인사말씀(의장, 도지사), 만찬	
1.12	□ 의장, CJB청주방송 신년 대담 녹화 ○ 프로그램명 : 최지현의 피플&이슈 ○ 일 시 : 2012. 1.12.(목) 09:30 ○ 장 소 : CJB청주방송 스튜디오 ○ 주요내용 : 2011의정평가 및 새해 운영방향	
1.18	□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의 장 : 2012.1.16.(월) ○ 사무처장 : 2012. 1.18.(수) 14:00, 현양복지재단(월오동 소재)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1.25	□ 충청북도의정사료 복원추진 ○ 기간/사업비/대상 - 2012. 2. ~ 5./5,600천원/1950~1960년대 의정사료 10권 ○ 추진계획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작성(1.25. - 1.27.) - 계약체결 및 추진 (2. 1. - 5.11.)	
1.26	□ 충청북도의정회 간담회 ○ 일시/장소 : 2012. 1.26.(목) 12:00/한가한정식 ○ 참 석 : 20명(의정회임원진 16, 사무처 4) ○ 내 용 : 임원진 구성, 정관개정 및 재정·사업계획 협의 등	
1.27	□ 제12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참가 ○ 일 시 : 2012. 1.27. 15:00 ~ 1.28.(1박2일)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 ○ 안 건 : 3건 - 제6기 전반기 임원선출의 건(회장 선출)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울산) -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에 속기직렬 신설 건의(충남)	
1.30	□ 전국시·도의장 협의회 2012년 제1차 임시회 ○ 일시/장소 : 2012. 1.30.(월) 14:30, 대전광역시의회 ○ 주요안건 - 임원선출,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및 주민 만족도 조사 정례화 건의안 채택의 건(우리도의회 제출)	
2. 3	□「충북의정 60년사」 발간용역 추진 ○ 기간/예산/업체 : 2012. 2. ~ 4./30,000천원/충북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 60년 역사 조명, 미래비전 제시 ○ 추진계획 - 용역수행 원가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 2. 14일한 - 계약금액(27백만원 정도) 및 과업지시서 등 수의시담 : 2. 16일한 - 계약체결(2012. 2.17.) 및 용역 수행	
2.20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12. 2.20.(월) 11:00/의장실 ○ 주요안건 - 대형마트·SSM 관련 유통법 개정 관련 대책 - 의회운영 관련 규정안 제정추진, 전체의원 연찬회 등	
2.20	□ 의장 BBS 청주불교방송 인터뷰 ○ 일 시 : 2012. 2.20.(월) 08:38 ~ 08:50(12분정도) ○ 프로그램 : 충북저널967 ○ 내 용 :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2.21	□ 대형마트·SSM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 ○ 일시/장소 : 2012. 2.21.(화) 13:30/제천시의회 의장실 ○ 참 석 : 5명(도의회 의장, 청주·충주·제천시, 청원군의회 의장) ○ 내 용 : 대형마트·SSM 관련 유통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 협의	
2.21	□ 행정문화전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 (가칭)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정 관련 ○ 일시/장소 : 2012. 2.21.(화) 14:00 ~ 15:30/7층 회의실 ○ 참 여 : 10명(김양희 의원, 의정자문위원 2, 미혼모 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한부모가족자립 지원시설장 등) ○ 추진내용 : 간담회 개최 및 결과정리	
2.27	□ 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2. 2.27.(월) 11:00/정책복지위원장실 ○ 참 석 : 위원장 장선배 등 편집위원 7명 ○ 내 용 : 충북의정 215호(2012.3월 발간예정) 내용 심의	
2.28	□ 충청북도 의정회 총회 개최 ○ 일시/장소 : 2012. 2.28.(화) 11:00/가화한정식 ○ 참 석 : 45명(의정회원 40, 사무처 5) ○ 주요안건 : 임원진 선출, 회비(안) 의결 ※ 최진섭 부의장 축사	
2.28	□ 제1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2.28.(화) 15:00 ○ 장 소 : 부산광역시 ○ 참 석 자 : 3명(박문희 운영위원장, 운영수석전문위원, 담당자) ○ 안 건 :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외2	
2.28	□ 제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관·격려 ○ 대회기간 : 2012. 2.28. ~ 3.2.(4일간) ○ 격 려 일 : 2.29(수) 도청 출발(09:00) → 무주 도착예정(11:00) ※ 김영주·박종성·유완백 의원 격려 예정 ○ 격려장소 : 전북 무주 ○ 추진내용 : 대회본부 방문 및 선수단 격려	
3. 1	□ 제93주년 삼일절 기념식 ○ 일시/장소 : 2012. 3. 1.(목) 11:00/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내 용 :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 참 석 : 의장 등 의원 13명, 직원 20명	
3. 2	□ 의장 HCN충북방송 인터뷰 ○ 일 시 : 2012. 3. 2.(금) 11:00 ~ 11:24(24분정도) ○ 프로그램 : 시선집중 파워인터뷰 ○ 내 용 :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시·군 조례 개정 등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3. 2	□ 제307회 임시회 ○ 회 기 : 2012. 3. 2. ~ 3.12.(11일간)	
3. 2	□ 전체의원 연찬회 ○ 일 시 : 2012. 3. 2.(금) 16:00 ~ 17:20(본회의 종료 직후) ○ 장 소 : 의회 회의실(신관 7층) ○ 참석대상 :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 강 사 : 원광희(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주 제 : 충청북도 발전정책의 쟁점과 전망 ○ 주요내용 : 연찬회 강의, 교육위원회 연구과제 용역보고회	
3. 2	□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2. 3. 2.(금) 13:2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1	
3. 8	□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2. 3. 8. ~ 3. 9.(1박2일) ○ 장 소 :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 대 상 : 20명 (운영위원 10, 사무처직원 10) ○ 내 용 -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실적 및 2012 활성화 방안 보고 -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방안 토론 - 자기 관리를 위한 매너·이미지·스피치 기법	
3.12	□ 제30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2. 3.12.(월) 10:2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안 협의의 건	
3.19	□ 제14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3.19.(월) 15:30 ○ 장 소 : 충남 부여(롯데부여리조트) ○ 참 석 : 80명 내외(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관계공무원) ※ 우리도 참석 : 3명(박문희 운영위원장, 운영수석전문위원, 담당자) ○ 안 건 : 2건 (충남도의회 발의) -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 정무직 공무원과 같이 연봉책정 방식 도입 등 - 지방의회 의원 원격지 출석여비 지급방법 개선 건의의 건 ·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비 보상적인 교통비·식비 지급 등	

<table>
<tr><th>월 일</th><th>추 진 한 내 용</th><th>비고</th></tr>
<tr><td>3.21</td><td>□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2년도 제3차 임시회
○ 일시/장소 : 2012. 3.21.(수) 11:00/라마다플라자 3층 우암홀
○ 참 석 : 80여명(시·도의장16, 도의회 27, 도지사, 협의회사무처6 등)
○ 안 건 :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등 7건
○ 행사흐름
- 접견 및 환담→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폐회 → 오찬→ 청남대관람 및 환송</td><td></td></tr>
<tr><td>3.22</td><td>□ 국립암센터 방문
○ 일시/장소 : 2012. 3.22.(목) 13:30/국립암센터 회의실
○ 방 문 : 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의장 및 사회단체대표
○ 면 담 : 원장 이진수, 부속병원장 이주혁, 기획조정실장 김대용
○ 내 용 : 국립암센터 용역 결과, 암센터 분원 백지화 철회 및 재추진</td><td></td></tr>
<tr><td>3.27</td><td>□ 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2. 3.27.(화) 10:30
○ 장 소 : 대회의실(사회:박우윤 오송바이오포럼대표)
○ 참 석 : 150명 정도(도·시·군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참관자 등)
○ 주제발표
<table><tr><th>연번</th><th>제 목</th><th>발 표 자</th></tr><tr><td>1</td><td>국립암센터 발전방안 (분원의 필요성)</td><td>충북발전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장 변혜선</td></tr><tr><td>2</td><td>국립암센터 분원 백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td><td>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송재봉</td></tr></table>○ 토 론 자 : 임헌경 도의원, 장규태 생명연 국가영장류센터장, 김광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
○ 진 행 : 주제발표→토론→객석 참여자와 질의응답(90분 정도)</td><td></td></tr>
<tr><td>3.30</td><td>□ CJB청주방송 라디오 의장 인터뷰
○ 일 시 : 2012. 3.30.(금)
○ 장 소 : CJB 스튜디오
○ 프로그램 : ‘박은선 PD의 라디오 매거진 오늘’ 中 ‘책읽는 CEO’코너</td><td></td></tr>
<tr><td>4.13</td><td>□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시/장소 : 2012. 4.13.(금) 11:00/의장실
○ 참 석 : 18명(의장·상임위원장단 9, 사무처 9)
○ 주요안건
-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댐 주변지역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td><td></td></tr>
</table>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4.16	□ 교육감 초청 전체의원 만찬 ○ 일시/장소 : 2012. 4.16.(월) 17:00/도성 ○ 참 석 : 60명 정도(도의회 의원, 사무처 및 교육청 간부)	
4.16	□ 제308회 임시회 ○ 회 기 : 2012. 4.16. ~ 4.25.(10일간)	
4.16	□ 제308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2. 4.16.(월) 11: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안」 제정 협의의 건	
4.17	□ 산업경제전문위원회 농업정책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12. 4.17.(화) 10:00/산경위 회의실 ○ 참 석 : 22명(산경위원 7, 농정국 6, 농업기술원 9) ○ 내 용 - 농정국, 농업기술원 주요현안사업 - 농민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 정책사업과 시범사업의 지원현황 검토	
4.17	□ 건설소방전문위원회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 2012. 4.17.(화) 13:30/대회의실 ○ 내 용 :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 ○ 참 석 : 150명 정도 / 도의원, 공무원(도·군), 지역주민 등 ※ 주제발표 : **박홍윤**(한국교통대 교수) ○ 진행순서 : 개회(13:30) ⇒ 인사말씀(의장) ⇒ 주제발표 ⇒ 토론 ⇒ 질의·응답 ⇒ 마무리인사말씀(위원장) ⇒ 폐회(15:00)	
4.18	□ 정책복지전문위원회 자체 직무연찬회 ○ 기 간 : 2012. 4.18.~ 4.20.(3일간)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종합장애인복지관 등 ○ 인 원 : 11명(의원 7, 직원 4) ○ 내 용 : 선진 장애인 정책 및 감사 기법 비교연수	
4.18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의 ○ 일시/장소 : 2012. 4.18.(수) 09:30/산경위 회의실 ○ 상정안건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4.25	□ 전체의원 간담회 ○ 일시/장소 : 2012. 4.25.(수) 10:00/의원휴게실 ○ 내 용 : 지방의회의원 보좌인력 확보 협의, 청주·청원 통합관련	
4.25	□ 1/4분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일시/장소 : 2012. 4.25.(수) 13:30/의장실 ○ 참 석 : 24명 정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처장 등) ○ 보 고 : 총괄(총무담당관), 답변(소관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4.25	□「2012런던올림픽조정 아시아예선대회」개회식 및 전야제 ○ 일시/장소 : 2012. 4.25.(수) 19:00/충주세계무술공원 ○ 참 석 : 의장 및 도의원 17명(만찬 후 참석)	
4.25	□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공무원 비상소집」 ○ 일 시 : 2012. 4.25.(수) 06:00 비상소집 발령 ○ 대상/응소 : 사무처 전 직원/비상발령 후 1시간 이내	
4.25	□ 제308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2. 4.25.(수) 09: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26	□ 「충북의정 60년사」발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2. 4.26.(목) 11:00/의회 회의실 ○ 참 석 : 35명 정도(의장, 처장, 자문위원 등) ○ 내 용 :「충북의정 60년사」발간 용역 초안 보고	
4.27	□ 제22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일 시 : 2012. 4.27.(금) 10:00 ~ 16:00 ○ 장 소 : 본회의장 ○ 참여학생 : 68명(진천 상산초 33, 청주 산성초 35) ○ 내 용 : 의장선거, 안건처리, 청남대 견학 등	
4.28	□ 의회사무처 직원 춘계체육행사 ○ 일 시 : 2012. 4.28.(토) ○ 장 소 : 낙영산(공림사, 괴산 청천 소재) ○ 참 석 : 120명(도의원, 사무처 직원 등) ○ 내 용 : 등산, 체육행사 등	
4.30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시/장소 : 2012. 4.30.(월) 지사님 주재 오찬 후/의장실 ○ 안 건 -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변경 추진 ※ 여성정책관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경 검토 - 제9대 의회 5대 운영 과제 추진 상황 보고	
4.30	□ 제309회 임시회 ○ 회 기 : 2012. 4.30.(월) 11:00 ○ 안 건 :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 도의회 의견 결과 집행부 이송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5. 1	□ 건설소방위원회 청원·보은지역 대청호 수변 현지 답사 ○ 일 시 : 2012. 5. 1.(화) ○ 장 소 : 청원·보은지역 대청호 수변 ○ 주요내용 - 댐주변지역 정책토론회 - 5분자유발언에 따른 대청호 현지 답사	
5. 7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생 도의회 견학 ○ 일 시 : 2012. 5. 7.(월) 10:00 ○ 인 원 : 23명(학생 22명, 인솔 : 박종섭 교수) ○ 목 적 : 의회시설 견학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해 ○ 내 용 - 의회 홍보영상물 상영(10분) - 본회의장 및 의정전시관 견학(10분) - 기념 촬영(의회현관 앞)	
5. 9	□ 제310회 임시회 ○ 회 기 : 2012. 5. 9. ~ 5. 8.(10일간)	
5. 9	□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변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2. 5. 9.(수) 11: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실 ○ 참 석 : 6명 - 박문희 위원장, 장선배 의원, 김영주 의원, 김종필 의원, 김동환 의원, 이광희 의원 ○ 내 용 :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변경토의 - 위원회 명칭 변경 건 - 타 시·도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자료 분석 토론	
5.11	□ 예결특위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2. 5.11. ~ 5.12.(1박2일) ○ 장 소 : 보은 레이크힐스호텔 ○ 대 상 : 23명 (예결위원 13, 운영위 직원 10) ○ 내 용 : 예산결산 검토 기법 등 강의와 자체토론회 진행	
5.16	□ 교육위원회 교육현장방문 ○ 일 시 : 2012. 5.16.(수) 10:00 ○ 방 문 교 : 제천청암학교, 소수초, 목도중고, 연풍초 ○ 내 용 : 개교 20주년 기념식, 소수관 준공식, 기숙사 준공식, 인조잔디운동장 및 공동사택 준공식	
5.17	□ 건설소방위원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실시 ○ 일 시 : 2012. 5.17.(목) 10:30 / 2개소(청원군) ○ 장 소 ① 문의 ~ 대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터널공사) ② 청원 하석 재해위험지역 개선 사업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5.17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회, 우리 도의회 방문 ○ 일 시 : 2012. 5.17.(목) 11:00 ○ 인 원 : 6명정도(알마티시의회 의원) ○ 주요내용 : 의장 예방, 오찬, 반기문 생가 견학 등 ○ 주요일정 의장 예방 ⇨ 오찬 ⇨ 반기문 생가 ⇨ 강원도	
5.18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2. 5.18.(금) 13:30 ○ 장 소 : 도의회 회의실(7층) ○ 참 석 : 32명 정도 - 도 의회(17) : 의장, 부의장(2), 각 상임위원장(6), 사무처(8)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2) : 송재봉 위원장 등 12명 -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3) : 류철웅 회장 등 3명 ○ 주요내용 - 도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논의 - 현안문제 해결 등 공조 협력방안 논의 - 충북도의회 요청사항 및 정책제안	
5.18	□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2. 5.18.(금) 10: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23	□ 청소년 의회교실(제23회) 운영 ○ 일시/장소 : 2012. 5.23.(수) 10:00 ~ 16:00/본회의장 ○ 참여인원 : 70명(청주 송절중 35, 충주 미덕중 35) ○ 내 용 : 의장선거, 안건처리, 청남대 견학 등	
5.23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 기 간 : 2012. 5.23. ~ 6.11.(20일간) - 교육청 : 2012. 5.23. ~ 5.30.(8일간) - 도 : 2012. 5.31. ~ 6.11.(12일간) ○ 위촉장 수여 - 일시/장소 : 2012. 5.23.(수) 11:00/의장실 - 위 원 : 8명(도의원 2, 회계사 2, 세무사 2, 전직공무원 2) ○ 결산검사위원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12. 5.23.(수) 11:20/예결위 위원장실 - 배 석 : 도교육청관계관(회계과장, 재무과장), 의사담당관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5.24	□ 교육위원회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2. 5.24.(목) 15:30 ○ 장 소 :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 내 용 :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모색	
5.29	□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의정체험 ○ 일시/장소 : 2012. 5.29.(화) 16:00 ~ 18:00/본회의장 ○ 참가인원 : 60여명 정도 ○ 내 용 - 의장 선거, 안건 처리 등 ※ 김형근 의장 참석 : 입교식, 격려말씀, 기념촬영	
5.31	□ 제15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5.31.(목) 13:30 ○ 장 소 : 경남 통영(거북선호텔) ○ 참 석 : 80명 내외(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관계공무원) ※ 우리도 참석 : 3명(박문희 운영위원장, 운영수석전문위원, 담당자) ○ 안 건 : 1건 (경남도의회 발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건	
5.31	□ 2011 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 ○ 일 시 : 2012. 5.31. ~ 6.11.(12일간) ※ 교육청 : 2012. 5.23. ~ 5.30.(8일간) ○ 장 소 : 예결위 회의실(신관 5층) ○ 검사위원 격려 오찬 : 2012. 6.11.(월) 12:00 - 참 석 : 12명(의장, 검사위원 8, 처장, 담당관 2)	
6. 7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연찬회 참석 ○ 기 간 : 2012. 6. 7. ~ 6. 9.(2박3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 석 : 50명 내외(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관계공무원) ※ 우리도 참석 : 3 명(박문희운영위원장,운영수석전문위원,담당자) ○ 진 행 : 전문연수대행기관(투데이 엔터테인먼트) ○ 내 용 : 전문가 특강(배재대학교 정강환 교수),단합대회 등	
6. 8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시/장소 : 2012. 6. 8.(금) 11:00/의장실 ○ 참 석 : 18명(의장·상임위원장단 9, 사무처 9)	
6.12	□ 2012 사랑의 점심 나누기 후원행사 ○ 일 시 : 2012. 6.12.(화) ○ 장 소 : 예술의 전당 ○ 주요내용 - 도내 결식 아동들에게 모금액 전달 - 평양백두, 한라예술단 초청공연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6.12	□ 제311회 임시회 ○ 회　　기 : 2012. 6.12. ~ 6.22.(11일간)	
6.12	□ 제311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2. 6.12.(화) 13: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6.14	□ 행정문화위원회 자체 직무연찬회 ○ 기　　간 : 2012. 6.14.~6.15.(1박2일) ○ 참　　석 : 11명(행정문화위원 6, 직원 5)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및 남해군 일원 ○ 내　　용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관 및 자체 직무연찬	
6.15	□ 산업경제 전문 위원회 도정현장 방문 ○ 일　　시 : 2012. 6.15.(금) 10:00 ○ 장　　소 : 유기농엑스포 개최 부지(괴산) ○ 내　　용 - 유기농엑스포 추진 계획 청취 - 엑스포 개최 부지 확인 등	
6.18	□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예결특위 개최 ○ 일　　시 : 2012. 6.18.(월) 10: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심사일정 - 오　전 :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 오　후 :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6.19	□ 교육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 시찰 ○ 일　　시 : 2012. 6.19. ~ 6.20.(1박2일) ○ 장　　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및 여수시 일원 ○ 참　　석 : 15명(교육위원 7명, 직원 8명)	
6.20	□ 정책복지위원회 자체연찬회 실시 ○ 기　　간 : 2012. 6.20. ~ 6.21.(1박2일) ○ 장　　소 : 여수엑스포 현장 일원 ○ 인　　원 : 10명(의원 7, 직원 3) ○ 내　　용 : 여수엑스포 참관 및 자체 직무연찬	
6.20	□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 기　　간 : 2012. 6.20. ~ 6.21./ 전남 여수일원 ○ 내　　용 : 여수세계엑스포 견학	

월 일	추 진 한 내 용	비고
6.21	□ KBS청주 라디오 인터뷰 ○ 일시/장소 : 2012. 6.21.(목) / 의장실 ○ 프로그램명 : 유용의 시사투데이 ○ 주요내용 :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주요 성과 등	
6.21	□ 청주 중앙초 4학년 학생 도의회 견학 ○ 일 시 : 2012. 6.21.(목) 10:00 ○ 인 원 : 22명(학생 21, 인솔교사 1) ○ 목 적 : 도의회의 구성과 하는 일 알아보기 ○ 내 용 - 의회 홍보영상물 상영(10분) - 본회의장 및 의정전시관 견학(20분) 및 기념촬영	
6.22	□ 제311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2. 6.22.(금) 10: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 - 제31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규칙 개정	
6.22	□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진단과 과제』 의정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2. 6.22.(금) ○ 장 소 : 중회의실(서관5층) ○ 참석대상 : 도의원, 의정참여단, 시민사회단체 등 ○ 내 용 :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6.25	□ 충청북도-중국 호북성 정부 우호교류 협정체결 ○ 일시/장소 : 2012. 6.25.(월) 11:30 / 외빈영접실 ○ 참 석 : 21명 - 도의회(11)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담당관 - 호북성 대표단(10) : 양송 정치협상회의 주석(단장) 등 ○ 주요내용 : 인사말씀, 환담, 기념품 전달, 기념촬영, 본회의장 견학 등	
6.27	□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 ○ 일시/장소 : 2012. 6.27.(수) 11:00 / 의장실 ○ 주요안건 : 후반기의석 배정, 상임위원회 희망신청서 배부 및 취합 등	
6.27	□ 청소년 의회교실(제24회) 운영 ○ 일시/장소 : 2012. 6.27.(수) 10:00 ~ 16:00 / 본회의장 ○ 참여인원 : 80명(청주여상 40, 영동고 40) ○ 내 용 : 의장선거, 안건처리, 청남대 견학 등	

Ⅲ. 의정통계 및 자료

1. 회기운영

□ 총 괄

(2010. 7. 1~2012. 6.30)

회 수 별	회 기	회의일수
총 계	**21회**	**245**
소계(2010년)	**6회**	**71**
제291회 임시회	7. 7. ~ 7. 8.	2
제292회 임시회	7.12. ~ 7.23.	12
제293회 임시회	8. 2. ~ 8. 2.	1
제294회 정례회	9. 2. ~ 9.16.	15
제295회 임시회	10.13. ~ 10.20.	8
제296회 정례회	11.22. ~ 12.24.	33
소계(2011년)	**9회**	**121**
제297회 임시회	1.18. ~ 1.27.	10
제298회 임시회	3. 8. ~ 3.17.	10
제299회 임시회	4.12. ~ 4.21.	10
제300회 임시회	5.11. ~ 5.20.	10
제301회 임시회	6.14. ~ 6.23.	10
제302회 정례회	7.11. ~ 7.22.	12
제303회 임시회	9.20. ~ 9.30.	11
제304회 임시회	10.19. ~ 10.27.	9
제305회 정례회	11.15. ~ 12.23.	39
소계(2012년)	**6회**	**53**
제306회 임시회	1.10. ~ 1.19.	10
제307회 임시회	3. 2. ~ 3.12.	11
제308회 임시회	4.16. ~ 4.25.	10
제309회 임시회	4.30. ~ 4.30.	1
제310회 임시회	5. 9. ~ 5.18.	10
제311회 임시회	6.12. ~ 6.22.	11

2. 의안처리 현황

(2010. 7. 1~2012. 6.30)

구 분			계	조례안				예산·결산안			동의승인	건의결의	기타
				소계	의원발의	도지사제출	교육감제출	소계	도지사제출	교육감제출			
접수		계	362	231	117	86	28	19	10	9	41	20	51
		2010년(하반기)	103	57	21	28	8	8	4	4	13	8	17
		2011년	172	115	55	46	14	9	5	4	20	6	22
		2012년(상반기)	87	59	41	12	6	2	1	1	8	6	12
처리	원안가결	소계	314	203	111	67	25	6	3	3	37	18	50
		2010년(하반기)	90	51	20	23	8	3	1	2	11	8	17
		2011년	147	101	53	36	12	3	2	1	18	4	21
		2012년(상반기)	77	51	38	8	5	0	0	0	8	6	12
	수정가결	소계	39	21	2	18	1	13	7	6	4	1	0
		2010년(하반기)	12	5	1	4	0	5	3	2	2	0	0
		2011년	21	12	1	10	1	6	3	3	2	1	0
		2012년(상반기)	6	4	0	4	0	2	1	1	0	0	0
	부결	소계	1									1	
		2010년(하반기)	0										
		2011년	1									1	
		2012년(상반기)	0										
	기타	소계	8	7	4	1	2						1
		2010년(하반기)	1(계류)	1(계류)		1(계류)							
		2011년	3	2	1(철회)		1(계류)						1(철회)
		2012년(상반기)	4	4	3(폐기2)(철회1)		1(계류)						

3. 대집행부질문 현황

□ 총 괄

연 도 별	회 기	질 문 의원수	질 문 건 수			비 고
			계	충청북도	교육청	
합 계		32	216	182	34	
2012년	소 계	8	66	61	5	
	제311회	4	27	25	2	
	제310회	1	12	12	0	
	제308회	1	14	11	3	
	제307회	2	13	13	0	
2011년	소 계	16	105	85	20	
	제305회	1	3	3	0	
	제304회	2	18	18	0	
	제303회	1	7	7	0	
	제301회	4	20	18	2	
	제300회	2	20	7	13	
	제299회	3	23	18	5	
	제298회	2	12	12	0	
	제297회	1	2	2	0	
2010년	소 계	8	45	36	9	
	제296회	3	19	17	2	
	제295회	5	26	19	7	

□ 분 야 별

연도별	회 기	계	기획 행정	복지 환경	농정	경제 통상	문화 관광	건설 교통	민방 소방	교육 행정	기타
합 계		216	64	35	17	31	1	20	2	34	12
2012	소 계	66	26	4	0	12	0	7	0	5	12
	제311회	27	8	2	0	12	0	3	0	2	0
	제310회	12	0	0	0	0	0	0	0	0	12
	제308회	14	11	0	0	0	0	0	0	3	0
	제307회	13	7	2	0	0	0	4	0	0	0
2011	소계	105	34	26	5	9	1	8	2	20	0
	제305회	3	3	0	0	0	0	0	0	0	0
	제304회	18	13	0	0	5	0	0	0	0	0
	제303회	7	2	1	2	0	0	2	0	0	0
	제301회	20	6	1	1	1	1	6	2	2	0
	제300회	20	0	7	0	0	0	0	0	13	0
	제299회	23	8	6	2	2	0	0	0	5	0
	제298회	12	2	10	0	0	0	0	0	0	0
	제297회	2	0	1	0	1	0	0	0	0	0
2010	소계	45	4	5	12	10	0	5	0	9	0
	제296회	19	4	0	8	5	0	0	0	2	0
	제295회	26	0	5	4	5	0	5	0	7	0

□ 위 원 별

구분	회 기	질문일	질 문 의원수	질문 의원
2010	제295회 임시회	10.18.	3명	◦ 김동환, 김희수, 이광희의원
		10.19.	2명	◦ 박문희, 김도경의원
	제296회 정례회	12.14.	3명	◦ 정 헌, 김양희, 윤성옥의원
소계	**2회**	**3일**	**8명**	
2011	제297회 임시회	1.18.	1명	◦ 박문희의원
	제298회 임시회	3. 8.	2명	◦ 노광기, 박문희의원
	제299회 임시회	4.12.	3명	◦ 김종필, 최미애, 장선배의원
	제300회 임시회	5.11.	2명	◦ 김희수, 이광희의원
	제301회 임시회	6.14.	4명	◦ 박종성, 권기수, 정 헌, 정지숙의원
	제303회 임시회	9.20.	1명	◦ 이수완의원
	제304회 임시회	10.19.	2명	◦ 김종필, 장선배의원
	제305회 정례회	11.15.	1명	◦ 김양희의원
소계	**8회**	**8일**	**16명**	
2012	제307회 임시회	3. 2.	2명	◦ 김양희, 김동환의원
	제308회 임시회	4.16.	1명	◦ 이광진의원
	제310회 임시회	5. 9.	1명	◦ 이광희의원
	제311회 임시회	6.12.	4명	◦ 김종필, 윤성옥, 강현삼, 장선배의원
소계	**4회**	**4일**	**8명**	
합계	**14회**	**15일**	**32명**	

※ 위원회별(의원별) 실적

○ 정책복지 : 6회(김도경 1, 노광기 1, 장선배 3, 강현삼 1)

○ 행정문화 : 5회(김양희 3, 박종성 1, 정지숙 1)

○ 산업경제 : 12회(김희수 2, 박문희 3, 정 헌 2, 윤성옥 2, 김종필 3)

○ 건설소방 : 5회(김동환 2, 권기수 1, 이수완 1, 이광진 1)

○ 교 육 : 4회(이광희 3, 최미애 1)

4. 행정사무감사 지적현황

□ 2010년도

구 분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367건	159건	208건	
의회운영위원회	2	0	2	
정책복지위원회	59	11	48	
행정문화위원회	37	37	0	
산업경제위원회	68	22	46	
건설소방위원회	79	12	67	
교 육 위 원 회	122	77	45	

□ 2011년도

구 분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429건	153건	276건	
의회운영위원회	5	1	4	
정책복지위원회	77	25	52	
행정문화위원회	56	46	10	
산업경제위원회	72	26	46	
건설소방위원회	89	16	73	
교 육 위 원 회	130	39	91	

5. 연도별 방청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학 생	일 반	비 고
계	778	354	424	
2010년 하반기	228	153	75	
2011년	495	201	294	
2012년 상반기	55	-	55	

6.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현황

(단위 : 명)

일자별	기별	참 가 학 교	참가인원			비고
			계	학 생	기 타 (교사, 관계자 등)	
계	총11회	22개교	856	748	108	
2010년 하반기	총2회	4개교	154	138	16	
09.14.	14회	북이초등학교(청원) 칠성초등학교(괴산)	77	68	9	
12. 8.	15회	봉명고등학교(청주) 대성고등학교(청주)	77	70	7	
2011년	총6회	12개교	462	402	60	
04.19.	16회	우암초등학교(청주) 장락초등학교(제천)	75	65	10	
05.18.	17회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청주) 중산고등학교(충주)	80	70	10	
06.21.	18회	석교초등학교(청주) 삼수초등학교(진천)	78	68	10	
09.28.	19회	강서초등학교(청주) 연수초등학교(충주)	72	62	10	
10.26.	20회	진천중학교(진천) 미덕중학교(충주)	80	70	10	
11.24.	21회	중앙여자고등학교(청주) 대성고등학교(청주)	77	67	10	
2012년 상반기	총3회	6개교	240	208	32	
04.27.	22회	상산초등학교(진천) 산성초등학교(청주)	80	68	12	
05.23.	23회	송절중학교(청주) 미덕중학교(충주)	80	70	10	
06.27.	24회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청주) 영동고등학교(영동)	80	70	10	

7.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현황

□ 의원해외연수현황

구분	연수기간	연수국가	참여의원	연수내용
정책복지	2010.10.23. ~ 10.31.	호주, 뉴질랜드	심기보, 김광수, 김도경, 박한규, 노광기, 손문규, 장선배	- 블랙타운시의회 및 윌로비시의회 방문 - 장애인이용시설 견학 - Best Start 정책 및 아동 보육 프로그램 견학 - 다문화 실태 및 노인요양시설 견학 - 2010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견학
교육	2010.10.25. ~ 10.31.	일본	최미애, 장병학, 박상필, 이광희, 전응천, 최진섭, 하재성	- 농산촌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국내 교육여건과 유사한 일본의 성공사례 시찰 - 핫포町, 모리오카市, 아오모리縣 교육위원회 방문 - 하치모리, 히가시나루세, 케센누마 시립 츠키타테 초등학교, 도와타 시립 기리타 중학교 방문
산업경제	2011. 5.29. ~ 6. 3.	러시아	김봉회, 정헌, 김희수, 박문희, 윤성옥, 황규철, 김형근	- 농자재 마트 OBI 방문 - 모스크바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 시나야 블로샤지 전통시장 벤치마킹 - 상트페테르부르크市 의회 방문
건설소방	2011. 6. 1. ~ 6. 9.	스페인, 포르투칼, 프랑스, 영국	권기수, 김재종, 이광진, 임헌경, 임현	- 마드리드자치주 112 비상센터 방문 ・중장기 재난관리 정책 및 관련 법제도 - 르 플래쉬 호빈슨시청 방문 ・환경 친화적 녹지조성, 조경실태 - 런던소방청 방문 ・소방장비 종류 및 소방박물관 견학
행정문화	2011.10. 6. ~ 10.12.	오스트리아, 스위스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정지숙	- 친환경도시정책 자료수집 ・맞춤형도시,친환경도시 -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홍보 ・오스트리아조정연맹방문을 통한 홍보활동

□ 국제교류현황

【도의회 대표단 교류지역 방문】

연도	방문기간	교류지역	방문의원	교 류 내 용
2010	11. 8. ~ 11.12.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15명 (의원 10, 사무처직원 5)	- 우호교륙협정에 따른 상호교환 방문 (격년제)
2011	11. 1. ~ 11. 4.	중국 흑룡강성	14명 (의원 9, 사무처직원 4, 통역 1)	- 상호교류 협력증진 방안 협의 - 흑룡강성 주요인사 접견 및 주요 기관 방문 등 - 유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 교류지역 대표단 도의회 방문】

연도	방문기간	교류지역	방문단	교 류 내 용
2010	10.11. ~ 10.13.	중국 흑룡강성	12명 (유복 인대 상무위 부비서장 등)	- 양 지역간 우호교류 협력증진 협의 ※ 10.13. 유복 부비서장 본회의 초청 연설
2011	9.22.	중국 흑룡강성	61명 (서광국 부성장, 문화·예술·체육 교류자 등)	- 충북도 ↔ 흑룡강성간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방문 - 의장 주재 환영만찬 - 양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방안 협의 (유학생페스티벌, 박람회 참여)
2011	9.23. ~ 9.25.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15명 (곽성곤 주임 등)	- 우호교륙협정에 따른 상호교환 방문 (격년제) - 의장님 예방 및 주요기관 방문

8. 의원 연구활동 및 의정학술 연구용역

□ 의원 연구활동 : 6건

과 제 명	연구의원	연구기간	위원회
학교급식소 식판 위생관리 조사 연구	최미애	2010.11. 2 ~ 2010.11.30	교육
충청북도 주요 재정지출사업의 분석 및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방안	임헌경	2011. 6.15 ~ 2011. 8.31	건설소방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연구	김동환, 권기수, 심기보, 전응천, 김희수	2011. 7. 1 ~ 2011.11.30	건설소방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선택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이광희, 최미애, 최진섭, 김도경, 장선배	2011. 7.12 ~ 2011.10.31	교육
도내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및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도경, 김광수, 노광기, 손문규, 정 헌	2011. 8. 1 ~ 2011.10.31	정책복지
충청북도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 연구	이광희	2011.10. 1 ~ 2011.11.30	교육

□ 의정학술 연구용역 추진실적 : 6건

과 제 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위원회
충청북도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9.29 ~ 2010.12.27	행정문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충청북도 노인 인력개발 및 활용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9.30 ~ 2010.12.28	정책복지
충청북도 재무회계결산정보 활용방안 연구	퍼스트경영 기술연구원	2011. 2.28 ~ 2011. 5.31	예결특위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9. 1 ~ 2011.11.29	교육
충청북도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9.14 ~ 2011.12.13	건설소방
충청북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검과 관리방안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	2012. 3. 2 ~ 2012. 5.30	산업경제

9. 전체의원 연찬활동

일 시	장 소	주 요 내 용
2010. 7.15 ~ 7.16	단 양 (대명리조트)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이해 / 윤기택 교수 ○지방의원의 역할과 과제 / 강형기 교수 ○지방예산의 이해 / 김대옥 前기반건설과장
2010. 9. 2	서 관 중회의실	○예산안·결산 심사기법 / 천우정 팀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이주희 교수
2010.10.13	의회회의실	○지방의회의 운영기법 / 박봉국 원장
2010.11.22	의회회의실	○성인지 관점과 의정활동 / 송인자 교수 ○성희롱예방 홍보물 시청
2011. 1.27	의회회의실	○지역발전정책 최근 추세와 향후 대책 / 황희연 교수
2011. 3.17	의회회의실	○나도 BEST 지방의원 / 김용석 의원
2011. 4.21	의회회의실	○치유의 숲 조성과 발전방안 / 신원섭 교수
2011. 5.20	의회회의실	○이미지 리더십 / 이수경 교수
2011. 6.23	의회회의실	○충북균형발전과 권역별 발전방안 / 백기영 교수
2011.10.20 ~ 10.21	제 천 (청풍리조트)	○예산및행정사무감사 기법 / 윤진훈 교수 ○꿈너머 꿈 / 고도원 이사장 ○스마트폰의 이해와 기본기능 활용법 / 정혜경 팀장
2012. 3. 2	의회회의실	○충청북도 발전정책의 쟁점과 전망 / 원광희 실장

10. 위원회별 연찬활동

위원회명	일 시	장 소	연 찬 내 용
의회운영(1)	'12. 3. 8. ~ 9.	보은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 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안 토론
예결특위(3)	'10. 8.24. ~ 25.	보은 레이크힐스	▪ 예산·결산 심사기법 ▪ 의정활동과 홍보기법 ▪ 지방재정 현황과 건전성 강화방안
	'11. 4.26. ~ 27.	옥천 장령산휴양림	▪ 효율적인 예산기법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전망 및 운영 방향
	'12. 5.11. ~ 12.	보은 레이크힐스	▪ 예산결산 검토 기법 및 자체토론회
정책복지(5)	'10. 7.19.	위원회	▪ 의원의 발언 전략
	'11. 6.16. ~ 17.	강화도 일원	▪ 직무연찬 및 사회복지시설 '우리마을'방문
	'11. 9.22. ~ 23.	영동군 일원	▪ 직무연찬 및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영동병원) 등 방문
	'12. 4.18. ~ 20.	제주도 풍림콘도	▪ 의원입법 및 예산심사기법 연찬 ▪ 장애인 시설 및 감사기관 방문 등
	'12. 6.20. ~ 21.	여수일원	▪ 여수엑스포 견학
행정문화(7)	'10. 8.30. ~ 31.	제주도 캐슬렉스콘도	▪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기법 함양 ▪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기법 함양 ▪ 역동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입안 기술 습득

위원회명	일 시	장 소	연 찬 내 용
행정문화 (7)	'11. 5.26. ~ 27.	순천만 일원	▪ 자연생태공원 활용 등 현황 청취 ▪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토론 등
	'11. 9.29.	위원회	▪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자문 등
	'12. 2.21.	의회 회의실	▪ 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제정관련 자문위원 의견청취 및 토론
	'12. 4.18.	위원회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쌍방향 열린의정 활동 활용방안
	'12. 4.23.	충남 태안	▪ 선진축제문화 견학
	'12. 6.14. ~ 15.	여수	▪ 2012 여수세계엑스포 견학
산업경제 (6)	'10. 8.24.	위원회	▪ 2010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협의
	'11. 3. 9.	위원회	▪ 논농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밭 농업에도 직불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모색
	'11. 8.25. ~ 27.	제주도 삼해관광호텔	▪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의정활동 극대화 방안 토론
	'12. 4.17.	위원회	▪ 충북도 농업정책토론회
	'12. 5.16. ~ 17.	여수	▪ 여수엑스포 견학
	'12. 6.20. ~ 21.	부산	▪ 재래시장 벤치마킹

위원회명	일 시	장 소	연 찬 내 용
건설소방 (5)	'11. 5. 2. ~ 3.	제천 리솜프레스토	▪ 해외연수단 국가별 주제별 세부계획 협의
	'11.10.27. ~ 28.	제주도	▪ 조례안 발의 및 심사기법 논의
	'12. 3. 5.	위원회	▪ 스마트폰 및 SNS 사용법
	'12. 4.17.	도청 대회의실	▪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12. 6.20. ~ 21.	여수	▪ 여수엑스포 견학 등
교 육 (4)	'10. 9. 7. ~ 8.	충청북도학생 종합수련원 (임해수련원)	▪ 교육위원회 운영 ▪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의원의 발언전략
	'11. 3.14. ~ 15.	도교직원 복지회관	▪ 자율학습 관련 토론
	'12. 1.12.	강원도 속초	▪ 2012년도 의정활동 계획
	'12. 6.13. ~ 15.	울릉도, 독도	▪ 역사문화 탐방 등

11. 5분 자유발언 현황

□ 5분 자유발언 현황 : 30명 72건

연번	회기	날짜	의원명	발 언 내 용
1	제292회	'10. 7.12.	김양희	◦ 인사문제를 비롯한 도정 전반적 문제점
2	제292회	'10. 7.12.	이광희	◦ 도정전반에 대하여
3	제292회	'10. 7.12.	박한규	◦ 원활한 의정활동 방안과 북부권 발전에 대하여
4	제292회	'10. 7.23.	노광기	◦ 영유아 무상보육 및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
5	제294회	'10. 9.16.	윤성옥	◦ 예산편성, 집행 이래도 되나 !
6	제294회	'10. 9.16.	정 헌	◦ 농촌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관련
7	제294회	'10. 9.16.	정지숙	◦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촉구
8	제296회	'10.12.24.	노광기	◦ 국비확보율 무엇이 문제인가?
9	제297회	'11. 1.18.	장선배	◦ 지방재정 조기집행 중단해야 합니다.
10	제297회	'11. 1.27.	김종필	◦ 출자, 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 관련
11	제298회	'11. 3.17.	장병학	◦ 생산적인 충북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하여
12	제298회	'11. 3. 8.	최미애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본회의 상정 의결 촉구
13	제298회	'11. 3. 8.	이광희	◦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관련
14	제298회	'11. 3.17.	장선배	◦ 생산적인 도정질문 답변을 위한 제언
15	제299회	'11. 4.12.	박종성	◦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재정확충 촉구
16	제299회	'11. 4.12.	임헌경	◦ 미호천 작천보 퇴적토 처리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7	제299회	'11. 4.21.	장병학	◦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정책
18	제300회	'11. 5.20.	이수완	◦ 의용소방대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19	제300회	'11. 5.20.	유완백	◦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연번	회기	날짜	의원명	발 언 내 용
20	제300회	'11. 5.20.	김양희	◦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진 선정 과정의 명확한 규명을 촉구
21	제300회	'11. 5.20.	김도경	◦ 한-EU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충북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22	제300회	'11. 5.20.	김영주	◦ 충북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한 문화재단 역할을 기대하며
23	제301회	'11. 6.14.	장병학	◦ 병든소 학교급식 납품에 따른 집행부 대책
24	제301회	'11. 6.14.	김종필	◦ 구제역 보상 관련
25	제301회	'11. 6.23.	박상필	◦ 대학생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한 의견
26	제301회	'11. 6.23.	김양희	◦ 충북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관련하여
27	제301회	'11. 6.23.	장선배	◦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28	제301회	'11. 6.23.	강현삼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내실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29	제302회	'11. 7.22.	황규철	◦ 균형발전은 말보다 예산이 먼저 수반돼야
30	제302회	'11. 7.11.	하재성	◦ 충북 종합운동장 설치에 관하여
31	제302회	'11. 7.11.	김동환	◦ 예산을 내돈 아끼듯 해야 한다.
32	제302회	'11. 7.11.	전응천	◦ 충주대·철도대 통합에 대하여
33	제302회	'11. 7.11.	이광진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촉구하며
34	제302회	'11. 7.22.	김재종	◦ 남부3군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35	제303회	'11. 9.20.	윤성옥	◦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숙지를 통한 답변에 철저를 기할 것
36	제303회	'11. 9.20.	박문희	◦ 충북도 출연기관의 인사 관련
37	제303회	'11. 9.20.	하재성	◦ 스포츠스타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38	제303회	'11. 9.20.	장병학	◦ 문화예술의 핵인 충북문학관 건립의 필요성

연번	회기	날짜	의원명	발 언 내 용
39	제303회	'11. 9.20.	정지숙	◦ 성인지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40	제303회	'11. 9.30.	김영주	◦ 대표도서관 설립으로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해야
41	제303회	'11. 9.30.	김봉회	◦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종합대책 관련
42	제303회	'11. 9.30.	김양희	◦ 민선5기 이시종도지사 취임이후 각종 인사 관련 의혹 잡음 등
43	제303회	'11. 9.30.	심기보	◦ 충주라는 이름을 살려야 합니다.
44	제304회	'11.10.19.	이광희	◦ 충북대학교 구조개혁 대상학교 지정 철회
45	제304회	'11.10.27.	박상필	◦ 국사교육의 문제점 및 강화 방안
46	제304회	'11.10.27.	이광진	◦ 안전한 충북교육을 위한 미래의 과제
47	제304회	'11.10.27.	김종필	◦ 백곡지역 119지역대 폐쇄 관련
48	제305회	'11.11.15.	이수완	◦ 외국기업 투자유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
49	제305회	'11.11.15.	김재종	◦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방안
50	제305회	'11.11.15.	박문희	◦ 오송역세권 개발 관련
51	제305회	'11.12.16.	전응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52	제305회	'11.12.16.	김양희	◦ 도정질문 규정 관련
53	제305회	'11.12.16.	김도경	◦ 한미 FTA폐기 촉구
54	제306회	'12. 1.10	정 헌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촉구
55	제306회	'12. 1.10	박문희	◦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변화된 모습 필요
56	제306회	'12. 1.19	이수완	◦ 혁신도시의 균형있는 정주여건 조성 촉구
57	제306회	'12. 1.19	이광희	◦ 학교 학생폭력 문제
58	제307회	'12. 3. 2	박문희	◦ 국립암센터 분원설립을 위한 객관적·투명한 용역 재추진 촉구

연번	회기	날짜	의원명	발 언 내 용
59	제307회	'12. 3. 2	임헌경	◦ 국립암센터 분원에 관하여
60	제307회	'12. 3.12	장병학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61	제308회	'12. 4.16	김재종	◦ 대청호유역 공동발전방안 수립촉구
62	제308회	'12. 4.25	박상필	◦ 교육기부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줍시다.
63	제308회	'12. 4.25	권기수	◦ 119지역대 통폐합에 따른 소방사각지대 해소촉구
64	제308회	'12. 4.25	이광희	◦ 대청호 유람선은 안된다.
65	제308회	'12. 4.25	임헌경	◦ 암센터 분원 오송공약 반드시 이행되어야
66	제310회	'12. 5.18	이수완	◦ 초등학생 증가지역, 학교건립 시급하다.
67	제311회	'12. 6.12	장병학	◦ 작은학교 살리기
68	제311회	'12. 6.12	김양희	◦ 청주·청원통합,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도정시책과 의회운영에 대하여
69	제311회	'12. 6.22	김희수	◦ 단양소방서 설치 시급하다.
70	제311회	'12. 6.22	정 헌	◦ 영농편익 증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예산 편성하라
71	제311회	'12. 6.22	이수완	◦ 또 다른 수도권 규제완화 웬말이냐?
72	제311회	'12. 6.22	장선배	◦ 화장품·뷰티박람회, 청주·청원 통합기념 축제로 만듭시다

12. 의정활동 관련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지원실적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비고
'10. 7. 8.	KBS청주방송	▪ 신임의장 당선 관련(유용의 시사투데이)	
'10. 7. 8.	충청타임즈	▪ 신임의장 당선	
'10. 7. 8.	MBC TV	▪ 신임의장 당선 관련(TV전국시대)	
'10. 7. 9.	CJB	▪ 민선5기 지방의회 역할은? (CJB청주방송 시사진단)	
'10. 7.12.	청주MBC	▪ 민선5기 지방의회는 어떻게 가야하나? (청주MBC 특별토론)	
'10. 7.22.	CJB청주방송	▪ 당선소감 및 도의회 운영방향은? (CJB청주방송 생방송투데이)	
'10. 7.27.	충주	▪ 민주당 충청북도 여성위원회 주최 강의자료 지원(정지숙 의원)	행정
'10. 8. 2.	CJB청주방송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결과	
'10. 8. 6.	청주 BBS	▪ 9대의회 전반기 운영방향은? (청주BBS 충북저널967)	
'10. 9. 3.	청주KBS	▪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KBS 청주라디오 '유용의 시사투데이')	
'10. 9.13.	청주KBS	▪ 대변인으로서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KBS 청주라디오 '유용의 시사투데이')	
'10. 9.16.	청주CBS라디오	▪ 도의회가 바라본 우리지역 현안은? (청주 CBS라디오 파워매거진 '충북의 오늘')	
'10. 9.16.	CJB청주방송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은? (CJB 청주방송 라디오매거진 오늘)	
'10. 9.17.	의회 회의실	▪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김도경 의원)	
'10. 9.20.	HCN충북방송	▪ 제9대의회가 前의회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HCN충북방송 요리조리 GoGo)	
'10.10. 4.	의회 회의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방향(장선배 의원)	
'10.10. 6.	KBS청주방송총국	▪ 무상급식 충북 어떻게 실현 하나?	교육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비고
'10.10.15.	청주CBS라디오	▪ 무상급식 및 청문회 관련사항 (파워매거진 '오늘의 충북')	
'10.10.18.	청주MBC	▪ 축하영상메시지 촬영(생방송 전국시대)	
'10.10.19.	청주KBS	▪ 충청북도아파트 품질검수단조례 관련 (KBS 청주라디오 '유용의 시사투데이')	건설
'10.10.20.	도청 중회의실	▪ 제9대 충청북도의회 운영방향과 과제	총무
'10.10.21.	청주CBS라디오	▪ 제9대의회 5대 운영과제 관련 (파워매거진 '오늘의 충북')	
'10.10.22.	의회 회의실	▪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교육
'10.10.26.	HCN충북방송	▪ 무상급식 관련사항(HCN뉴스)	
'11. 3. 8.	의회 회의실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운영
'11. 3.10.	〃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정책
'11. 4.18.	〃	▪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정책
'11. 4.20.	〃	▪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 방안	행정
'11. 6.22.	〃	▪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토론회	교육
'11. 7. 8.	도청 대회의실	▪ 지방자치부활 20주년기념 대토론회	총무
'11. 7.12.	제천한방생명과학관	▪ 북부권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운영
'11. 7.14.	중원대학교	▪ 중부권 농업·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산경
'11. 7.22.	옥천체육센터	▪ 남부권 균형발전다짐대회	의사

일 시	장 소	내 용	비고
’11. 9.29.	도청 대회의실	▪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 충청권 대토론회	총무
’11.10.27.	〃	▪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관련 공청회	행정
’12. 2.21.	의회 회의실	▪ 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제정관련 자문위원 의견청취 및 토론	행정
’12. 3.27.	도청 대회의실	▪ 국립암센터분원 백지화 대응방안 토론회	총무
’12. 4.17.	도청 대회의실	▪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건설
’12. 4.17.	산업경제위원실	▪ FTA농업정책 토론회	산업
’12. 5.24.	도청 대회의실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교육
’12. 6.22.	도청 중회의실	▪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진단과 과제 의정토론회 개최	운영
’12. 6.22.	도청 대회의실	▪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교육

議政白書(제9대 전반기)

2012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충청북도의회
편 집 : 총무담당관실
043-220-5187
인 쇄 : 선광기획 ☎043-254-8095